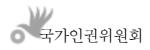
실무자를 위한 인권핸드북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협력국 엮음



● 핸드북 발간에 도움을 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한 국국제노동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에 감사드립니다.

▋ 펴내는 글 ▮

실무자들의 책상 위에서 쓸모 있게 활용되길

국가 인권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지 한 해가지난시점에 조촐한 자료집을 묶어 펴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실무자를 위한 인권핸드북』은 어떤 새로운 저술을 담았다기보다는 기존의 정보를 재배치하고 결합시켜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한 자료모음이고 오프라인 텍스트를 통해 인터넷에서 보다 풍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하는 지침서로 기획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생조직이기도 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국민에게는 여전히 그 성격과 역할이 생소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I부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 기능과 역할, 부서 연락처, 진정처리 통계 등 인권위원회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시민사회의 10년간의 유엔 인권기구 대응을 정리한 II부 '유엔과 인권'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국제연대위원회에서 자료를 정리해주었고, 그 동안의 대응사례에 대한 보고와 관련기관 연락처, 각 인권 기구의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등 풍부한 자료들을 망라해놓았기 때문에 인권관련 정부부처나 시민사 회단체가 국제회의 등에 대응하는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II부 '참고자료'에 포함된 국내외 NGO에 대한 정보는 기왕의 인터넷상의 여러 사이트나시민사회단체 편람 등에서 취할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으나 주요 단체들의 연락처 등 간략정보를 중심으로 단출하게 압축해 놓았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핸드북』으로 탁상 위에 올려놓고 활용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판단으로 정리했습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오기된 정보는 알려주시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타 국가 기관에 대한 안내, 외국인 노동자, 여성 문제, 성적소수자에 대한 사례별 대응 지침 등은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협 의회>, <한국국제노동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단체의 도움을 받고, 기존의 인터넷 자료 등을 취합한 내용입니다. 보다 많은 시안과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시간의 제약 등 여러 한계 때문에 싣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정리된 자료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협력국장 나영희

펴내는 글 5

제I부 국가인권위원회

- 1.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곳인가? 13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배경 13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15
 -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19
-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23
 - 위원회의 구성, 역할 24
 - ●사무처의 구성, 역할 27
- 3. 국가인권위원회 활용 37
 - 상담신청 및 진정접수 37
 - 진정사건 처리과정 39
 - 구제조치 45

- 4.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주 묻는 질문 49
 - 유형별 질문과 대답 49
 - 배움터 사용안내 56

참고자료: 다른 나라의 국가인권기구 목록 57 국가인권위원회법 66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79

제II부 유엔과 인권

- 1. 유엔헌장에 의한 기구(Charter-based Bodies) 85
 -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85
 - 인권위원회 내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89
 - ●인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인권소위,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92
 - 청원(communication)과 긴급조치(urgent action) 94

참고자료: 주요 특별보고관 및 실무그룹 연락처 98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제출한 청원서 100

- 2. 국제인권조약에 의한 기구(Treaty-based Bodies) 105
 - 이행감시기구 105
 - 민간단체의 역할 109

참고자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111 인권이사회 최종견해 11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최종견해 118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123

● 개인통보제도(Individual Complaint/Communication)의 활용 133

참고자료: 박태훈 씨 개인통보 사건에 대한 인권이사회 결정문 136

- 3.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147
 - 국제형사재판소의 관장범죄 147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행사 요건 148
 - 범죄혐의자에 대한 기소, 체포, 인도 149

참고자료: 인권관련 유엔 국제회의 일정(2003년) 151

제III부 참고자료

- 1. 각종 민원상담 참고자료 157
 - 외국인 이주노동자 157
 - 여성, 양성평등 170
 - 성적소수자 177
 - 경찰관련 인권 사항 179
 - 교정관련 인권 사항 188
- 2. 다른 국가기관 이용 안내 197
 - 법무부 197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3
 - 대한법률구조공단 207
 - 중앙노동위원회 212
 -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 218

참고자료: 인권관련 훈령, 규칙 229 구금: 보호시설 연락처 238 주요 해외 NGO 목록 249 국내 시민사회단체 목록 270

찾아보기 299

제I부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곳인가?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3. 국가인권위원회 활용

4.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주 묻는 질문

1.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곳인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배경

인권 옹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 나라별로 자국의 인권상황을 반영한 효과적인 인권보호 장치를 고민하게 되었다. 국제인권법을 국내에 적용하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 인권보호제도가 각국의 국가인권기구다.

1991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 워크숍에서 확인된 내용을 1993년 유엔총회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으로 결의함으로써 국가인 권기구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준칙이 마련되었다.

국가인권기구는 나라마다 형태와 기능이 조금씩 다르고, 인정하는 권한의 크 기도모두 다르지만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자체는 그 나라 인권상황이 한 단계 진전 되었음을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인권기구의 존재는 국가와 시민사 회가 인권을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로 표방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인권단체의 비판이 집중되었고 우리 정부의 유엔가입 및 주요 국제인권조약 비준이 이루어지면서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 의무에 관해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졌다. 1990년대에 들어

서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었다. 또한, 1997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차원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가 맞물리면서 2001년 11월 25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 수준을 항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 의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가인 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Ⅲ 파리원칙이 정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

- 인권보장과 향상에 필요한 광범위한 권한을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해 부여
-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자문: 의견 권고 제안 보고서 제출과 발표
 - 인권의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대중적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
 - 유엔 및 유엔 관련 기관, 지역기구, 다른 나라의 국가인권기구와의 협력
 - 개별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와 구제: 그 나라의 인권보호 의지, 성실한 의무이행을 보여 주는 지표

➡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떻게 탄생했나?

우선, 인권관련시민사회단체들의 오랜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다. 이들은 한 국사회에서 생소했던 인권이라는 의제를 가시화하고, 새로운 기구 설립을 통해 인권상황을 개선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수많은 난관과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을 불굴의 노력으로 극복했다.

둘째,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권이란 담론을 국정의 한 지표로 삼자는 사회적 합의가 싹텄다. 이러한 흐름은 1997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후보의 선거공약, 다음해 새 정부 100대 과제에 인권법 제정 및 국기인권위원회 설립이포함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셋째, 국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국제사회의 인권운동이 국내 인권운동과 연계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시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니다. 형식은 국가기구이나 실질적인 내용과 형식은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는 특수한 기구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의 가치인 인권을 국정 전반에 서 실현할 의무, 그리고 시민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옹호하고 지원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Ⅲ세계인권 연표

1215	영국 마그나 카르타
1679	영국 인신보호령
1776	미국독립선언
1789	프랑스혁명 인권선언
1791	미국 권리장전
1919	국제노동기구(ILO) 창설
1945	유엔헌장
1945~46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1946~47	동경 전범재판
1948	세계인권선언
1951	난민협약
1959	어린이 청소년 권리선언
1966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9	인종차별철폐협약
1975	헬싱키협정
1981	아프리카인권헌장
1993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설치
1998	국제형사재판소 로마협약 체결
2002	국제형사재판소 창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1993년 6월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한 민간단체들이 정부에 국가인 권기구설치를 요구한 이래, 19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 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이후 3년여에 걸친 여러 어려운 과정 을 거친 끝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과정

	, , , , , , , , , , , , , , , , , , , ,	
1993년	6월 10일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한국 민간단체 공동
		대책위원회(공대위),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 요청
1997년	11월 18일	김대중대통령 대선공약 발표-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
		위원회' 설립
1998년	3월 10일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인권법 제정 및'국민인권
		위원회 설립' 100대 과제의 하나로 제시
	9월 17일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
		원회(공추위) 결성
	9월 25일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10월 23일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김대중 대통령
		과 법무부 장관에게 제1차 공개서한 송부 - '법무부인'에
		대해 독립성과 실효성 결여 지적
	10월 26일	공추위, '공추위 법안' 확정
1999년	2월 9일	인권법, 제3차 법무부·국민회의 제3차 당정협의 개최
		법무부 제2차 수정안 제시, 당정간 입장차이로 결렬
		공추위,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2차 수정안' 비판
	3월 30일	공추위, 인권위 독립성권한 강화요구, 국무회의 상정 저
		지 집회
	3월 30일	인권법안 국무회의 통과
	4월 7일	인권활동가 30여명, '정부 인권법안 철회와 인권법 재논
		의' 촉구 일주일간 연합단식농성 돌입
	4월 9일	국제앰네스티, 국제고문방지기구(World Organization
		Against Torture), 로버트케네디추모인권센터(Robert
		F. Kennedy Memorial Center for Human Rights) 등 12개
		국제인권단체
		'인권법 제정과정의 투명성과 민간단체와의 충분한 협
		의' 촉구 성명 발표
	4월 12일	유엔인권위 참가 민간단체 대표단, 제네바에서 브라이
		언 버드킨과 메리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면담, "한

	국의 인권법 제정과정이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인권
	위가 약체 기구화 될 우려" 입장 표명
4월 29일	공추위 확대개편대회 개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
	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로 개편(70여개 민간 단체 참여)
6월 16일	공대위, '국가인권위원회설치법'안 최종 확정
12월 20일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인권단체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권법 제정을 추진할 수 없다"며 인권
	법 제정 연기 선언
2000년 1월 3일	김대중 대통령, 신년사 통해 '인권법'의 지속적인 추진 의
	사 밝힘
8월 21일	법무부 공고 제2000-31호, 인권법 입법예고(인권위원
	회를 비법인 민간기구로 설치하는 내용)
9월 5일~6일	공대위,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인권활동가를 위
	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개최
12월 14일	민주화 원로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국가보안법
	을 연내 폐지하고, 국가인귄위원회법을 연내 제정하라"
	성명 발표
12월 18일~22일	인권2대 현안연내 해결을 위한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
	성(명동성당)
2001년 1월 8일	공대위, 민주당 7인 소위원회와 연석회의
1월 19일	민주당7인 소위원회 최종회의, 인권위 국가기구로 하는
	'인권법 시안' 확정
2월 1일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
	구'안 잠정 결정
2월 9일	민주당, 당정합의 '국가인권위법안' 확정(민주당 소위
	와 법무부 차관 공동기자브리핑)
2월 13일	공대위, 민주당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인권활동가 25명 민주당사 농성
2월 20일	공대위, 탑골공원에서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철

회 촉구와 개혁 실종 규탄대회' 개최

2월 21일 '개혁쟁취를 위한 사회각계 인사 10,000인(시민사회단

체 13,610명) 시국선언'

4월 26일 공대위, "국가인권위법 4월회기내 처리합의에 관한 3당

총무 합의와 법사위 심의에 대한 성명" 발표

4월 30일 국회법사법안심사소위, 심의 후 민주당 수정안을 대안

으로 제출하여 표결처리 발표

공대위, "개혁실종, 졸속심의 기도하는 민주당을 규탄하

는 공대위 성명" 발표

국회법사법안심사소위, 민주당수정안 표결-찬성4,

반대 3으로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 민주당수정안을 찬성 8, 반대 7로 통과 국회 본회의, 법사위안(민주당수정안) 재적의원 273명, 찬성 137명, 반대 133명, 기권 3명으로 원안대로 통과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법률 제6481호)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와 출범

2001년 8월 1일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김창국 변호사

내정 발표

8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

치

8월 28일 전 공대위 대표 등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시작

10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

위원장: 김창국

상임위원: 박경서, 유현, 유시춘

비상임위원: 이진강, 정강자, 곽노현, 김덕현, 김오섭,

신동운, 조미경

 10월 11일
 제1차 전원위원회, 최영애 사무총장 내정자 임명 제청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설립준비단 해단, 사무처준비단 발대식

11월 26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상담 및 접수 개시(첫

날 진정접수총 122건)

2002년 1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령, 국무회의 통과: 5국 18과 1소속

기관(인권자료실), 정원215명(자체정원180명, 파견공 무원20명, 전문위원15명) 확정, 2002년도 예산192억

워 확정

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이 입법추진 중인 테러방지

법안 반대 의견 국회제출

2월 27일 고문방지협약제2차 정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가인권

위원회 견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

4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입주 및 사무처 발족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은 2001년 5월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활동의 기본 방향과 내용은 국제인권 규범에서 찾는 이중적이고도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인권 기구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한 국제기준인 '파리원칙'과 이에 근거해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규정되었다고 보아야타당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부서뿐만 아니라 대법원 등 다른 주요 헌법 기관으로부터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그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다른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교육 활동을 벌이는 인권 전담 국가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으로 우리 사회도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공적기구는 거의 없었다. 아울러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 개개인의 권리 보호에도 소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

으로 옹호하고, 특히 국가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은 공직사회를 포함한 우리 일상에 '인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가 그리고 각 정부부처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참고해야 할 중요한 기준으로 '인권'이 새로 포함된 것이다.

❷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

- 인권 관련 법령(입법과정중의 법령 포함) 제도 관행 등의 조사 연구 및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시 및 권고
-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 연구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인권에 관한 교육홍보
-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 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
-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책 제도 개선 활동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령(입법과정에 있는 법령안포함) 제도 관행 등을 인권의 입장에서 점검한다. 이는 인권감시자 (human rights watch) 및 인권옹호자(human rights advocate)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사전예방 활동의 의미를 갖는다.

- ➡ 인권침해,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접수 및 조사구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 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국내외 협력 활동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인권단체 및 각국 국가인권기구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다.

국내 인권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제가 필요한 인권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문을 받으며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실태 조사와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분담하고 전문성을 보충해주고 있다. 또한, 각국에 설치된 국가인권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향상에 기여하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권기구를 운영해온 나라들의 경험을 습득하는 등 국제교류에 힘쓰고 있다.

• 국내 협력

- 인권 실태조사에 인권단체 참여
- 민가경상보조사업. 시민실천프로그램 등 단체협력지원사업
-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학교
- 시민단체와의 상호 협력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시민단체들에 각종 인권정책 토론의 장소 제공
- 국제 협력
 - 아시아 대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가입
 - 인권관련 국제협약관련 의견제시 UN고문방지협약 정부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관한 정부보고서, UN장애인권리협약성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보고서 검토의견 제시 등 국

제사회 인권향상을 위해 우리 정부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우리 정부의 국제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감시활동, APF 법률자문회의 (ACJ) 인신매매관련보고서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국제 인권 현황 파악과 인권의 국제적 기준에 대한 연구

>>> 인권교육 및 홍보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을 통해 사전예방하기 위해 인권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각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이 주요한 평가 및 교육의 기준이 되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출판,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권의식 확산에 노력하며, 인권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인권전문 도서관인 인권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등 모두 215명의 직원(자체정원 180명, 전문위원15명, 파견직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11명의 인권위원(비상임위원 7명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이 중에서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위원회의 행정실무를 처리할 사무처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5국 18과 1소속기 관(인권자료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를 구성하는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며, 출범 이전에 공직생활을 했던 직원과 인권시민단체 등 민간 경력을 가진 직원 이 대략 절반씩이며, 이 중 여성 직원이 약 40% 정도를 차지한다.

위원회의 구성, 역할

▶ 전원위원회

- 구성: 위원장과 인권위원 10명(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
- •심의 및 의결 사항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 및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의안 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자문위원 또는 조정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사항
 - 방문조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조사사건에 관하여 구제조치의 권고, 고발· 징계권고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거나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법, 시행령 또는 위원회 규칙에서 전원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 상임위원회

- 구성: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
- •심의 및 의결 사항
 -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전원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부한 사항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직권조사 개시결정

>>> 제1소위워회

- 구성: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
- •심의 및 의결 사항
 -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 제도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개선이 필요한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에 관한사항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에 관한사항
 -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업무에 관한사항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금 ·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제1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 제2소위원회

- •구성: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
- •심의 및 의결 사항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금 ·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에 대한 조사 또는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다만, 헌법 제11조에 정한 인권침해는 미포함)
 - 제2호의 조사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및 조정위원회 회부, 법률구조의 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제2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 제3소위원회

- 구성: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
- •심의 및 의결 사항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금 ·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헌법 제11조에 정한 인권침해(평등권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에 대한조사 및 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따라 제기된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 평등권침해관련조사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및조정위원회 회부, 법률구조의 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제3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 조정위원회

- 구성: 인권침해조정위원회와 차별행위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으며, 각각 인 권위원 2명과 외부인사 1명으로 구성
- •심의 및 의결 사항
 -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고, 합의 권고에 의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조정 신청된 사항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조사 대상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전원위원회 및 각소위원회 개회 일자 및 회의 결과는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인권위 원회는>이렇게일하고있습니다>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 공지합니다.

▮인권위원▮

• 위원장

김창국(02-2125-9600, ckkim22@humanrights.go.kr)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 상임위원

박경서(02-2125-9605, pks@humanrights.go.kr)

WCC아시아정책위원회 의장, 동북아평화연구소장, 초대 대한민국 인권대사 유현(02-2125-9609, yoohyun@humanrights.go.kr)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변호사 유시춘(02-2125-9614, spring610@humanrights.go.kr)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민예총 이사, 소설가

• 비상임위원

조미경(02-2125-9755)

아주대 법학부 교수, 한국가족법학회회장, 한국민사법학회부회장

김오섭(02-2125-975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변호사

신동운(02-2125-9755)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 원회 위원

정강자(02-2125-9755)

한국여성단체연합노동위원장,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덕현(02-2125-9755)

여성변호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문제연구실무위원장, 한국에이즈퇴치 연맹 이사

사무처의 구성, 역할

시무처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 및 의사를 집행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맡고 있다. 사무처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5국 18과 1부속기관(인권 자료실)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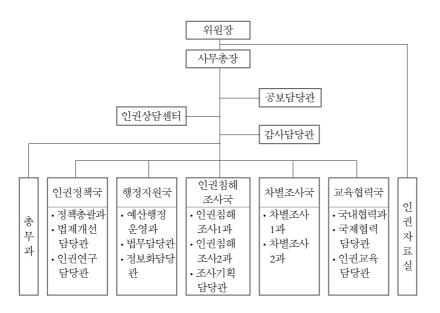


그림1-1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 사무총장

최영애(02-2125-9900, yachoi@humanrights.go.kr)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 원회 집행위원장

❷직속과(실)

>>> 공보담당관

(T) 02-2125-9770 (F) 02-2125-9779 (E) pubic@humanrights.go.kr

- 위원회의 홍보 업무 및 홍보 자료에 관한 계획 수립 조정 및 시행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사단체, 일반 국민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 위원회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홍보
- 위원회 및 인권문제에 관한 언론 관련 활동 등

>>> 감사담당관

(T) 02-2125-9621 (F) 02-2125-9626 (E) inspector@humanrights.go.kr

-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 •국가인권위원회직원윤리규정의 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징계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소속직원의 재산등록 · 심사 ·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사항
- 인권위원의 겸직금지 및 퇴직인권위원의 공직취임제한에 관한사항 등

> 인권상담센터

- (T) 02-2125-9800 상담(T) 02-2125-9933~7 (F) 02-2125-9811
- (E) center@humanrights.go.kr
- 진정 및 상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진정 및 일반권리구제 안내 및 상담
- 진정서 면전진정 등의 접수 분류 및 조사국 송부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긴급전화 운영
- 진정 사건관련 정책연구과제 개발
- •진정 및 상담의 접수와 처리 및 상담기법의 개발 및 개선 등

>>> 총무과

(T) 02-2125-9710 (F) 02-2125-9715 (E) chongmu@humanrights.go.kr

- •소속직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연금 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 •보안업무, 문서의 분류 : 수발 : 통제 : 보존 등 문서관리
-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 모방위대의 관리, 물품의 구매 조달 및 관리
- •세입 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등

❷인권 정책국

> 정책총괄과

(T) 02-2125-9720 (F) 02-2125-9728 (E) policy@humanrights.go.kr

- 위원회의 정책수립
- 위원회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과 시행
-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 및 인권백서의 작성
-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보고 및 인권상황종합보고서의 작성
- 인권에 관한 정책과제 개발
- 주요 인권 현안의 파악 및 분석 등

>>> 법제개선담당관

(T) 02-2125-9730 (F) 02-2125-9738 (E) lpmd@humanrights.go.kr

- 인권 관련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개선
- 인권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 및 의견의 제시
- 인권 관련 국가기관과의 협의
- 정부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견 제출
- 국제인권조약, 기준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조사, 분석 및 국내이행 에 관한 사항
-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이행에 관한 연구 등

>>> 인권연구담당관

(T) 02-2125-9740 (F) 02-2125-9747 (E) research@humanrights.go.kr

-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의 수행 및 지원
- 기획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조정

-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분석 및 판단기준, 예방조치에 관한 일반지침 제정
- 인권관련 연구기관 단체 및 전문가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

● 행정지원국

(T) 02-2125-9906~7 (F) 02-2125-9916

>> 예산행정운영과

 $(T) \ 02-2125-9750 \ (F) \ 02-2125-9757 \ (E) \ dPgod@humanrights.go.kr\\$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국회관계업무의 총괄· 조정, 조직· 정원 및 업무 분장의 관리
-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위원회업무처리에 관한 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 관리 및 분석
- 각 위원회 안건 및 의사일정의 관리 지원 및 회의록 작성과 의결사항 배포 등

>>> 법무담당관

(T) 02-2125-9760 (F) 02-2125-9766 (E) Low@humanrights.go.kr

- 위원회에 대한 법률적 자문, 위원회 관련 법령안 및 국무회의 제출 안건의 입안 · 심사 및 협의
- •소송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 총괄
-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 회신 및 그 밖의 법무관련
- •위원회 업무관련 규칙 : 훈령 : 예규 : 지침안의 작성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적 자문 등

>> 정보화담당관

(T) 02-2125-9710 (F) 02-2125-9715 (E) webmaster@humanrights.go.kr

- 위원회의 정보화계획 수립 조정 및 시행
- 위원회 행정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운영
- 위원회 웹사이트의 개발 및 유지 관리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의 유통관리
- 정보화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 전산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지원 등

● 인권침해조사국

(T) 02-2125-9908~9 (F) 02-2125-9916

> 인권침해조사1과

(T) 02-2125-9820 (F) 02-2125-9835 (E) VID1@humanrights.go.kr

- 인권침해조사국의 예산, 보안, 기타 일반서무 업무
-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의 조사 및 직권조사와 그 구제 및 그와 관련한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 시행, 조정 · 법률구조 ·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
- •조사와 관련된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징계권고 고발 등

> 인권침해조사2과

- 교도소·구치소 등 구금시설, 군헌병대, 군검찰, 국군기무사령부, 군 교도소 군 구치소, 기타 군 관련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의 조사 및 직권조사와 그 구제 및 그와 관련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시행, 조정·법률구조·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
- 조사와 관련된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징계권고 고발 등

조사기획담당관

- (T) 02-2125-9860 (F) 02-2125-9851 (E) IPD@humanrights.go.kr
- 인권침해조사 및 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총괄·조정. 인권침해의 조사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와 개선
- 대규모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사건 또는 상황에 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조사
- 구금 보호시설(군관련제외)에 관한 실태조사 방문조사의 계획 수립 시행 및 개선
- 다수인보호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등

● 차별조사국

(T) 02-2125-9910~1 (F) 02-2125-9916

>>> 차별조사1과

(T) 02-2125-9870 (F) 02-2125-9882 (E) josa1@humanrights.go.kr

- •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
- 차별행위의 조사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와 개선
- 대규모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사건 또는 상황에 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조사
- 장애, 병력,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 출신국가 · 출신민족 · 인종 · 피부색에 의한 차별 진정 조사 및 직권조사와 구제 및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등

>>> 차별조사2과

(T) 02-2125-9890 (F) 02-2125-9883 (E) josa2@humanrights.go.kr

• 성별 후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성적지향, 나이, 용모 등 신체조

건, 종교·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에 의한 차별 진정 조사 및 직권조사와 구제 및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급 지급
-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 등

❷교육협력국

(T) 02-2125-9912~3 (F) 02-2125-9916

>>> 국내협력과

(T) 02-2125-9650 (F) 02-2125-9656 (E) civil@humanrights.go.kr

- 인권관련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정 시행
- 인권관련 단체의 실태 및 활동상황에 관한 자료수집
- 인권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 국제협력담당관

(T) 02-2125-9660 (F) 02-2125-9666 (E) intl@humanrights.go.kr

-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정 시행
-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인권관련 국제단체와의 교류 협력
- 위원회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가입 활동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
- 인권관련 해외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보급
- 민간부문 국제 인권활동 지원
- 인권에 관한 국제 전문인력 육성 등

>>> 인권교육담당관

(T) 02-2125-9670 (F) 02-2125-9677 (E) edu2001@humanrights.go.kr

•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 인권교육업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의
- 인권교육 프로그램 자료의 개발 및 보급
- 인권교육 관련 업무 조정
- 인권교육 전문요원의 양성훈련
- •국내외 인권관련교육제도 및 교육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 인권강사은행의 구성 운영 등

● 인권자료실

(T) 02-2125-9680 (F) 02-2125-9686 (E) library@humanrights.go.kr

- 인권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조사 + 수집 + 정리 + 분석 및 보존
- •국내외 도서관 등과의 인권 관련 자료의 교류 및 협력
- 인권자료실 자료의 열람 및 대출 등

3. 국가인권위원회 활용

상담신청 및 진정접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 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 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피해자에 대해 상담신청 및 진정을 접수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상담 및 진정접수를 위해 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❷인권상담

인권상담은 인권 피해자들이 상담원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로 겪은 고통과 이픔을 함께 나눈다. 그래서 인권상담센터는 본질적으

로 일반 행정부서의 민원실과 달리, 인권회복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하는 곳이다. 인권상담을 마친 인권피해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담만으로 끝낼 수도 있으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진정을 접수 할 수 있다.

❷진정접수

인권상담이나 진정접수는 최대한 국민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가능하다. 이는 스스로 진정을 제기할 수 없는 어린이, 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것이다. 진정접수는 전화,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고, 직접 방문해 상담원과 대면하며 상담 및 진정을 할 수 있다. 아울러 2003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을 활용한 화상상담도 가능하게 된다.

☑ 진정접수 방법

- · 우편· 방문: (100-842)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7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T) 서울 경기 1331, 그 외 지역 02-1331
- · (F) 02-2125-9812
- · (E) hoso@humanrights.go.kr
- ※ 우편, 팩스, 이메일로 진정을 접수할 때에는 반드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 ※ 진정서 양식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면전진정

면전진정(面前陳情)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교도소 등 구금시설이나 다수인 보호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진정방법이다. 수용자가 국가인권위 원회에 면전진정을 요청하면 국가인권위 직원이 시설에 방문하여 직접 대면 상담 및 진정을 받게 된다. 면전진정의 내용은 일반 진정과 동일하나, 그동안 진정된 사안을 보면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사례가 특히 많았다. 면전진정은 다음과 같은 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
-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 유치하는데 사용하는 시설
- 군 교도소(지소 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 포함), 외국인보호소
- 아동 · 장애인 · 정신 · 부랑인 · 노인 복지시설 및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갱생보호시설 등의 다수인 보호시설

❷진정인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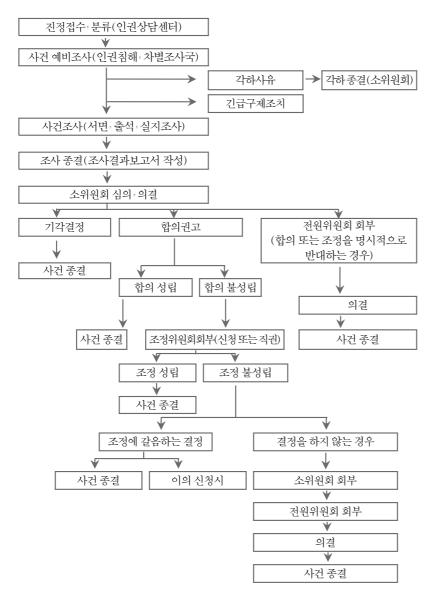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엔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은 그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만일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본인이나타인의 인권침해나차별행위에 대한 진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는 진정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징계 등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보호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권 침해 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는 최고 5백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진정사건 처리과정

▶ 진정 접수 분류

일반인의 직접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이나, 구금시설 수용자의 면전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홈>진정상담실>진정상담안내>진정처리절차안내) 참조

그림1-2 진정사건 처리과정

정등의 방법으로 인권 관련한 진정을 접수한다. 접수된 진정 사건은 진정서 등을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벌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면 각조사국으로 옮겨진다. 조사 대상의 인권침해 행위가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는 진정접수 즉시 긴급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 처리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 사건 조사

각조사국에 이송된 진정사건은 각조사관이 책임조사를 벌인다. 우선 진정인 피해자 · 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와 아울러 자료제출 요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장소 · 시설 ·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 등을 진행한다.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위원회 심의 ·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 사건 처리

소위원회에서는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 의결을 거 친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합의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등에게 수사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인권침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을 결정한다.

>>> 합의 권고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여 합의를 권고한다. 합의가 이뤄진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들의 서명을 받는 다.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의 이행에 대해 지속 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

>>> 조정 절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위원들이 노력하여 조정을 이끌어낸다. 조정에 실패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전원위원회로 결정을 넘기게 된다.

>>> 전원위원회 회부

당사자가 합의 또는 조정에 반대하는 뜻을 명시한 경우나,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위원 11명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를 통해 의결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전원위원회에서는 감독기관 등에 대한 권고, 고발 및 징계 권고, 피해자의 법률구조 지원,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이때 처리한 사건의 피진정인의 인권 회복이 이뤄지도록 사건을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 진정사건결정문 예

-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 피의자 고문치사 등 인권침해 사건
-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 ·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교원임용 차별
- •구치소 내 의문사 진상규명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 •나이를 이유로 한 대학신입생 모집과정의 차별행위
-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요구
- 원격대학 수료자에 대한 차별
- •사생활 비밀침해

-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 •조선인동포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권고
- 인권위원회 진정방해
- •러시아 이주노동자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권고
- •전향 장기수 북송 차별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및 나이를 이유로 한 예비판사 임용 차별
- 알몸신체검사로 인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침해
- •양심적 병역거부 수용자에 대한 차별개선
- 구치소의 환자방치로 인한 생명권 침해(02진인138)
- •○○역 리프트사고관련 장애인들에 대한 행복추구권, 이동권 침해
- 나이를 이유로 한 대학교원 모집차별 행위
- •교도소 징벌권 남용의 건
- •서신검열제도 개선에 대한 진정
- •병원에 대한 진정 및 직권조사 사건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교원임용 차별

※ 진정사건 관련 통계(2003년 2월말 현재)

표1-1 진정접수 및 상담 안내현황(2001.11.26.-2003.2.28.)

		진정				Ż)담		안내				
방	문	전화	통신	계	방	문 전화		계	방문	전화	민원	계	총계
대면	면전	신와	중건	/11	대면	면전	면전 전의	711	.o.r	신외	회신	/41	
815	716	419	2,245	4,195	954	440	2,805	4,199	902	9,051	802	10,755	19,149

표1-2 진정사건 분류(2001.11.26.-2003.2.28.)

분류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계
건수	3,318(79.1%)	236(5.6%)	641(15.3%)	4,195(100.0%)

표1-3 진정사건 유형별 분류(2001.11.26.-2003.2.28.)

진정사건 4,195건(100.0%)								
인권침해	(%)	차별행.	위(%)	기타(%)				
계	3,318(79.1)	계	236(5.6)	계	641(15.3)			
검찰	326(7.8)	장애	34(0.8)	사인간침해	144(3.4)			
경찰	973(23.2)	병력	13(0.3)	회사	43(1.0)			
국정원	34(0.8)	사회적신분	45(1.1)	기타단체	8(0.2)			
특별사법경찰관리	36(0.9)	출신지역	5(0.1)	재산권	44(1.0)			
지자체	74(1.8)	출신국가	21(0.5)	법령•제도	168(4.0)			
사법기관	73(1.7)	출신민족	0(0.0)	입법•재판	40(1.0)			
입법기관	1(0.0)	인종	1(0.0)	기타진정	194(4.6)			
기타 국가기관	255(6.1)	피부색	1(0.0)					
구금시설	1,365(32.5)	성별	12(0.3)					
보호시설	44(1.0)	혼인여부	2(0.1)					
군검찰	4(0.1)	임신출산	0(0.0)					
군헌병	44(1.0)	가족상황	1(0.0)					
기무사	6(0.1)	성적지향	4(0.1)					
군구금시설	3(0.1)	나이	6(0.1)					
기타군사	80(1.9)	용모등	3(0.1)					
		종교	6(0.1)					
		정치적 의견	4(0.1)					
		전과	6(0.2)					
		평등권침해	63(1.5)					
		기타	9(0.2)					

자료: 홈>국가인권위원회는>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위원회활동

표1-4 월별 면전진정 신청건수(2001.11.26.-2003.2.28.)

월	20	01		2002							2003		계				
1 5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41
신청	-	13	17	21	53	67	77	65	124	151	166	127	179	183	219	164	1,626
처리	-	9	15	9	42	61	76	58	110	105	159	111	189	160	193	174	1,471

* 처리=진정+상담종결+철회

구제조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인정되나, 합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감독기관 등에 대한 권고, 고발 및 징계 권고, 법률구 조요청, 법원 및 헌법 재판소에 의견 제출, 긴급구제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한다.

▶ 감독기관 등에 대한 권고

피진정인, 그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를 권고한다.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해야 한다. 이때 국가인권위 원회는 그 설명서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사례

성우 ○○○씨는 구금시설 내에서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에 대해서 종교집회를 불 허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구금시설에서 종교집회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수용자들은 종교생활을 통한 고통의 극복이나 교정교화의 기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여호와의 증 인' 수용자들도 종교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 고발 및 징계 권고

조사 결과, 진정 내용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게 고발이 가능하며, 아울러 피진정 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고할수 있다. 이때 징계권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002년 5월과 6월 사이 정신과 진료 후 진료비 청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를 제출한사람 중 약1,300여 명의 개인정보가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통보 대상자 자료로 사용됐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정신과진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수시적성검사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위법행위이며 헌법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경찰청장 등 관계 공무원을 징계할 것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등 관계 직원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 법률구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각지방 변호사회 등 공익적 법률단체에 법률구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구조 요청 내용은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행위의 대리를 맡거나 민사소송 · 행정소송 · 행정심판 · 헌법소원의 대리 또는 형사 피고인 · 피의자를 위한 변호 등을 말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돕게 된다.

사례

수원구치소에 수용됐던 만성폐질환 환자가 구치소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구치소 입감 당시부터 기침, 정신이상, 심폐기능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고, 동료 수용자들이 끊임없이 의료조치와 병실수용을 요구했음에도, 수원구치소 측은 건강진단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병실수용 요구를 묵살하였으며 정신이상 증세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진행중임을 알고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의료행위를 게을리 한 수원구치소 및 담당 의무관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하여, 담당 의무관을 고발하는 한편, 피해자의 가족 등이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

를 요청했다.

▶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진정사건 또는 직권조사에 관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 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지원한다.

■ 긴급구제조치

긴급구제조치는 진정 조사 대상의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다.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이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한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중대한 인권침해로부터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증거 인멸을 막고 증인이나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실행위이다.

사례

2002년 8월 한 러시아 이주노동자가 술을 마시던 도중 한국인과 다퉜다. 이 외국인 노동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해졌다. 이 사건을 접수한 국기인권위는 한국인이 피해자 부인의 손을 잡아끌면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500만원이 넘는 임금이 체불돼 있다는점 등을 들어,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주노동자의 강제퇴거명령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강제출국되지 않았다.

4.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주 묻는 질문

- ♦ 반드시 인권위원회의 진정서 양식에 써서 진정해야 하나요?
 - 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진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피진정인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가 제공하는 진정서 양식을 이용하면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 만약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빠지면 진정을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서라도 되도록 진정서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 진정은 꼭 피해 당사자만 할 수 있나요?
 - ♥인권침해나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제3자(개인 및 단체)도 피해자를 대신해서 진정할 수 있다.
- ◈ 제3자가 진정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등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제3자는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어도 피해자를 위하여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그러 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이므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진정에 대하여 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에 는 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조사할 수 없고 진정을 각하하게 된다.
- ◆ 진정인이 여러 명일 경우 어떻게 접수하나요?◆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진정

인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고 진정한 경우라도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익명으로도 진정을 할 수 있나요?

♥진정인이나 피해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진정이 접수되더라도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이를 구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혹은 가명으로 접수된 진정은 각하 사유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 외국인도 진정할 수 있나요?

방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에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진정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영역'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관할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등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건 영토 밖에 있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고 또 조사 및 구제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 팩스로 진정서를 보냈는데 접수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⑤팩스는 물론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진정은 모두 각각의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위원회에서는 진정인이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담당자 등이 표시된 '접수증명원'을 우편 등으로 보내게 된다.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한 진정인에게는 접수 즉시 '접수증명원'을 교부한다.

◈ 진정접수 방법에 따라 처리절차나 기한이 달라지나요?

♥진정접수 방법에 따라 처리절차나 방법, 처리기한이 달라지지 않는다. 진정인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하면 된다.

◈ 진정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요?

♥ 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을 제출했거나 답변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보호하 고 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언제든지 인권위원회에 연락을 해야 하며, 그러한 경우 그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도 진정할 수 있나요?

♥진정이 제기될 당시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그 진정은 각하된다. 다만, 피해자의 진정, 고소, 고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하여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한 경우(형법 제123조),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경우(형법 제124조), 혹은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가한 경우(형법 제125조)에는 예외적으로 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에 있거나 인지에 의해 수사를 개시한 후 종결하였는데 그 내용이 미흡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여전히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원회도 진정에 대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인권침해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진정이나 고소, 고발 등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 진정접수 후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땅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후에 그 진정과 동일한사안에 대해 피해자가수사기관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수사가 개시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송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진정을 접수한후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계속 조사권한을 갖게 된다.
- ◈ 오래 전에 당한 인권침해도 구제될 수 있나요?
 - ♥인권침해, 차별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사건은 각하사유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난사건이라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남으로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다. 또한 본인이 자신의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제도등에 따라 민사상 시효도 사안별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결국 1년이 지난사건이라고 무조건 각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상담한 후 진정 여부를결정하는 것이 좋다.
- ◈ 진정이 접수된 후 처리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 ♥진정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정으로 그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문서로 그 이유를 알려드

리게 된다.

- ◈ 진정을 하면 가해자를 처벌해 주나요?
 - % 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를 직접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사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과 인권침 해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징계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도 있다.
- ◈ 경찰, 검찰 수사와 인권위원회의 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 ♥경찰, 검찰의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밝혀 혐의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조사의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조사는 인권침해 내용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 처벌보다는 당사자사이의 화해나 권고, 조정, 법률구조 등을 통해 피해자 의 권리회복, 피해구제를 더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비강제적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속하며 값싼" 구제절차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사' 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 진정을 하면 피해자가 인권위원회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하나요?
 - 방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내용을 가장 잘 이는 사람이 피해자 본인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인권위원회에 출석을 하여 사건을 자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다.
- ◊ 진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진정인, 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해출석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을 요구한다. 또한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조사와 관련이 있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 ◈ 관계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정당한이유없이 방문조사 혹은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위원회의 진술서 혹은 자료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나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조사에 불응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 ♥ 우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사이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원상회복·손해배상 그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정위원회에서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전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의결하게 된다.

◈ 피해자 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나요?

♥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① 조사대상이 된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② 원상회복·손해배상 및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③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조치,④ 법령,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 긴급구제조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질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직무로부터의 배제
 - 그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회복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직접 취하거나관계인 및 그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와 같이 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있다.

- ◈ 구금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도 진정을 할 수 있나요?
 - ♥구금・보호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은 법으로 보호되어 있다. 구금・보호시설의수용자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할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한다. 구금・보호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로써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 구금 보호시설이란 무엇인가요?

♥구금 보호시설이란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 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 군교도소(지소, 미결수용실 및 헌병대영창 포함)
- 외국인보호소
- 다수인보호시설
- ◈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다수인 보호시설이란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자립지원시설 및 아동단기보호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 활시설
-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 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 신요양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부랑인의 보호 및 재활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및 실비양로시설
 -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실비노인요양시설
-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 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
- 갱생보호시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사업 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 고 있는 것에 한함)
- ◈ 진정내용을 수정하거나 자료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농수정하거나추가하고자 하는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된다. 제출은 우편, 팩스, 이메일로 할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누가 보낸 문서인지를 확인할수 있도록 접수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셔서 보내야 한다.
- ◈ 진정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 땅접수된 진정서와 첨부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진정을 취하한 진정인이 제출한 문서 또는 물건의 반환을 요청하면 위원회는 이를 반환하여 드린다.
- ◈ 진정을 취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진정을 취하하려면 그 이유를 밝히는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취하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면 위원회 직원 등이 진정인을 대신하여 진정 취하조서를 작성하고 진정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 ◈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이나 조사결과가 공개될 수도 있나요?
 - ♥ 진정에 대한 조사, 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공개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의해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이 취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시민단체의 공개토론 회 및 학술세미나에 한하여 배움터를 개방하고 있다. 장소사용료는 받지 않으며 약12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에 범프로젝터와 VIR,녹음시설, 엠프 등이 설치되어 있다.

□사용 신청자격 및 행사범위

- 신청자격: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 행사범위: 인권관련 공개토론회 및 학술세미나
 - ※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대여하는 까닭에 개별 단체의 내부행사나 기자회견 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며, 신청한 목적과 달리 사용할 때에는 허가를 철회한다.

□사용신청 및 허가

- •사용 신청: 사용신청서를 행사예정 2주일 전까지 국내협력과에 제출
- 허가시 검토사항: 행사내용, 일정의 중복 여부
- 허가 조건
 - 개방시간은 위원회 근무시간에 한함(휴무 일요일은 개방 불가)
 - 선행 행사가 없는 경우 행사개최 2시간 전부터 장소사용 가능
 - 단체별 고른 사용을 위해 단체별 장소 대여는 월 1회로 한정
 - 간단한 다과 외 음식물 취식 제한
 - 승인단체 이외에 단체 등에 배움터 사용 양도 금지
 - · 사용 후 청소 및 집기, 시설 등의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파손시 배상해 야 함

□<배움터 사용안내> 관한 문의

국내협력과: (T) 02-2125-9653 (F) 02-2125-9656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아우름터>배움터

"국가명, 기구명, 주소, 대표자, 전화,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순⁵

□아프리카 African Region

- 알체리 Algeria 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 promotion et de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Palais du Peuple Avenue Franklin Roosevelt 16000 Alger Ms. Mustaoha Farouk Ksentini,
 (President) (T) 213 21 23 03 11 / 213 21 23 02 14 (F) 213 21 23 90 37
- 베닝 Benin Commission Beninoise des Droits de l'Homme 04 B.P. 607 Cadjehoun, Cotonou Mr. Dominique Adjahouinou(President) (T) 229 93 36 72 (F) 229 30 52 71 (E) caobenin@firstnet.bj
- 부분디 Burundi Centre de promotion des droits de la personne humaine des refomes institutionnelles et de prevention de genocide BP 2588 Bujumbura, Burundi Mr. Jean Makenga (Director) (T) 257 23 29 10 (F) 257 23 31 39
-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Humains 01 BP 1026 Ouagadougou, Burkina Faso Ms. Bernadin Dabire (T) 226 38 46 93 (F) 226 38 0566 (E) dst@cenatrin.bf
- 카메룬 Cameroon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Freedoms B.P. 20317 Yaounde, Cameroon Mr. Gregoire Owona(Vice President) (T) 237 22 61 17 (F) 237 22 60 82
- 차드 Chad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B.P. 1522 Ndjamena, Chad Mr. Domaya Nodjigoto
 (President) (T) 235 29 33 42 (F) 235 52 20 89 (E) mini-justice@intnet.td
- 코트디부아르 Cote d'Ivoire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Legislation Only
- 가봉 Gabon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B.P. 546 Libreville Prof. Guillaume Pambou Tchivounda (T) 241 72 7857 / 241 72 7875 (F) 241 70 20 96
- 가나Ghana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Administrative Justice Old Parliament House High Street Accra, Ghana Justice Emile Francis Short (Commissioner) (T) 233 21 66 88 39 (F) 233 21 66 00 20 (E) chraj@ighmail.com
- 利比Kenya Standing Committe on Human Rights Social Security House Eastrern Wing, 9th Floor P.O.

 Box 74359 Nairobi Thuita Mwangi (Chief Executive) (T) 254 2 717900 / 254 2 717908

 / 254 2 717928 (F) 254 2 716160 (E) haki@skyweb.co.ke
- 마다가스카르 Madagasca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P.O. 1405 Fianarant Son (T) 261 226 07 64 (F) 261 226 07 64
- 말라위 Malawi Malawi Human Rights Commission (MHRC) Legal Department Chief M'mbelwa House Private Bag 378 Capital City, Lilongwe 3 Malawi Prof. George Kanyama Phiri (Chairperson) 265 775 765 / 265 775 771 / 265 775 750 / 265 774 754 (F) 265 774 771 / 265 774 751 (E) mhrc@sndp.org.mw
- 모리셔스 Mauritius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Batiment NPF Rue Jules Koening Port Louis Mauritius Mr. Dheeraj Seetulsingh (President) (T) 230 208 42 58 / 230 208 41

- 31 (F) 230 21 31 25 (E) mhrcdbs@intnet.mu
- 모르코 Morocco Conseil Consultatif des Droits de l'Homme du Maroc (CCDH) Place Ach-Chouhada Laalou B.O. 1341 10000 Rabat Mr. Driss Dahak (President) (T) 212 37 72 22 18 / 212 37 72 22 07 (F) 212 37 72 68 56 (H) www.ccdh.org.ma (E) ccdh@iam.net.ma
- 니제르 Niger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es Fondamentales 1 rue du Plateau Niamey BP 13334 Mr. Garba Lompo (President) (T) 227 72 42 52 (F) 227 72 29 14 (E) cndhlf@intnet.ne
- 나이지리아 Nigeria Nigerian human rights Commission National Secretariat Plot 800 Blantyre Street, Wuse II P.M.B. 444 Garki Abuja, Nigeria Justice Uche Omo (Chairperson) (T) 234 9 523 86 58 (F) 234 9 523 86 57 (E) humanrights@mlstn.com
- 르완다 Rwanda 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P.O. Box 269 Kigali, Rwanda Theodore Simburudali (President) (T) 250 510 372 / 250 510 381 (F) 250 510 393 (E) cndh@rwandal.com
- 세네갈 Senegal Comite Senegalais des Droits de l'Homme Avenue Pasteur Immeuble Pasteur-3 eme Etage BP 6151 Dakar-Etoile, Senegal Mr. Youssoupha Ndiaye (President) (T) 221 823 44 27 (F) 221 821 44 94 (E) csdh@jokko.sn
- 남아프리카 공화국 South Africa South African Human Rights Commission Entrace 1, Wilds View Parktown Private Bag 2700 Houghton 2041 Johannesburg Mr. Jody Kollapen (Chairperson) (T) 27 11 484 83 00 / 27 11 642 84 03 (F) 27 11 484 13 60 (H) www.sahrc.org.za (E) sahrcinfo@sahrc.org.za
- 탄자니아 Tanzani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P.O.Box 2643 Dar-Es-Salaam Justice Robert Kisanga (President) (T) 255 211 01 41 / 255 211 01 42 (F) 255 211 06 07
- 토고 Togo 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37, rue 74 Tokin Doumassesse B.P. 3222 Lome, Togo Mr. Komi B. Gnondoli (President) (T) 228 221 10 70 / 228 221 78 79 (F) 228 221 24 36 (E) cndhtogo@yahoo.fr
- 튀니지 Tunisia Comite Superieur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es Fondamentales 85 Avenue de la Liberte 1002 Tunis Belvedcre, Tunisia Mr. Zakaria Ben Mustapha (President) (T) 256 1 78 38 58 (F) 216 1 78 40 37 (E) hcdh-email@email.ati.tn
- 우간타 Uganda Uganda Human Rights Commission P.O.Box 4929 Kampala Ms. Margaret Sekaggya (Chairperson) (T) 256 41 348 006 / 256 41 348 010 (F) 256 41 255 261 / 256 41 255 162 (H) www.uhrc.org (E) uhcr@uhrc.org / msekaggya@yahoo.com
- 장비아 Zambia Zambian Human rights Commission P.O.Box 33821 Ndeke House Annex plot 7405 Haile
 Salassie Avenue Lusaka Justice Lombe Chibesakunda (Chairperson) (T) 260 1 251
 327 (F) 260 1 251 357 / UNDP 260 1 253 805

□미주와 카리브 지역 Americas & Caribbean Region

- Network of National Institutions of the Americas Acting Secretariat Comision 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Av. Periferico Sur No. 4118 Torre 1, Zafiro 2o. Piso Col. Jardines del Pedregal 01900 Mexico, D.F. Lic. Francisco Olguin Uribe (Executive Secretary) (T) 525 135–0594 (F) 525 135–0595 (E) folguin@ cndh.org.mx
- 앤티가 바부다 Antigua and Barbuda Office of the Ombudsman Deanery Place & Dickenson Bat St. P.O.

 Box 2049 St. John's Antigua and Babuda W.I. Dr. Hayden Thomas (Ombudsman)

 (T) 1 268 462 9364 (F) 1 268 462 9355 (E) thomas@uhsa.edu.ag

 ombudsman29@hotmail.com
- 아르헨타나 Argentina Defensoria del Pueblo de la Nacion Argentica Montevideo 1244 C 1018 ACB Ciudad de Buenos Aires Argentina Lic Eduardo Rene Mondino (Defensor) (T) 54 11 4819 1500 / 54 11 4819 1631 / 54 11 4819 1611 (F) 54 11 4819 1581
- (H) www.defensor.gov.ar (E) defensor@defensor.gov.ar / Ombudsman@ssdnet.com 바베이도스Barbados Office if the Ombudsman Trident House Lower Broad Street Bridgetown Mr. Carl L. Ince (T) 246 436 8179 (F) 246 426 4444
- 벨리즈 Belize Ombudsman 56 Regent Street Belize City Mr. Paul Rodriguez (T) 501 270985 501 270967 버뮤다Bermuda Ombudsman 3rd Floor, Mechanic's Building P.O.Box HM734 Church Street Hamilton Hm12 Rev. Dr. Goodwin C. Smith (Chairman) (T) 1 441 295 5859 (F) 1 441 295 6573
- 불리비아 Bolivia Defensor del Pueblo Calle Heriberto Gutierrez #2374Entre Rosendo Gutierrez y Belisario Salinas La Paz Ms. Ana Maria de Campero (Defensora) (T) 591 2 443 838 / 591 2 444 265 (F) 591 2 433 665 (H) www.defensor.gov.bo
- 케나다 Canada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344 Slater Street, 8th Floor Ottawa, Ontario K1A
 1E1 www.chcr-ccdp.ca Mary Gusella (Chief Commissioner) (T) 1 613 995 1151
 / 1 613 943 9144 / 1 613 941 6810 (F) 1 613 996 9661 / 1 613 941 6810
 (E) info.com@chrc-ccdp.ca
- 콜롬비아Colombia Defensor del Pueblo Calle 55 No. 10-32/46 Santa Fe de Bogota Dr. Eduardo Cifuentes

 (T) 57 1 314 7300 / 57 1 691 5388 / 57 1 691 5500 (F) 57 1 640 0491

 (E) ecifuentes@coll.telecom.com.co / oprensa@coll.telecom.com.co
- 코스타리카 Costa Rica Defensoria de los Habitantes Sabana Norte 125 metros al este del Instituto costarricense de Electicidad (I.C.O.) Santa Jose Dr. Jose Manuel Echandi (T) 506 296 2515 / 506 220 2658 (F) 506 296 2512 / 506 296 7355 (E) defensor@sol.racsa.co.cr
- 예콰도르 Ecuador Ave. 12 de octubre, BNo. 16, 114 Pasaje Nicolas Jimenez Edificio Tribunal Constitucional, 2do. Piso Quito Dr. Claudio Mueckay (Defensor) (T) 59 32 256 2200 (Despacho)

- / 59 32 256 2200 (E) defenecu@uio.satnet.net / hernan@uasb.edu.ec
- 엘살바도르 El Salvador 5ta, Calle Poniente y 9 Avenida Norte Edificio AMSA No. 535 San Salvador, El Salvador Ms. Beatrice de Carillo (Procuradora) (T) 503 264 0209 / 503 264 4587 / 503 222 0777 (F) 503 222 0655 (E) despddh@pddh.gob.sv
- 과테말라 Guatemala Procurador de los Derechos Humanos 12 Ave. 12-72, Zona 1 C.A. 01001 Ciudad de Guatemala Julio Eduardo Arango Escobar (Procurador) (T) 502 230 0877 / 502 230 0878 (F) 502 238 1734 (H) www.derechos.org/nizkor/guatemala/pdh (E) opdhg@guatenet.net.gt
- 가이나아 Guyana Office of Ombudsman 39 Brickdam Georgetown Justice S.Y. Mohamed (Ombudsman) 592 226 2294 (F) 592 227 2475
- 아이티 Haiti Office de la Protection du Citoyen Rue duncombe # 37, Bois Verna C.P. 2736 Port-auPrice
 Dr. Luis E. Roy (Protecteur du Citoyen) (T) 509 245 7006 / 509 244 3065 / 509 244 3066 (F) 509 245 7006 / 509 244 3065 / 509 244 3066
- 온두라스 Honduras Comisionado Nacional de Proteccion de los Derechos Humanos de Honduras Avenida
 La Paz, Contiguo a Galeria La Paz, frente a Via Platero, Casa No. 222 Tegucigalpa Dr.
 Leo Valladares Lanza (Commissioner) (T) 504 221 0516 / 504 221 0520 / 504 221
 0524 (F) 504 221 0532 / 504 221 0536 (H) www.conadeh.hn
 (E) Ivalladares@cablecolor.hn / central@conaden.hn
- 자메이카 Jamaica Office of the Public Defender 78 Harbour Street Kingston Mr. Howard Hamilton (Public Defender) (T) 1 876 922 4882 (F) 1 876 922 9830
- 멕시코 Mexico Comision 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Periferico Sur No. 3490 Esquina Luis Cabrera 5to. Piso Col.San Jeronimo Lidice Delegacion Magdalena Con CP 10200 Mexico D.F. www.cndh.org.mx Lic. Francisco Olguin Uribe, Executive Secretary Av. Periferico Sur No. 4118 Torre 1, Zafiro 2o. Piso Col. Jardines del Pedregal 01900 NMexico, D.F. Dr. Jose Luis Soberanes (President) (T) 525 68 18 168 525 68 18 125 525 68 18 032 525 135 0594 525 68 17 199 (F) 525 135 0595 (E) correo@fmdh.org.mx folguin@cndh.org.mx
- 니카라과 Nicaragua Procuraduria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de Nicaragua Avenida Monumnetal de la Central de Comberos Managua Dr. Benjamin Perez Fonseca (Procurador) (T) 505 268 6858 505 268 2789 (F) 505 266 4141
- 파나마 Panama Defensoria del Pueblo de la Republica de Panama Av. Nicanor de IObarrio (Calle 50)
 Edificio Don Camilo Ciudad Panama Mr. Juan Antonio Tejada Espino (Procurador)
 (T) 507 214 9835 (F) 507 214 9839 (H) www.defensoriadelpueblo.gob.pa
 (E) defensor@defensoriadelpueblo.gob.pa
- 파라과이 Paraguay Defensoria del Pueblo de Paraguay Albersi 456 el Estrella y octava Edif. Cardinal,
 Piso 7 Aregira Asuncion, Paraguay Manuel Maria Paez Monges (Defensor) Hector Raul
 Marin Peralta (Deputy Defensor) (T) 59 521 441216 59 521 492109 (F) 59 521

497308

- 페루 Peru Defensoria del Pueblo de Peru J.R. Ucayalia 388 Lima 1, Peru Walter Alban Peralta (Defensor a.i.) (T) 511 426 7800 511 426 8033 (F) 511 426 6657 (H) www.ombudsman.gob.pe (E) defensor@ombudsman.gob.pe
- 푸에르토리코 Puerto Rico Defensor del Pueblo Apartado 41.088 Estacion Minillas 00940 San Juan Puerto Rico Adolfo de Castro (Defensor) (T) 1 787 724 7373 (F) 1 787 724 7386
- 산타루치아 Santa Lucia Office fo the Parliamentary Commissioner 14 Micoud Street P.O. Box 1139 Castries
 Ms. Lawrence Laurent (Former Parliamentary Commissioner and Secretary of CAROA)
 (T) 758 452 0851 1 758 452 5588 (F) 1 758 452 3997
- 트리니다드 토바고 Tirnidad and Tobago Office of the Ombudsman P.O. Box 886 St. Ann's Avenue, St. Ann's Port of Spain Justice George A. Edo (Ombudsman) (T) 1 868 624 3121 (F) 1 868 625 0717
- 베네수엘라 Venezuela Defensor del Pueblo Edif. Denensoria del Pueblo Plaza Morelos, Av. Mexico Caracas Mr. German Mundarain (Defensor) (T) 58 212 578 3795 (F) 58 212 575 4467 (E) germanmundarin@cantv.net

□아시아-태평양 지역 Asia-Pacific Region

- Asia-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sia Pacific Forum of NHRI's Secretariat

 G.P.O. Box 5218 Sydney NSW 1042 Australia Kieren Fitzpatrick (Secretary of the

 Secretariat) (T) 612 92 649 673 (F) 612 92 849 825 (H) www.apf.hreoc.gov.au

 (E) KierenFitzpatrick@hreoc.gov.au / KierenFitzpatrick@asiapacificforum.net
-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Afghan Independent Human Rights Commission Ms. Sima Samar (Chairperson)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Level 8, Piccadilly Tower 133 Castlereagh Street P.O.Box 5218 Sydney NSW 1042 Prof. Alice Erh-Soon Tay (President) (T) 612 9284 9600 612 9284 9611 (F) 612 9284 9849 (H) www.hreoc.gov.au (E) paffairs@hreoc.gov.au / AliceTay@hreoc.gov.au
- 피치 Fiji Fiji Human Rights Commission Level 2, Civic Towers Victoria Parade G.P.O. Box 982 Suva, Fiji

 Justice Sailosi Kepa (Chairman) Dr. Shaista Shameem (T) 679 30 8577 679 96 6190

 (Mobile) (F) 679 330 8661 (H) www.humanrights.org.fj fhrc@is.com.fj

 (E) sshameem@humanrights.org.fj / info@humanrights.org.fj
- 홍콩 Hong Kong(China) Hong Kong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Unit 2002, 20F Office Tower Convention Plaza 1 Harbour Road, Wangchai Anna Wu (President) (T) 852 25 11 82 11 (F) 852 25 11 81 42 (E) ecu@eoc.org.hk
- 인도 India India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adar Patel Bhawan, Sansad Marg. 110 001 New Delhi Justice Shri J.S. Verma (Chairman) (T) 91 11 344 0891 (F) 91 11 334 7065

제 I 부 국가인권위원회 61

찬고: 다른 나라의 국가이궈기구 모듈

- 91 11 334 0016 91 11 336 6537 (H) www.nhrc.nic.in (E) nhrc@ren.nic.in
- 인도네시아 Indonesia Indonesian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J1. Latuharhary No. 4B Menteng Jakarta 10310 Mr. Djoko Sogianto (Chair) (T) 62 21 392 5230 (F) 62 21 392 5227 www.komnas.go.id (E) info@komnas.go.id
- 이란 Iran Commission Islamique des Droits de l'Homme Islamic Human rights Commission P.O. Box 13165-137 / P.O. Box 19395-4698 Teheran Islamic Republic of Iran Mr. Zai'ifar (Chairperson) (T) 98 21 204 5853 98 21 204 6242 (F) 98 21 204 0541 (E) ihrc@majlis.ir
- 말레이시아 Malaysia Human Rights Commission c/o UNDP P.O. Box 12544 50782 Kuala Lumpur / Wisma Un Blok C Komplex Pajabat Damansara Jalan Dungun Damansera Heights 50490 Kuala Lumpur Mr. Tan Sri Abu Talib bin Othman (Chairperson) Mr. Kamaruddin Mohd. Baria (Secretary to the Commission) (T) 603 255 9122 603 255 9133 (F) 603 209 52870 (E) kamaruddin@suhakam.org.my
- 몽골 Mongolia Human Rights Commission Room 510, State Property Building #1, Linerty Square
 Ulaanbaatar-38 Mongolia Mr. Suren Tserendorj (Chief Commissioner) (T) 976 11 316
 509 976 11 327 136 (F) 976 11 320 284 (H) www.nhrc.mn
 (E) nhrc_of_mgl@magicnet.mn / nhrcm@humanrights.mn
- 네팔 Nep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Nepal JHarihar Bhawan Pulchowk, Lalitpur P.O. Box 3802 Kathmandu Rt. Hon. Nayan Bahadur Khatri (Chairman) (T) 977 1 547975 977 1 525659 (F) 977 1 547973 (E) nhrcptn@wlink.com.np / nhrc@ntc.net.np
- 뉴질랜드 New Zealand New Zealand Human rights Commission P.O. Box 6751 Wellesley Street Auckland 1030 Ms. Rosslyn Noonan (Chief Commissioner) / Ms. Chris Lawrence (Preceedings Commissioner) (T) 64 9 309 0874 (F) 64 9 377 3593 (H) www.hrc.co.nz (E) infoline@hrc.co.nz / rosslynn@hrc.co.nz
- 필리핀 Philippines Commission on Human Rights SAAC Building Commonwealth Avenue U.P. Diliman
 Complex Quezon City Ms. Purificacion Valera Quisumbing (Chairperson) / Ms. Jacqueline
 B. Veloria-Mejia (Executive Director) (T) 63 2 928 57 92 (F) 63 2 929 01 02
 (E) jbvm@dsamail.com / Jake_mejia@rocketmail.com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16 Uljiro 1 ga Jung-gu Seoul 100-842 Mr. Kim Chang-Kuk (President) (T) 82 2 2125 9661 (F) 82 2 2125 9666 (E) nhrc@humanrights.go.kr
- 스리랑카 Sri Lanka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Sri Lanka No. 50 Dr. N.m. Perera Mawatha Borella
 Colombo 8 Vacant (T) 94 1 693783 94 1 696610 94 1 685337 (F) 94 1 68 87
 01 (E) sechr@sltnet.lk
- 타이 Thailand Human Rights Commission 422 Pyathai Road Wangmai, Pathumwan bangkok 10330 Prof. Saneh Jammarik (Chairperson) (T) 662 219 2941 (F) 662 219 2962

□유럽 European Region

- 오스트리아 Austria Austrian Ombudsman Board Singerstrabe 17 Postfach 20 A-1015 Vienna 1 (T) 43 1 51 50 50 (F) 43 1 51 50 51 50
- 알바니아 Albania People's Advocate Bulv. Deshmoret e Kombit Tirana Mr. Ermir Dobjani (T) 355 42 620 03 (F) 355 42 279 49
- 아르메니아 Armenia Human Rights Commission 19, Marshal Baghramian, ave. Yerevan-37 50 95
-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Human Rights Commission Mrs. Elmira Suleymanova (Human Rights Commissioner)
- 벨기에 Belgium Centre for Equal Opportunities and opposition to Racism Residence Palace Wetstraat 155 B-1040 Brussels (T) 32 2 233 06 11 (F) 32 2 233 07 04 (H) www.antiracisme.be (E) centre@antiracisme.be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Bosnia-Herzegovina The Human Rights Ombudsman of Bosnia and Herzegovia Marsala Tita 7 BA-71000 Sarajevo Mr. Frank Orton (T) 387 33 666 006 (F) 387 33 666 007 (H) www.ohro.ba (E) ombudsman@ohro.ba / frankorton@ohro.ba
- 크로아티아 Croatia Office of the Croatian Ombudsman Opaticka 4 Zagreb Croatia Mr. Ante Klaric (T) 385 1 485 8 53 (F) 385 1 6303 014
- 텐마크 Denmark The Danish Centre for Human Rights Wilders Plads 8H DK-1403 Copenhagen K Mr. Morten Kjaerum (Director) (T) 45 32 69 88 88 (F) 45 32 69 88 00 (H) www.humanrights,dk (E) center@humanrights.dk
- 핀란드 Finland The Advisory Board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Affairs
- 프랑스 France 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35, rue Saint-Dominique 75700 Paris Mr.Joel Thoraval (President) (T) 33 1 42 75 77 09 33 1 42 75 77 13 (F) 33 1 42 75 77 14 (H) www.commission-droits-homme.fr
- 조지아 Georgia Office of Public Defender of Georgia 29, Rustaveli Avenue 380009 Tbilisi Ms. Nana Devdariani (T) 995 32 92 24 78 995 32 99 08 36 (F) 995 32 92 24 70
- 독일 Germany Deutsches Institut fur Menschenrechte Haus der Demokratie und Menschenrechte Greifswalder Street 4 10405 Berlin Bruno Thiesbrummel (T) 49 331 7019 181 (F) 49 331 7019 157 (E) Bruno.Thiesbrummel@fnst.org
- 그리스 Greec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1 Lycavitou Street. 10672 Athens Ms. Alice Yotopoulos-Marangopoulos (Commissioner) (T) 362 61 11 362 74 54 (F) 362 24 54 (E) mfhr@ath.forthnet.gr / nchr@primeminister.gr
- 그리스 Greece Hellenic Republic 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1 Herodotou Street 10674 Athens greece (T) 30 1 3385 5801 (F) 30 1 7254050
- 헝가리 Hungary parliamentary Commissioner on the Rights of National and Ethnic Minorities Tukory utca

- 3 H–1054 Budapest Mr. Jeno Kaltenbach (T) 36 1 269 35 36 (F) 36 1 269 35 29 (H) www.obh.hu (E) kaltenback@obh.hu
- 아일랜드 Ireland Irish Human Rights Commission 17-19 Lower Hatch St. Dublin 2, Ireland Dr. Morris Manning (Chief Commissioner) (T) 353 1 647 2562 (F) 353 1 647 2515 (E) ihrc@eircom.net
- 이탈리아 Italy Commissione per I Diretti Umani Presidence du Conseil des Ministres Palazzo Chigi Piazza
 Colonna 7370 Rome 00187 Italy Mr. Alessandro Fallavollita (President) (T) 39 6 679
 55 96 (F) 39 6 699 22 876 (E) alessandro.fallavollita@esteri.it
- 카자흐스탄 Kazakhstan Human Rights Ombudsman Mr. Bolat Baykadamov (Recent Presidential Appointee- 2002)
- 코소보 Kosovo World Food Programme Building Hekurucha St. 338000 Pristina Mr. Marek Anton Novicki (T) 381 38 548 087
- 키르기즈스탄 Kyrgyz Republic Human Rights Commission Mr. Tursunbai Bakir uulu (Commissioner-appointed November 2002)
- 라트비아 Latvia The National Human Rights Office Elisabetes Iela 65-12 1050- Riga Mr. Olafs Bruvers (Director) (T) 371 724 40 75 371 728 72 10 (F) 371 724 40 74
- 룩셈부르크 Luxembourg Commission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16, rue de Notre-Dame L-2240 Luxembourg Mr. Nick Klecker (President) (T) 352 26 20 28 52 (F) 352 26 20 28 55 (E) ccdhlux@pt.lu
- 마케도니아 Macedonia Public Attorney of Macedonia Human rights ombudsman of Macedonia U1. ADimitrie
 Cupovski, br.2 91000 Skopje Mr. Branko Naumoski (T) 389 91 129 351 389 91 129
 355 389 91 129 343 (F) 389 92 129 359
- 몰도바 Moldova The Centre for Human Rights of Moldova Street Sfatul Tarij, 16 Chisinau, Md-1012 Republic of Moldova Mr. Alexei potinga (Director) (T) 373 2 234 800 (F) 373 2 225 442 (H) www.iatp.md/cpdom opdom@un.md
- 네덜란드 The Netherlands Equal Treatment Commission Kleinesingel 1-3 P.O. Box 16001 3500 DA

 Utrecht Jenny E. Goldschmidt (President) (T) 31 30 888 3888 (F) 31 30 888 3883

 (H) www.cgb.nl (E) info@cgb.nl
- 북아일랜드(영국) Northern Ireland(U.K.) Northern Ireland human rights Commission Temple Court 39
 North Street Belfast BT1 1NA Northern Ireland Prof. Brice Dickson (Chief Commissioner)
 (T) 44 0 28 9024 3987 (F) 44 0 28 9024 7844 (H) www.nihrc.org
 (E) nihrc@belfast.org.uk
- 노르웨이 Norway Institutt for Menneskerettigheter Universitetsgt. 22-24 P.b. 6832 St. Olavs plass NO-0130 Oslo Nils Butenschoon (Director) (H) www.humanrights.uio.no (E) admin@nihr.uio.no
- 팔레스타인 Palestine Palestinian independent Commission for Citizens' Rights (PICCR) Ramallah Al-Itha'a St. Mukhmas Trading Centre, 6th Fl. P.O. Box 2264 Palestine Mr. Haider Abdul-Shafi

- $\begin{array}{l} \hbox{(Chairperson_ (T) 972 2 998 7536 972 2 998 6958 972 2 998 0241 972 2 998 0242 (F) 972 2 998 7211 (H) www.piccr.org (E) piccr@palnet.com } \\ \end{array}$
- 폴란드 Poland Commissioner for Civil Rights Protection Aleja Solidarnosci 77 00-090 Warsaw Prof. Andrej Zoll (T) 48 022 827 42 02 (F) 48 022 827 64 53 (H) www.ombudsman.gov.pl
- 포르투갈 Portugal Provedoria de Justica Rua Pau de Banderia 9 1349-088 Lisboa Protugal Mr. Jose
 Meneres Pimentel (T) 351 21 392 66 00 (F) 351 21 396 12 43 (H) www.provedor-jus.pt
 (E) provedor@provedor-just.pt
- 루마니아 Romania People's Advocate B-dul Iancu de hunedoara, nr. 3-5 sector 1 Bucharest Mr. Ioan Muraru (People's Advocate) (T) 40 1 231 5001 (F) 40 1 231 5000 (E) avp@avp.ro
- 라이아 Russia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in the Russian Federation Myasnitskaya Ul. 47 103084 Moscow Mr. Oleg O. Mironov (T) 207 34 12 70 95 207 5511 (F) 207 3977 70 95 207 4700 (E) kifrol@go.ru
- 슬로베니아 Slovenia Human Rights Ombudsman Dunajska cesta 56 1109 Ljubljana Slovenia Mr. Ivan Bizjak (Ombudsman) (T) 386 01 475 0050 (F) 375 01 475 0040 (H) www.varuh-rs.si (E) ivan.bizjak@varuh-rs.si
- 스페인 Spain Defensor del Pueblo Eduardo Dato 31 28010 Madrid Spain Sr. Enrique Mugica Herzog
 (T) 34 91 432 7900 (F) 34 91 308 1158 (H) www.defensordelpueblo.es
 (E) registro@defensordelpueblo.es
- 스웨덴 Sweden Ombudsman against Ethnic Discrimination Katarina Bangata 79 116 42 Stockholm Ms.

 Margareta Wadstein (T) 46 8 5560 9500 (F) 46 8 5560 9501 (H) www.do.se
 (E) mail@do.se
- 스웨덴 Sweden Office of the Disability Ombudsman Box 49132 SE-10029 Stockholm St. Eriksgatan 44,3. Jenny Olaussen (Senior Legal Adviser) (T) 46 8 406 6552 (F) 46 8 204 353
- 스위스 Switzerland Swiss Federal Commission Against Racism Inselsgasse 1 3303 Bern Mr. Georg Kreiz (President) (T) 41 31 324 1293 (F) 41 31 322 4437
- 타카 Turkey Commission des droits de l'homme de la grande assemblee T.B.M.M. Bakanliklar-Ankara 06680 (T) 904 420 5433 904 420 5397 (F) 904 420 5941
- 우크라이나 Ukraine Ombudsman 4, Shovkovchina Street 252019 Kiev 19 Ms. Nina Karpachova (T) 380 44 293 3437 (F) 380 44 226 2419
- 영국 United Kingdom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Elliott House 10-12 Allington Street London SW1E 5EH United Kingdom Ms. Beverly Bernard (Acting Chair) (T) 44 0207 828 7022 (F) 44 0207 630 7605 (H) www.cre.gov.uk (E) info@cre.gov.uk
-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Parliamentary Ombudsman 1 Xaklkar Dostligi Tashkent 700 035 Ms. Sayeva Rashidova (T) 998 71 139 8136 (F) 998 71 139 8555 (H) www.ombudsman.gov.uz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2001. 5. 24 법률제6481호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항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 다. 군교도소(지소 · 미결수용실 및 헌병대영창을 포함한다)
 - 라. 외국인보호소
 - 마. 다수인보호시설
 - 3.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1인과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11인의 인권위원(이하 "위 워"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⑤ 위원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 ⑥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시행일 $2001 \cdot 11 \cdot 25$]
- 제8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3. 정당의 당원
-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①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11조 (퇴직 인권위원의 공직취임 제한) 위원은 퇴직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 제12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5조(자문기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 (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소속 직원중 5급 이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다.
- ④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①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위원회의조직과운영)이 법에 규정된사항외에 위원회의조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 · 협력
-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조(국가기관과의 협의) ①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항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하다
 - ②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시 위원회 의견청취)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이 정부보고서 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3조(청문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대표 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다.
-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 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시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 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 되어 있는 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⑤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다. 다만, 대화내용 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 ⑥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 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찬고: 국가이궈위워히반

- ④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⑤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 ⑥위원회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27조 (인권자료실) ①위원회는 인권자료실을 둘 수 있다.
 - ②인권자료실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립·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 ③인권자료실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본다.
- ④인권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28조(법원및 헌법재판소에 대한의견제출)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 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20조(보고서 작성 등) ①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 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 를 할 수 있다.
 - ③관계기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②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숭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③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참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 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소속 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 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등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등의 구금·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다.
- ⑥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 ⑦소속 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 ⑧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진정의 각하 등) ①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 rt.
 -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참고: 국가인권위원회법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 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 10.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 느 경우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을 관계기 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 ④위원회는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시유를 명시하여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 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 제33조(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①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진정을 그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시안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수 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보 하여야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 여야 한다.
-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진정의 원인이 된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5조(조사의 목적) ①위원회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6조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
- 4.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희
- ②위원회는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행한 행위 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이하이 조에서는 "관계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 ⑦위원회가자료나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자료·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자료·물건의 제출이나 그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
- 2. 범죄수사나 계속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37조(질문·검사권) ①위원회는 제36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②제3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8조(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과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

참고: 국가이권위원회반

청을 할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③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할 회회한 수 있다.
- 제39조(진정의 기각)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 1. 사실이 아닌 경우
 - 2.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40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회부한 조정을 심의 의결한다.
 - ③조정위원중2인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1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가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하며, 조정위원 3인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중사한 자
 -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④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⑤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제42조(조정) ①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제40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수 있다.
- ②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 1.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 2. 원상회복 ·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⑤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⑥당사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 제43조(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조정과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 2.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으 주요하다
-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
- 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 ②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6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 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요청의 절차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 ㅇㄹ 정하다
-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참고: 국가이궈위워회법

- 4.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 5.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50조(처리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의한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 제51조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과견되 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3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54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②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 제56조(인권옹호업무방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3.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 4. 이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타인의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 ②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57조(진정서작성 등의 방해)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행일 2001·11·25]
- 제58조(자격사칭)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9조(비밀누설)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60조(긴급구제조치방해)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1조 (비밀침해) 제31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범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6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 ②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 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권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 ②(인권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인권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③(대통령령의 제정) 위원장은 국무총리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할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정 2002. 2. 9 대통령령 제17517호

- 제1조(목적)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수인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 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직업훈련시설·자립지원시설 및 아동단기보호시설
 - 2.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 3.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 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 4. 부랑인복지시설: 부랑인의 보호 및 재활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 5. 노인복지시설
 -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및 실비양 로시석
 -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심비노인요양시설
- 6.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 보호소· 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생활시설
- 7. 갱생보호시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 제3조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①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그 취지·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1.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나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 등의 경술을 듣는 일
- 2.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 3. 녹음, 녹화, 사진촬영, 시설수용자의 건강상태조사 등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밖의 상황을 확인하

참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는 일

-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 또는 녹화한 내용은 당해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녹음 또는 녹화된 상태 그대로 공표하여서는 아니되다
- ⑤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내용을 방문조사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설수용자와의 면담) ①법 제24조제4항에 의하여 위원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경우 구금·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법 제24조제4항에 의하여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면담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의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법 제24조제4항에 의하여 위원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등의 승낙없이는 면담에 참여할수 없으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설수용자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면담조사 이후의 보호조치)①법 제24조제4항에 의하여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은 면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또는 시설수용자가 신체·건강상의 위해 그밖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구금·보호시설의 장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 (진정방법의 고지 등) ①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구금·보호시설의 장또는 관리인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진정함의 설치·운용) ①구금·보호시설의 장은구금·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한 때에는 위원회에 진정 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구금·보호시설의 장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를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 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위원회명의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신이 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중 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①시설수용자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구금 · 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 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③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 (방문진정접수)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구금 -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방문의 통지) 제3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2조(제척 및 기피) ①위원회의 위원과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이하이 조와 제15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제척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 ②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위원회에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③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척 및 기피신청의 처리) ①위원장은 제척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각하한다.
- 제14조 (의결절차의 정지)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결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 (위원의 회피) ①위원이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회피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제16조 (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기피 또는 회피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직무를 수행할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 야 한다.
- 제17조 (전문위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8조 (여비 등의 지급)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인에게 여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참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위원장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과태료의 부과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 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주어진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 ②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국가인권위원회소속공무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 ③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제II부 유에과 이궈

1. 유엔헌장에 의한 기구

2. 국제인권조약에 의한 기구

3. 국제형사재판소

유엔은 인권문제가 개별국가의 국내관할권을 넘어 국제적 보호의 대상이 되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물론 국내문제에 대한 국제적 감시를 꺼리는 각국의 태도때문에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제도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여론을 환기시키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국내의 인권침해현실을 검증함으로써 국내의 인권문제를 개선하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인권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과 보호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은 국내 인권운동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엔의 인권보호 장치는 크게 유엔 현장을 근거로 한 기구와 국제인권조약을 근거로 한 기구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인권기구와는 별도로 유엔난민고등관무관(UNHCR), 국제노동기구(ILO) 등 유엔 의 전문기관들과 최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중요한 인권보호기능을 수행한다.

1. 유엔 헌장에 의한 기구 Charter-based Bodies

유엔 헌장은 주요기관인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와 사무총장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중 유엔의인권보호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와 사무국 산하의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이라 할 수 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헌장 제62조에 따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권고를 마련하고, 헌장 제68조에 따라 인권의 신장을 위한 위원 회를 설치한다. 이러한 위원회에는 범죄예방 및 형사정의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이 있다. 경제사회이사회가 승인하기 전까지 인권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와 관련한실질적인 심사와 논의는 주로 인권위원회와 그 산하기구인 인권소위(인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53개국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는 매년 3월 중순부터 6주간 스위스

제II부 유엔과 인권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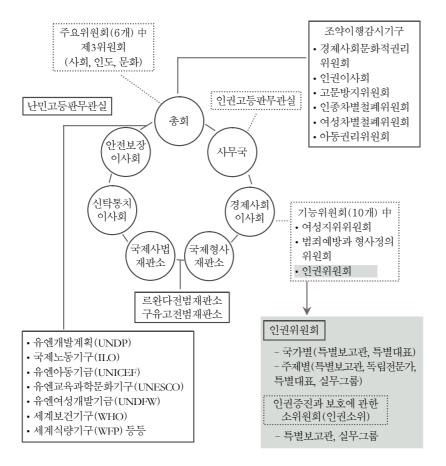


그림2-1 인권관련 유엔 조직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인권위원회의 위원국은 유엔 회원국 중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출되며, 정부를 대표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만큼 국익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성격을 띠기도 한다. 참고로 한국정부는 지난 1993년부터 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1948)과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1966)의 초안을 작성한 바 있으며, 인권문제의 종류와 규모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 권한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전 세계의 인권상황 모니터 ➤인권침해사 건조사 ➤ 인권에 대한조사연구를 토대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 새로운 국제인권기준 설정 ➤ 유엔총회나 경제사회이사회 등의 상급기관이 부여하는 인권관련 과제를 수행한다. 또한 인권관련 국가활동에 대하여 각국에 필요한지문서비스 및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인권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정부간 회의이지만, 서면진술서 제출·구두발언·로 비활동 등 민간단체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다. 회의참가 및 서면진술서 제출, 구두발언 등은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의지위를 가진 민간단체 들만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협의지위 단체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많은 민간 단체들이 인권위원회에 참여, 활동해오고 있다. 한국의 민간단체들도 그동안 협 의지위를 가진 국제인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국가보안법, 일제강점기 성노 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테러방지법 문제 등을 인권위원회에 제기,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현재 국내 민간단체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 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이 협의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58차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구두발언문

의제 11: 시민적, 정치적 권리(한국의 테러방지법)

발표: 2002년 4월 16일

의장님,

9·11 테러사건이후, 많은 국가들이 대(對)테러조치를 취해오고 있으며, 유엔인권위원 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계는 이러한 각국의 대테러조치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몇몇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이 국가들은 국기안보와 주권이 인권에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성가포르의 사회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과 한국의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Iaw) 등을 비롯한 보안관련 법률과 조치들은 이미 국제인권계에서 크나큰 비난을 받아왔으며, 특히 이러한 보안관련 조치들이 정치적 반대그룹이나 인권단체들을 탄압하려는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남용 또는 악용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제II부 유엔과 인권 87

오늘날이 아시아 국가들은 그러한 유형의 보안관련 조치들을 강화하거나 또는 새로운 보안관련 입법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에 의한 민주적 지배와 책임성 및 투명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손상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보호 에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한국의 인권단체로서 한국정부가 테러방지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11월 12일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직전에 놓여있습니다. 이 "테러방지법안"의 일부조항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러"와 "테러조직"의 개념을 극히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이 총괄하는 대테러센터로 하여금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적법한 정치활동조차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러방지법안은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정부 부서 내에서도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기존의 법률과 조직만으로도 테러의 위협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권단체들 역시 본 "테러방지법안"은 테러와 거의 상관이 없으며 1990년대 초반 군사독재정권 말기부터 점차 축소되어온 국가 정보원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법안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본 "테러방지법안"이 국제인권기준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반대입장을 명백히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체인 '테러방지법안저지를위한공동투쟁단'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우려가 있는 본 테러방지법안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이러한 국내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2002년 4월 12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인권위원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인권을 희생해서 안보를 획득할 수 없다…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사회정의에 대한 존중만이 장기적으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 여사도 "9 11테러사건 이후 추진되고 있는 대테러조치들이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들을 저해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과도한 대테러조치들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 사상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난민신청의 권리, 정치참여의 권리, 표현 및 집회의 자유 등을 포함한 개인의 인권을 탄압 규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단순 명백한 것으로서 한국의 현재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테러조치는 그것이 인권을 완전히 존중하고 보장하면서 '인간 안보(human security)'에 대한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일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대테러조치의 핵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장님, 한국의 "테러방지법안"은 대테러수행에 있어 인권의 기본원칙들을 완전히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과도하고 불필요하며 정당성을 결여한 법안일 뿐이라고 민변 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민변은 유엔인권위원회가 관련 특별보고관들(Special Rapporteurs)로 하여금 아시아국가들, 특히 한국의 대테러조치를 포함한 국가안보입법이 인권의 완전한 향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민변은, 테러방지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한국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인권위원회 내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

인권위원회는 전세계의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마련해 놓았다. 이는 크게 국가별 수임사항(Country mandate)과 주제별 수임사항 (Thematic mandate)으로 나뉘며, 인권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특별보고관, 독립전문가, 특별대표, 실무그룹 등은 ➤특정 인권침해 상황(사건)에 관해 해당 정부에 정보제출 요구 ➤ 해당 정부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긴급조치권고 ➤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 등을 통하여 국가별, 주제별 인권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그 내용을 인권위원회에 보고한다.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독립전문가 Independent Expert

Ⅲ 상시적 초청 Standing Invitation이란?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이 인권침해 상황(사건)에 대한 현장조시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하고자 할 때는 해당국가의 초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시적 초청이란, 인권위원회의 주제별 수임시항을 다루는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 등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국을 방문하여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40여 개 국가가 이러한 상시적 초청을 인정하고 있다. 상시적 초청을 인정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해 자국의 인권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국제기준에 맞추어 자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일 수도 있다. 참고로, 한국 정부는 아직 상시적 초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개 국가별 보고관 임기는 1년, 주제별 보고관은 3년이다. 때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나 국가의 경우는 특별보고관보다 시무총장이 임명하는 독립전문가 를 선호하기도 한다. 현재 활동중인 특별보고관들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 국가별 수임사항 Country mandate
- 아프가니스탄,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구자이르) 이라크, 미얀마,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수단
- 독립전문가: 아이티, 소말리아
- ➡ 주제별 수임사항 Thematic mandate
- 고문
- 교육에 대한 권리
- 비사법적, 즉결 또는 자의적 처형
- 선주민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
- 식량에 대한 권리
-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
-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그 원인과 결과
- 유독성 폐기물과 위험물질의 불법적 이동 및 유기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의사와 표현의 자유
- 이주자의 인권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및 불관용
- 자기결정권 행사를 저해하는 수단으로서의 용병 이용
- 적절한 주거
- 종교와 신념의 자유
- 판사와 법률가의 독립

■독립전문가 ■

-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형사 및 국제인권제도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초안
- 구조조정 정책과 외채
- 발전권
- 빈곤과 인권
- ●특별대표 Special Representative

보통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되는데 정치적 성격이 강한 넓은 의미의 인권문제를 다룬다. 특별대표는 사무총장의 지휘감독 하에 활동하며, 사무총장에게 보고서 를 제출하면, 사무총장은 유엔관련 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 ➡ 국가별 수임사항 Country mandate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유고연방, 캄보디아
- → 주제별 수임사항 Thematic mandate
- 인권옹호자
- 국내실향민
- ❷실무그룹 Working Group

특정 인권주제에 관해 설립되며, 보통 전 세계 5개 지역에서 선출된 다섯 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된다.

- 현재 활동 중인 실무그룹
 - ·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제II부 유엔과 인권 91

-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 인권상황에 관한 실무그룹(1503절차)-비공개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에 관한 공개실무그룹
-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영향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공개실무그룹
- 발전권에 관한 공개실무그룹
- 선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초안에 관한 공개실무그룹
- · 아프리카계의 사람들이 직면한 인종차별문제 연구를 위한 독립전문가 실무그룹

인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인권소위)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인권위원회의 산하기구인 인권소위는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와는 달리 각 국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 중에서 지역적 안배에 따라 선출된 26명의 위원이 독립된 개인자격으로 활동한다. 따라서 인권위원회와 비교할 때 인권소위 는 인권문제의 정치적 측면보다는 이슈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으며 훨씬 비정치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소위의 회기는 보통 4주이며, 해마다 8월에 스위스 제네바 에서 개최된다.

인권소위는 ➤ 새로운 인권규범 제정 ➤ 기존 규범의 해석 및 적용 ➤ 각국의 조약비준 촉구 ➤ 조약 이행상황 감시 ➤ 인권침해 청원 사건의 조사 등 폭넓은 인권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인권소위는, ➤ 인종, 민족, 종교, 언어상의 소수 자보호 및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금지에 대해 인권위원회 에 권고하는 것 ➤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가 부여하는 그 밖의 기능을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다.

인권소위도 실무그룹, 특별보고관 등을 두고 있으며, 인권문제를 국가별로는 다루지 않고 주제별로만 접근하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인권소위 내의 특별보고 관과 실무그룹은 다음과 같다.

- 특별보고관
 - · 비시민 non-citizen의 권리
 - · 식수와 위생에 대한 권리실현의 증진
 - 인권과 인간의 책임
 - · 테러와 인권
- 실무그룹
 - · 사법행정에 관한 실무그룹
 - · 선주민에 관한 실무그룹
 - 소수자에 관한 실무그룹
 - 초국적 기업에 관한 실무그룹
 - · 청원(1503절차)에 관한 실무그룹:비공개
 -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에 관한 실무그룹

Ⅲ 인권고등판무관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유엔 인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효율성 증진 방안으로 '인권고등판무관 제도'가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제48차 유엔총회는 비엔나세계 인권대회가 채택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VDPA)을 승인하는 결의와 함께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고등판무관'에 관한 결의(Resolution 48/141, 1993)를 통해 인권고등판무관 제도를 신설했다.

인권고등판무관의 임무로는,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의 강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전반적인 감독 수행 ➤발전의 권리를 포함한 모든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의 보호증진 ➤인권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의 제거와 예방 ➤인권기구와 조약감시기구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즉, 인권침해가 문제될 때 초기단계에서 유엔의 통합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이다. 한편, 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자신의 임무에 대한 연차보고를 할 의무도 갖는다.

제1대 인권고등판무관(1994-1997)은 전 에콰도르 외무부 장관이었던 호세 아알라 라쏘 (Jose Ayala-Lasso), 제2대 인권고등판무관(1997-2002)은 아일랜드 대통령을 역임했던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이었다. 지난 2002년 9월부터는, 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

기구(UNTAET)의 대표였던 브라질 출신의 세르지오 비에이라 데 멜로(Sergio Vieira de Mello) 씨가 제3대 인권고등판무관을 맡고 있다.

청원 Communication과 긴급조치 Urgent Action

●1503절차에 관한 청원

>> 1503절차란?

1970년 경제사회이사회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침해사실이 입증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청원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두기 위해 결의안 1503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권소위 정기회기 시작 전에 5명으로 구성된 비공개 실무그룹이 임명되어 "지속적인 패턴의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과 관련된 청원 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심의한다. 접수된 청원은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소재를 증명 할만큼 충분히 검토된 후에 비공개 회의를 거쳐 실무그룹 5명 위원 중 3명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인권소위에 회부된다. 회부된 청원들은 인권소위의 비공개 회의를 거쳐 해당정부의 답변과 기타 정보와함께 재검토되어 인권위원회 회부여부가 결정된다.

인권위원회는 청원 내용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비공개회의를 통해 인권소위가 제기한 사항을 다시 심의하게 된다. 이 때 관련정부의 답변과 인권소위 회부이유를 검토하여 실무그룹의 권고를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1503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기능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비공개 회의과정이 인권침해 국가의 변명의 장으로 사용될 여지가 많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인권위원회 공개회의에서는 1503절차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진 국가의 이름이 공개되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국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1503절차의 활용

1503절차에 대해 청원을 제기할 때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한다.

- 1503절차의 청원 내용은 "지속적인 패턴의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a consistent pattern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이라고 판단될 만큼의 충분한 침해사례를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1503절차는 비공개 회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일 그 내용이 공개적으로 유엔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이 절차는 피하는 것이 좋다.
- 인권침해의 피해자, 그 가족, 관련 민간단체 등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만 익명으로 제출한 청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 청원의 내용에 대해 국내의 구제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이어야 한다. 단, 국내의 구제절차가 비효과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장기화된다면 그렇지 않다.
- 인권침해 상황에 관한 상세한 사실과 청원의 목적, 침해된 권리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근거나 명확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다음의 주소·팩스·이메일로 제출한다.

☑ 1503절차 청원 보내는 곳

Commission/Sub-Commission Team (1503 Procedure)
Support Services Branch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1211 Geneva 10, Switzerland
(F) 41 22 917 9011
(E) 1503@ohchr.org

❷긴급조치 Urgent Action

>>> 긴급조치란?

자의적 처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나고문의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인권침해의 발생이 임박한 경우, 또는 실종사건 이후 즉각적인 증거수집 및수사 등이 필요한 경우 등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이 다루고 있는이슈에 관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때, 해당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은 관련 정부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조치'는예방적, 권고적 성격을 가진다.

▶ 긴급조치 절차의 활용

긴급조치 절차의 특성상 관련정보를 제출함에 있어 특정한 형식이나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믿을 만하고 확실한 것이어야 하며 정보로서 기본 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를 당연히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비사법적, 즉결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등은 긴급조치 절차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정보를 제출할 때는 제목에 "For Urgent Action"이라고 표기하고, 관련 특별보고관 또는 실무그룹의 이름을 명시하여 다음의 팩스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 긴급조치 요청 연락처

"For Urgent Action"

- (F) 41 22 917 9003
- (E) urgent-action@ohchr.org

● 청원 Communication

각실무그룹이나특별보고관들이 다루고 있는 이슈와 관련한 인권침해의 피해 자, 피해자 가족, 민간단체 등은 청원 Communication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실무그룹이나특별보고관에 대한 청원에 있어, 국내의 구제절차가 완료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1503절차'나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개인통보 Individual complaint제도를 통해 심의 중인 사건은 제출할 수 없다.

청원을 제출할 때는, 피해자 및 기해자의 신원정보, 각 특별절차의 이슈와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한 상세히 설명,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청원 제출시 반드시 특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이 요구하는 내용을 상세히 적으려면, 청원제출양식모델(Model questionnaire, http://193.194.138.190/html/menu2/8/question.htm)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는 편이 좋다. 작성한 청원은 관련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의이름을 명시하여 각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비서관 Secretary에게 보내면 된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등 몇몇 특별절차의 경우 청원의 내용을 심사한 후 해당 정부에 대해 평가서 deliberation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특별보고관들은 그 내용을 인권위원회나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정도이다. 즉, 청원을 제출하였다고 해서 그 즉각적인 시정이나 구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들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여 인권위원회, 경제사회이사회, 총회 등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계속 관련인 권침해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해당 정부에 대해 간접적인 압력의 수단으로 작용할수 있으며, 특히 이를 국내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정부의 정책 시정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촉구하는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수 있겠다.

참고: 주요 특별보고관 및 실무그룹 연락처(2003년 2월 현재)

공통주소: c/o OHCHR-UNOG, 1211 Geneva 10, Switzerland

□특별보고관

- 고문(Torture) Mr. Theo VAN BOVEN (Netherlands), Special Rapporteur Secretary: Mr. J.N. Beuze (T) 41 22 917 9174 (F) 41 22 917 9006 (E) jnbeuze.hchr@unog.ch
- 교육에 대한 권리(Right to education) Ms. Katarina TOMASEVSKI (Croatia), Special Rapporteur Secretary:
 Ms. C. Moller (T) 41 22 917 9265 (F) 41 22 917 9010 (E) cmoller.hchr@unog.ch
- 비사법적, 즉결 또는 자의적 처형(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Ms. Asma JAHANGIR (Pakistan), Special Rapporteur Secretary: Mr. H. Stenman (T) 41 22 917 9128 (F) 41 22 917 9006 (E) hstenman.hchr@unog.ch
- 선주민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of indigenous people) Mr. Rodolfo STAVENHAGEN (Mexico), Special Rapporteur Secretary: Ms. J. G. Woo (T) 41 22 917 9359 (F) 41 22 917 9010 (E) jwoo.hchr@unog.ch
- 식량에 대한 권리(Right to food) Mr. Jean ZIEGLER (Switzerland), Special Rapporteur Secretary: Ms D. Bhagwandin
-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Right to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Mr. Paul Hunt(New Zealand), Special Rapporteur
-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Ms.

 Juan Miguel PETIT (Uruguay), Special Rapporteur Secretary: Ms. J. Philpot-Nissen
 (T) 41 22 917 9148 (F) 41 22 917 9006 (E) jphilpot.hchr@unog.ch
-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그 원인과 결과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Ms. Radhika COOMARASWAMY (Sri Lanka), Special Rapporteur Secretary: Ms. C. Saunders (T) 41 22 917 9150 (F) 41 22 917 9006 (E) csaunders.hchr@unog.ch
- 유독성 폐기물과 위험물질의 불법적 이동 및 유기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Adverse effects of the illicit movement and dumping of toxic waste and dangerous products and waste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Ms. Fatma-Zohra OUHACHI-VESELY (Algeria), Special Rapporteur Secretary: Mr. W. Land (F) 41 22 917 9006
- 의사와 표현의 자유(Rights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r Ambeyi LIGABO (Kenya), Special Rapporteur Secretary: Ms S. Saddier (F) 41 22 917 9006
- 이주자의 인권(Human rights of migrants) Ms. Gabriela RODRIGUEZ PIZARRO (Costa Rica), Special Rapporteur Secretary: Ms. J. Derivero (T) 41 22 917 9177 (F) 41 22 917 9006 (E) jderivero.hchr@unog.ch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및 불관용(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참고: 주요 특별보고관 및 실무그룹 연락처(2003년 2월 현재)

- intolerance) Mr. Doudou DIENE(Senegal), Special Rapporteur Secretary: Mr. D. Atchebro (T) 41 22 917 9271 (F) 41 22 917 0690 (E) datchebro.hchr@unog.ch
- 자기결정권 행사를 저해하는 수단으로서의 용병의 이용(Use of mercenaries as a means of impe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Mr. Enrique BERNALES-BALLESTEROS(Peru), Special Rapporteur Secretary: Mr. M. de la Lama (T) 41 22 917 9289 (F) 41 22 917 9006 (E) mdelalama.hchr@unog.ch
-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 Mr. Miloon KOTHARI (India), Special Rapporteur Secretary: Mr. R. Hada (T) 41 22 917 9408 (F) (41 22) 917 9010 (E) rhada.hchr@ungo.ch
- 종교와 신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Mr. Abdelfattah AMOR (Tunisia), Special Rapporteur Secretary: Ms. J. Nzoyihera (T) 41 22 917 9447 (F) 41 22 917 9006 (E) jnzoyihera.hchr@unog.ch
- 판사와 법률가의 독립(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Mr. Param CUMARASWAMY (Malaysia), Special Rapporteur Secretary: Ms. G. Mayne

□실무그룹

-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Mr. Diego GARCIA-SAYAN (Peru, Chairperson-Rapporteur) Secretary: Ms. T.
 Kunanawakam (T) 41 22 917 9830 (F) 41 22 917 9006
 (E) tkunanayakam.hchr@unog.ch
-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Mr. Louis JOINET (France, Chairperson) Secretary: Mr. M. de la Lama (T) 41 22 917 9289 (F) 41 22 917 9006 (E) mdelalama.hchr@unog.ch

□특별대표

- 인권용호자(Human Rights Defenders) Ms. Hina JILANI (Pakistan),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Secretary: Ms. M. Anstett (T) 41 22 917 9110 (F) 41 22 917 9006 (E) manstett.hchr@unog.ch
-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Mr. Francis Deng(Sudan),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T) 41 22 917 9413 (F) 41 22 917 900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제출한 청원서

Attentio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Mr. Louis JOINET (Chairperson)

Mr. M. de la Lama (Secretary)

OHCHR-UNOG, 1211 Geneva 10, Switzerland

Tel: (41 22) 917 9289 Fax: (41 22) 917 9006

Communication

- I. Identity of the person arrested or detained
 - 1. Family name: Son
 - 2. First name: Ji-Hyeon
 - 3. Sex: Male
 - 4. Birth date or age (at the time of detention): 22/06/1980
 - 5. Nationality: Korean(South)
 - 6. (a) Identity document(if any): Certificate of Detention (*See attached translation*)
 - (b) Issued by: Cheong-Ju Prison
 - (c) On (date): 21/05/2002
 - (d) No.(of Resident Card): 800622-XXXXXXX
 - 7. Profession and/or activity (if believed to be relevant to the arrest/detention): Soldier(under conscription system)
 - 8. Address of usual residence: XXXXXXXXXX, Republic of Korea

II. Arrest

- 1. Date of arrest: 26/12/2000
- 2. Place of arrest (as detailed as possible): In the morning of December

- 26, 2000, Son Ji-Hyeon, a believer of Jehovahs Witnesses, refused to carry out an order that he should bear a gun and receive a military education. Based on article 44 of the Military Penal Code he was arrested on a charge of disobedience(mutiny).
- Forces who carried the arrest or are believed to have carried it out: Military Police
- 4. Did they show a warrant or other decision by a public authority? Yes
- 5. Authority who issued the warrant or decision:
- Relevant legislation applied (if know): Article 44 of the Military Penal Code

** Article 44 of the Military Penal Code

Any person who defies or disobeys a superior's lawful order shall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s: 1. In case it is in the face of enemy, he shall be punished by death, life imprisonment at hard labor, or imprisonment at hard labor for not less than ten years; 2. In case it is wartime, during an incident, or in a martial law area, 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at hard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seven years; and 3. In all other cases, 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at hard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III. Detention

- 1. Date of detention: 29/12/2000
- 2. Duration of detention (if not known, probable duration): 3 years
- 3. Forces holding the detainee under custody: Ministry of Justice
- 4. Places of detention (indicate any transfer and present place of detention): Cheong–Ju Prison
- Authorities that ordered the detention: General Military Court, Army Recruits Training Center
- 6. Reasons for the detention imputed by the authorities: Mutiny, Violation of the Military Penal Code
- 7. Relevant legislation applied (if known): Article 44 of the Military Penal

Code

<u>IV.</u> Describe the circumstances of the arrest and/or the detention and indicate precise reasons why you consider the arrest or detention to be arbitrary.

South Korea has a system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nd no alternative service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are available. Therefore, those who practic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on the grounds of conscience and religious convictions have to face harsh punishment such as imprisonment. Apparently the procedure on detaining conscientious objectors doesnt have any arbitrary nature, since it follows domestic legal steps regarding detention. We consider, however, the deprivation of liberty for these conscientious objectors is arbitrary because it results from their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guaranteed by article 18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UDHR) and article 1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CATEGORY II)(Fact Sheet No. 26.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6p)

As of December 2001, total 1,640 conscientious objectors, most of whom are Jehovahs witnesses, are in prison as criminals. Taking into consideration a three—year imprisonment sentence at average, it is estimated that about 600 young people eligible for the military draft are being sent to prison owing to their refusal to bear arms. Moreover, there are many cases that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same family have or are imprisoned on a same charge, which has resulted in the destruction of many family lives. In the case of Son Ji–Hyeon, his father was also imprisoned for 44 months because of hi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V. Indicate internal steps, including domestic remedies, taken especially within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particularly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detention and, as appropriate, their results or the reasons why such steps or remedies were ineffective or why

they were not taken.

Signature: __

As stated above, South Korea does not provide conscientious objectors with any alternative services. That is, no remedies are availabl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is shows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performed its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to the ICCPR, and has not fulfilled completely the 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Human Rights Committee. (The Human Rights Committee adopted the General Comment that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derives from article 18 of the ICCPR, and conscientious objectors shall not be punished for the failure of performing military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take the measure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as one of human rights that every citizen enjoys. Moreover, the Republic of Korea has to provide for various forms of alternative service, which conscientious objectors can opt for instead of military service, and so to establish the system in which conscientious objectors are not punished as a form of criminal penalty.

<u>VI. Full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s) submitting the information</u> (telephone and fax number, if possible)

Suk-Tae Lee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ddress: 5F, Sinjeong Bldg., 1555-3, Seocho-dong,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82 2) 522 7284 Fax: (+82 2) 522 7285
Date: 7 June 2002

2. 국제인권조약에 의한 기구 Treaty-based Bodies

이행감시기구

국제인권법의 근간이 되는 다음의 7개 조약들은 각각 이행감시기구를 두고 정기적으로 각 체약국의 이행보고서를 심사함으로써 각 조약 규정에 따라 해당국가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그 개선을 위한 권고(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감시기구들은 각 조약에 가입한 체약국에 대해서만 이행의 의무나 정부보고의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유엔 헌장을 근거로 한 기구들과 구별된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제II부 유엔과 인권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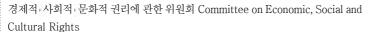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4)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79)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미발효(2003년 발효예정)

각 조약의 이행감시기구와 한국정부의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



- 이행보고주기: 5년
- 사무국(Secretariat)
 - Mr. A. Tikhonov
 - (T) (41 22) 917 9321 (F) (41 22) 917 9022
 - (E) atikhonov.hchr@unog.ch
- 한국정부보고서 및 최종견해
 - · 제1차 정부보고서(1993)/위원회 최종견해(1995)
 - · 제2차 정부보고서(1999)/위원회 최종견해(2001)
 - 제3차 보고기한, 2006. 06. 30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mmittee

- 이행보고주기: 5년
- 사무국(Secretariat)
 - Mr. M. Schmidt

- (T) (41 22) 917 9258 (F) (41 22) 917 9022,
- (E) mschmidt.hchr@unog.ch
- 한국정부보고서 및 최종견해
 - 제1차 정부보고서(1991)/인권이사회 최종견해(1992)
 - · 제2차 정부보고서(1997)/인권이사회 최종견해(1999)
 - 제3차 보고기한, 2003. 10. 31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 이행보고주기: 2년
- 사무국(Secretariat)
 - Ms. N. Prouvez
 - (T) (41 22) 917 9309 (F) (441 22) 917 9022
 - (E) nprouvez.hchr@unog.ch
- 한국정부보고서 및 최종견해
 - 제1차 정부보고서(1980)/위원회 최종견해(1981)
 - 제2차 정부보고서(1982)/위원회 최종견해(1982)
 - 제3차 정부보고서(1984)/위원회 최종견해(1984)
 - 제4차 정부보고서(1986)/위원회 최종견해(1987)
 - 제5차 정부보고서(1988)/위원회 최종견해(1990)
 - 제6차 정부보고서(1990)/위원회 최종견해(1990)
 - 제7차 정부보고서(1992)/위원회 최종견해(1993)
 - · 제8차 정부보고서(1995)/위원회 최종견해(1996)
 - · 제9차, 10차 정부보고서(1998)/위원회 최종견해(1999)
 - · 제11, 12차 정부보고서(2002)

고문방지위원회 Committee against Torture

- 이행보고주기: 4년
- 사무국(Secretariat)
 - Mr. C. Rueda
 - (T) (41 22) 917 9288 (F) (41 22) 917 9022
 - (E) crueda.hchr@unog.ch

제II부 유엔과 인권 107

- 한국정부보고서 및 최종견해
 - 제1차 정부보고서(1996)/위원회 최종견해(1996)
 - 제2차 정부보고서 보고기한, 2000. 02. 07

아동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이행보고주기: 5년
- 사무국(Secretariat)
 - Mr. Poulo David
 - (T) (41 22) 917 9301 (F) (41 22) 917 9022
 - (E) pdavid.hchr@unog.ch
- 한국정부보고서 및 최종견해
 - · 제1차 정부보고서(1994)/위원회 최종견해(1996)
 - 제2차 정부보고서(2000)/위원회 최종견해(2003)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이행보고주기: 4년
- 사무국(Secretariat)
- Ms. Jane Connors
- (T) (1 212) 963 3162 (F) (1 212) 963 3463
- (E) connorsj@un.org
- 한국정부보고서 및 최종견해
 - 제1차 정부보고서(1986)/위원회 최종견해(1987)
 - 제2차 정부보고서(1989)/위원회 최종견해(1993)
 - · 제3차 정부보고서(1994)/위원회 최종견해(1998)
 - · 제4차 정부보고서(1998)/위원회 최종견해(1998)
 - 제5차 정부보고서 보고기한, 2002. 01. 26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위원회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 협약 미발효(2003년 중순 예정)
- 이행보고주기: 협약 발효 후 1년 이내(최초보고서), 이후 5년

민간단체의 역할

조약체결국이 해당 인권조약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감시, 감독하기 위한 각이 행감시기구의 활동에서 민간단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민간단체의 역할을 정부보고서 심의회의를 기준으로 시기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❷심의회의 이전

정부보고서가 제출이 확인되면, 조약의 이행에 관한 각종 정보를 이행감시기 구에 제출한다. 정부보고서의 제출여부는 정해진 보고기한(2년, 4년, 또는 5년)을 전후로 정부의 담당부서(외교통상부인권사회과)에 확인하거나 각 이행감시기구의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반박보고서 또는 대안보고서라고 불리는 민간단체의보고서는 이행감시기구의 위원들이 정부보고서 심의 이전에 관련 상황을 잘이해할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민간단체의보고서에는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이나 조약의 이행에 관해 각 이행감시기구가 특히 주목해야할사항들에 관한 정보를 담는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 관한 위원회'와'아동권리위원회'의 경우, 정부보고서 심의회의 이전에 사전질의목록(List of Issues)을 해당 정부에 발송하는데, 위원회가 어떠한 이슈에 관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해야한다.

한편, 보고기한이 훨씬 경과해도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정부보고서 없이 심의회의가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도 해당 이행감시기구에 조약의 이행상황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사무국과 연락을 취하고 감시활동을 벌여나갈 수 있다.

❷심의회의 참가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의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민간단체도 미리 해당사무국

제II부 유엔과 인권 109

에 연락을 취한 후 심의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심의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간단체는 정부 대표들과 위원들 간의 회의 내용을 계속 청취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전달하는데, 일종의 로비활동이라 볼 수 있다. 민간단체의 공식적인 논의 참여기회는 각 이행감시기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경우는 심의회의 첫날 민간단체가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구두진술을 하게 한다.

❷최종견해 후속작업

반박보고서의 제출이나 심의회의 참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후속작업이다. 이행감시기구의 최종견해에 담길 내용에 관해 실컷 활동을 해놓고 이후에 이에 대한 후속작업을 게을리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이행감시활동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최종견해의 내용을 국내에 널리 홍보하는 일은 물론 일차적으로 정부의 의무이지만,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행감시기구의 우려와 권고를 계속적으로 국내사회에 상기시키는 일은 민간단체의 몫일 것이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1999, 문서번호: CERD/C/Add.65)

1. 위원회는 단일문서로 제출된 한국정부의 제9차/제10차 이행보고서(CERD/C/333/Add.1)를 1999 년 3월 2일·3일에 열린 1307, 1308회 회의(CERD/C/1307-1308)에서 심의했으며, 동년 3월 17일에 열린 1329회 회의(CERD/C/SR.1329)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A. 서문

2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한국정부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회와의 대화과정에서 대표단이 제공해준 자세한 추가정보들을 주목한다. 그러나, 지난 심의에서 채택되었던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에 관해 한국정부가 제출한 정보들은 충분치 못하다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대표단이 질높은 답변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B. 긍정적 측면들

- 3.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1999년 말까지 인권법을 채택하고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
- 4.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지난 1998년 12월 4일,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ILO(국제노동기구) 조약 111호를 비준한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 5. 1998년 10월부터 근로기준법이 모든 불법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1998년 5월 18일에 외국인토지취득법이 개정되었고, 1997년 12월 12일에는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위원회는 인종 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취한 이러한 입법조치들을 환영한다.
- 6. 본 협약이 어떠한 상충되는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서술한 당사국 보고서의 내용을 위원회는 관심 있게 주목하는 바이다.
- 7. 인권분야관련당국들이 인종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활동 등 광범위한 훈련 및 홍보 활동들을 펼친 것에 대해 위원회는 환영한다.
- 8.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협약 제14조 1항과 관련,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통보를 접수하여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가 보유하는 것을 숭인한다고 선언한 것, 그리고 협약 제8조 6항의 개정사항을 비준한 것을 화영한다.

C. 주요 우려사항

9. 앞으로 제정될 인권법에 협약 제2조와 제4조에 나열된 체약국의 법적 의무들을 모두 포괄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의도는 인정한다. 그러나 인종, 피부색, 가문(혈통), 출신국가나 출 신종족 등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한국의 헌법에도 여타 국내법에도 없다

- 는 것에 대해 위원회는 여전히 우려한다. 또한 인종차별 행위를 처벌하는 것, 인종차별을 조장, 야기하는 단체를 금지하는 것 등에 관한 명백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우려한다.
- 10.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위원회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 19"의 견지에서 본 인종차별 행위에 관한 정보나 또는 그러한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행동들에 관한 정보가 없는데, 이 점에 있어 위원회는 보고서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11.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협약 제5조에 관해 단지 노동권에 관한 정보들만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결과, 위원회는 협약 제5조에 나열된 여타의 권리들을 모든 이가 실제로 동등하게 향유하고 있는지 에 관해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
- 12. 위원회는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가진(irregular status) 외국인들이 처해있는 취약한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이들은 열악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일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협약 제5조, 특히 5조 (d)항과 (e)항의 침해를 받은 차별대우의 피해자들이다.
- 13. 외국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정착한 외국태생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에 관해 위원회는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미국인-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이나 난민신청인-한국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사실상(de facto)의 차 별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우려한다.

D. 제안과 권고

- 14. 위원회는 협약 제2조와 제4조가 국내법에 완전히 반영될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모든 적절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1999년 말이전에 제정될 예정인 인권법이, 인종·피부색·가 문(혈통)·출신국가나출신종족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그러한 차별행위를 불법화 (범죄로 선언)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을 것을 제안한다. 또한, 다음 보고서 제출시, 인종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모든 새로운 법률들의 전문을 한국정부가 위원회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다.
- 15. 협약 제5조의 내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당국이 취한 입법조치나 실제조치들에 관한 정보들이 다음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것을 위원회는 권고한다.
- 16. 한국정부가 최근 외국인산업연수생 및 기타 외국인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는 점은 인정하나, 위원회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상의 차별을 막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 인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제안한다. 또한, 모든 이주노동자 특히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 17. 위원회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정착한 외국태생의 사람들이 출신태생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위원회는, 난민신청인과 결혼한 여성 및 혼혈아동(특히 미국인-한국인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동)들이 인종차별이나 인종적 편견을 받지 않도록 한국정부가 인식고양 캠페인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18. 인종차별에 관한 사건이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한번도 계류된 적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협약제14조에 규정된 절차에 대한 접근성, 또한 협약 내의 관련조항들을 다루는 기존의 진정(호소)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에 관해 한국정부는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위원회는 권고한다.
- 19. 위원회는, 인종차별행위의 피해자들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진정(호소)기관에 대한 취약집단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 20. 본 협약의 원칙들과 목적들을 도모하기 위한 홍보, 교육, 훈련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해야한다고 위원회는 제안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보고서와 본 최종견해를 한국 내에 널리 배포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위원회는 권고한다.
- 21. 다음 정기보고서는 본 최종견해에 담겨있는 제안 및 권고사항들이 최근까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를 설명하는 보고서가 되어야 한다고 위원회는 권고한다.

인권이사회 최종견해(1999, 문서번호: CCPR/C/79/Add.114)

시민적 \cdot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 최종 견해

1. 인권이사회는 1999년 10월 22일에 열린 1791, 1792차 회의(CCPR/C/SR.1792과 SR.1792참조)에 한국정부의 2차 정기보고서(CCPR/C/114/Add.1)를 검토하고, 1999년 10월 29일에 열린 1802차 회의(CCPR/C/SR.1802)에서 다음의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A. 들어가며

2 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가 제2차정기 보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 것을 환영한다. 하니만 당사 국의 1차보고서가 규약의 실제 이행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견해를 밝혔음에 도 불구하고, 2차보고서 또한 마찬가지의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더 나아가 보고서 심사 중 위원들이 제기한 여러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을 인권이사회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인권이사회는 정부가 규약의 모든 조항들에 잘 따르고 있는지 이행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었다.

B.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장애

3. 두 개의 한국간에 아직 어떠한 최종적 합의도 없었다는 사실로 인해 한국정부가 갖고 있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인권이사회는 이해한다. 그러나 안보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는 것, 그 자체로 규약에 인정하고 있는 권리들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국이 진정한 안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하더라도, 권리의 제한은 규약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C. 긍정적인 요소

- 4. 인권이사회는 민간단체들에게 보고서를 전파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민간단체들은 인권이사회가 보고서를 심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예술작품 상영에 대한 검열을 책임졌던 공연윤리위원회의 폐지 가 보여주듯, 사회의 개방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권이사회는 주목한다.
- 5. 인권이사회는 규약에서 인정하는 권리들, 특히 2조·1항, 3조, 26조 하에서 보장하는 평등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들이 제정된 것을 인지한다. 여성발전기본법, 고용평등에 관한 법률 내 개정들, 장애인고용법, 성차별금지 및 구체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바로 그것이다.
- 6. 인권이사회는 규약 및 인권 일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인지한다. 여기에는 판사, 변호사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의무적인 인권교육이 포함된다. 또한 주요 국제인권규약들을 한글로 번역하고 배포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D. 주요 관심 분야 및 권고

- 7. 규약에서 규정하는 권리들의 국내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는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이 모든 권리들, 그리고 그 권리들이 제한될 수 있는 정도와 범위를 낱낱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6조에 따르면, 당사국이 비준한 국제규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규약에 가입한 후 제정된 법률이 규약이 인정하는 권리보다 우위에 있음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 조항이 해석돼 온 것에 대해 인권이사회는 우려한다.
- 8 한국 정부의 1차 보고서를 검토한 이후,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그것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당사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분단상황이 야기하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이 구금, 조사 그리고실체법상의 책임(substantive liability)에 관한 특별법규를 마련하는데 이용된다는 점을 유감스럽게생각한다(역자주: 일반적인 경우보다 긴 구금일수, 지나치게 높은 형량을 부과하는데 사용되고 있는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부분). 이는 규약의 9조, 18조, 그리고 19조 등 사양한 조항들에 반하는것이다. 인권이사회는 정부의 1차 보고서를 검토한 이후 권고한사항, 즉 당사국이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야 함을 다시금 권고한다.
- 9.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7조 하에서 "반국가단체"를 고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범위가 불합 리하게 광범위하다고 생각한다. 선택의정서에 따라 개인통보로서 인권이사회에 보내진 사례들과 7조 하에서 기소된 내용에 대한 정보들을 검토해본 결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규약의 19조 세 번째 문장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자유권규약은 단지 사상의 표현이 적성단체(enemy entity)의 주장 과 일치하거나 그 실체에 대해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만으로,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권이사회는 검찰의 내부 지침(역자주: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 라는 행정지침)이 규약과 합치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7조의 남용을 억제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당사국은 규약에 부합하도록 7조를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
- 10. 인권이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장려하고 강화시키는 법률과 관행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 특히, 호주제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 강화시킨다. 태아성감별 관행, 둘째와 셋째로 태어나는 아동 중에 남아의 불균형한 비율, 위험한 낙태가 명백히 초래한 높은 모성사망률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인권이사회는 남녀가 이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들을 동등하게 향유할 권리와 법의 동등한 보호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 규약 3조와 26조—를 이행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가 전반적인 사회적 태도로 인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 11. 가정폭력방지와 처벌에 대한 당사국의 새로운 입법을 환영하는 반면에, 높은 수준의 가정폭력과 법과 관행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적절함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특히, 인권이사회는 강간 범죄가 여성의 저항을 증거로 요한다는 점, 강간 피해자와의 결혼이 피고인의 변호 사유가 된다는 점, 혼인상의 강간 은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우려한다. 가정폭력방지와 처벌을 규정한 새 입법은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기존의 법규범을 폐지함으로서 강화되어 약 한다.
- 12. 인권이사회는 고용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도,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많은 수의 여성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미흡 그리고 남녀사이의 임금 격차를 우려한다. 본 규약의 3조와 26조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1999년 1월에 제정된 성차별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에게 동등한 고용의 기회와 고용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3. 오로지 피구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구금의 사법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형사절차법은 규약9조 3항에 반한다. 규약의9조 3항은 모든 형사 피구금자는 즉시 판사에게 인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도한 기소전 구속(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은 50일)과, 그러한 구금의 정당한 근거부족은 한국정부의 규약9조 이행에 의문을 제기한다. 당사국은 규약9조가 정하는 피구금자의 모든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 14. 인권이사회는 검사가 구금 시설을 매달 감독하는 절차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를 비롯해 여타의 체계들이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방지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와 관련된 고소에서 적은 비율만이 공무원에 대한 조처로 이어졌다는 것은 기존의수사 절차의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 인권이사회는 또한 본 규약 9조의 요건을 당사국이 준수하지 않는 다는 점을 우려한다. 표면상 검찰 당국과 법원이 피고인과 공범의 자백에 광범위하게 의존한다는 것은 수사 공무원에 의한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부추긴다는 사실을 우려하다. 고문의혐의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와 위 13번째 문장(편집자주: 원문에는 15로 되어 있음)에 언급된 형사절차의 개정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 15. 인권이사회는 '사상전향제'를 폐지한 것을 환영하지만 그것이 '준법서약서'로 대체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인권이사회에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어떤 재소자가 준법서약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는지, 무엇이 서약의 결과이고 법적 효력인지가 불분명한 채로 남아있다. 인권이사회는 준법서약 요구가 차별적으로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사범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규약에 합치되지 않는 법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일부 재소자들에게 석방의 조건으로 부과되는 '준법서약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16. 정부보고서에서 제공된 정보의 신빙성과 보고서 검토과정에서 보여준 대표자들의 응답을 볼 때 사법 부의 독립 정도를 충분히 판단할 수 없음을 인권이사회는 유감스럽게 여긴다. 사법부의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판사 재임용 제도에 대해 특히 우려한다. 한국정부는 법관임명의 제도와 실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 17. 광범위한 도청은 당사국이 이 규약 17조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낳게 한다. 인권이사회는 또한 데이터베이스 상의 부정확한 정부의 시정을 위한 구제책 혹은 그러한 정보의 오용 또는 남용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 18. 수도 내의 주요 도로에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질서의 이익을 위한 주요 도로에서의 일부 제한은 허용할 수 있지만, 이 규약 21조는 그러한 모든 제한은 법에 합치할 뿐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한단다. 당사국에 의해 부과된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가질 권리의 절대적 제한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 19. 인권이사회는 교사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허가하고 공무원들이 작업장 협회를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한 법의 변화를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사회는 교사와 기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관해 남아있는 제약들이 이 규약의 22조 2항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당사국은 대한 민국 내모든 사람들이 이 규약 22조 하의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의 단결권에 관한 입법 계획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참고: 항국정부에 대한 각 위원회 최종경히

- 20. 인권이사회는 당사국이 23조4항과 14조7항의 유보철회를 환영한다. 인권이사회는 아직도 남아있는 유보사상인 규약 14조 5항과 22조에 대하여 그 철회를 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21. 선택 의정서에 의거하여 제출된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견해와 관련하여, 인권이사회는 한국정부가 (통보)제출자에게 추가적인 이의나 금전 배상을 위한 소송과 같은 국내소송절차를 통해 인권이사회의 구제권고를 실현하라고 하는 것을 적절치 않음을 지적한다. 이미 그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낸국내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보다는, 한국정부는 인권이사회의 의견을 실현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22 인권이사회는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인권이사회는 한국정부에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공공단체의 직원이나 의료관계종사자들을 포함한 인권관계 전문가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23. 인권이사회는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2003년 10월 31일까지 3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그 보고서는 인권이사회의 의해 채택된 개정지침(CCPR/C/66/GUI)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며 이번 최종 견해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권이사회는 이번 최종 견해와 다음 정기보고서가 대한민국 내에서 널리 배포되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최종견해(2001, 문서번호: E/C.12/1/Add.59)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6, 17조에 따른 당사국 보고서 심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1. 위원회는 규약 1~15조에 관한 한국정부의 제2차이행보고서(E/1990/6/Add.23)를 4월 30일과 5월 1일에 열린 12, 13, 14회 회의(E/C.12/2001/SR12,13 and 14)에서 심의했으며, 5월 9일에 열린 26회 회의(위원회 제25차 회기)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A. 서문

- 2. 위원회는 포괄적 내용의 이행보고서와, 위원회의 질의사항(E/C.12/Q/REPOFKOR/2)에 대해서면 답변을 제출한 당사국(한국정부)에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는 보고서 발표와 건설적인 대화를위해 많은 수의 전문대표들을 파견해 준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비록 위원회에 제출된 서면 또는 구두 답변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제공되기는 하였지만, 본 이행보고서가 많은 중요사안에 관한 정보나 최근의 통계, 특히 경제위기 이후의 중요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 3. 위원회는 제1차 이행보고서 심의 이후 채택되었던 지난 최종견해에 담겨있던 제안사항들과 권고들이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B. 긍정적인 측면들

- 4. 위원회는 1997∼1998년 외환위기 이후의 신속한 경제회복, 인권에 대한 개방적 분위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향유의 실험에 있어 이루어진 최근의 일부 진전 등에 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 5.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일련의 법과계획들이 마련된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 던 최저임금의 적용범위가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된 것을 환영한다.
- 6. 위원회는 여성부의 신설에 주목하며, 고용·외국인과의 결혼·자녀의 출생신고·자녀에게 성(姓)을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공립·사립 이동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이동복지법과 관련계획들이 마련된 것을 위원 회는 환영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 7. 위원회는 최근 UN난민고등판무관실이 서울시무소를 개설하고 난민신청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

C. 규약 실현의 장애요소

8. 위원회는 한국이 주요한 사회경제적 과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정부가 규약 하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 9.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강제되고 있는 '요새 심리(fortress mentality)'의 만연이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방위비 지출에 반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핵심분야들에 대한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불균형 적 현실에 주목한다.
- 10. 위원회는 뿌리 깊은 전통적· 문화적 편견이 이주노동자와 여성 등 특정 집단을 주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 11. '경제우선주의'적 접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에 낮은 비중을 두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집단이 주거,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주변화되고 있다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D. 주요 우려사항

- 12.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을 할 때 규약의 권리들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과잉의존은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대량정리해고·고용상태 악화·소득격 차 심화·가정파탄 증가·많은 사람들의 주변화 등으로 나타났다.
- 13. 위원회는 빠른 속도의 경제발전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수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권리들 혹은 일부 집단의 권리들이 경제회복과 시장경쟁력확보를 위해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 14.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통계자료 확보방법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예를 들어 실업, 불안정고용(Underemployment), 주거, 빈곤과 이주 등에 관련된 통계자료들이 그러 하다. 몇몇 경우, 정부가 제공한 통계는 UN전문기구와 민간단체를 포함한 여타의 기관들이 제공한 통계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취약계층의 요구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들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통계들이다.
- 15. 위원회는 1차 보고서 심의 이후에, 규약의 권리를 국내법에서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헌법에 따르면 규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데, 이 경우 신법(新法) 또는 특별법이 규약의 일부 권리에 우선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한다. 또한, 규약상의 모든 권리가 국내법원에서 직접 원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해 명확한 입장이 없는 점 그리고 그러한 관례가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 16. 위 6항에서 주목한 진전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여자 태아에 대한 높은 낙태율이 보여주듯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호주제가 법에 명시되어있고, 가정폭력 발생비율이 여전히 높고, 여성의 고등교육 접근률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직장내의 여성차별과 성희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남녀의 평균임 금격차는 매우 크다.
- 17. 위원회는 보고서 심의 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독립적인 정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50% 가까이 되며, 이들 중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 18. 위원회는 최근 몇 년 사이 산업재해 발생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산업안 전관련 규제의 완화와 근로감독관의 부족이 초래한 결과로 보인다.
- 19. 위원회는 교사들이 규약8조의 권리(노조결성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규약 및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권리인 단체교섭 및 파업권에 교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막혀 있는 점을 우려한다. 한국사회에서 교사에게 전통적으로 주어진 고결한 지위를 위원회가 인지한다고 해도 위원회는 정부가 기본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전통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기다.
- 20. 위원회는 파업 (industrial actions)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 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상황들의 종합적인 효과는 규약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의 명백한 부정이라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 21. 위원회는 증가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아동노동 그리고 가정 파괴가 야기한 아동학대에 대해 우려한다. 이 점에서,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히 시행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2. 위원회는, 기반시설·교육·보건의료 및 기타 필수 시설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도시 지역에 고도로 집중돼 있어 안구가 농촌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많은 노인들이 농촌에서 가족농지를 돌보기 위해 남겨졌다. 위원회는 이번 논의 동안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상황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빈곤선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주어지는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명백하게도, 수급기준이 너무 엄격해 많은 빈곤층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정규 생계급여의 액수가 사전 통보 없이, 이유 없이 급격히 삭감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전국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해지나, 연금을 받을 나이에 근접하고 있으나 보험료를 충분한 기간 납부할 수 없었던 상당 비율의 경제활동인구가 연금을 제공받지 못한다.
- 24. 위원회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최소 2%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다. 위원회는 또한 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데 우려를 느낀다.
- 25. 위원회는,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7에 의거해 강제 철거되는 사람의 숫자와 강제 철거 발생 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퇴거당하는 가옥소유자들과 달리, 민간 개발사업의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이나 임시주거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저소득층, 특히 취약집단, 한계계층 들의 주거비 부담, 거주자들에게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거주, 노숙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우려를 느낀다.
- 26. 위원회는 보건 분야 예산의 비율이 (전체 정부 예산 중) 1% 이하이며 더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불안하게 느낀다. 민간의료기관이 지배적——모든 보건의료기관의 9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금융 위기 이후 더욱 악화되는 추세——이며, 이는 곧 사회의 한계 계층들이 보건의료에 접근하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한다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한다.

- 27. 위원회는 열악한 공교육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충은 과중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는 점을 우려한다.
- 28. 위원회는 또한 고등교육에서 사립기관이 지배적이며,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 중 2/3 이상이 남학생이며 이는 성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 29. 위원회는 초등교육 단계만 무상의무교육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수 준에 걸맞지 않다.
- 30. 위원회는 지금까지 오직 한 명의 난민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현재의 난민 지위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데 우려를 느낀다.
- 31. 위원회는 인권교육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일에 가장 직접 연관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필수 과정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느낀다.
- 32.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지식인과 예술인의 활동을 제약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국가보 안법 하에서, 작품이 검열, 몰수 혹은 과괴될 뿐 아니라 지식인과 예술인들 자신이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E. 제안과 권고

- 33.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 담겼던 제안과 권고 를 다시 반복하고 확인하면서 그것들을 이행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 34. 위원회는, 정부 활동에의 인권적 접근은 각권리와 관련된 실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 가장취약한 집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법,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국가의 통계기관들과 관련 부처들이 규약의 관점으로 모든 권리에 관한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35.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을 주목하는 한편, 본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 기구의 지위에 관한 1991 원칙(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하며 같은 맥락에서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10에 대한 주의를 요청한다.
- 36.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규약이 국내법 체제 안에서 근거로 직접 원용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규약의 지위가 구법이든, 신법이든 혹은 특별법이든 관계없이 모든 국내법 에 우선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이와 관련해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 9를 참조한다.
- 37.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신설된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면서 법률과 사회에 성평등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것을 권고한다.
- 38. 위원회는 "비정규" 노동자의 상황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한편,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비정규노동자의 지위를 재고(再考)하고 규약하의 권리들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39. 위원회는 8조의 규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자신들의 경제

적 및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에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사용을 자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40. 위원회는 아동성 매매와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취하는 것뿐 아니라 그러한 피해자들의 보호와 원상회복을 위한 계획을 확대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 41. 위원회는 주거 문제에 대한 지원을 구하는 진정이나 탄원을 다루기 위해 정부 내에 전담부서(focal point)를 설치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민간개발사업에 의한 강제철거의 피해자들에 게도 보상과 임시주거시설 등의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국정부는 또한 취약집단 혹은 한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적절한 주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노숙 자나, 비닐하우스와 같이 예외적으로 기준 이하의 조건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2 위원회는 규약의 제13조와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 13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도록 공교육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계획은 다음의 요소를 담아야 한다. 중등교육을 무상의무교육화 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의 합리적 기한 설정 (timetable);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교육 과 관련해 공교육제도의 기능과 질에 대한 재검토: 고등교육을 포함해 모든 단계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연구, 사회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교육 단계 교과내용의 재평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정보가 한국정부의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43. 전통적인 관행이 어떤 권리를 성취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거나 아들 선호 및 여자태아의 낙태 등 어떤 종류이든 차별을 존속시키는 한, 한국정부는 일반 대중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대중 캠페인을 수행해야 한다.
- 44. 위원회는 1993년 세계인권대회 때 채택된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협력속에, 본 위원회 및 기타 다른 조약 기구들이 채택한 견해(observations)들을 고려하면서 인권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준비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국가인권행동계획에 대한 정보를 3차 보고서에 담을 것을 요구한다.
- 45. 위원회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제출할 3차 보고서에 농촌 부문의 조건과 농업 및 식량 생산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을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2003, 문서번호: CRC/C/15/Add.197)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사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의 최종 견해

1. 위원회는 2000년 5월 1일 제출된 대한민국 정부의 2차 보고서(CRC/C/70/Add.14)를 2003년 1월 15일 열린 위원회의 838차와 839차 회의에서 심사했고, 1월 31일 열린 86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A. 도입

2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2차보고서 제출과 위원회가 제기한 문제(CRC/C/Q/REPKO/2)에 대한 자세한 서면답변의 제출을 환영한다. 한국의 아동권리 상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대표단을 파견해 준 것에 주목하며, 심사 회의 동안에 있었던 제안과 권고에 대해 한국 정부대표단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B. 한국정부가 취한 후속조치와 발전

- 3.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 취해진 입법조치를 환영한다. 특히 1997년의 가정폭력처벌특별법은 이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보고에 착수하고 있으며, 2000년의 청소년보호법은 19세미만 아동에게서 성적 서비스를 취한 자들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 4. 위원회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
- 5.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138호 조약과 182호 조약을 각각 1999년과 2001년에 비준한 것을 환영하며, 위원회가 권고한 바대로 고용최소연령을 15세로 상향조정한 것을 환영한다.

C. 협약 이행의 장애요인과 어려움

6. 위원회는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와 IMF 구조조정프로그램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이행하는 데 있어 경제적, 재정적 제약을 받았음을 인정한다. 또한 엄격한 긴축 정책으로 국제 부채를 제시기에 갚을 수 있었고 경제가 상당히 회복되었음에 주목한다.

D. 협약의 원칙관련 권고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협약 4조, 42조, 44조 6항)

위원회의 1차 권고

- 7.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1차 정부보고서(CRC/C/8/Add.21)를 심사한 후 위원회가 채택했던 최종 견해 속에 담겼던 대부분의 권고가 불충분하게 수행된 것을 유감으로 여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그러하다:
 - a) 유보의 철회(권고 19)
 - b) 여아, 장애아, 혼외출생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 근절을 위한 공공 교육 캠페인의 개발(권고 20)
 - c)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 아동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권고 26)
 - d)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22항)
- e) 협약29조에 명시된 교육의 목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재고할 것(29항) 8. 위원회는 위와 같은 권고를 재반복한다. 1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담겼으나 이행되지 않았던 권고들과 이번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유보

9.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협약9조3항, 21조a항, 40조2-b-v항을 유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10. 위원회는 유죄를 선고받은 청소년의 항고권에 유념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약 40조2-b-v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비엔나선언과 행동프로그램(1993년)에 부응하여 협약21조a항과 9조3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도록,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상호면접권을 보장하게끔 민법을 신속 개정하고, 국내입양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입법

- 11. 위원회는 그간 취해온 국내법의 개정에 주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약의 조항과 원칙에 완전히 부응하지 않는 국내법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 12. 위원회는 한국의 국내법이 조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응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조정

- 13. 위원회는 1998-2002년 제8차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에 아동관련 국가행동계획이 포함되었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양한 정부부처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상설적인 중앙 기구가 없음을 여전히 우려한다.
- 14. 위원회는 2001년에 세워진 '아동보호와이동 양육을 위한 종합 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여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괄하고 아동관련 유엔 특별 총회(2002년 5월)와 "아동에게 적합한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에 담긴 서약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 책임을 지는 상설적인 중앙 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가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권한과 충분한 재정,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공적 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 15. 위원회는 한국정부대표가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정부 내에 설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
- 16.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언급한대로 모니터링 기구를 신속히 설립하고 협약 이행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할 것을 권고한다.

독립적인 모니터링

- 17. 위원회는 앞에서(5번) 주목했듯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 위원회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 어떤 전문화도 이루고 있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 18.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련한 파리원칙(유엔총회 결의안 48/134)과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2에 부응하여 다음을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 a) 국가인권위 위원 중에 적어도 한 명의 아동권 전문가를 두거나 또는 대안적으로 국가인권위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 설립을 보장하라.
 - b) 아동이 제기하는 진정을 접수·조사·검토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의 권한에 대한 인식향상을 통해 국가인권위에 대한 아동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특히 아동 친화적인 방식에 유념하라.

자워의 할당

- 19. 위원회는 지난 2년 간의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래로 정부예산에서 아동에 할당된 예산이, 특히 보건과 교육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현재의 지출 수준은 아동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 며, 한국과 비슷한 경제 발전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예산 할당과도 같은 규모가 아니다.
- 20.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협약4조의 충분한 이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 한다.
 - a) 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할당에 우선순위를 두라. b) 공적·사적 부문 및 민간단체 영역에서 아동에게 소요되는 정부 예산의 양과 비율을 확인하라. 이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비용, 접근가능성 및 질과 효과성이 드러나는 다양한 부문에서 지출의 영향과 효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자료 수집

- 21.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서면답변에서 표현했듯이 현재의 자료수집 체계가 협약의 모든 영역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에 견해를 같이하며, 아동권리 지표를 개발하려는 계획에 주목한다.
- 22 위원회는 분산된 자료의 수집, 특히 18세 미만의 모든 이동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을 장려한다. 그리고 그 자료와 지표를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및 계획의 수립, 모니터, 평가를 위해 이용할 것을 장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협약 이행 관련 진전사항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동권리 지표 작업을 완수할 것을 장려한다.

시민사회와의 협력

- 23. 이동에게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협력에 주목한다. 동시에 위원회는 필수적 인 기준설정이 없고, 정책수립 단계 또는 보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제한적이었음을 우려한 다
- 24. 위원회는 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동반자로서의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정부가 민간단체와 좀더 체계적이며 공동작동할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 수립을 포함하여 협약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전국적으로나 지역에서나 협력할 것을 권고하며 장래에 국가보고서를 기초하는 과정에서 도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아동권 이행에 있어 사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에 관한 2002 총토론의 날'에 제기된 권고(CRC/C/121)를 고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적기관에 대한 감독을 개선할 것을,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과 인증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홋보

- 25. 위원회는 아동관련 전문가 집단 뿐 아니라 광범위한 아동과 대중이 협약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고, 협약에 담긴 아동권에 기초한 접근이 불충분함을 우려한다.
- 26.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기 위한 민간단체와 국제 기구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협약이행사항에 관한 정부보고서와 협약의 원칙과 조항을 광범위하게 알리는 것이 협약42조와44조 에 따른 정부의 의무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 a) 일반대중과 특별히 아동을 겨냥하여 아동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공공캠페인에 착수하라.
 - b) 특히 교사, 판사, 국회의원, 법집행공무원, 공무원, 지자체 종사자, 아동 구금 시설 종사자, 심리 학자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사회사업가를 포함하여 모든 아동관련 전문가에 대해 협약의 원칙 과 조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라.
- 2) 아동의 정의(협약 1조)
- 27. 위원회는 남아(18세)와 여아(16세)간의 최저혼인연령의 차이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 28. 위원회는 여아의 최저혼인연령을 남아와 마찬가지로 상향조정하라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 3) 일반 원칙(협약 2, 3, 6, 12조)
- 29. 위원회는 협약에 규정된 일반원칙, 차별받지 않을 권리(2조), 아동이익최상의 원칙(3조), 생명·생존 및 발전의 권리(6조),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가 존중받을 권리(12조)가 한국 정부의 입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우려한다.
- 30.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 a) 아동과 관련된 모든 입법에서 협약의 일반원칙을 반영하라.
 - b) 협약의 일반원칙을 모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법적, 행정적 결정 및 계획, 프로그램, 서비스에 적용하라.

c) 협약의 일반원칙을 계획과 정책 결정의 매 단계에서 또한 사회·보건복지·교육 기관, 법원, 행정당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에 적용하라.

비차별

- 31. 위원회는 정부보고서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정보가 빠져있고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이동, 장애아 동, 여아 및 이주가정의 아동에 대한 차별행위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임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 회는 또한 협약에서 언급된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인종적 출신,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대한민국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 32. 위원회는 협약2조에 포함된 모든 근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회적 차별, 특히 한 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이동, 장애아동, 이주노동 자의 자녀, 여아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특히 대중교육과 인식 캠페인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33. 위원회는 2001년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 프로그램에 관한 후속조치로서 한국 정부가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취한조치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음번 정기보 고서에 포함할 것과 협약 29조1항(교육의 목표) 관련 위원회의 일반논평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 34.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전통적 태도가 가정, 학교 기타 기관과 전체 사회 속에서 여전히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을 제한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 35. 위원회는 협약 12조에 따라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 a)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재개정하라. 그리고 법원, 행정기구, 학교 및 교육기관의 징계과정에 의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 b)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 행정 공무원, 사법부 및 일반사회에 아동의 의견청취와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라.
 -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자신에게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 4) 시민권과 자유(협약 7, 8, 13-17, 37(a) 조)

표현과 결사의 자유

- 36. 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10대들이 독립적으로 만든 인터넷 대화방이 자의적인 이유로 당국에 의해 폐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더욱 우려한다.
- 37. 협약 12-17조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 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체벌

- 38. 위원회는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체벌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아동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본다[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의 마찬가지의 견해를 보라, E/C.12/1/Add.79, para 36]. 교육부의 지침이 학교에서의 체벌 사용과 관련된 결정을 개별학교당국에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정형태의 체벌이 수용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며, 따라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장계를 조성하려는 교육적 조치를 훼손하고 있다.
- 39.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b) 체벌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공공교육 캠페인을 수행하라. 그리고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 인 징계 형태를 조성하라.
- 5)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협약 5, 18(1-2항), 9-11, 19-21, 25, 27(4항), 39조)

대안 양육

- 40. 위원회는 가정과 분리된 아동의 시설양육에 대한 대안으로 그룹홈을 설립한 데 주목한다. 그러나, 그룹홈의 설립과 대안 양육 체계의 개발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사적 양육 기관이 정부의 규제나 정기적 인 감사를 받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 41.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 a) 그룹홈과 대안양육체계의 숫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라. 특히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카우슬링과 지원체계를 강화하라.
 - b) 모든 공적·사적 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보장하라. 이는 아동의 견해와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가능한 한 시설입소아동을 가정환경 속에 재통합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 c) 대안양육상태와 취약한 가정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사업가의 숫자를 늘리고 그들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켜라.

입양

42. 위원회는 보편적인 부정적 문화적 전통으로 인해, 국내입양이 허가나 자격 있는 기관에 의하지 않고 이뤄질 수 있으며, 그러한 입양이 아동 최상의 이익 또는 (적절한 경우)아동의 견해를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높은 숫자의 해외입양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한 다. 해외입양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한국정부가 해외입양과 관련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년 1차 권고에서 언급했던 우려 를 반복한다.

- 43.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1차 권고를 반복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a) 협약21조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응하도록 법률을 개혁할 목적으로 국내 및 해외입양 체계 를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라.
 - b) 해외입양과 관련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라.

아동학대와 방임

- 44. 위원회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원조를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 센타가 여러 지역에서 설립된 것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진정을 접수 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며 피해자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전국적인 체계가 미비함을 우려한다.
- 45.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 a) 아동학대와 방임관련 진정을 접수, 모니터,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률 개혁을 포함하여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기소가 필요한 경우, 이동 친화적인 방식 으로 돼야하며, 법집행공무원과 사회사업가 및 검사들에게 이점에 관한 훈련을 하라.
 - b) 개입 또는 처벌에 그치기보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폭력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회복, 재통합을 위한 지원을 보장하는 전국적인 대응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센타 설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
 - c) 아동학대 및 방임의 문제 정도를 적절히 평가하고 그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도록 성별 및 연령대로 분산돼 있는 학대 및 방임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한자료수집 체계를 구축하라.

아동부양

- 46. 위원회는 법적으로 받아야만 할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부모와 한부모 가정(주로 어머니)의 수치가 높음에 우려한다.
- 47. 협약 27조와 아동이익 최상의 원칙(3조)에 입각하여, 법원의 명령에 근거하여 또는 아동이나 양육부모에게 오명을 씌우지 않는 방식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아동양육의무를 집행하기 위한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강제집행을 하는 동시에미불된 아동양육비를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불할 수 있는 정부기금을 조성하거나, 아동양육의무를 진 자의 봉급에서 자동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 6) 기본적 보건과 복지(협약 6, 18조 3항, 23, 24, 26, 27조 1-3항)
- 48.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아동 보건 지표에 고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보건에 산 할당이 1%미만이며 보건시설의 90%가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모유수 유율이 90년대에 상당히 감소했다는 점과 청소년의 흡연의 증가와 각성제 및 여타의 불법약물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 49.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보건예산을 상당수준 늘리고 저소득 가정이 무료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

체계를 구축하라.

- b) 영아에게 처음 6개월 간의 완전한 모유수유가 주는 유익성에 대해 어머니를 교육하고 모유수유 를 장려하라. 모유수유에 대한 국가규범을 채택하라.
- c) 자녀에게 모유를 먹이는 여성이 고용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 d)에이즈 및 여타의 성병에 대한 교육, 10대의 흡연과 약물남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청소년 보건정 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 보건 연구에 착수하라.

장애아동

- 50. 위원회는 장애이동에 대한사회적 차별이 광범위하며 "존엄성이 보강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릴 장애이동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상당수의 장애이동이 매년 버려지고 있으며, 많은 아동이 학교에 다닐 수 없고, 학교에 가면 다른 학생들과 분리된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 51. 위원회는 '1997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장애아동에 관한 토론의 날에서 도출된 권고와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기준 규칙(유엔통회 결의안 48/96)에 따라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학부모, 아동, 교사 및 일반대중을 겨냥하여 인식 향상과 교육 운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문화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 b)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의 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하라. 이 조사는 교육 및 여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장애아동의 교육 욕구 및 접근에 대해 평가할수 있어야 한다.
 - c) 학교, 여가시설을 포함하여 공공 건물과 공공 영역에 대한 장애아동의 물리적 접근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라. 또한 유치원 및 초·중·고 단계에서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확대하라.
- 7) 교육(협약 28, 29, 31조)
- 52 위원회는 정부가 중등교육을 무상화하려는 과정에 있다는 정보를 환영하지만, 대한민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만이 무상인 점을 우려한다. 마찬가지로, 초등교육에서는 여야와 남아의 입학비율에 차이가 없지만 고등교육에서는 남아보다 여야의 수가 적어지는 점을 우려한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위원회의 우려를 반복한다.
- 53.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 a) 학교에 제공되는 자원을 늘리고 학습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립학교에 비교할 때 낮은 수준 인 공립학교의 질을 높여라.
 - b) 취학 전 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
 - c) 여이의 입학을 증진하고 끈질긴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응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 d)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29조1항과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1에서 언급된

교육의 목적을 반영할 목적으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재고하라.

8) 특별 보호 조치(협약 22, 38, 39, 40, 37(b)-(d), 32-36조)

성적착취

- 54. 위원회는 아동에게 성적 서비스를 산 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2000년 청소년보호법을 만든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아동성착취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임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원조교제"현상에 대해 우려한다.
- 55.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라. 이 계획에는 1996년과 2001년 '제 1·2차 상업적 아동 성착취 철폐 세계 대회'에서 합의됐듯이 효과적인 자료 수집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
 - b) 아동친화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접수, 모니터, 조사, 기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법집행공무원, 사회사업가 및 검사를 훈련하라.
 - c) 모든 성학대와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적합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보장 하라
 - d) 연소자에 대한 성학대 및 착취에 관련된 법률 정보, 건강한 생활양식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등 예방적 조치를 개발하라.

소년사법

- 56. 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이동이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 지원 없이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 57.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 a) 특히 협약 37, 40, 39조와 소년사법집행에 관한 유엔 최소기준(베이징 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리야드(Riyadh) 가이드라인), 1995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소년사 법집행에 관한 토론의 견지에서, 소년사법기준의 완전한이행을 보장하고 소년사법 관련 종사 자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라.
 - b) 자유의 박탈을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라. 그리고 자유의 박탈로 귀결될 수 있는 보호처 분과 관련된 모든 청소년에게 조기에 변호인을 보장하라.
 - c) 연소자를 형사절차에 회부할 것인지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검사의 자유재량(검사 선의주의)을 없애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라.

이주노동자의 자녀

- 58. 위원회는 교육 및 사회보장관련 법과 규칙이 외국인 아동,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복지와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 59.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 a)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도록 국내법, 특히 교육과 사회보장관련법을 개정하라.

- b)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1990)의 비준을 고려하라.
- 9) 선택의정서와 협약 43조 2항의 개정
- 60. 위원회는 협약에 따른 두 개의 선택의정서(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 정서와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고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에 주목한다.
- 61. 위원회는 협약에 따른 두 개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 10) 문서의 배포
- 62 협약44조6항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와 서면답변을 광범위한 대중, 특히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관련 기록과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포함하여 보고서 출판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 국회, 일반 대중 및 민간단체 내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과 토론을 낳고 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위와 같은 문서는 광범위하게 배포돼야만 한다.
- 11) 차기 보고서
- 63. 위원회가 채택한 정기보고서에 대한 권고와 29차 회기(CRC/C/114)의 보고서에서 기술한 권고에 입각하여, 위원회는 협약 44조에 충분히 부응하는 국가보고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엔이동권리 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에서 나타난 진전을 점검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은 협약 당사국의 중요한 책임이다. 이런 점에서 정기적으로 시기를 맞춰 제출되는 정부보고는 아주 중요하다. 위원회는, 예외적인 조치로, 한국정부가 협약에 부응하는 보고 의무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한국의 3차와 4차 보고서를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어서 4차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돼있는 2008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원래 3차 보고서가 2003년에 제출돼야 하나, 한국 정부의 보고서 제출이 늦었고 위원회의 심사회의도 지연된 관계로 2차 보고서를 2003년에야 심의하게 되었다. 이에 3차 보고서 심사를 건너뛰게 된 것이다; 역자주) 위원회는 협약이 정한대로 한국정부가 매 5년마다 보고할 것을 기대한다.

개인통보제도(Individual Complaint/Communication)*의 활용

다음의 국제인권조약들은 규약(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국내 적 구제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각 이행감 시기구에 통보를 접수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통보제 도 중 현재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 의정서'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협약' 뿐이다.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대한민국적용일: 1990-07-10)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협약 제14조(한국정부선언: 1997-03-05)
- 고문방지협약 제22조(미선언)
-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미가입)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77조(협약미발효)

통보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이행감시기구는 당사국이 제출한 정보를 종합하여 통보를 심리하고 그 결정문을 당사국과 통보자에게 송부한다. 이러한 결정문이 당사국 정부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에 의해 체결,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대한민국 헌법제6조1항)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이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 국내법을 이유로 그 위반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행감시기구는 규약(협약)과 관련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사국의 정부나 법원도 이행감시기구의 견해에따라 규약(협약)을 해석, 적용해야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개인통보 사건에 대한 이행감시기구의 견해는 인권침해를 국제적으로 공개확인하고 인권상황개선에 대한 압력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적,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1503절차나 특별보고관, 실무그룹 등 특별절차에 대한 청원(Communication)과 구분하기 위해 '개인통보(Individual Complaint)'라고 번역하였다. 인권조약에 따른 개인통보 역시 청원(Communication)이라고 쓰기도 한다.

❷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통보제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은 인권이사회에 개인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통보자는 침해받은 권리가 규약 상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명시해야한다. 협약을 비준할 때 유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제14조 5항 상소 및 재심청구권, 제22조 결사의 자유에 대해 유보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통보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국내절차가 비합리적으로 길어지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예외에는 국내구제절차가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통보의 내용은 여타의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심리되고 있지 않아야 한다. 한편, 익명의 통보는 허용되지 않으며, 피해자나 제출자는 인권이사회가 그 결정문을 공고하는 경우 익명으로 처리해달라는 요구를할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인권이사회의 개인통보제도를 활용하여 결정 문을 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이 총 4건이며, 지난 2002년에는 한총련 이적단체규정과 관련하여 개인통보를 접수하기도 하였다.

- 손종규(Communications No. 518/1992)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차 개입금지 관련
- 김근태(Communications No. 574/1994)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단체 고무, 찬양) 관련
- 박태훈(Communications No. 628/1995)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단체 고무, 찬양) 관련
- Mohammed Ajaz, Amir Jamil (Communications No. 644/1995)
- ❷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통보제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통보제도는 인권이사회의의 개인통보제도와 다소차

이가 있다. 우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의한 국제규약의 경우 별도의 의정서를 통해 개인통보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제14조를 통해 "인종차별철폐협약 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또는 개인의 집단으로부터 그 관할권 내에서 통보를 접수하여 심사할 권능을 인종차별철폐위 원회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각 체약국이 승인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선언을 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총 41개국이다(한국 정부 선언: 1997년 3월 5일).

선언을 한 체약국은 자국의 법질서 범위 내에 어느기관을 설치 · 지정하여 이기관이 국내 구제조치를 완료한 개인과 집단으로부터 그 관할권 내에서 청원 (petition)을 접수하여 심사할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만족스러운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청원자는 6개월 이내에 이 문제를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이후의 과정은 인권이사회의 개인통보제도와 거의유사하다. 1982년부터 2002년까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접수된 통보사건은 단27건뿐으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통보제도는 그 활용이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인종차별문제에 관해 일반적으로 진정을 할수 있는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한' 개인과 개인의 집단이 청원을 접수할수 있는 국내기관이 정확히 어디인지 불분명하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통보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 인권이사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한 통보양식 보내는 곳

- · 통보양식(Model Complaint Form): 웹사이트(193.194.138.190/html/menu6/2/annex1.pdf)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 주소: Petitions Team, OHCHR-UNOG, 1211 Geneva 10, Switzerland (F) 41 22 917 9022
- (E) tb-petitions@ohchr.org

박태훈 씨 개인통보 사건에 대한 인권이사회 결정문

인권이사회

제63차 회기 1998년 10월 6일-1998년 11월 6일 통보번호 628-1995

견해

통보자: 박태훈(대리인 조용환, 서울 덕수 합동 법률사무소)

피해자: 통보자 당사국가: 대한민국

통보일: 1994년 8월 11일(최초 재출일)

주요결정사항: CCPR/C/57/D/628/1995, 허용결정, 1996년 7월 5일자

견해 채택일: 1998년 10월 20일

1998년 10월 20일, 인권이사회는 통보번호 제628/1995에 대하여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라 그 견해를 채택하였다. 견해의 결정문은 이 문서에 첨부되어 있다.

[별지]

* 인권이사회 결정에 따라 일반에 공개함.

[별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4항에 따른 인권이사회 견해

제64차 회기 통보번호 628/1995

통보자: 박태훈(대리인 조용환, 서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피해자: 통보자 당사국: 대한민국

제소일: 1994년 8월 11일 허용 결정일: 1996년 7월 5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인권이사회는 1998년 10월 20일에 열린 회의에서 박태훈 씨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통보번호 628/1995호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통보의 제출자, 그의 대리인 및 당사국이 이사회에 제공한 모든 문서 자료들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채택하였다.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견해

1. 이 사건의 통보자는 한국인 박태훈(남)으로, 1962년 11월 3일생이다. 그는 자신이 대한 민국에 의한 규약제18조1, 2항 및 제26조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대리인은 서울 에 있는 덕수합동사무소의 조용환 변호사이다. 대한민국은 규약 및 선택의 정서에 1990 년 7월 10일 가입했다.

동보자가 제출한 사실관계

2.1 1989년 12월 22일,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통보자가 1980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3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통보자는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재판기간중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였고, 이에 서울 고등법원은 사건을 육군고등군사법원으로 이송하였다. 1993년 5월 11일, 고등 군사법원은 통보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통보자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1993년 12월 24일, 대법원은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통보자는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조치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통보자는 비록 헌법재판소가 제7조 3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조항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1항과 5항의 짜집기이므로 3항 역시 합헌 결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 22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내용은 그가 1983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유학중 재미한국청년연합(이하, 한청련 또는 YKU)에 가입하여 활동했다는 데 있다. YKU는 미국 단체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한과 북한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단체는 당시 대한민국의 군사정부와 그 정부를 지지하는 미국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었다. 통보자는 한청련의 모든 활동을 평화적인 것이었으며, 미국법을 따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23 재판부는 YKU가 북한 정부의 활동에 동조하고 고무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적단체"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단체가 가입한 통보자의 혐의는 국가보안법 제7조3항 위반에 해당되었다. 나아가 통보자가 미국 내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석하여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을 주장한 사실은 북한에 동조한 것으로 국가보 안법 제7조1항 위반이 되었다. 통보자는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대로라면 한청련 회원은 모두가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24 대리인이 제출한 통보자사건의 판결문 번역에 따르면 통보자가 미국에서 몇몇 평화적 시위와 기타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한 정치적 구호 및 견해에 대한 자신의 지지 또는 동의를 표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구형과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 25 통보자는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강요된 자백에 근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보 자는 영장없이 1989년 8월말 체포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 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한국의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데 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 26 대리인은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규약기입 이전에 일어난일이라하더라도, 고등군사법원과 대법원은 규약기입 이후에 이 사건을 심리하였다는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규약을 적용하였어야 하며, 해당 법원은 규약의 관련 조항들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보자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규약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했던 최초보고서 심의 후에 발표한 인권이사회의 권고문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권고문에서 이사회는국가보안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하였다.(CCPR/C/79/Add.6); 그는 또 대법원이 인권이사회가 지적한 권고내용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해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3년 12월 24일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따라 설치된 인권이사회에서 소론과 같이 국가 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보안법의 효력이 당연 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소론 주장과 같이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거나 형평을 잃고 모순되는 법적용이 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통보자의 영문번역)

통보내용

- 3.1 통보자는 자신의 사상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등을 대한민국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근거하여 북한에 동조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남한 당국이 간주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통보자는 이러한 추정이 잘못된 것이며 남한 당국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 32 통보자는 자신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규약 제18조 1항, 제19조 1, 2항 및 제26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비록 특정한 단체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유죄판결의 진정한 이유는 자신과 다른 YKU회원들이 남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정부의 정책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지단에 대하여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는 규약 제26조를 위반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통보자는 대한민국의 유보때문에 규약 제22조의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다.
- 3.3 통보자는 자신의 사상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길고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등을 대한민국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이사회가 선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 제7조1항, 3항 및 5항을 철폐하고, 이들 조항에 대한 폐지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까지 이들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이사회가 요구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그리고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기

를 요청하여, 겪었던 고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당사국의 견해 및 대리인의 의견

- 4.1 1995년 8월 8일 제출한 내용을 통해 당사국은 통보자에 대한 사건의 범죄사실들의, 특히, 다른 반정부적인 견해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군사독재를 통해 남한을 조종하고 있다는 견해에 동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 42 당사국은 이 통보가국내의 모든 구제조치들을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통보자가 영장없이 체포되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 고 주장하는 문제는 긴급 구제절차를 통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당사국은 만일 통보자가 지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또는 그를 기소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4.3 끝으로, 당사국은 1992년 1월 11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3항의 합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제소가 제3자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 5.1 당사국이 제출한 내용에 대한 의견에서 통보자의 대리인은 당사국이 통보자의 주장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리인은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통보자의 권리침해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인은 재심에 관한 문제는 통보자의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한다. 대리인은 통보자에 대하여 적용된 증거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들에 따라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통보자의 활동은 사상,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5.2 이 통보가 시간적 요건으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대해 대리인은 비록 통보자의 사건이 규약 및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기 이전에 시작되었지만, 고등군사 법원과 대법원은 가입한 시점 이후에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규약이 적용되어, 이 통보는 허용된다는 것이다.
- 5.3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3항의 합헌 여부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 중이라는 당사국의 주장에 대해 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국가보안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1990년 4월 2일에 내린 바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 있다. 그후 같은 사안에 대한 제소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모두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선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의한더 이상의 재심은 무의미하다고 대리인은 주장한다.

이사회의 허용여부 결정

- 6.1 이사회는 제57차 회의에서 이 통보의 허용여부를 심의하였다.
- 62 이사회는 이 통보가 주장하고 있는 사건이 규약 및 선택의정서에 당사국이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당사국의 주장을 주목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통보자에 대한 1심 판결이 규약 및 선택의정서에 한국이 가입하기 이전인 1989년 12월 22일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은 규약에 가입한 날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회는 통보사가 주장하는 규약위반이 당사국의 규약 및 선택의정서 가입 이후까지 계속되었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이통보에 대한 심사는 시간적 요건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6.3 이사회는 또 통보자가 당시 가능했던 국내의 모든 구제조치들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했다. 이사회는 당사국이 제안한 일부 구제조치들이 이사회에 제출된 통보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통보자에 대한 재판의 쟁점과 관련된 것에 주목했다. 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합헌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여전히 심리중이라는 당사국의 주장에도 주목하였다. 이사회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미 1990년 4월 2일에 처음으로 위조항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통보자의 주장에도 주목했다. 이사회에 제시된 자료들을 근거로 볼 때, 이사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2(b)항이 의미하는 범위 안에서 통보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 6.4 이사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2(a)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 다른 국제적인 조사 떠는 조정절차에 따라 심의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 6.5 이사회는 통보자가 제출한 사실들이 규약 제18, 19 및 제26조에 따라 본안의 심리를 받을 필요가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7. 이에 따라 1996년 7월 5일, 인권이사회는 이 통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리인의 의견

- 81 당사국은 의문의 여지가 없게 사실관계를 밝힌 적절한 조사를 거쳐 국내법을 위반한 범죄로 통보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국은 안보가 불확실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상과 견해를 표현하는 자유를 포함하여 모든 기본 인권을 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국은 그러나 민주제도의 틀을 보존하는 우월한 요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8.2 한국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문화한 조항이 있다(제37조2항).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 또는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당사국에 따르면 북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불가결하다는 여론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국은 폭력성을 떤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다. 당사국에 따르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정책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인 YKU 회원으로서 통보자가 한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는 데 위협적인 요소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 83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에 규약의 조항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통보자의 주장에 대해 당사 국은 "통보자는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규약의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규약에서 인정한 개인의 특정한 권리보다 국가보안법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9.1 당사국의 견해에 대한 의견에서 대리인은 당사국의 불확실한 안보상황과 통보자가 자신의 사상, 견해,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리인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YKU 또는 통보자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당사국이 증명하지 못했으며, YKU 또는 통보자가 북한 공산주의 자들의 어떤 정책에 동조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당사국은 YKU 또는 통보자의 활동이 국가안보에 어떠한 내용의 위협을 주었는지에 대하여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대리인은 주장하였다.
- 92 통보자는 자신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생 신분으로 YKU에 동참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는 활동을 하면서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또는 자기 나라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어떠한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리인에 따르면 통보자가 표현한 견해에 대해서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 반박할수 있으나, 그러한 표현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표출되는 한 결코 형사처벌에 의하여 억압되어 서는 안된다. 이런 맥락에서 대리인은, 정부가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 93 대리인은 통보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 사상 및 평화적 표현 등으로 인해 처벌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규약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앞에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대리인은 그렇게 된 이유가 모든 시민들이 헌법 제21조에 의해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가운데, 통보자는 대한민국 정부당국자들과는 다르다고 추정되는 정치적 견해를 가진 YKU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한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94 통보자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상황에 관하여 제출한 보고 서를 인용하고 있다. 통보자는 이사회가 정부에 대해 이 통보에 대한 이사회의 견해와 그 한국어 번역문을 관보에 개재토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사회가 심의한 쟁점과 진행절차

- 10.1 인권이사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1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이 통보 내용을 심리하였다.
- 10.2 이사회는 통보자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규약 제22조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 조항의 위반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리인은 규약 제22조가 헌법을 포함한 한국법에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대한민국은 유보 또는 선언을 지적하고 있다. 통보자의 통보내용과 주장이 규약의 다른 조항에 근거하여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는 그 유보 또는 선언의 효과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사회가 판단해야 할 쟁점은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통보자가 받은 유죄판결이 규약 제18, 19 및 26조에서 규정한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 10.3 이사회는 규약제19조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음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의한 제한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가)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 기 위한 경우, (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공의 건강 또는 도덕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모든 민주적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 권리의 실현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 그 정당성을 심사받이야

한다. 당사국은 그와 같은 제한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여전히 통보자에게 가해진 조치들이 규약에서 말하는 목적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는 당사국이 나라의 일반적인 상황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언급하면서 국가안보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사회는 통보자에 의한 표현의 자유행사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위협의 정확한 성격을 당사국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실패했으며 당사국이 내세운 어떠한 주장도 제19조 3항에 따라서 통보자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제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사회는 통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문들을 세밀히 검토하였으나, 이들 판결문 및 당사국의 주장 어느 것도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제19조 (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목적들 가운데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표현행위와 관련된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은 규약 제19조에 따라 통보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해야 한다.

10.4 이런 맥락에서 이사회는 "통보자는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규약의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규약에서 인정한 개인의 특정한 권리보다 국가보안법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당사국의 주장을 검토한다. 이사회는 당사국이 규약의 당사자가 됨으로 써 규약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규약이 인정하는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을 지적한다. 당사국은 또한 이들 권리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또는 그밖의 조치들을 강구했어야 한다. 이사회는 당사국이 규약에 따른 의무보다 국내 법의 적용을 우선하는 것은 규약과 합치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사회는 당사국이 규약제4조(3)항에 따라 비상사태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규약의 일부권리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일이 없음을 지적한다.

- 10.5 이상에서 인정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규약 제18조 및 제26조를 위반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11. 인권이사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라 이사회에 제출된 사실관계가 규약 제19조에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다.
- 12 규약 제2조 3(b)항에 따라 당사국은 박태훈 씨에게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한 적절한 배상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3.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당사국은 규약의 위반이 일어났는가를 결정하는

이 사회의 권한을 승인하고 규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 영토 안에서 관할권이래 있는 모든 개인들에 규약이 인정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또한 규약위반이 일어났다고 인정될 경우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구제조치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하여, 이사회는 당사국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의 견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 를 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한다. 또한 당사국이 이사회의 견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한다. 또한 당사국이 이사회 의 견해를 번역하여 공개하고, 특히 사법부에 이사회의 견해를 통보할 것을 요구한다.

3.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국제형사재판소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상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하여 심판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국제재판소이다. '국제형사재판소설립을 위한 로마규정(Rome Statute)'이 1998년 7월 17일 채택된 이후 2000년 12월 31일로 정해진 시한까지 총 139개국이 로마규정에 서명하였으며, 협약의 규정에 따라 60번째 비준서가 기탁됨으로써 지난 2002년 7월 1일 로마규정이 발효되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2003년 2월 3일부터 열린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 18명의 재판관 선출을 마쳤으나 아직 소추관이 선출되지 않아 그본격적인 활동은 다소 지연될 예정이다. 한국은 2000년 3월 로마규정에서 명하였고, 2002년 11월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83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2003년 2월 1일 현재, 로마규정 비준국은 총 88개국이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장범죄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다루게 된다.

제II부 유엔과 인권 147

- ▶ 범죄에 대한 로마규정의 용어 정의
- 집단살해죄(Genocide)는 국민, 민족, 인종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를 갖고 저질러진 살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 를 야기시키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또는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행해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강간 · 강제임신 · 성적 노예화 등의 중대한 성폭력, 강제실종 및 인종차별 등
- 전쟁범죄(War crimes)는 국제 및 국내무장전투에서 대규모로 저질러진 범죄로서 1949년 제네바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및 기타 전쟁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국내전투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관습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50년간 국제적 분쟁이 아닌 국내분쟁에서 가장 심각한 형태의 인권유린이 발생했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침략범죄(crimes of aggression)의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의 관장범죄에 포함 이 되어 있기는 하나, 로마규정은 침략범죄의 정의, 그 구성요건 및 관할권 행사의 조건들에 관하여 검토회의를 통해 당사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 지 침략범죄에 관한 관할권을 국제형사재판소가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행사 요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은 소급되지 않는다. 즉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 이 발효된 시점인 2002년 7월 1일 이후의 범죄만을 취급할 수 있으며, 자국 영토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국가 또는 피의자의 국적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인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쟁범죄의 경우, 로미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발효 후 7년 동안 국제형사재

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수락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사건이 회부된 경우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로마규정의 비당사국은 임시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사건이 회부된 경우에는 로마규정의 당사국이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형사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Ⅲ 보충성의 원칙 Principle of complementarity이란?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의 관할권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관할권을 '보충'하는 것이다. 즉, 각 국의 법원은 자국 관할권내의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데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는 당사국의 국내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활동을 개시한다(예를 들어, 정치적 소요 또는 분쟁 등으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재판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현정권이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을 의미한다).

범죄혐의자에 대한 기소, 체포, 인도

국제형사재판소에 사건을 개시할 수 있는 주체는, 로마규정 당사국,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소추관이다. 소추관은 국제형사재판소 관장범죄 발생에 관하여 각국 정부, 유엔기구, 정부간 기구, 민간단체 또는 다른 신뢰할만한 출처로부터 추가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구두증언을 접수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우,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범죄자가 일반적으로 권력에 의하여 비호를 받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관하여 로마규정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및 기소, 공판 및 형의 집행 등에 관한 당사국의 협력의무에

제II부 유엔과 인권 149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 경우, 안 전보장이사회는 유엔헌장 제7장에 의거 로마규정의 비당사국으로 하여금 국제 형사재판소의 지원 요청에 협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국제형사재판소 연락처: 관장범죄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행정사항 문의
- ICC, Division of Common Services,
- P.O. Box 19519, 2500 CM Hague, The Netherlands
- (T) (31 70) 5158515 (F) (31 70) 5158555

□자료출처

국제인권봉사회(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Information on the UN Human Rights Program", (www.ishr.ch)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자료실(minbyun.jinbo.net/un/inter_archives.htm)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www.unhchr.ch)

인권운동사랑방(www.sarangbang.or.kr), 유엔과 인권 꾸러미

국제인권법 (박찬운/1999/한울아카데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정인섭/2000/사람생각)

「'유엔과 인권제도교육' 자료집 (한국인권단체협의회/1994)

참고: 인권관련 유엔 국제회의 일정(2003년)

일자	회의	회기]/장소
E/1	' '	4/	1/ 0-1-
1.6-17	Working Group on a draft legally binding normative instrument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Geneva
1.13-31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32nd	Geneva
1.20	Commission on Human Rights; Election of the Bureau	59th	Geneva
1.20-24	Board of Trustees of the United Nations Trust Fund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8th	Geneva
1.21-31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Geneva
2.3-7	Working group of five independent experts on people of African descent to study the problems of racial discrimination	2nd	Geneva
2.3-7	Working Group,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33rd	Geneva
2.3-14	Working Group on the right to development	•	Geneva
2.10-14	Working Group on situations (1503 procedure)		Geneva
2.19-20	Workshop to develop a publication to combat racism and to foster tolerance		UNESCO -Paris
2.24-26	Board of Trustees of the UN Voluntary Fund for Indigenous Populations	•	Geneva
미정	Working Group on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Geneva
3.21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62nd	Geneva
3.6-9	Working Group on Working methods and activ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	Geneva
3.10-14	Working Group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77th	Geneva
3.17-4.4	Human Rights Committee	77th	Geneva
3.17-4.25	Commission on Human Rights	59th	Geneva
3.31-4.4	Board of Trustees of the UN Voluntary Fund for Indigenous Populations	16th	Geneva
4.7-11	Advisory Group of the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the International Decade of the World's Indigenous People	8th	Geneva
4.14-16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Geneva
4.21-24	Working Group on Enforced and Involuntary Disappearances	69th	New York

참고: 인권관련 유엔 국제회의 일정(2003년)

일자	회의]/장소
4.22-25	Working Group of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Geneva
4.28-5.16	Committee against Torture		Geneva
5.5-9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	Geneva
5.5-23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30th	Geneva
5.12-16	Working Group on Minorities	•	Geneva
5.15-16	Seminar on the Issue of "Practical approaches" to strengthen good governance practices	•	Thailand
5.12-28	Board of Trustees of the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Victims of Torture	•	Geneva
5.19-6.6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33rd	Geneva
5.26-30	Working Group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Geneva
6.2-5	Board of Trustees of the Voluntary Fund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19th	Geneva
6.9-13	Working Group,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34th	Geneva
6.16-20	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27th	Geneva
6.23-27	Meeting of Sepecial Rapporteurs, Representatives, Independent Experts and Chairpersons of Working Group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Geneva
6.23-27	Meeting of persons chairing human rights treaty bodies	15th	
7.7-11	Working Group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78th	Geneva
7.14-8.8	Human Rights Committee	78th	Geneva
7.21-25	Working Group on Indigenous Populations	•	Geneva
7.28-8.15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55th	Geneva
8.4-22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63rd	Geneva
8.5-23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ew York
8.11-15	Working Group on Enforced and Involuntary disappearances	70th	Geneva
8.18-29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	Geneva
8.18-29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Durban Declaration		Geneva
미정	One-day informational meeting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Geneva

참고: 인권관련 유엔 국제회의 일정(2003년)

일자	회의		회기/장소	
9.15-10.3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34th	Geneva	
10.6-10	Working Group,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35st	Geneva	
10.13-17	Working Group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79th	Geneva	
10.20-11.7	Human Rights Committee	79th	Geneva	
11.3-7	Working Group on Committee against Torture	31st	Geneva	
11.10-13	Board of Trustees of the Voluntary Fund for Technical Cooperation		•	
11.10-19	Working Groupo on Enforced and Involuntary Disappearances	71st	Geneva	
11.10-21	Committee against Torture	31st	Geneva	
11.10-28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31st	Geneva	
11.19-28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	Geneva	
11.24-28	Field Presences Meeting		Geneva	
11월	Launch of the Annual Appeal 2004	•	Geneva	
12.1-5	Working Group o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va	
12.1-12	Working Group on the Draft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미정	CHR/Open-ended Working Group with a view to considering options regarding the elaboration of an optional protocal to the ICESCR			
미정	Sub-com/Social Forum		Geneva	
미정	Expert Consultation on the international guidelines on HIV/AIDS and Human Rights		•	
미정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	•	•	

※ 출처: UN www.unhchr.ch/html/calen2003.htm



- 2. 다른 국가기관 이용 안내

1. 각종 민원상담 참고자료

외국인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7월부터 5개월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및 전북 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국내거주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실 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입국과 취업과정 에서부터 작업장, 주거환경, 일상생활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수준, 빠른 작업속도, 열악한 작업환경,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업병, 여권압류 등이 심각 한 문제라고 답변해, 노동과 관련된 인권상황이 가장 큰 문제임을 알수 있었다. 특히 장시간노동에 대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가장 큰 고충' 이라고 답변했다.

- ❷알아두면 좋은 내용
- ▶ 외국인 이주 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 □산업연수생

산업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

제Ⅲ부 참고자료 157

자격으로 입국한 점등을 감안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해외투자기 업의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산업연수생은 '외국인산업기 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노동부예규제369호)과 '해외투자기업 산업 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와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 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강보험법의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적용을 받는다.

- 폭행 및 강제근로의 금지
- 연수수당의 정기 직접 전액 통화불지급 및 금품청산
- 연수기간, 휴게 휴일, 시간외 야간 및 휴일연수시 초과수당 지급
-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
-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건강보험 혜택
- 한편 산업연수생에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

□연수취업자

연수취업자는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근로자 신분을 가지며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연수취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으로 연수취업 계약을 통하 여사업주의 동의 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이 당연 적용되는 국가의 연수취업자에 한하여만 적용한다.

- 연금 당연 적용 국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이란, 태국, 몽고, 카자흐스타
- 연금 적용 제외 국가: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 출국시 연금적립금 반환국가: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 본문의 159 페이지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노동법 및 사회보장제도 근거 및 범위는?

표3-1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 외국인 노동자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등 노동관계법 적용 불법체류 \times 최저임금 보장 청산, 휴게 휴일, 시간의 야간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 로 금지, 연수수당의 지급 및 금품 근기법 일부조항 폭행 및 강제근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및 휴일근로 만 적용 \times 최저임금 보장 한 보호지침 산업연수생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보호 근로 금지, 연수수당의 지급 및 금 근기법 일부조항 폭행 및 강제 품청산, 휴게 휴알, 시간의 야간 및 휴일근로 만 적용 단체 추천연수생 산업체 관련기관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 최저임금 보장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 0 0 연수취업자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노왕3권 보장 × 동관계법 적용 화지임금 보장 출입국 관리법 노동관계법 적용 또는 법적보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근거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음 p 157 160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지위 참조

□ 초과체류자(미등록외국인노동자)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이 체류기간을 초과한 근로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불법 취업이 되어 발견시 강제 출국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불법취업이라 하더라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노동법상의 권리구제가 우선되며 체불임금 청산, 산재보험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불임금 등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후에는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될 수 있다(외국인근로자민원처리지침, 근기68201-691, 2000. 3. 10).

▶ 취업생활에서의 불이익 구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30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자를 해고시키거나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우선 본인이 직접 항의하고 각 단체나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해고를 당해도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등은 모두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며, 만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시킬 때,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다 (같은법 제32조).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사용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다.

노동부에 진정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임금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뜻이다. 노동부에 진정하면 담당관리는 사용자를 불러 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게 되는데, 이 과 정에서 많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 는 사용자도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노동부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그러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정부에 벌금을 내게 된다.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노동부에 진정했는데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외국인이 알기에는 어렵고 복잡하며 소송을 제기하여도 회사가 부도났다거나 사업주가 재산이 없을 때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 단 상담지원단체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 상담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상담지원단체는 민간기구로서 법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은 아니어서 어디까지나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청 혹은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사용자가 끝내 임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 해서 상담지원단체가 사용자에 어떤 법적인 처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 3년이 지난 임금은 받기가 힘들다. 임금은 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임금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에는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빨리 조치를 취라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를 입은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의 임금 70%(휴업급여), 장해보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산재신청절차는 회사나산재를 당한 당사자, 혹은 그 가족이 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며 외국인노동자가 이해하고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울수도 있다. 때로는 회사에서 이미 산재신청절차를 밟고 있지만 피해 외국인노동자에게 일일이 설명해주지 않아 정작 당사자가 내용을 몰라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일단 산재를 입었을 때에는 노동부나 단체를 찾아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직업으로 인한 질병이 생겼을 때

한사업장에서 몇 개월간 일을 하였는데 전에 없던 질환이 생기고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아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직업병에 대해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 직업병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문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아야 직업병여 부를 밝혀 낼 수 있다.

□폭행이나 감금을 당했을 때

폭행, 감금을 당했을 때에는 일단 그 장소를 빠져 나와 관계기관 및 각 단체에서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폭행을 인한 간단한 상처라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 첨부하는 것이 좋다.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된다. 다만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수리를 지연할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임금을 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계약 해지 통고를 한후 당기후의 1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민법 제661조 규정에 의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 대하여는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

□임금체불로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이름/주소/전화번호/사장이름을 확인하도록 한다. 체불된 임금 때문에

노동부나상담지원단체로 가게 될 때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회사의 명함도 구할 수 없고, 한국어도 전혀 모를 경우에는 회사에 있는 한국인 동료노동자에게 위의 사항들을 적어달라고 하여 위의 사항들을 알아두는 것이 임금체불을 빨리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동부나 지원단체를 찾아갈 때

권리침해를 당하거나 애로사항(어려운 상황, 문제)에 부딪쳤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노동부 및 지원단체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이럴 때는 몇 가지사항을 준비해 가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한결 빠르고 쉬워진다.

- 회사이름/회사주소/전화번호/사장이름
- •월급봉투, 병원진단서 등과 같이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서류
- 문제의 내용을 알고 있는 증언이나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
-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노동부 및 지원단체 방문

➡ 여성근로자의 보호는?

여성근로자는 육체적, 생리적인 특성과 모성의 보호,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인정되므로 근로조건 결정시 이러한 보호 요건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한국의 법은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 유해 위험한 사업에의 근로 제한: '임신중' 이거나'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근로를 하지 못한다.
-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를 오후 10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시키거나,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다(같은법 제68조).

제Ⅲ부 참고자료 163

- 연장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도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다. 특히,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 임신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같은법 제72조). 따라서 임 신하였을 경우에 자신의 업무가 너무 힘들다면 다른 하기 쉬운 업무로 전화시 켜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게 월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같은법 제71조). 직종, 근로시간 및 개근여부 등에 상관없이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등을 포함한 모든 여성노동자에게 생리휴가를(생리여부의 사실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여 쉬게 될 경우 사용 자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부가급여는지급 되지않는다). 단, 임신, 폐경 등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 생리휴가는 1개월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1개월 이 지날 경우 사용 권리는 소멸되고 적치되지 않는다.
- •육아휴직제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휴직기간은 1년이며, 영아가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 중 고용보험을 통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월 30만원 지급된다.
- •육아시간의 부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외국인근로자들은 회사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노동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 서는 안 된다(같은법 제101조). 또한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를 피하여 기숙사를 설치하여야 하며, 남성과 여성을 같은 방에 기숙하게 해서 는 안 된다. 근로자는 공장 기숙사의 안전시설이나 잠금장치 등이 허술하여

불안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강제로 유흥업소로 가게 되었을 때: 여성 외국인노동자 중에는 본국에서 계약한 것과는 달리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거나 강제로 매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여성 외국인들이 유흥업소로 팔려가서 강제적으로 매춘에 내몰리게되는 것은 한국에서도 심각한 인권침해사례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런 사례가 밝혀지면 관련자들은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원단체 중에는 이런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해두고 보호해 주는 곳이 있으니, 만약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지원단체(별첨주소록참조)를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한다. 또한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목격한경우 지원단체로 찾아가 상의하는 것이 좋다.

▶ 사적보험(의료공제회)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고통 중의 하나는 몸이 아플 때에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의료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들은 소위 '일반수가'를 내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질병으로 한국인이 입원할 때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청구되는 전체 비용(본인부담금+의료보험관리공단부담금)보다 2~2.5배를 더 내야 한다.

이에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는 제도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질병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통해 세계의 평화를 일궈 가는 일꾼으로 길러내기 위하여 1999년 설립, 29개 지부와 640여개의 의료기관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의료공제회에 가입된 회원은 1차 진료기관인 개인병원에서 총 진료비의 30~40%의 비용만 부담하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종합병원에는 40~50% 할인된 금액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공제회에 가입한지 3달이 지난후 입원, 수술을 받게 되면 할인받은 종합병원의 치료비에서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공제회는 모든 병원에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 노동자

의 의료를 돕는 지정 병원에서만 적용이 되니, 병원에 가기 전에 가까운 의료공제 회 지부 상담소에 연락하여 적합한 진료 기관을 소개받아야 한다.

의료공제회에 가입하려면 가입비 5,000원과 첫 달 회비 6,000원(2003년 5월 기준) 과사진 2장, 여권 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를 방문해야 한다.

• 문의: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www.mumk.org (100-846)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26 상지빌딩 704호 (T) 02-2263-0516~7 (F) 02-2263-0886

→ 각 지역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회원상담소

단체명	주소/전화번호/팩스
<u> </u> 갈릴리아	(425-849)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1동 843 인세연립 다동 201호
[설틸디아 	031-494-8411 / 031-494-8483
게르방	(411-450)경기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산 112번지
/11 <i>二</i> つ	031-921-6979 / 031-921-9102
경남창원외국인노동자상담소	(641-846)경남 창원시 팔용동 17-11 3
18 日 18 日 1 日 1 日 1 日 1 日 1 日 1 日 1 日 1	055-277-8779 / 055-277-8744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	(506-824)광주 광산구 월계동 816-11
경구취속 한고공자센터	062-971-0078 / 062-971-0079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700-807)대구 남산4동 2635-5 대구구민교회(내)
M A A L L O A O B L	053-653-0696 / 053-653-0694
	(420-022)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039-1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근로자종합복지회관 3층
	032-654-0664 / 032-668-0077
서울외국인노동자센타	(100-542)서울 종로구 창신2동 130-102
시물러속한고증자센터 	02-3672-9472 / 02-744-3594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	(153-801)서울 금천구 가산동 146-1
/중국동포의 집	02-863-6622 / 02-863-6633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461-825)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7288-11
/중국동포의 집	031-756-2143 / 031-757-8093
 성동외국인근로자센타	(133-030)서울 성동구 홍익동 147-22
항상취속 한민보기 센터 	02-2282-7974 / 02-2282-7984
수워외국인노동자쉮터	(441-800)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86-2 2층
1 천위국 단포 6 시 됩니	031-228-2789 / 031-228-2789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타 -	(336-012)충남 아산시 온천2동 481 신우회관 3층
^ F한커곡 한고중사시전센터 	041-541-9112 / 041-548-9877

단체명	주소/전화번호/팩스
레그이그이 도기시다.	(700-807)대구 남산4동 2635-5 대구구민교회(내)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053-653-0696 / 053-653-0694
이사이그이 도기계다	(425-846)경기 안산시 원곡동 791-4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031-492-8785 / 031-492-4722
0.010.51 5-10.17	(430-832)경기 안양 만안구 안양4동 676-136
안양이주노동자의집 	031-444-2876 / 031-446-2876
세리미 전 세티	(140-210)서울 용산구 한남2동 736-3
엘림미션센타	02-796-0170 / 02-796-8895
에비 이 소	(440-861)경기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100
엠마우스 	031-257-8501 / 031-257-8535
시즈) 도기선선계다	(472-809)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694-16
이주노동자여성센타	031-591-2270 / 031-591-2273
이그이 모두가 사로이 기	(472-843)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2리 산33-9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 	031-594-5821 / 031-594-5824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타	(415-030)경기 김포시 북변동 411-9
외국인도농사인전군와센터 	031-997-2301 / 031-997-2309
이그이 토카이되으아된모이	(140-011)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303-2 한성빌딩 401호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02-795-5504 / 02-749-6055
이번 그 나 이 이 그 이 게 다	(157-882)서울 강서구 화곡7동 352-46
원불교서울외국인센타 	02-699-9943 / 02-699-9943
	(480-844)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 214-76
의정부외국인근로자센타	한덕빌딩 2층
	031-848-0266 / 031-848-0267
인천외국인노동자센타	(401-022)인천 동구 화수2동 35-47
인선외국인도중사센타 	032-766-4484 / 032-766-4484
일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	(411-350)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62-1
발산되지인도중사정답도 	031-908-5004 / 031-908-5004
조선족복지선교세타	(120-092)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28-6
조선국국시선표센터 	02-723-4822~3 / 02-723-4827
진천복지선교센타 외국인형제의집	(365-803)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319-1
신선국시신교센타 외국인영세의섭 	043-534-6251 / 043-533-5983
키이이미노세서그취	(330-944)충남 천안시 신부동 812 신부빌딩 6층
천안임마누엘선교회	041-565-5801
천주교의정부 이주노동자상담소	(480-120)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83-6 녹양동천주교회
전구파의성구 이구도공사상담조 	031-878-6926 / 031-878-6927
	(450-151)경기 평택시 비전1동 633-3 2층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031-618-0965 / 031-618-0965
퍼질이 기	(142-891)서울 강북구 수유5동 45-23 2층
평화의 집	02-997-5230 / 02-997-6231
	(110-470)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기독교연합회관 1110호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02-708-4181 / 02-708-4186

단체명	주소/전화번호/팩스
한국CLC부설	(449-925)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217-1 삼례빌딩 1층
이주노동자인권센타	031-339-9133 / 031-339-9137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타	(405-835)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70-3
[한국의구조공자인전센터	032-4288-114 / 032-428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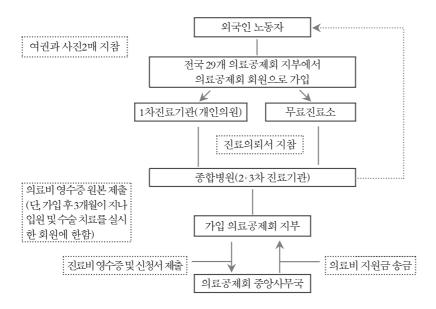


그림3-1 의료공제회 이용안내도

>>> 무료진료소 안내

단체명	연락처	정기진료
외국인노동자의집/동포의집	031-756-2143~4	매주 일요일 14:00~17:00
외국인노동자 살롬의집	031-594-5821	격주 토요일 19:00~23:00
엠마우스	031-257-8501	매월 셋째주 일요일 14:00~16:00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032-654-0664	매월 둘째, 넷째주 13:00~17:00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031-492-8785	매월 넷째주 일요일 14:00~17:00
원곡외국인노동자진료소	031-494-8411	매월 둘째, 넷째주 14:00~17:00

단체명	연락처	정기진료
조선족복지선교센타	02-723-4882~3	매월 넷째주 일요일 14:00~16:00
일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	031-908-5004	매월 둘째주 일요일 16:00~18:00
대구 가톨릭근로자회관	053-253-1313	월 2회 진료 12:00~15:00
명성교회	02-3427-3031~5	매주 일요일 오후 4시간씩 진료
희년의료공제회	02-861-4394	매주 일요일 16:00~18:00
라파엘클리닉	02-763-7595	격주 일요일 14:00~18:00
선한이웃 클리닉	02-2274-0161~3	매월 첫째, 셋째주 15:00~18:00
봉은사선재마을 무료진료소	02-549-1709	양방, 치과-매주 일요일 10:00~
		16:00
		한방진료-매주 수요일 10:00~13:00
글로벌케어	02-654-7260~1	매주 2회 4시간 진료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	02-458-2981	매주 일요일 14:00~16:00
갈릴리교회	02-857-9135	매주 일요일 오후 14:00~18:00
평강교회	02-902-1227	매월 셋째주 일요일 15:00~18:00
실로암 의료선교센터	017-293-2603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뜸사랑	02-2269-9665~6	매주 일요일 13:00~16:00
성산장기려 기념사업회	02-536-6452~3	월 1회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053-653-0696	둘째, 넷째주 일요일 14:00~18:00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의료진료단	02-3275-3023	매월 격주 토요일 14:00~17:00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02-583-7505	월 1회
지구촌교회의료선교부	031-264-9191	매주
새문안교회	02-732-1009	마지막주
복지피부과의원	관리실 02-812-1894 진료실 02-812-0366	매월 첫째주 일요일 09:30~17:00
성동외국인근로자센타	02-2282-7975	매월 셋째주
외국인노동자의료복지협회	031-729-5852	매주 일요일 13:00~19:00
대구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외국인노동자 의료지원센터	053-615-9191	
다일천사병원	02-2212-8004	
의료선교협회 부속 의원	02-723-0206	
서울선교교회	02-458-2981	매주 일요일

□자료출처 및 내용감수

의국인노동자를 위한 생활매뉴얼 (한국국제노동재단)/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제III부 참고자료 169

→ 무엇이 남녀차별인가?

'남녀차별'이란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남녀차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에서의 차별: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 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 모집 채용, 임금, 승진 배치 퇴직 등). ➤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 의 차별: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남녀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예: 근로자 복지제도 실시, 금전대출 등의 금융제공 등). ➤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차별: 공공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예: 공공사업수혜자의 선 정기준, 허가 신고 인가, 기타 법과 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구별 배제 제한하는 경우 등). ➤ 기타 해외연수 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 대상자 선정 및 교육내용 교과과정 편성 등 교육에서의 차별 등이 있다(여성부 고시 남녀 차별금지기준 2002년 11월 4일 참조).

➤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기타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기타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업무 고용기타관계'라 함은 직업으로써 행하는 직무관계, 임금을 받고일하는 관계 및 이에 준하는 관계를 말한다. 또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관련하여'는 행위장소가 직장 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

자또는 근로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기타 업무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밀하며, '성적 언동 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및기타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언어나 행동을 말한다. '고용상의 불이익'은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성희롱 금지대상?

-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에서 상급자, 동료, 하급자, 협력 업체종사자, 파견종사자 등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학습자나 교육 응시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에 있어서 이용자 등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법과 정책의 집행시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는?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여성부는 2002년 10월 28일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을 개정 고시하였다.

■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 당해 기관의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당해 기관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제Ⅲ부 참고자료 171

- 공공기관의 장이 취해야 할 성희롱 예방조치
- 성희롱관련 상담 고충의 처리를 위한 전담창구 마련
-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및 교육훈련 지원
- 성희롱 고충 전담창구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
- 성희롱 예방 교육 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내용
- 법 제2조제2호에 근거한 성희롱의 정의
- 공공기관장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에 관한 사항
- 고충전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고충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정신청은 어떻게 하나?

여성부는 성희롱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성희롱임을 결정하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 를 권고한다.

- 시정조치 권고내용
 - · 남녀차별(성희롱)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 · 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한 조치
 -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따라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에 시정권고할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당사자의 피해의 정도, 과실유 무,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결정하므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모든 성희롱사건에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성폭력(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성폭력범죄'라 함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성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법기관이 담당하며, 전국 경찰관서에서는 성폭력 등 대여성범죄 피해상담을 위하여 여성상담실(25 해당경찰서 국번+0118)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부에서는 모든 여성들이 긴급한 상황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담할 수 있도록 국번없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성폭력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각 지역에 성폭력 상담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피해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병원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로 안내하며,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필요한 협조 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 현황 및 시설의 기능은?

전국에 상담소 357개소, 보호시설 5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시설현황에 대한 세부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 '여성폭력방지종합정보'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 가정폭력 상담소 주요기능
 -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
 -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 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 력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 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협조와 지원 요청
 - 경찰관서등으로부터 인도 받은 피해자 임시보호

제Ⅲ부 참고자료 173

- ·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 보호시설
 - 위 상담소의 기능
 - 피해자 일시보호
 - · 피해자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
 -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모성보호법률이라?

모성보호법률이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 모성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말하며, 동 법률은 노동부소관 법률이다. 이 법의 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세에 부응하는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보다 많은 여성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모성보호제도가 정착돼 자녀 양육의 부담이 경감되면 여성의 사회참여비율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모성보호법의 주요 내용①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하고 60일간의 급여는사용자가 지급하며 30일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토록 하고 있고② 육아휴직기간동안에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며(1년이내),③ 임신중이거나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과 18세미만자는 도덕성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④ 18세미만자는 오후 10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와 휴일에는근로 금지

하지만 공무원(행정직 등, 군인, 경찰, 사립학교 교사포함)의 경우, 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출산휴가 연장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폭언을 당했을 경우

폭언을 당했을 경우, 이는 특별히 여성과 관한 문제만은 아니지만 대처방방은

다음과 같다.

폭언의 경우 공연성이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다중이 있는 장소에서 폭언을 들었다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으며, 다만 증인이 없을 경우는 처벌이 곤란하다. 폭언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인을 세우고 가해자의 주소지 또는 직장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고소장 제출 절차는 사이버 경찰 청범죄신고센타의 형사편 게시판에 고소장을 작성하는 양식과 절차에 대한 안내가 올라 있다.

➡ 가사노동위성계정이란 무엇인가?

전통적인 국민소득통계는 시장생산에 초점을 맞춘 결과 주부의 가사노동 등 비시장생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가사노동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평가는 물론 경제의 성숙단계가 다른 국가간의 경제규모 비교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보수 가사노동 등의 경제활동을 생산활동으로 인정,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여 전통적인 국민소득계정에 반영함으로써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따른 국민소득통계에 미치는 영향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가사노동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을 구축함으로써, 가사노동을 국민계정 (national account)의 틀속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설정하고 기존 국민계정 체계 내에 반영하지 않아 설명할 수 없었던 가사노동의 다양한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가사노동위성계정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 호주제 폐지 관련 현황

*GDP 체계에 혼란을 주지 않고 국민계정의 분석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정, 특정의 사회적 관심분야에 대해 국내총생산 등 중심체계에 과도한 부담이나 혼란을 주지 않으면서 신축적 인 방법으로 국민계정의 분석능력을 확대할 필요에 의해 편제하는 계정으로 환경계정, 관광계정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 국가 중 3위에 이르고, 그에 따라 재혼도 급증하는 등 가족의 생활과 가치관이 급변하고 있는데 호주제 등 가족제도는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실생활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000년 10월, 11월에 법무부와 국회 최영희 의원 등이 제안한 민법개정안이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주요내용은 ➤동성동본 금혼 폐 지,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 ➤ 친양자 제도 신설(양자 입양시 자신들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함,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경우도 같음. 단, 친양자 될자가7세 미만일 것) 등이다(※ 현행 민법상 자녀는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으 며, 재혼한 배우자[처]의 자녀는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없다).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조항은 ①호주승계의 남성우선 순위 ② 처의 夫家入籍 우선 원칙 ③자녀의 父家入籍 및姓과本 ④혼외자녀 입적시의 차별 등이다.

여성계와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가족내의 남녀평등의 이념실현, 호주제의 피해 자 다수가 여성, 아동이란 점에서 호주제의 전면적인 폐지를, 유림 등에서는 전통적인 가족개념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호주제의 유지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여성부는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성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제도의 도입, 호주중심의 호적제도의 성평등한 편성방안 마련, 한부모가족 등 기존의 부계중심적 사회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다양한 가족의 인정과 지원을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시행하게 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호주제 폐지를 비롯한 가족법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제도 관계부처, 관련단체,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❷여성의 권리 침해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 등에서의 남녀

차별과 성희롱에 대해 상담 및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 (137-756)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0-3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 (T) 1544-9995(지역번호없음), 02-3477-4076~7 (F) 02-2106-5227
- → 여성부「여성폭력방지 종합정보」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성매매) 등 방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성매매, 일본군위안부: 권익증진국 권익기획과 02-2106-5252~5
- 1366, 가정폭력, 성폭력: 권익증진국 인권복지과 02-2106-5262~5

⇒ 여성부「여성사회교육정보」

전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357개소 및 보호시설 57개소 등의 시설현황에 대한 자료가 게재되어 있다.

→ 여성부「여성인력개발센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전국 51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지역인력 시장에 부응하는 교육훈련, 다양한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 취업교육·취업상담 및 알선기능, 직업능력 개발 훈련사업, 사회·문화생활사업지원, 저소득층 여성중 심 취업상담 및 알선, 근로여성 고충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자료출처 여성부 홈페이지 moge.go.kr

성적소수자

제Ⅲ부 참고자료 177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신뢰이다. 특히 성적소수 자와의 상담에서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다. 성적소수자들은 사회적 차별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도 커밍아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사리 진정이나 상담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동성애지들이 차별 문제로 국가인권위 등에 개인자격으로 진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렇지만 직장에서의 차별 등의 이유로 상담을 원하는 동성애자들은 많이 존재한다.

어렵게 결심을 하고 상담을 요청한 동성애자에게 섣불리 개인 신상 등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동성애자들은 상담자의 태도에서 신뢰가 느껴지지 않으면 상담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 하려다가 자칫 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각종 인권침해, 차별을 당한 성적소수자의 문제를 청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면 동성애자 등 성적소수자가 상담원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그 단체로 하여금 상담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동성애자 전문상 담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담센터들은 드물다. 동성애자 인권단체에서 그나마 성적 정체성문제나 동성애자 등의 성적소수자가 겪는 사회적 차별, 직장에서의 차별, 그리고 동성애자라는 것을 빌미로 자행하는 협박이나 사기사건 등을 전화나 대면 을 통해 상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단체들은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법적 대응 등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단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들이 필요한 정보와 해결책들에 대해 나름의 방법 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은 상당한 안도감을 느끼기도 한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상담의 요청을 위해 상담 핫라인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핫라인은 동성애자 등 성적소수자에 대한 상담전용전화이고 의료, 법, 정체성 상 담 등 성적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동성애자 인권연대 www.outpridekorea.com

■ 성적소수자 관련 상담처 HOPE OPENS TOMORROW(H.O.T LINE) www.lgbt119.org(준비중) 성적소수자 전용상담전화: 02-2215-9110 성적소수자 관련 단체정보는 '국내 시민단체목록'(p. 273) 참고

경찰관련 인권 사항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돼 있으나 방법순찰활동, 시위질서 유지, 불심검문, 음주측정, 교통질서 유지 활동 등 일반 시민이 경찰을 만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모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조사경찰 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상황별로 대응방법을 정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준수하게끔 하며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스스로 막기 위한 감찰의 강화, 청문감사관제도 등을 도입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인권교양자료집』을 제작・배포하고 수사교육 과정에 인권강좌를 개설하고, 인권강사를 초빙하여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등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고소, 고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에도 경찰과 관련한 많은 진정이 제기되고 있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국민의 관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인권침해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국민의 인권의식이 신장하면서 그내용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경찰의 폭력, 가혹행위는 물론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불공정한 수사도 인권침해로 생각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 및 가혹행위가 가장 많으며, 직권남용,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III부 참고자료 179

Ⅲ 경찰활동과 인권쟁점

- 수사와 인권: 체포 수색 수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들
- 구금과 인권: 유치장 보호실의 운영, 신체수색 관련 쟁점들
- 경비 정보 활동과 인권: 집회 시위,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도 감청 관련 쟁점들
- 경찰장비 사용과 인권: 경찰장비, 총기 사용 관련 쟁점들
- 즉결심판과 인권: 즉결심판 관련 쟁점들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사 구금 관련 인권

재심, 일사부재리, 판결의 공정성, 체포시 절차, 적법절차, 미성년자에 대한 배려, 보석, 고문금지, 법률구조, 배상, 법 앞의 평등, 사생활보호, 공정한 법원, 소급입법 금지, 처벌의 한계와 방법, 사형금지, 인신보호, 고문금지, 구금(억류)에 따른 절차, 무죄추정 등

Ⅲ 미란다 원칙

- 미란다 원칙이란
 -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5조(자기부죄 거부의 특권)를 근거로 Miranda v. Arizona 사건의 판결(1966)에서 확립됨
 - 고지내용: 체포(또는 구속)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미란다 원칙,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 미국의 미란다 판결 이후 미란다원칙 고지가 수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많은 조사 결과 '수사가 어려워져 전보다 많은 범죄자들이 무죄 석방될 것'이라는 우려는 말 그대로 기우인 것으로 판명됨
 - 결국 수사력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수사관행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변호인 조력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
 - 공판단계보다는 수사단계에서, 수사단계 중에서도 가능한 한 초기단계에서 보장
 -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로 얻을 수 있는 것들: 피의자의 인권보장,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적 진정 성립,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 현재 경찰에서 시행중인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지침'의 보완: 변호인 참여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변호인을 구하지 못한 피의자를 위한 변호사지원방안 마련

❷ '경찰과 인권' 상식

⇒ 영장 없는 체포

경찰관은 법적 근거 없이 어느 누구도 체포해서는 안 되며, 체포할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한 원칙 2,8,10,11). 경찰관은 법률에 정한 요건에 부합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범죄자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하는 영장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법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체포사유와 피의자의 권리를 명확히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체포 이후 조사나 보호유치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영장 없는 긴급체포가 인신의 구속이라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영장 없이 물건을 찾기 위하여 수색하고 물건을 압수하는 것이다. 이는 인신을 구속하는 체 포와 달리 신체의 자유에 대해 직접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 고문 등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고문은 인간의 몸과 정신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므로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 금지협약'(일명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어떠한 경우이건 고문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문은 시국사범들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여타 형사사건에서도 자백을 이끌어 내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인식되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수사관행이다. 그러나 경찰관은 결코 어떤 경우에라도, 고문 혹은 가혹행위를 행하거나 조장하거나 묵과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어떠한지 나 명령도 거부하여야 한다(고문방지협약제2조, 자유권규약제10조, 아동권리협약제37조, 유엔법집행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급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한 원칙 1·6·21). 여기서 '잔인하거나 비인간적,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개념에는 일시적으로 눈이나 귀를 가리는 등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각작용을제한하거나 현재의 위치나 시간의 흐름 등을 알지 못하게 하는 등 모든 종류의육제적, 정신적 가혹행위까지 포함된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차원에서 환자의

진료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구속피의자의 경우 구금시설 내의 의료시설에서 충분한 치료가 불가능하면 외부의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악용, 구속 수감된 피의자가 병원 치료를 핑계로 경찰관과 병원에 동행했다가 감시가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이런 사건의 방지는 다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이유로 환자의 치료기회를 막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수사 과정의 가혹행위 등 불공정 수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처리경찰관서의 차상급관서인 지방경찰청에서 재수사를 한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 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

인권 존중의 역사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존중을 우선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여성, 피난민, 기출인 및 사회적 소수자 등 폭력과 협박의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유엔 법집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1조·제2조, 북경선언과 행동강령 2.2.2). 또한 경찰은 체포 즉시 체포된 사람이 가족 및 변호인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여야 한다(모든 형태의 역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15, 16,17, 18, 19, 24, 25).

- 경찰에서는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의자에게는 무료 통역을 통해 체포된 이후의 법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외국인 피의자에게는 즉시 관계국의 영사 내지 외교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 모든 체포된 난민과 망명 신청자에게는 체포의 사유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 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대표자나 난민지원기관과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

- 체포된 자가 자신을 난민 혹은 망명 신청자라고 밝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본국으로의 송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 경찰관은 반드시 이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나 기타 난민지원기구들과 접촉할 수 있 도록 해 줄 의무가 있다.
- 구금 직후, 피구금자의 건강상태와 고문· 강간· 성적 학대 등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의 적절한 검진이 있어야 한다.
 - 그 이후, 필요할 때마다 의료검진과 치료를 제공한다.
 - 모든 피구금자와 그 변호인에게는 제3의 의사로부터 검진과 의학적 소견을 제공받게 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 모든 피구금자는 결코, 비록 본인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는 의학 혹은 과학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여성 피구금자는 여성의사로부터 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출산 전후에 받아야 하는 모든 진료와 조치를 보장한다. 임신한 여성에 대한 장구 사용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되며, 결코 산모나 태아의 건강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출산중에는 결코 결박당해서는 안 된다.

▶ 피의사실 유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발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 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 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의 사실을 발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

제III부 참고자료 183

- 또한 발표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절차에 따라 행해야 한다.
-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

>> 피의자 알몸수색

피의자에 대한 알몸수색, 특히 여성피의자에 대한 알몸수색은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로 비판받아 왔다.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정밀 신체수색은 ①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은닉한채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②다른 방법 예컨대 외부로부터의 관찰 또는촉진에 의한 검사 등으로는 위물품을 도저히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이유가 있을 때 ③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실시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 이를 초과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인권침해가 된다.

앞서 이야기된 바와 같이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알몸수색의 경우 다음 사항이 지켜져야 한다.

- 정밀신체검사의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신체검사의 방법을 임의로 선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정밀신체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외표검사, 금속탐지기에 의한 검사를 거친 이후 최종적인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정밀신체검사는 인격권 등 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한다.

➡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경찰관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자,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자,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위하여 상대방

* 본문의 185 페이지

표3-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불심검문의 법적 규정과 문제

	법적규정	문제
주체	경찰관	의경 또는 전경이 수행하는 불심검문
(पोक्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제한	일제 검문검색
(병식	질문····································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답변 제3조제7항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음	검문 대상에게 답변 강요
•		흥기소지 외의 것에 대해 강제로 조사
수지품 조사, 제3조 제3항 ,)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흉기소지 여부만 조사	소지품검사 강요를 위해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 두는 경우는 사 ਂ 실상 불법구금에 해당
정지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정지를 위해 길을 막거나 추적하거나 몸에 손을 대는 정도	멱살을 잡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 (도해 오그 제3조 제7한 제4한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 방해가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부근의 경찰서 지서 파출소 또는 출	
6 8 포트 게 3 보게 2 8 세 7 8 제 5 항 제 6 항 ·	장소에 동해 요구 대상지는 동행 요구 겨절 까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 고지 대상자가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6시간을 초과하여 당해인을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음	

관련 법규 경찰관 직무집행법

검문소 운영규칙 경찰청훈령 제346호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검문경찰은 거동이 수상하거나 범죄의 용의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그 소지품을 검색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과로상태의 운전 등을 단속하기 위한 교통검문은 불심검문과 구분되며 경찰관은 검문 대상자가 범죄피의자임이 밝혀지는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수사절차의 일환으로 그에 대한 강제연행 체포와 구속 과 유치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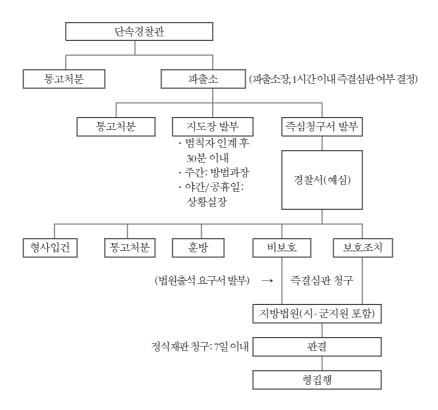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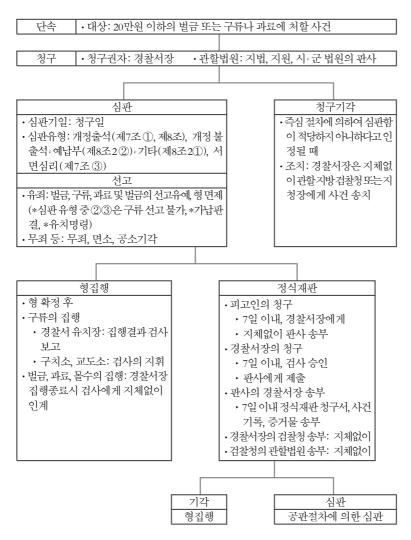


그림3-2 즉결사범에 대한 경찰의 단속처리 절차

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자동차에 대한 검문을 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불심검문은 모든 경찰관이 그 직무로서 행할 수 있는 행정경찰 작용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다.

이렇게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해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는 때에는 현행 범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체포를 할 수 있다. 또 경찰관이 동행요구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행을 요구한 상대방을 비롯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처벌을 받게 된다. 동행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 서에 머물게 한 경우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죄가 성립된다.

또한 불심검문의 한 형태인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



※ 관련 법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법원조직법

그림3-3 즉결심판 절차

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수사방법으로 피의자 신문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조사, 구속영장의 발부와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동행요구 거절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단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동행요구를 거절하고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더라고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동행 이후에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또한 동행요구를 위한 사전적 절차로 경찰관의 신분증명, 동행의 목적과 이유 설명, 동행장소의 고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 위배되는 경찰관의 임의동행 행위 역시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된다.

→ 즉결심판사건

즉결심판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하나의 예외로서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형사사건에 한한다(즉결심판에 관한절차법 제2조, 법원조 직법 제34조제1항제3호). 그러나 즉결심판제도는 경미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미범죄자에 대해서 경찰은 원칙적으로 비보호(귀가조치) 상태에서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교정관련 인권 사항

올바른 법정신이란 법 위반자들에 대해서도 법의 보호를 거둬들이지 않는 철저한 평등사상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범법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겠지만 법은 합의된 제재 이상의 것을 대상자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자유의 박탈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 형벌이며 그에 추가되는 잔인한 고통은 문명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근대 형사사법의 기본이념이다.

구금시설 내의 인권 쟁점은 다양하다. 생활의 모든 부분이 기본적으로 열악하

제III부 참고자료 189

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시비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교 적지주 거론되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대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가장 두드러 진 쟁점은 물리력 사용과 징벌 관련 사항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수용자의 건강문 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외부교통과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사항, 차 별처우에 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Ⅲ 구금 관련 인권 쟁점

- 물리력 사용: 계구 사용 강제력 행사 무기 사용 수용자간 폭행, 교도관의 폭행
- 징벌: 사유와 절차, 집행의 문제
- 건강: 의사에 대한 접근성, 국가의 진료 치료 의무, 교정사고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
- 외부교통과 권리구제 수단: 서신발송 도서열람 집필권, 변호사 접견권, 정보공개 청구
- 차별 및 기타 사항: 신체검사, 교도작업, 이송, 관급의류착용 등

➡ 독거수용 상태에서 지속적인 계구 사용은 정당한가

물적 계호의 일종인 계구 사용은 수용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심하게 해치므로 엄격한 요건하에 신중히 행해져야 한다. 이에 행형 관련 법규(계구의 제식과 사용절차에 관한규칙)는 계구 사용의 목적과 요건, 그리고 한계를 정해 놓고 있으며, 판례 역시 필요성과 상당성을 허용 여부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계구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그쳐야 한다는 점, 나아가 교정사고의 위험이 제거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구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계구 사용에서 소위 '비례성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계구 사용의 목적: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의 방지용이며 징벌수단으로는 사용을 금지한다.
- •계구사용의 필요성: 최소한의 범위로 할뿐만 아니라 계속적 심사를 통해 교정 사고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 계구 사용의 한계: 비인도적인 계구 사용과 장시간 사용을 금지한다.

→ 강제력 행사와 무기 사용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강제력 행사와 무기의 사용은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상해 내지 사망까지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행형법은 강제력 행사와 무기사용의 중심 요건으로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 도주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한계로서 사전경고, 사후보고 및 비례성의 원칙 준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구금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강제력과 무기의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그 범위를 제한하여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행형법의 기본 방향이다.

→ 수용자간의 폭행에서 교도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구금시설의 수용자간 폭행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가 모두 중요하다. 이에 행형법규는 수용자들에게 규율준수와 폭행금지를 규정하면서 위반시 제재를 규정하고, 교도소 당국에 폭행 예방을 위한 관리의무를 부과하면서 수용자간 폭행이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교도소 당국의 법적 책임까지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교정시설 관리자에게 죄질 구분 없는 혼거 수용에서 야기될 수 있는 수용자간의 폭행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판시하고, 아울러 수용자들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보다 특별히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등 폭행으로부터 수용자들을 보호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교도관의 폭행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교도관은 구금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계구사용, 징벌부과, 강제력 행사 및 무기사용 등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행형법규에서 규정하는 물리력 사용 이외에 수용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여하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행형법은 규율위반 수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징벌의 종류로서 경고, 도서열람 제한, 청원작업 정지, 작업상여금의 삭감과 금치만을 규정할 뿐, 체벌은 제외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제31조)은 "체형, 암실에 수용하는 징벌 및 모든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징벌은 금지되어야한다"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신체에 대한 위해를 금지하고 있다.

▶ 징벌은 어떤 경우에 부과하는가

행형법은 규율위반 수용자에 대해 구금시설 당국이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징벌의 종류와 징벌사유를 한정하여 행형법상 규정된 종류 이외의 징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징벌사유 역시 행형법의 내용을 근간으로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다. 특히 행형법 제46조제1항이 규정하는 징벌사유 중 제5호, 즉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의 위반'은 구체적으로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의 위반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징벌은 철저한 사법원칙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고, 그절차는 공정·투명해야 할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징벌혐의자에게는 징벌위원회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금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금치의 집행중에 있는 자는 의사의 건강진단을 수시로 받아야 하며, 계구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등 자의적이거나 가혹해서는 안 되는데 된다. 특히 징벌은 갇혀진 공간인 구금시설 안에서 구금시설 관리자들에 의해 실행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남용을 견제·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질병의 예방과 진료에 대한 권리 보장은 어디까지인가

구금시설의 생활환경은 비좁고 열악하기 때문에 질병 발생률이 높다. 따라서 수용자는 일반사회에서보다 더 많이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구금시설은 '골병드는 장소'가 되어 버릴 수 있다. 간혹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의 부재를 마땅한 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구금의 내용 중에 '아픈 것을 감수해야 할' 손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수용자의 신변을 인수한 이상 질병의 예방과 치료는 당연히 국가의 몫이 된다.

모든 수용자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와 제25조에서 보 장된 수용자의 '의사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어느 때라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의무관은 같은 규칙 제24조에 따라 수용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때 다른 교도관도 이러한 의무관의 업무를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 서신발송의 제한은

서신교환은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 따라서 구금의 목적상 수용자의 서신 교환이 일반인보다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원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하여 서신교환의 제한은 행형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정한 사유(①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② 도주·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③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④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서신교환을 제한하는 것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불가피성의 원칙)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 그쳐야 하며(최소한의 원칙), 제한되는 기본권과 제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상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이익형량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명백,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 도서반입과 검열은 어떤 원칙에서

신문과 도서열람은 알권리의 충족뿐 아니라 교정, 교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조기준규칙 제40조는 열람권보장뿐 아니라 적극적 환경 조성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비해 더 많은 보호를 요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이 다른 기본권의 제한에서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신문이나 도서 열람 제한은 법률에서 정한 사유(① 범죄 재발예방, 구금의 목적인 도망·중거인멸의 방지, 교도소 내의 규율 및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② 구금목적의 달성이나 교도소 내의 질서유지와 보안에 대한 구체적 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소장 작성을 위한 집필권 요구를 제한할 수 있는가

수용자의 집필권도 역시 기본권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원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위임을 받은 명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특히 소장 작성은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이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행위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볼 여지가적으므로, 소장 기재 내용에 다소 과장이 있거나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제소 자체가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소장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송요건은 전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소송요건 불비를 이유로 소장 집필을 불허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수형자에게는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수 있는가

행형법과 행형법 시행령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절대적인 접견권을 보장하고 있다. 교도간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녹취하지 못하고(동법제66조제1항)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간의 접견시간 및 접견횟수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행형법시행령제54조,제56조). 그러나 위와 같은 미결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은 헌법(제12조제5항) 및 형사소송법(제34조)에 근거한 것이고,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서는 이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실무에서는 변호인과의 접견을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접견시간 및 접견횟수 제한을 엄격히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소장은 수형자의 교화상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견시간, 횟수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접견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행형법시행령제57조)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접견시간, 횟수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접견을 허가할수 있으므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행형법시행령제57조)이 보장될수 있도록 접견시간, 횟수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접견을 허가할수 있다.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에따르면 재판청구권이란, 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② 법률에 의하여, ③ 신속한 공개재판과 ④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공정한 재판이란

정당한 재판으로서, 특히 당사지주의와 구두변론이 적용되는 민사사건에서 당사 자에게 충실한 공격과 방어가 전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용자가이를 이용하여 도주하거나 사고를 야기하는 등 형을 집행하거나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알몸 신체검사는 적법한가

수용자에 대해 대한 신체검시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방법은 피검자의 명예와 수치심에 손상이 덜 가는 방법 부터 사용해야 한다. 즉, 외부로부터의 관찰→촉진이나 탐지기에 의한 검사→겉 옷을 벗고 가운을 걸치게 한 상태에서 속옷을 벗어 제출하는 방법 순으로 시행되어 야 하며, 알몸 신체검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타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검신기 활용 및 또 다른 신체검사 방법의 도입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 교도작업 중 생긴 부상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교도작업은 교정행정의 목적 수행상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하여 행형법도 교도작업에는 임금이 아닌 상여금을 지급하며(제39조), 교도

제III부 참고자료 195

작업중의사고에 대해서도 배상금이 아니 위로금 혹은 조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제40조). 하지만 교도작업이 국가기관인 구금시설의 관리하에 실행되는 것인 한, 작업 중사고에 대해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규정하는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논리는 교도작업 중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관리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경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판실무에서도 적극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 미결수용자 의사에 반한 관급의류착용 조치는 적법한가

행형법규는 수용자에게 원칙적으로 청결하고 위생적인 관급의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소장의 허가에 의해 자비부담의 의류도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수형자와 동일하게 다룰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미결수용자에게도 관급의류착용을 원칙으로 할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의 경우 수용시설 안에서 생활할 때와 밖으로 외출할 때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관급의류를 원칙으로 하더라고 후자의 경우에는 사복착용을 제지할 수 없도록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9. 5. 27. 97헌마137).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에 관한 규칙(법무부훈령 제407호)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이 규칙은 미결수용자가 법정에 출석하거나 검찰조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 등으로 외출하는 경우에 사복을 착용할 수 있게 하고, 사복의 종류로는 정장, 점퍼, 셔츠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수량은 겉옷, 받침옷, 신발, 부속용구 각 1점만을 허용하고 있다.

2. 다른 국가기관 이용 안내

법무부 www.moj.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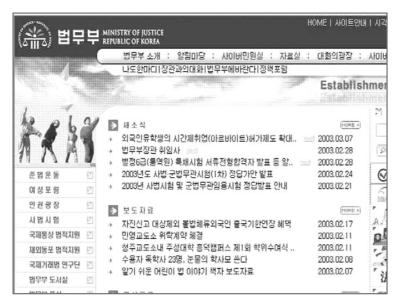
법무부홈페이지에서는 검찰, 인권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내용과 여성, 이동, 장애자, 난민, 이주 노동자 등의 인권관련 안내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❷ 법무부 사이버민원실

▶ 민원신청 관련

□신청

- 우편: (427-720)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법무부 민원실
- (T) 02-503-7023 (F) 02-2110-3079
- 인터넷: 법무부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로 신청



법무부 웹사이트 www.moj.go.kr 법과 생활에 대한 사례별 상세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 첨부서류가 필요한 민원

□검찰

업무명	첨부서류	처리기관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신청서1부	지검, 지청
불기소증명	신청서1부	지검, 지청
공소부제기이유고지청구	신청서1부	지검, 지청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증명	신청서1부	지검, 지청
항고장접수증명	신청서1부	지검, 지청
재항고장접수증명	신청서1부	고검
항고기각증명	신청서1부	고검
재항고기각증명	신청서1부	대검
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	신청서1부	고검
재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	신청서1부	고검
벌과금납부증명	신청서1부	지검, 지청
예납금(가납금)환부신청	신청서1부	지검, 지청
판결문(약식명령)등본교부청구	신청서1부	지검, 지청
보석보증금환부청구	신청서1부	지검, 지청

형사재판확정증명	신청서1부	지검, 지청
형사보상금지급청구	•청구서1부	고검, 지검,
	• 법원의 보상결정서 원본1부	지청
	•위임장1부(위임된 사건인 경우)	
	• 인감증명서2부(위임된 사건인 경우)	
피의자보상금지급청구	청구서1부	지검
압수물 가환부신청	신청서1부	지검, 지청
압수증명	신청서1부	지검, 지청
압수물 열람(등사) 신청	신청서1부	지검, 지청
진정(재사)사건처분결과증명	신청서1부	지검, 지청
재정신청서접수증명	신청서1부	지검, 지청
공판조서열람(등사)신청	신청서1부	지검, 지청
사건기록열람(등사)청구	신청서1부	지검, 지청
같은 피의자(참고인, 고소인) 소재불	 신청서1부	지검, 지청
명으로 인한 기소중지 처분증명	1.9. J. J	7 17E, 7 17 6
기소중지사건공소시효완성증명	신청서1부	지검, 지청
지명수배해재신청	신청서1부	지검, 지청
수색증명	신청서1부	지검, 지청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	신청서1부	고검, 지검, 지청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	신청서1부	지검, 지청
기소중지사건재기사실증명	신청서1부	지검, 지청
출국금지해제신청	신청서1부	지검, 지청
출국금지일시해제신청	신청서1부	지검, 지청
출국금지의뢰신청	신청서1부	지검, 지청
	• 신청서1부	
 마약류사범등에관한 보상금 지급	• 범죄인지관서장의증명1부	지검, 지청
	• 왁성새판의판결등론 또는 중소상등론	
	이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증명서1부	
출국가능사실증명	• 신청서1부	지검, 지청
	• 출국사유증빙서류	

□교정시설 관련

업무명	첨부서류	처리기관
손도장 신청원	신청원1부 손도장을 받아야할 서류1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변호인접견신청	신청서 또는 구두신청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외래사진료허가	신청원1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업무명	첨부서류	처리기관
접견신청	접견원 또는 구두신청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영치금접수(반환)원	신청서 또는 구두신청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영치품접수(반환)원	신청서 또는 구두신청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참관신청	신청서1부	교도소, 보호감호소
출소(재소)신청	신청서1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보호시설 관련

업무명	첨부서류	처리기관
접견신청	접견원 또는 구두신청	소년원, 심사원, 치료감호소
영치금접수(반환)원	신청서 또는 구두신청	소년원, 심사원, 치료감호소
영치품접수(반환)원	신청서 또는 구두신청	소년원, 심사원, 치료감호소
참관신청	신청서1부	소년원, 심사원, 치료감호소
퇴원(가퇴원)증명	신청서1부	소년원
재원증명	신청서1부	소년원, 분류심사원

□출입국관리

업무명	첨부서류	처리기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구두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출장소
	(대리신청의 경우)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신청서 1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여권	출장소
	• 사진3매	
	•수수료1만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구두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출장소
	(대리신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 신청서 1부	서울출입국관리소
등록번호부여	• 여권 또는 국적증서사본 1부	
	•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 신청서 1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록증명서 발급	• 여권 또는 국적증서사본 1부	출장소
	•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의 경우)	
특정국가여행신고	• 특정국가여행신고서1부	공항만출입국관리사무
	• 여권	소, 출장소

업무명	첨부서류	처리기관
송선허가신청	• 신청서1부 • 승선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가족승선의 경우> • 선원명부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카드사본1 부 • 선장의 승선동의서1부 <선박등의 수리, 청소, 작업등기타목적 승선 의 경우> • 사유서1부 • 채직증명서1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체류기간연장허가	•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 여권과 외국인등록중(발급받은 경우) • 연장사유입증서류 • 수수료: 3만원(거주자격 f-2는 2만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여권 신청사유입증서류 수수료: 4만원(f-2는 2만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체류자격변경허가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발급받은 경우) • 변경신청 사유입증서류 • 수수료: 5만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체류자격의 활동허가 신청서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발급받은 경우) • 현근무처 대표의 동의서 • 신청사유입증서류 • 수수료: 6만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근무처 변경 추가허가	• 근무처변경, 추가허가신청서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발급받은 경우) • 현근무처 대표의 동의서 • 신청사유입증서류 • 수수료: 6만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재입국허가	• 재입국허가신청서 • 신청사유입증서류 • 수수료: 단수 3만원, 복수 5만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업무명	첨부서류	처리기관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출장소
	• 여권사본 및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본	
	• 수수료: 신고증 발급시 1만원	
국내거소신고	• 사실증명 구두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신	출장소
	청의 경우)	
출입국사실조회	• 기록조회신청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❷『법과 생활』www.klac.or.kr/ws05040h.html

국민들의 법률분쟁 예방 및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법무부에서 발간한 간행물. 각종 제도, 절차, 상식 등을 담고 있으며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형사관련	형사사건 처리절차, 즉결심판절차,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배상명령
0.166	하다기인시되고기, 파르마인관기, 포로 # 인인 법률 6 기, 제 6 0 6 제도. 형사보상제도
	7 , 5 1 5 1
민사관련	금전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보증에 관한 법률상식, 어음 수표
	건래에 있어서 유의할사항,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사항, 부동
	산등기제도, 부동산등기 특례제도, 부동산실명제도, 주택임대차보
	호제도,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공증제도, 공탁제도,
	내용증명 우편제도, 민사소송절차, 소액심판제도,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 가압류(假押留) 가처분(假處分), 민사조정제도,
	가족법 해설, 호적제도에 관한 법률상식
노동 사회보장 관련 등	최저임금제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청구 절차, 산재보험제도, 고용보
	험제도, 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장애인 등록제도, 국가배상제
	도
세금관련	조세의 개념과 일반원칙, 소득세,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알이야 할
	세법상식, 증여세, 해외여행자를 위한 세관통관 안내
기타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행정소송제도, 금융실명제도, 여권
	발급 절차, 환경에 관한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계약 해지시 보증금반
	환 관련분쟁 해결방법, 병역의무이행 안내, 유언에 관한 법률상식,
	법원 검찰청 관할, 대한 법률구조공단 안내, 한국 가정 법률상담소
	안내, 청소년 적성 검사실 안내, 시-군 등 민원 봉사실 안내, 국제인권
	규약가입등에 대하여,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

국민고충처리위원회 www.ombudsman.go.kr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 정부 내의 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 민원처리기능 외에도 법령, 제도, 절차, 처리기관 등 민원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에 대해 위원회 조사관은 물론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 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등 민원처리 유관기관에서 지원된 전문인력이 그 내용과 절차 등을 친절히안내 상담
- 각종 민원의 상담 : 안내 기능
-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
-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기능
- 민원종결 기능: 민원인에게 충분히 자기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상임위원이 다수를 이루는 위원회가 독립적·중립적 입장에서 신중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민원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 하더라도 민원인이 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에 동일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행정력 낭비현 상을 방지하는 등 고질 · 반복민원 등에 대한 종결기능 수행

>>> 민원신청방법

- 직접방문
- 우편: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67 임광빌딩 10층 종합민원 상담센터
- (T) 02-313-0114 (F) 02-360-2710
- 인터넷(위원회홈페이지): 고충민원신청/조회>고충민원 신청



고충처리위원회 웹사이트 www.ombudsman.go.kr 사이버민원접수가 가능하다.

▶ 민원접수 처리절차

□상담 및 신청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접수된 사건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사건은 30일 이내에 처리한다.

■

□사건조사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위원이나 조사관이

- 관계행정 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 신청인, 이해 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전문가 감정의뢰 등을 통하여 민원사 안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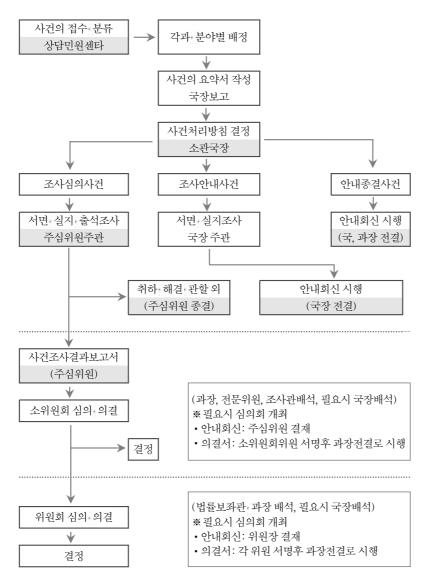


그림3-4 고충민원의 접수 처리체계

□심의, 의결

조사가 완료되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관계인을 출석

시켜 진술, 답변하게 하여 각 주장과 증거를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게 된다.

□처리결과 통보

고충처리위원회는 의결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결서 정본을 첨부한 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고충처리위원회로 통보하게 된다. 신청인이나 관계행정기관이 고충처리위원회 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상담안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원하는 경우 신속, 친절한 상담, 안내를 위하여 전문조시관과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전문가와 상담원들이 서울 종합민원상 담센터와 대전 민원상담센터에서 친절하게 상담, 안내하고 있다.

• 서울 종합민원상담센터 상담안내

상담분야	상담위원	상담일정	상담시간
민, 형사 등	변호사	매주 월~금	251 al al s
등기, 호적 등	법무사	매주 화, 목	<하절기> 14:00~17:30
토지 건물 주택 등 감정평가 상담	감정평가사	매주 목	<동절기> 14:00~17:00
노무 일반상담	공인노무사	매주 수, 목	14.00 17.00
호적관련 민원상담	서울시 파견공무원		
민, 형사, 법무관련	검찰, 경찰 파견공무원		<하절기>
법률구조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매주 월~토	14:00~17:30 <동절기>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	한국소비자보호원		14:00~17:00
보험관련	금융감독원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67번지 임광빌딩 10층

(T) 02-313-0114 (F) 02-360-2710

• 대전 민원상담센터 상담안내

상담분야	상담위원	상담일정	상담시간
민, 형사 등	변호사	매주 월~화	<하절기>14:00~17:30 <동절기>14:00~17:00
등기, 호적 등	법무사	매주목	
노무일반상담	공인노무사	매주 수, 금	
민원처리절차 상담, 안내 (대전↔서울간 영상상담)	명예민원상담관	매주 월~금	<하절기>14:00~17:30 <동절기>14:00~17:00
		매주토	09:00~13:00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층 합동민원실 내

(T) 042-481-6491~3 (F) 042-481-6494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법률구조법(법률제3862호)에 근거해 1987년 9월 1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 단은 법률구조, 기본적 인권의 옹호 및 법률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에 관한조사·연구, 준법정신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업무는 법률상담에서 시작된다. 상담결과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가사사건,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화해·조정이나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소송대리를 하여 주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를 하여 준다.

법률상담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상담을 받으려면 공단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상담



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 www.klac.or.kr 법률상담사례 검색이 가능하다

하거나전화, 서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다. 특히, 서울지부에서는 일요일 및 야간에도 상담을 하고 있으며, 지부 등에서는 공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출장 이동 법률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 면접 전화상담: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 야간 오후 6시~오후 8시(동절기: 오후 5시~오후 7시)
 - 일요일과 야간상담은 서울지부에서만 실시한다.

 ■
 - 전화법률상담은 신청인 과다로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가까운 공단
 사무실로 나가 상담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정확하다.
- 인터넷 홈페이지 법률상담: 인터넷 www.klac.or,kr(사이버 상담실)
- 법률정보제공: 전화상담은 ARS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F) 02-596-1321

>>> 법률구조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을 말하며 구조대상사건과 구조대상자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 민사 : 가사 사건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 가사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해주고 있다.

· 농 어민 •월평균 수입 15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워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 구조대상자 보장수급자 등) •모자복지법시행규칙 제9조의 2에 의한 모자가정 • 월평균 수입 150만 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단, 임금, 퇴직금, 산업재 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에 한함) •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단 국내거주외국인 여성 포함)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소정 양식의 법률구조 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시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 도록 하기도 한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 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사건처리절차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소송 을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공단에서 구조기각으로 결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뢰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공단의 중앙법률구조 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법률구조 심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된 사건을 재검토하여 구조여부를 다 시 결정하게 된다.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일단소송에들어간사건에 대해서는소송이 종료된 후에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는다. 이렇게 상환받은 비용은 다른 분들을 위한 법률구조 사업에 다시 쓰이게 된다. 그러나의뢰자는 공단에 상환할 비용을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수 있을 뿐만이니라, 공단에서도 의뢰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상환하도록 하거나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한다. 즉, 패소한사건이나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기타소송비용의 상환 또는 회수가부적당하거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 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소송비용의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한다. 특히, 법률구조대상자 중<무료법률구조사업>에서 정한 대상자는 무료로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형사사건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사· 가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법률 구조를 하고 있다. 즉,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공단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를 해주고 있다.

대상자	・농·어민 ・월평균 수입 15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국가보훈대상자
	·기타생활이어렵고법을 몰라스스로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정 등)
	•법원이 공단의 소속변호사 또는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
	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와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 피의자 또는 피고 인 여성(단, 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사건처리절차	구조신청은 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에 서면으로 하면 되고 공단에서는 구조
	대상자 여부, 구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구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
	고, 구조가 결정되면 소속변호사 등이 형사변호를 하며, 구조기각된 사건
	에 대하여는1회에 한하여7일이내에 이사장에게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이사장은이의신청사건을심사한결과원결정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
	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하고 원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 송구조 결정을 한다.
소송비용	형사사건과관련된 일체의 비용(기록 등사료 접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
	하고의뢰자로부터는비용을 징수하지않는다.다만보석보증금또는보석
	보증 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한다.

□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단, 행정소송사건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 건은 제외한다.

대상자	 ・농・어민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기타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장수급자 등) ・모자복지법시행규칙 제9조의 2에 의한 모자가정 ・영세담배소매인 • 현법재판소가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사건의 청구인
사건처리절차와 소송비용	법률구조를 받고자하는 경우 공단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되고 사건처리절차 및 비용은 민사사건과 동일하다

▶ 법률구조에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서류송달 등 법률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함/대리인 자격여부 등의 판단자료가 됨
- 법률구조 대상자 증명서: 법률구조대상자 해당여부의 확인에 필요함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함
- 피해사실 입증자료: 승소가능성의 판단 및 소가산정에 필요함

※ 피해 내용별 제출서류의 예

- •교통사고: 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 등
- 대여금: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등
- •기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표3-3 대상자별 제출서류의 예

농어민	시, 군, 읍, 면장 발행의 증명서, 농, 수협 발행의 회원증명 등
근로자 및 영세상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 명세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징수결정내역상세조회표첨부) 또는 국민연금 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공무원 및 군인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사본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또는그유족과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임을증명하는증명서
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증명서
모자가정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발행의 모자가정증명서
소년 소녀가장	호적등본 등
장애인	시 - 군 - 구 - 읍 - 면 - 동사무소 발행의 장애인증명,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의
	사가 발행하는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에 한함)
기타 영세민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월평균 수입이 150만 원 이하이거나
	직업, 주거, 재산, 기족사항, 학력,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구조함
	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건강보험가입 증명서(징수결정내역상세조
	회표첨부), 국민연금 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세
	목별과세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국내거주외국인	국내거주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여권시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시본 및 위
	근로자에 해당하는 서류
법운소송구조의	소송구조결정 정본 또는 사본
피구조자	エッコングのサイト ハモ
영세담배소매인	월평균담배판매금액이 150만 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주식회사 KT&G 관
	할 지점장의 확인서 및 담배소매인지정서 또는 사본
가정폭력 등 피해여성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에서 확인한 가정폭력 등 피해사실 확인서,
	진단서(가정 성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진단서),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중앙노동위원회 www.nlrc.go.kr

근로자 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노사간 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이다. 전국에 지방 위원회가 있으며 온라인 중재, 조정 신청도 받고 있다.

- 주소: 121-757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산업인력공단 7층
- (T) 02-3273-0226 (F) 기획총괄과 02-3273-0228/ 조정과 02-3273-2129/심판과 02-3273 -2328

제Ⅲ부 참고자료 213



중앙노동위원회 웹사이트

>>> 노동쟁의 조정

□ 조정(調停, Mediation)

- 노사간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
- ※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 가능

□중재(仲裁, Arbitration)

-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어느 일방이 신청하거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 할 수 있음.
- 재재정은 당사자들의 수락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 긴급조정(Emergency Adjustment)

•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 정을 결정

- 긴급조정결정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 금지
- 이 기간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중재

➡ 부당노동행위 심판

□ 당사자 신청사건

가) 부당노동행위 여부판정(노조법 제82조 내지 제84조)

-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 징계 기타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 합이 신청
 - 신청사건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구제명령
 - 당사자간 화해 권고
- 나) 부당해고여부 등에 관한 판정(근기법 제33조)
-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신청
 - 신청사건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구제명령
 - 당사자간 화해 권고

다) 기타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노조법 제34조)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결렬-해석-이행방법과 관련한 중재(근참법제24조)
-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근기법 제26조)
-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에 대한 승인(근기법 제4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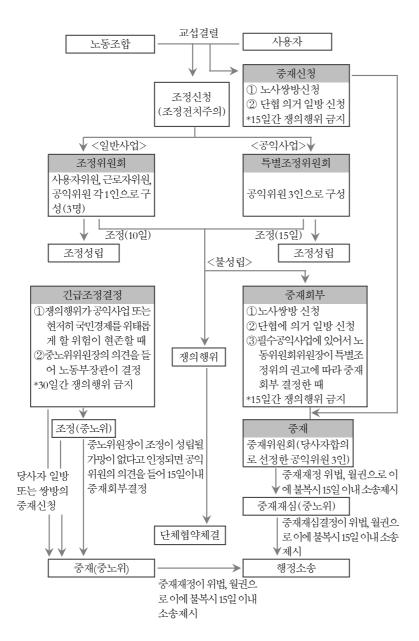


그림3-5 노동쟁의 조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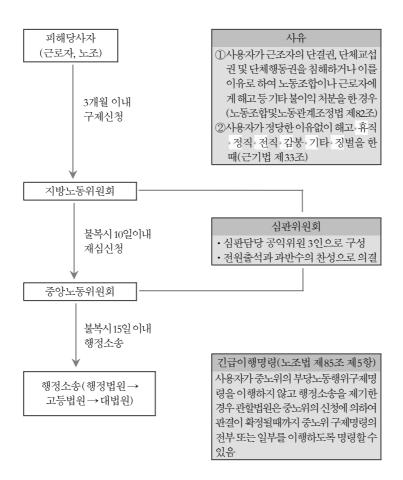


그림3-6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절차

-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근기법 제84조)
-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근기법 제92조)
- •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의 신청(노조법 제85조제5항)

□의결요청사건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 제18

제 III부 참고자료 217

조 제3항)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노조법 제21조제1항)
- 노동조합의 결의 저분의 시정명령 의결(노조법 제21조제2항)
- 노동조합 해산 의결(노조법 제28조제1항4호)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노조법 제31조제3항)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노조법 제36조제1항)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 · 운영을 정지 ·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사전 의결 또는 중지명령의 사후 승인(노조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

>>> 정책적 업무

- □노동위원회규칙 제정권(노위법 제25조)
-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 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수 있음

□지시권(노위법 제24조)

•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 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노위법 제22조제2항)

• 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 건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 info.egov.go.kr/io

이 서비스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아래 명시된 정부부처는 인터넷을 통해, 언급되지 않은 기관도 직접 방문, 우편, FAX 등을 이용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패방지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철도청, 해양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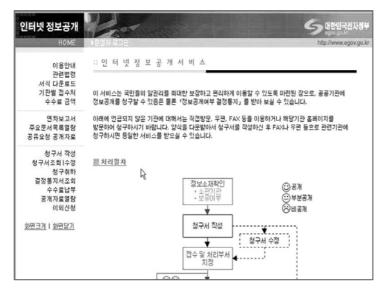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 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 상북도, 제주도 및 위 시·도에 소속된 시·군·구 중 참여기관(신청시하위기관참조)

>>>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 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 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

제Ⅲ부 참고자료 219



전자정부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

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및 위에 소속된 지역교육청 중 참여기관(신청시 하위기관참조)

- ヌ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 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 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 당기관)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 중
 -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제 III부 참고자료 221

>>>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 법인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대북정보 수집 · 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 · 입안서 류 등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위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 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위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 감사의 범위 · 방법 · 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 방법 등
\	
접수 및 이송 (문서과, 민원실 등)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15일(15일 연장가능)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15일
공개실시 (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임의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수수료 납입 ・공공기관: 현금(수입인지 증지 구입처: 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

>>>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제 III부 참고자료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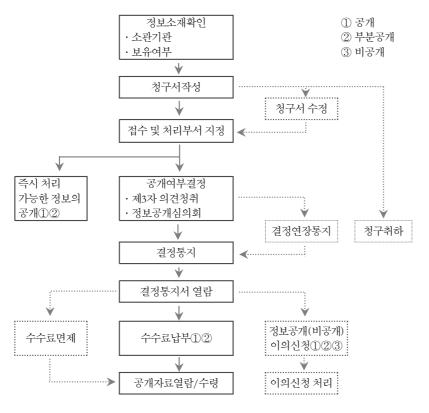


그림3-7 정부공개청구 처리절차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표3-4 정보공개 서비스 수수료

* 본문의 223, 224 페이지

공개 :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大个豆()	
대상*	원본의 열람 시청	원본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천산자료의 열람. 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 · 복제물
	열람 1건 10매기준 1회 200원	사본 1매기준	: () 提扇	사본 종이출력물
뉴서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A3이상 300원	1년 10매기준 1회 200원	1매마다 A3이상 300원/B4이하 250원
٠.		1매 초과마다 1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복제
대장		B4이하 250원 · :		1건 10매기준 1회 250원
* o u	*	1매 초과마다 5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울람	사본 1매기준	· 记号	사본 종이출력물
.E	1매 200원 .	A3이상 300원	1매 200원	1매마다 A3이상 300원/B4이하 250원
ዝ <u>የ</u> ኦ	1매 초과마다 1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1매초과마다 100 원	복제
Г * П	* .	B4이하 250원		1건 10매기준 1회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부제 .		
بر اد اه	1건이1개이상으로이탺어진경우 1개 AO트 기즈 마다 1 500일	1건이 1개 이상 <u>으로</u> 이루어진 경우 1개마나 5 000의	• *	
自己な	(여러 것이 1개로 이루아지 경우.	여러 것이 1개로 이루어지 경우		
-	1건 30분기준 마차 700원	1건마다 3 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복제	시청	복제
<u>۱</u> ۲	1편이1롤이상으로이루어진경우	1편이 1를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 1500원	10분마다 3 000원
17	1롤 60분기준 마다1 500원	1롤마다 5 000원	30분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7	1편 30분기준 마다700원	1편마다 3 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사본 종이출력물	1첫 250원	1매초과마다 3×5 50원 5× 100원	8 ×10 150원	복제 10분마다 5 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		: : *	" "		*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첫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본 출력물 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나 200원/B4이하 250원	, ,,1매 소 과마다 ₁ 50원	" 복제 1롤마다 1 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인화 필름	1첫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월 5×7	300원 8 ×10 400원	복제 필름 1첫마다 6 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 60분기준 마다 3 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앞루어진 경우	1편 30분기준 마다 2 000원 :	(시청 1첫마다 200원	* *		1건 10것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	"	;;;;;;;;;;;;;;;;;;;;;;;;;;;;;;;;;;;;;;	***	1매 200원	1매초과마다 50원			
*	٠ ١	 次 加 次	lın 12		슬라	* 비		7	- I	H 11 12	[n] D			사진		사진	표	

주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다 3 수수료 감면 시항 감면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면 된다

□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일, 「있는 날 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 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가 능)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 본문의 27~28 패하지

🍅 갹종 사峰인 재료 발급

石山	발급신청시 지참사항과 기재사항 을 사전에 알고 가야함	73 "	*		" 신청인이 원할 경우 우편발급 가능	발급신청시 지참사항과 기재사항 을 사전에 알고 가야 함	조 www police go kr	조 www police go kr	신청시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 군복무필자는 군별 계급 군번 전 역년도 미필자는 징병검사년도 신체등
전화번호	02 3703 3486 02 720 2721	042 481 6271/6273	•		02 505 1576 042 550 1576	02 748 2856 7	경찰청 홈페이지 참조	경찰청 홈페이지 참조	
관련부서	- 정부기록보존소 행정과	대전기록보존소		-	고등검찰부 기록실· 소송기록담당관	검찰단 사건과	수사과	个小과	민원실
의뢰기관	1991년이전분 서울 대전정 부기록보존소	(1991년 이후 분 각 지방검찰 , 첫	, 상울지검자료 1980 85년 분 서울지검보 과	고 1980년 이전 분 서울정부기 _ 록보존소		국방부 민청학련사건만보전	각 경찰서	당시 사건취급 경찰서	지방병무칭
보존기간)	` `*	``````````````````````````````````````		Ü	路	86 L	생존기간	15년	상시발급
조희내용			일반판결문		육군복무 중 국보법 위반사건 80년대 계엄사건판결문	긴급조치법위반으로 군시법 원에 회부된 사건 판결문	각종조회결과 범죄경력 대공조회	각종수사기록 범죄사건부 송치의견서 사본	병적증명서

兀넦	먼저 인근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수 용증명서 발급가능여부를 문의 재소자카드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되었을 경우 정부기록보존소 에서 수용자신분장을 발급받아서 교도소에서 수용증명서 발급요구		법원의 실종선고 사실이 본적지로 통 보되므로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됨		www nta go kr
전화번호			÷		
관련부서 🕒	(2) 서무과 민원실	格子과	호적과 사무과 법정과 총무과	학적과 교무과	각 지방세무서 소득세과 및 법인세과
의뢰기관	() 주소지 인근 구치소 또는 교도소	하라면원	본적이 서울일 때 서울가정 법원 기타지역일 때 지방법원 지원	해당학교	근로자 원천징수기관 사업소득자 관할세무서
보존기간	상시발급	10년 - 3년 - 10년 - 5년 (. 27년	영구보존 교칙에따 라상이	굸
조희내용	수 <mark>용증</mark> 명서 ()	병원치료기록 진료기록부 환자명부 입원확인서 취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 () 실종신고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청구	학사경계자 학적부사본 징계의결서	월 수입액 증명서

검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검사를 비롯한 수사 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칙을 정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사의 기본적 책무】 ① 검사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속· 공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
- ② 검사는 이 훈령에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한다.
- 제3조【피의자등의 권리존중】 검사는 피의자나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최대한 존중한다.
- 제4조 【변호인 접견 등의 보장】 검사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접견 교통과 신문 절차 참여를 보장한다.
- 제5조【가혹 행위의 금지와 증거 배제】 ① 모든 수사 업무 종사자는 사건 관계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검사는 가혹 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 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이와 같다.
- 제6조 【명예·사생활등의 보호】 ①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②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으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입수·수색 영장 등의 내용이 기소 전에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제7조【임의 수사의 원칙】 ①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임의 수사를 활용하고, 강제 수사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한다.
 - ② 검사는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강구한 다
- 제8조 【장애인, 청소년의 보호】 검사는 심신 장애인 또는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보호에 유의한다.

제2장 수사 준칙

- 제9조【내사할 때의 유의 사항】 검사는 범죄 정보를 수집 하거나 범죄를 내사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사건 관계인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제10조【출석을 요구할때의 유의 사항】 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 1. 사건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한도로 하고, 같은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다.
- 2. 출석 요구 방법, 출석 일시, 조사 시간 등을 정할 때에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생업이 지장받지 않도록 배려한다.
- 3. 사건 관계인이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시차를 두어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가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 4. 신속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미리 조사할 사항을 검토한다.
- 5.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우편 진술서 또는 공조 수사를 활용한다.
- 6. 참고인에 대하여 정황이나 정상을 간단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 우편(e-mail)이나 전화 청취서 등을 활용할 것을 고려한다.
- 7. 기업체 또는 그 대표자를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편 진술서 등을 활용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 제11조 【체포·구속할때에 지켜야 할사항】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간급체포서나 체포영장·구속영장 청구서에 체포 또는 구속을 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다
 - 2. 체포 또는 구속되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연령, 건강 상태, 도망의 우려, 가족의 동행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 3. 피의자에게 체포·구속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 이유를 알려준다. 이와 함께 피의자에게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피의사실에 관하여 해명할 기회를 준다.
- 4.사법경찰관이 신청한구속영장의 검토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진술의 임의성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면담하여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5. 체포 또는 구속되는 피의자가 자해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독극물이나 흉기 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제12조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가족 등에게 죄명, 체포하거나 구속한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서면 통지가 늦어질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체포·구속한 기관과 담당 공무원을 알려 주도록 한다.
- 제13조【자수한 지명수배자의 수배 해제】 검사는 지명수배된 피의자가 자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이라도 수배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우선 지명수배를 해제한다.
- 제14조 【진술 거부권의 고지】 검사는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는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진술 거부권 고지 확인서에 피의자의 서명을 받아 조서에 철한다.
- 제15조 【자백 편중 수사의 지양】 ① 검사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증거를 충실히 수집하고, 자백을 받기 위하여 무리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
 - ② 검사는 피의자의 자백이 경험 법칙에 위배되는 등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를 따져 그 신빙성 유무를 검토한다.
- ③ 검사는 공범의 진술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유일한 증거 방법인 경우에는 그 증명력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한다.

- ④ 검사는 수사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애써야 하며,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노력한다.
- 제16조【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사항】 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조사는 공정하게 하고 사건 관계인을 친절히 대하며, 수사의 주재자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한다.
- 2. 사건 관계인의 성별, 연령,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한다.
- 3. 진술인의 연령이나지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술하는 내용을 조리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진술인이 연소자이거나 심신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때에는 본인 이나 친족 등에게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권유한다.
- 4.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이해 관계가 다른 양쪽이 제출하는 증거 자료를 예단 없이 공정하게 조사한다.
- 5.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6.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건 관계인 모두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
- 7.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할 기회를 주고, 또 피해자에게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할 기회를 충분히 준다.
- 8.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정해진 특정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신고자·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9. 칼, 송곳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사건 관계인의 근처에 놓아 두지 않는다
- 제17조 【심야조사의 금지】 ①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조사를 마치도록 한다.
 -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를 받았을 때,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했을 때,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때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8조【참여직원등의 단독조사 금지】 ① 검사는 참여주사를 비롯한 검사실 수사 업무 종사자가 검사가 없는 자리에서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지 않도록 한다.
- ② 검사는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조사를 받은 사건 관계인에게 직접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 여부를 확인한다.
- 제19조【압수·수색을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 검사는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 준다.
 - 2. 압수, 수색 과정에서 사생활과 명예,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한다.
- 3. 수사에 필요한 물건만을 압수한다. 다른 물건이 압수 대상물과 섞여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가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돌려준다.
- 4. 압수물이 문서인 경우에 사본이나 사진 등으로 그목적을 이룰 수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한다. 특히 계약서, 영수증 등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나 기업의 회계 자료와 같이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한다.

- 5.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신속히 압수 목록을 교부한다.
- 제20조 【금융 거래 자료를 추적할 때에 지켜야 할사항】 검사는 금융 거래 자료를 추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2. 대상자와 유효 기간도 혐의 유무의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 3. 해당 계좌와 그 직전 직후로 연결된 계좌에 대하여만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한다.
- 제21조 【통신제한조치 등을 할때에 지켜야 할사항】 검사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통신 제한 조치를 청구하거나 통신 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다.
- 제22조 [출국금지 등을 요청할때에 지켜야 할사항] 검사는 수사상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 금지나 출국 정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해제를 요청한다.
- 제23조 【수사를 지휘할때의 유의 사항】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수사 지휘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 1. 지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다.
- 2.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여부를 자세히 살펴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바로잡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3. 불공정한 수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게 하거나 송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24조【사건의 병합을 위한 조치】 검사는 다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같은 피의자를 수사 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받는 등 병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된 후에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5조【사건의 재배당 요청】 검사는 사건 관계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분이 있는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한다.
- 제26조 [사건을 결정할 때의 유의 사항] 검사는 사건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 1.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였는지, 사건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또는 억울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 2. 피의자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병합 수사나 재판을 받지 못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한다.
 - 3. 민사 소송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다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피해 상당액이 공탁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다.
 - 4. 사건 발생의 동기, 경위 등을 살펴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정의감에서 발생한 폭력 사범이나 부당한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범 등에 대하여는 그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다.
 - 5. 재기된 사건이나 이송된 사건은 신속히 종국 처분을 한다.
- 6. 수사 결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며, 판례의 변경 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소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27조【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할 때의 유의 사항】 검사는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 1. 고소 사실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 2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사건은 처분 전에 고소인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 다만 법이론 등에 따라 기소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 불기소 결정문에는 고소 사실과 주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
- 4.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송치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지 않는다.
- 5. 억울한사정이 있는 고소인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심의에 회부하거나 다른 민사적인 구제절차를 알려주는 등 피해가 복구되도록 도와준다.
- 6. 불기소 처분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발견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다.
- 제28조【중간 처분을 할 때의 유의 사항】 검사는 기소중지 등 중간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 1.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여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송 등 중간 처분을 최대한 억제한다.
- 2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참고인의 진술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꼭 필요한지 여부 를 파다하다
- 3.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때에는 신속한 종국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참고인 소재 수사를 한다.
- 4. 공조수사의 방법으로 종국 처분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이 관할 구역 밖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송을 하지 않는다.
- 제20조 [구속사건을 처리할 때의 유의 사항] 검사는 구속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 하다.
 - 1. 구속 기간의 연장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2.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처리한다.
- 3. 합의가되거나구속을 견뎌 내기 어려운 건강 상태에 이르는 등 구속 후에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다.
- 제30조 【각종 통지의 이행】 검사는 고소사건 중간 통지나 불기소 처분 통지 등사건 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통지를 충실히 이행한다.
- 제31조 [공소제기후의유의사항] 검사는공소제기후에나공판과정에서다음각호의사항에유의한다.
 - 1. 합의 여부, 피고인의 법정 태도, 수용 기관에서의 품행 등 공소 제기 후의 사정까지 구형에 반영하여 적절한 관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기소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그것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 3.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4. 판결이 번복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상소하지 않는다. 다만 법 이론에 다툼이 있어 새로운 판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제32조 【검사외의 수사업무 종사자의 의무】모든 수사업무 종사자는 이 훈령이 정한 내용을 철저히 지키는 등 국민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제3장 인권보호관

- 제33조【인권보호관의 지정·운영】 ① 수사과정에서의 적법 절차에 따른 보장을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 ② 대검찰청에는 감찰부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고, 각급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 가 있는 지청에는 차장검사(차장 검사가 여러 명일 때에는 제1차장검사)를, 그외의 지청에는 지청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한다.
 - ③ 인권보호관은 부부장 검사 이상의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부부장 검사 이상의 검사가 없는 검찰청에는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4조 【인권보호관의 직무】 인권보호관은 인권 보호에 필요한 실태 조사, 제도의 개선, 인권 교육, 심야 조사의 허가와 이 훈령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등 인권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시행한다. 제35조 【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①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 보호관의 직무를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제34조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 보호와 관련한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 등에 관한 특별 지시(법무 검이 61110-10941호, 2001. 8. 28.)는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경찰청 인권관련 훈령 예규 목록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data/CPInstructionList.jsp에 게재된 경찰 훈령 · 예규 목록 중 인권 관련내용(2003년 3월 기준)

등록번호	제목
1	[훈령] 경찰청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3	[훈령] 경찰청사무분장규칙
12	[훈령] 사이버경찰청운영규칙
13	[훈령] 경찰청예산집행심의회규칙
14	[훈령] 경찰관사운영규칙
30	[훈령] 경찰자료실운영규칙
31	[훈령] 사무관리규정시행세부규칙
32	[훈령] 행정정보공개지도관운영규칙
56	[훈령] 일시보호자에대한급식규칙
57	[훈령] 주취자안정실운영규칙
58	[훈령] 민유총포무기고관리규칙
59	[훈령] 범죄수사규칙
60	[훈령] 범죄수사연구관관리규칙
61	[훈령] 경찰서촉탁의위촉규칙
62	[훈령]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63	[훈령]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64	[훈령]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65	[훈령] 조사관인사운영규칙
66	[훈령]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
67	[훈령] 종합수사지휘본부운영규칙
68	[훈령]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69	[훈령] 수사긴급배치규칙
70	[훈령] 기동수사대운영규칙
71	[훈령] 현장사진작성및기록관리규칙
72	[훈령] 지문규칙
73	[훈령] 경찰범죄통계규칙
74	[훈령] 고속도로순찰대운영규칙
75	[훈령] 교통지도관의위촉및운영에관한규칙
77	[훈령] 경찰비상업무규칙
78	[훈령] 경찰기동대운영규칙
79	[훈령] 경비수당지급규칙

[훈령] 통합방위작전태세검열규칙 81 [훈령]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82 84 [훈령] 검문소운영규칙 [훈령] 보안지도관운영규칙 85 [훈령]] 공안문제연구소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 86 [훈령] 보안경찰인사운영규칙 87 88 [훈령] 이념계도활동규칙 [훈령] 북한불온선전물수거처리규칙 89 [예규] 경찰개혁위원회운영규칙 90 [예규]] 신지식경찰관선발및운영규칙 91 [예규] 시민단체 경찰협력위원회운영규칙 92 [예규] 외사지도관운영규칙 108 [예규] 한 미행정협정시행에수반한주한미군헌병신분증확인절차에관한규 109 110 [예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대한민국국가중앙사무국운영규칙 111 [예규] 인터폴협력관업무처리규칙 [예규] 경찰관서게시물규칙 112 [예규] 경찰문서송달규칙 113 114 [예규] 경찰민원봉사실운영규칙 120 [예규] 경찰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칙 [예규]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운영규칙 121 [예규] 경찰수배규칙 126 [예규] 112신고센터운영규칙 137 [예규] 소년경찰직무규칙 139 [예규] 소년범죄수사활동비취급규칙 140 141 [예규] 미아-가출인수배규칙 [예규] 총포 도검 화약류등에관한사무취급규칙 142 [예규] 수사요원관리규칙 143 144 [예규] 수사요원고과평점규칙 145 [예규] 수사정비보취급규칙 [예규] 수사경찰관복지기금관리활용규칙 146 [예규] 유치장설계표준규칙 147 [예규] 위조통화취급규칙 148 149 [예규] 우범자관찰보호규칙 [예규]지명수배취급규칙 151 [예규] 행정검시규칙 152 153 [예규] 수사본부운영규칙

[예규] 수사첩보활동규칙

[예규] 마약류범죄정보전산관리규칙

154

155

156	[예규] 수사및감식장비관리규칙
157	[예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자료관리규칙
158	[예규] 거짓말탐지기운영규칙
167	[예규] 야간통(운)행증발급규칙
168	[예규] 특수범죄진압규칙
169	[예규] 경찰행정선등운영규칙
170	[예규] 전경구타및가혹행위근절규칙
171	[예규] 국내선공항보안요원근무규칙

1. 구치소, 교도소

서울지방교정청 (158-076)서울 양천구 신정 6동 319-2 02-655-0721~3 www.srch.go.kr 서울구치소 (437-702)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18-1 031-423-6100~6 www.seouldc.go.kr 안양교도소 (431-083)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458 031-452-2181~4 www.aycorr.go.kr 영등포구치소 (152-707)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최1동 102 02-2611-8100~7 www.ydc.go.kr 성동구치소 (138-810)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162 02-402-9131~4 www.sdc.go.kr 수원구치소 (442-192)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182 031-217-7101~7 www.swguchiso.go.kr 인천구치소 (402-704)인천광역시 남구 학익2동 278 032-868-8771~5 www.icdc.go.kr 영등포교도소 (152-707)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최1동 100 02-2619-2780~4 ydpcorr.go.kr 여주교도소 (469-885)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212번지 031-881-1412 www.yeojugyo.go.kr 의정부교도소 (480-700)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813 031-842-7601~3 ujbcorr.go.kr 춘천교도소 (200-710)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765 033-262-1332 www.ccc.go.kr 원주교도소 (220-704)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354 033-741-4800 www.wjcorr.go.kr 강릉교도소 (210-949)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720 033-649-8202, 8100 www.gncorr.go.kr 평택구치지소 (450-140)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245-1 031-650-5800~3 ptcorr.go.kr

대구지방교정청 (705-810)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10동1623-12 053-654-5811~3 www.dgch.go.kr 대구교도소 (711-836)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동 472 053-632-4501~5 taeguc.go.kr 청송교도소 (763-710)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2 054-872-9500~1 www.songcorr.co.kr 부산구치소 (617-737)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3동 666 051-324-5501~8 www.busandc.go.kr 부산교도소 (618-703)부산광역시 장서구 대저1동 1028 051-971-0151~4 www.bsc.go.kr 마산교도소 (630-705)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345 055-298-9010~4 www.masancorr.go.kr 청송제1보호감호소 (763-710)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3 054-872-9507~8 www.cslspc.go.kr 청송제2보호감호소 (763-710)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3 054-872-9511~2 www.cs2sph.go.kr 청송제2교도소 (763-710)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55-1 054-872-4700~2 cs2c.netian.com 대구구치소 (706-020)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768-1 053-740-5200 ddc.go.kr 김천소년교도소 (740-702)경북 김천시 지좌동 588 054-436-2191~4 www.gchboycorr.go.kr 인주교도소 (660-912)경남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700 055-741-2181~2 www.jinjucorr.go.kr 안동교도소 (760-707)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3동 121 054-858-7191~4 mmcgo.co.kr 울산구치소 (689-860)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903-1 052-228-9709 udc.go.kr 경주교도소 (780-853)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산6-4 054-740-3100 kjc.go.kr

대전지방교정청 (305-251)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동 36 042-543-7100~2 www.djch.go.kr 대전교도소 (305-251)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동 36 042-544-9301~3 www.tjc.go.kr

참고: 구금 호시설 연락

천안소년교도소 (330-706)충남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산27 041-567-3461~3 www.boycorr.go.kr 청주교도소 (361-754)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148 043-296-8171~4 www.cjc.go.kr 천안개방교도소 (330-703)충남 천안시 신당동 112 041-561-4301~2 www.opencorr.go.kr 공주교도소 (314-140)충남 공주시 금흥동 360 041-851-3200 gjc.go.kr 청주여자교도소 (361-708)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148 043-296-8177~8 www.cwcorr.go.kr 홍성교도소 (350-808)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305 041-632-2194~6 www.hscorr.go.kr 천안구치지소 (330-835)충남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산27 041-567-3461 cacorr.go.kr 논산구치지소 (320-941)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34-4 041-733-2200 www.nscorr.go.kr

광주지방교정청 (500-850)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555-22 062-527-0901~3 www.kjcorr.go.kr 광주교도소 (500-704)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88-1 062-251-4321~4 www.kwajucorr.go.kr 전주교도소 (560-717)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99 063-224-4361~6 www.cjcorr.go.kr 목포교도소 (534-702)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00 061-284-4101~8 www.mpc.go.kr 군산교도소 (753-708)전북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 063-462-0101~3 www.kscorr.go.kr 순천교도소 (540-708)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430 061-751-2114 www.sccorr.go.kr 제주교도소 (690-162)제주도 제주시 오라2동 161 064-742-1062~4 www.chejucorr.go.kr 장흥교도소 (529-805)전남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191 063-860-9114 www.jhcorr.go.kr

2. 소년보호기관

고봉정보통신중/고 (437-704)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430 031-455-6111 www.jschool.go.kr/organ1/index.php

오륜정보산업학교 (609-724)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동 625 051-517-2371

www.jschool.go.kr/organ2/index.php

읍내정보통신중/고 (702-200)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214 053-323-0657

www.jschool.go.kr/organ3/index.php

고룡정보산업학교 (506-358)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룡동 795-10 062-952-3642

www.jschool.go.kr/organ4/index.php

원촌정보산업학교 (305-370)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24 042-861-3161

www.jschool.go.kr/organ5/index.php

송천정보통신학교 (561-302)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376-31 063-272-3741

www.jschool.go.kr/organ6/index.php

미평중/고등학교 (360-202)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258 043-295-8104

www.jschool.go.kr/organ7/index.php

대산체육중고등학교 (300-210)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95 042-272-4644

참고: 구금 호시설 연락처

www.jschool.go.kr/organ8/index.php

정심여자정보산업 (430-041)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구1동 산57 031-473-3781

www.jschool.go.kr/organ9/index.php

신촌정보통신학교 (200-880)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372 033-261-9201

www.jschool.go.kr/organ10/index.php

계명정보통신학교 (380-110)충주시 안림동 산 45-30 043-843-1201

www.jschool.go.kr/organ11/index.php

한길정보산업학교 (695-905)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 산 194-5 064-799-3801

www.jschool.go.kr/organ12/index.php

서울소년분류심사원 (431-083)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770 031-451-2683~4

www.jschool.go.kr/organ13/index.php

부산소년분류심사원 (618-141)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287-3 051-972-8501

www.jschool.go.kr/organ14/index.php

대구소년분류심사원 (701-015) 대구 광역시 동구 신암5동 1503 053-941-9995

www.jschool.go.kr/organ15/index.php

광주소년분류심사원 (502-240)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66-1 062-375-2282

www.jschool.go.kr/organ16/index.php

대전소년분류심사원 (300-210)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95 042-283-9319

www.jschool.go.kr/organ16/index.php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449-776)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청덕리 354 031-288-2300~3 교정협회 (137-073)서울시 서초구 서초 3동 1448-4 02-584-5613~4 화성외국인보호소 (445-707)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석교리 238-7 (T) 031-355-2011 (F) 031-355-2018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T) 031-672-9290 (F) 031-6709-301

3. 전국 경찰서

경찰청 (120-02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 경찰청 대표전화: 02-363-0112 www.police.go.kr

□서울지역

강남 경찰서 02-568-1112 강남구 대치3동 99

강동 경찰서 02-470-1112 강동구 성내동 540-1

강서 경찰서 02-696-0112 강서구 화곡6동 980-27

관악 경찰서 02-874-0112 관악구 봉천4동 177-3

제Ⅲ부 참고자료 241

구로 경찰서 02-862-0112 구로구 구로본동 436 남대문 경찰서 02-778-0112 중구 남대문로5가 561 남부 경찰서 02-851-0112 관악구 신림8동 544 노량진 경찰서 02-822-0112 동작구 노량진1동 산 72 노원 경찰서 02-971-0112 노원구 하계동 250 도봉 경찰서 02-998-4400 도봉구 창4동 17 동대문 경찰서 02-747-0112 종로구 인의동 48-57 동부 경찰서 02-452-4400 광진구 구의동 254-32 마포 경찰서 02-393-0112 마포구 아현3동 618-1 방배 경찰서 02-583-0112 서초구 방배2동 455-10 북부 경찰서 02-851-0112 강북구 번1동 415-15 서대문 경찰서 02-362-0112 서대문구 미근동 164 서부 경찰서 02-384-0112 은평구 녹번동 177-15 서울지방경찰청 02-730-0112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초 경찰서 02-532-0112 서초구 서초동 1726 성동 경찰서 02-2298-0112 성동구 행당동 192-8 성북 경찰서 02-923-0112 성북구 삼선동5가 411 송파 경찰서 02-402-0112 송파구 가락동 9 수서 경찰서 02-459-0112 강남구 개포동 14 양천 경찰서 02-2655-0112 양천구 신정6동 321 영등포 경찰서 02-2633-0112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11 용산 경찰서 02-712-0044 용산구 원효로1가 12-12 은평 경찰서 02-356-0112 은평구 불광동 산 24 종로 경찰서 02-733-0112 종로구 경운동 90-18 종암 경찰서 02-929-0112 성북구 종암1동 3-1260

□경기지역

강화 경찰서 032-934-2115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437 계양 경찰서 032-551-0118 북구 계산동 855 남동 경찰서 032-469-5001 남동구 구월동 849-5 동부 경찰서 032-773-0112 동구 송립동 229 부평 경찰서 032-526-7000 북구 청천동 199 서부 경찰서 032-561-0112 심곡동 산 9

중량 경찰서 02-973-0112 중량구 묵2동 249-2 중부 경찰서 02-2279-0112 중구 저동2가 62 청량리 경찰서 02-968-0112 동대문구 청량리 1동 229

참고: 구금 호시설 연락처

연수 경찰서 032-821-0112 연수구 연수2동 635-2 인천지방 경찰청 032-433-0112 남동구 구월1동 1409 중부 경찰서 032-762-7000 중구 항동7가 1-9 가평 경찰서 031-582-2700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230-9 경기지방 경찰청 031-245-0112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산 11-2 고양 경찰서 031-974-4311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8 과천 경찰서 02-507-1101 과천시 중앙동 39 광명 경찰서 02-614-0112 광명시 철산3동 521 광주 경찰서 031-765-3550 광주군 광주읍 탄벌리 97 군포 경찰서 031-391-0112 군포시 금정동 364 김포 경찰서 032-986-9944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361-2 남양주 경찰서 031-567-0113 미금시 지금동 20-15 부천남부 경찰서 032-653-8000 부천시 남구 송내동 601 부천중부 경찰서 032-679-0112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05 분당 경찰서 031-703-3112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0 성남남부 경찰서 031-733-0181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269-1 성남중부 경찰서 031-753-2111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6812 수원남부 경찰서 031-216-0005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196 수원중부 경찰서 031-257-0112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257 안산 경찰서 031-480-0114 안산시 고잔동 514 안성 경찰서 031-675-7000 안성군 안성읍 석정리 125-1 안양 경찰서 031-449-7000 안양시 안양6동 576-2 양평 경찰서 031-771-0112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78 여주 경찰서 031-886-0111 여주군 여주읍 창리 38 연천 경찰서 031-834-7733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34 용인 경찰서 031-339-0112 용인군 용인읍 금양장리 89 의정부 경찰서 031-848-0112 의정부시 의정부 2동 240 이천 경찰서 031-637-0112 이천군 이천읍 창전5리 267-1 파주 경찰서 031-943-4900 파주군 금촌읍 금촌리 771 평택 경찰서 031-653-0112 평택시 비전1동 619 포천 경찰서 031-536-5112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59-4 화성 경찰서 031-373-4455 오산시 원동 351

□강원지역

강릉 경찰서 033-653-0112 강릉시 포남동 1113 강원지방 경찰청 033-251-0112 춘천시 봉의동 산15 참고: 구금

```
고성 경찰서 033-682-0112 고성군 간성읍 하2리12
동해 경찰서 033-535-0112 동해시 천곡동 196-4
삼척 경찰서 033-573-0112 삼척시 당저동 33-3
속초 경찰서 033-633-0112 속초시 노학동 3-6
양구 경찰서 033-482-0112 양구군 양구읍 상2리280-2
영월 경찰서 033-373-0112 영월군 영월읍 영흥2리 945
원주 경찰서 033-732-0112 원주시 봉산2동 115
인제 경찰서 033-461-0112 인제군 인제읍 상동2리38-1
정선 경찰서 033-562-0112 정선군 정선읍 봉양4리316
철원 경찰서 033-452-0112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4-653
춘천 경찰서 033-241-0112 춘천시 효자1동 590-1
태백 경찰서 033-581-0112 태백시 화광동 156
평창 경찰서 033-334-0112 평창군 평창읍 하리115-2
홍천 경찰서 033-435-0112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66-1
화천 경찰서 033-442-0112 화천군 화천읍 아리241번지
횡성 경찰서 033-343-0112 횡성군 횡성읍 읍상2리545
```

□충북지역

괴산 경찰서 043-832-0112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66 단양 경찰서 043-423-4471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2 보은 경찰서 043-544-2800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1-3 영동 경찰서 043-744-9501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73-1 옥천 경찰서 043-732-0112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49-3 음성 경찰서 043-872-1512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03 제천 경찰서 043-643-0112 제천시 하소동 194 진천 경찰서 043-533-2184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94-2 청주동부 경찰서 043-259-3112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54-10 청주서부 경찰서 043-266-7472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61-1 충북지방 경찰청 043-257-0112 청주시 문화동 89 충주 경찰서 043-844-2388 충주시 교현1동 419

□충남지역

대전동부 경찰서 042-621-0112 대덕구 법동 304 대전북부 경찰서 042-931-0112 대덕구 문평동 152 대전서부 경찰서 042-523-0112 서구 용문동 272

참고: 구금 호시설 연락처

대전중부 경찰서 042-255-0112 중구 대흥동 496-2 충남지방 경찰청 042-252-0112 중구 선화동 287 공주 경찰서 041-854-0112 공주시 웅진동 242-12 금산 경찰서 041-752-0112 금산읍 신대리 655-10 논산 경찰서 041-733-0112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78-2 당진 경찰서 041-352-0112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60 보령 경찰서 041-932-0112 보령시 대천동 171 부여 경찰서 041-835-0112 부여군 구아리 64 서산 경찰서 041-662-0112 서산시 읍내동 478 서천 경찰서 041-956-0112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 175-2 아산 경찰서 041-541-0112 온양시 온천동 94-4 예산 경찰서 041-331-0112 예산시 예산읍 예산리 524 조치원 경찰서 041-865-0112 연기군 조치원 읍 원리 12-11 천안 경찰서 041-621-0112 천안시 문화동 101-2 청양 경찰서 041-942-0112 청양읍 읍내리 37-2 홍성 경찰서 041-632-0112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86

□경북지역

남부경찰서 053-656-0113 남구 대면5동 1701-7 달서경찰서 053-642-0112 달서구 월성동 282 달성경찰서 053-615-0112 달성군 현풍면 중리 321-1 대구지방 경찰청 053-767-0112 수성구 지산동 720 동부 경찰서 053-959-0112 동구 효목1동 471-4 북부 경찰서 053-355-0112 북구 첨산3동 447-12 서부 경찰서 053-559-0112 서구 평리3동 1230 수성 경찰서 053-752-0112 수성구 범어 1동 237-37 중부 경찰서 053-254-0112 중구 서문로1가 1-4 경북지방 경찰청 053-954-0112 대구시 북구 산 격동 144-5 경산 경찰서 054-814-0112 경산시 서성동 18-2 경주 경찰서 054-742-0112 경주시 동부동 150 고령 경찰서 054-955-0112 고령군 고령읍 결빈동 433-11 구미 경찰서 054-450-3300 구미시 송정동 59 군위 경찰서 054-382-0112 군위군 군위읍 서부동 64 김천 경찰서 054-433-0112 김천시 남산동 24-19 문경 경찰서 054-553-0112 점촌시 충현동 251-4 봉화 경찰서 054-672-0112 봉화군 봉화읍 포저동 194-1

상주 경찰서 054-534-0112 상주시 남성동 140

성주 경찰서 054-931-0112 성주군 성주읍 경산동 172-4

안동 경찰서 054-853-0112 안동시 당북동 350-4

영덕 경찰서 054-732-0112 영덕군 영덕읍 남석1리 313-4

영양 경찰서 054-682-0112 영양군 영양읍 서부동 335

영주 경찰서 054-632-0112 영주시 영주1동 27-2

영천 경찰서 054-335-0112 영천군 금호읍 원제리 산 58-16

예천 경찰서 054-653-0112 예천군 예천읍 서본1리 5-20

울릉 경찰서 054-791-0112 울릉군 울릉읍 도동 1동 101-4

울진 경찰서 054-782-0112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205

의성 경찰서 054-834-0112 의성군 의성읍 후죽동 615-3

청도 경찰서 054-371-0112 청도군 청도읍 고수6리 638

청송 경찰서 054-874-0112 청송군 청송읍 월막동 239-2

칠곡 경찰서 054-974-0112 칠곡군 왜관 4동 264

포항남부 경찰서 054-274-0112 포항시 상도동 496

포항북부 경찰서 054-244-0112 포항시 덕산동 123-1

□경남지역

강서 경찰서 051-271-0112 강서구 명지동 607-5

금정 경찰서 051-512-0112 금정구 구서동 85-12

남부 경찰서 051-622-0112 남구 대연 3동 38-1

동래 경찰서 051-552-0112 동래구 수안동 158-1

동부 경찰서 051-462-0112 동구 수창 2가 1

부산지방 경찰청 051-851-0112 연제구 연산 5동 1000

부산진 경찰서 051-809-0112 부산진구 부전 1동 408-4

북부 경찰서 051-303-0112 북구 삼락동 402-7

사하 경찰서 051-292-0112 사하구 신평동 569-1

서부 경찰서 051-244-0112 서구 서대신 2동 271

연산 경찰서 051-753-0112 동래구 연산동 243-11

영도 경찰서 051-412-0112 영도구 대교동 1가 20

중부 경찰서 051-463-0112 중구 대창동 1가 40

해운대 경찰서 051-784-0112 해운대구 재송동 306-1

울산남부 경찰서 055-266-0112 남구 신정 2동 689-2

울산동부 경찰서 055-232-0112 중구 전하 3동 666-1

울산중부 경찰서 055-292-0112 중구 남외동 603

거제 경찰서 055-687-0112 거제시 옥포 2동 1284-2

참고: 구금 호시설 연락처

거창 경찰서 055-944-0112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4-4 경남지방 경찰청 055-261-0112 창원시 토림동 1 고성 경찰서 055-672-0112 고성군 고성읍 고성내리 196-10 김해 경찰서 055-332-0112 김해시 봉황동 38 남해 경찰서 055-862-0112 남해군 남해읍 북위1동 781 마산동부 경찰서 055-251-0112 마산시 합성 2동 106 마산중부 경찰서 055-224-0112 마산시 중앙동 2가 5 밀양 경찰서 055-354-0112 밀양시 삼문동 34-10 사천 경찰서 055-833-0112 사천시 동금동 59-1 산청 경찰서 055-972-0112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양산 경찰서 055-388-0112 양산군 양산읍 북부동 481 의령 경찰서 055-572-0112 의령군 의령읍 중동 267-5 진주 경찰서 055-741-0112 진주시 중안동 10 진해 경찰서 055-542-0112 진해시 평안동 2 창녕 경찰서 055-533-0112 창영군 창영읍 교상동 28-7 창원 경찰서 055-264-0112 창원시 신월동 96-1 통영 경찰서 055-644-0112 충무시 무전동 376-1 하동 경찰서 055-884-0112 하동군 하동읍 읍내동 272 함안 경찰서 055-582-0112 함안군 가야읍 미산동 596 함양 경찰서 055-962-0112 함양군 함양읍 운림동 46-2 합천 경찰서 055-931-0112 합천군 합천읍 합천동 790-1

□전북지역

 전주중부 경찰서 063-285-0112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2-1 정읍 경찰서 063-531-0112 정읍시 장명동 106 진안 경찰서 063-433-0112 진안군 진안읍 상리 955-1

□전남지역

광주광산 경찰서 062-941-0112 광산구 송정리 817-5 광주남부 경찰서 062-675-0112 서구 봉선동 산 38-1 광주동부 경찰서 062-227-0112 동구 대의동 20 광주북부 경찰서 062-265-0112 북구 오치동 784-5 광주서부 경찰서 062-366-0112 서구 농성동 96-1 전남지방 경찰서 062-222-0112 동구 광산동 13 강진 경찰서 061-433-0112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06 고흥 경찰서 061-834-0112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92 곡성 경찰서 061-363-0112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162-2 광양 경찰서 061-761-0112 광양군 광양읍 읍내리 227-1 구례 경찰서 061-781-0112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315 나주 경찰서 061-332-0112 나주시 성북동 15 담양 경찰서 061-381-0112 담양군 담양읍 지점리 175-1 목포 경찰서 061-272-0112 목포시 용해동 354 무안 경찰서 061-454-0112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218 보성 경찰서 061-853-0112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738-2 순천 경찰서 061-751-0112 순천시 가곡동 425 여수 경찰서 061-662-0112 여수시 고소동 343 영광 경찰서 061-352-0112 영광군 영광읍 무영리 203 영암 경찰서 061-471-0112 영암군 영암읍 선암리 137-1 완도 경찰서 061-553-0112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764-1 장성 경찰서 061-392-0112 장선군 장성읍 영천리 1022-2 장흥 경찰서 061-562-0112 장흥군 장흥읍 동독리 281 진도 경찰서 061-542-0112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50 함평 경찰서 061-324-0112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20 해남 경찰서 061-534-0112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7-7 화순 경찰서 061-374-0112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146

□제주지역

서귀포 경찰서 064-739-0112 서귀포시 서홍동 440-1

참고: 구금 호시설 연락처

제주 경찰서 064-753-0112 제주시 이도 2동 1234 제주지방 경찰청 064-743-0112 제주시 연동 321-1

□교통사고 이의조사반(각 지방경찰청 교통사고 이의 조사반 현황)

- 본청 (T) 02-313-0692 (F) 02-393-0339 (120-704)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
- 서울 (T) 02-720-4645 (F) 02-733-8959 (110-798)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 부산 (T) 051-851-4972 (F) 겸용 (611-737)부산시 연제구 연산 5동 1000
- 대구 (T) 053-767-4972 (F) 겸용 (706-705)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 1동 720번지
- 인천 (T) 032-868-9022 (F) 032-873-4972 (402-836)인천광역시 남구 주안5동 20-1번지
- 울산 (T) 052-4972 (680-815)울산시 남구 삼산동 1631-10
- 경기 (T) 031-252-0635 (F) 겸용 (440-701)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산 11-1
- 강원 (T) 033-244-4972 (F) 겸용 (200-714)춘천시 봉의동 산 15
- 충북 (T) 043-221-4972 (360-703)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 충남 (T) 041-252-0718 (F) 겸용 (301-708)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 전북 (T) 063-227-4972 (F) 063-227-4928 (560-713)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
- 전남 (T) 062-227-1852 (F) 062-222-4982 (501-708)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
- 경북 (T) 053-958-0224 (F) 053-942-4982 (702-702)대구광역시 북구 산격4동 1441-5번지
- 경남 (T) 055-283-4972 (F) 055-261-4971 (641-797)창원시 사림동 1
- 제주 (T) 064-748-4972 (F) 064-748-4982 (690-765)제주시 연동 312-58

1. 인권일반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조직(영국)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권단체 중의 하나. 인권 일반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양심수 문제와 정치범의 인권, 사형제도 폐지와 죄수에 대한 인권 보장을 등의 문제를 다루며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인권탄압에 반대한다. (H) www.amnesty.org
 (E) amnestyis@amnesty.org (T) 44 20 7814 6200 (F) 44 20 7833 1510 주소: 99-119
 Rosebery Avenue London EC1R 4RE UNITED KINGDOM
- Canadian Human Rights Foundation 캐나다 캐나다와 전 세계에서 교육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 주요 활동은 연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부 유럽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을 통한 인권 시장에 힘쓰고 있다. (H) www.chrf.ca (E) chrf@chrf.ca (T) 1 514 954 0382 (F) 1 514 954 0659 주소: 1425 Rene-Levesque Blvd. West, Suite 407 Montreal, Quebec, Canada H3G 1T7
- Right International 국제조직 이 단체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각국 정부들을 국제 법정에 고소하는 일을 한다. 고문, 검열, 공권력 남용, 실종 및 인종적, 성적, 종교적 차별 등 다양한 인권 관련 이슈들에 대해 법률적 소송을 제기한다. (H) www.rightsinternational.org (E) ricenter@igc.org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미국 미국내 정치적 탄압, 범죄 정의 구축, 사이버상의 사생활 침해 문제, 사형문제 등을 다루는 단체. 그밖에 장애인 인권, 마약문제, 이성애자 권리, 복제 문제, 태러 대응문제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 (H) www.aclu.org (E) 20aclu@aclu.org 주소: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125 Broad Street. 18th Floor New York, NY 10004-2400
- Human Rights Watch 미국 전세계인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정치적 자유, 전시 인권문제, 범죄자인권 보호 등과 관련된 활동을 벌이고 있다. (H) www.hrw.org (E) hrwnyc@hrw.org (T) 1 212 290 4700 (F) 1 212 736 1300 주소: Human Rights Watch 350 Fifth Avenue, 34th Floor New York, NY 10118-3299
- Minority Rights Group 영국 전세계의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민족과 토착민의 권리 보장과 공동체간의 협력과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 소수민족과 토착민의 인권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를 담고 있는 보고서, 훈련 안내서, 요약논문, 워크숍 책자 등을 발행한다.
 - (H) www.minorityrights.org (E) minority.rights@mrgmail.org (T) 44 20 7978 9498 (F) 44 20 7738 6265 주소: 379 Brixton Road, London, SW9 7DE, UK
-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홍콩 아시아 지역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침해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아시아와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한다.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경제, 사회, 문화적 자유 증진을 도모한다. (H) www.ahrchk.net (E) ahrchk@ahrchk.org (T) 852 2698 6339 (F) 852 2698 6367 주소: Unit D, 7th Floor, Mongkok Commercial Centre, 16-16B Argyle Street, Kowloon, Hongkong
- 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일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단체. 아—태 지역의 인권 정보 교류의 중심점이 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H) www.hurights.or.jp

차고: 주요 해외 NGO 모르

- (E) webmail@hurights.or.jp (T) 81 6 6577 3578 (F) 81 6 6577 3583 주소: 1-2-1-1500 Benten, Minato-ku, Osaka-shi, Osaka 552-0007 Japan
-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미국 자체 교육프로그램과 온라인기술들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활동가와 전문가들에 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적인 인권교육단체이다.
 (H) www.hrea.org (E) donations@hrea.org (T) 1 617 489 5131 주소: PO box 382396 Cambridge, MA 02238-2396 USA
-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 미국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단체이자, 전세계 20여개 국가에서 인권에 관한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H) www.hrlawgroup.org
 (E) HumanRights@hrlawgroup.org (T) 1 202 822 4600 (F) 1 202 822 4606
 주소: 1200 18th Street NW, Suite 602 Washington, DC 20036
-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AHRC) 홍콩 아시아에서의 인권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1986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아시아지역에서의 인권에 대해 좀더 많은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하고 있는 독립적인 단체이다. (H) www.ahrchk.net (E) ahrchk@ahrchk.org (T) 852 2698 6339 (F) 852 2698 6367 주소: Unit D, 7th Floor, Mongkok Commercial Centre, 16-16B Argyle Street, Kowloon, Hongkong
- Egyptian Organization for Human Rights 이집트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인권과 자유라는 가치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H) www.eohr.org.eg
 (E) eohr@link.com.eg (T) 20 2 363 6811 (F) 20 2 362 1613 주소: 8/10 Matahaf El-Manyal Street 10th Floor Manyal El Roda Cairo, Egypt
- Human Rights Without Fronties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전세계 어느 곳에 있는 개인이든-여성, 남성, 어린이 등 그들의 권리에 관한 법적인 원칙들을 지켜나가고자 활동하고 있는 독립적인 운동.

 (H) www.hrwf.net (E) info@hrwf.net
- Lawyers Committee for Human Rights(LCHR) 미국 1978년부터 미국에서 일해온 이 단체는 인류의 정의와 인권들의 실현을 위해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이슈화시켜왔다. 지역에서 가장 근본적인 개인의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H) www.lchr.org (E) nyc@lchr.org (T) 1 212 845 5200 (F) 1 212 845 5299 주소: 333 Seventh Avenue, 13th Floor New York, NY 10001-5004

2. 인종문제

- Artists Against Racism 캐나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모임, 대중예술인들의 모임인만큼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H) www.artistsagainstracism.org (E) info@aarcharity.org (T) 1 416 410 5631 주소: AAA International Box 54511 Toronto, Ontario Canada M5M 4N5
- Internet Centre Anti-Racism Europe 유럽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권 단체로, 인권 기준의 신장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이들에 의해 조직되고 유지되는 네트워크이다.

제III부 참고자료 251

- (H) www.icare.to (E) info@icare.to
- American Anti-Slavery Group 미국 전 세계의 노예제에 반대하여 설립된 단체로 노예제에 대한 언론의 침묵 관행을 깨뜨리고 45000명 이상의 노예들을 해방시켰다. 노예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권문제임 을 알리고, 강력한 반 노예제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H) www.iAbolish.org (E) info@iabolish.com (T) 1 800 884 0719 주소: 198 Tremont St., #421, Boston, MA 02116 USA
- Anti-Slavery International 영국 1839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 단체로 영국에서 유일하게 노예제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각국 정부에 노예제 폐지 및 부작용을 해소할 것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로비 활동을 펼친다. 또한 노예제의 현실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한다. (H) www.antislavery.org (E) info@antislavery.org (T) 44 (0)20 7501 8920 (F) 44 (0)20 7738 4110 주소: Thomas Clarkson House, The Stableyard, Broomgrove Road, London, United Kingdom, SW9 9TL
- Free The Slaves 미국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단체. 반노예제 풀뿌리 단체에 대한 지원. 노예제의 현실에 대한 홍보, 노예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품 소비 유도를 위한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H) www.freetheslaves.net (E) info@freetheslaves.net (T) 1 202 588 1865 (F) 1 202 588 1514 주소: 1326 14th St. NW Washington, DC 20005 USA
-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미국 이 단체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미국 내 흑인 및 기타 소수 민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 내 활동을 장려하고, 흑인들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H) www.naacp.org (E) members@naacpnet.org (T) 1 410 521 4939 주소: 4805 Mt. Hope Drive, Baltimore Maryland 21215, USA
- Coalition to Abolish Slavery and Trafficking 미국 현대사회에서의 노예제를 근절하기 위한 비영리서비스 제공자, 플뿌리행동주의자들의 연합체이다. 1998년 설립되었다.
 - (H) www.trafficked-women.org (E) cast@trafficked-women.org (T) 1 213 473 1611 (F) 1 213 473 1601 주소: Little Tokyo Service Center 231 E. 3rd St., Suite G104 Los Angeles, California 90013
- European Network Against Racism 벨기에 EU 회원국 내의 인종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 비정부 단체들의 네트워크 조직이다.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반대하고 유럽 이민정책에서 인종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며,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다양성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 www.enar-eu.org (E) info@enar-eu.org (T) 32 2 229 35 70 (F) 32 2 229 35 75 주소: 43 rue de la Charit B-1210 Brussels

3. 감옥문제/사형제도

The Tennessee Coalition to Abolish State Killing(TCASK) 미국 사형제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사형

찬고: 주요 해외 NGO 목록

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H) www.tcask.org (E) tcask@earthlink.net (T) 1 615 329 0048 주소: PO Box 120552, Nashville, TN 37212 USA

- Death Penalty Focus 미국 DPF는 사형폐지 운동을 위해 1998년에 설립된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비영리 기구이다. 사형반대를 지지하는 풀뿌리 조직을 꾸리고 사형에 대한 조사와 연구 작업을 통한 정보를 공유한다. 계간으로 『파수꾼』이란 소식지를 발행해 캘리포니아와 미국 및 국제적인 사형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H) www.deathpenalty.org (E) info@deathpenalty.org (T) 1 415 243 0143 (F) 1 415 243 0994 주소: 870 Market Street, Suite 859 San Francisco, CA 94102 USA
-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OCMT) 스위스 고문에 반대하는 세계 기구(OMCT)는 오늘날 고문과 사형, 실종 그리고 모든 형태의 잔인성에 대항하여 싸우는 비 정부 조직의 가장 큰 국제적인 연합이며,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처우를 담당하고 있다. (H) www.omct.org (E) omct@omct.org (T) 41 22 809 4939 (F) 41 22 809 4929 주소: OMCT International Secretariat PO Box 21 8, rue du Vieux-Billard CH-1211 Geneva 8 Switzerland
- Prison Moratorium Project 미국 Prison Moratorium Project는 정치적인 교육과 파트너십에 기초한 공동체, 초창기의 단체, 감옥에 대한 운동을 하는 활동가를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캠페인과 직접적인 활동을 통하여 Prison Industrial Complex 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단체이다.
 - (H) www.nomoreprisons.org (E) pmp@nomoreprisons.org (T) 1 718 260 8805 주소: 388 Atlantic Avenue 3rd Floor Brooklyn, NY 11217 USA
- Campaign to End the Death Penalty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 각 국가 및 지역 지부들이 공동으로 제작/운영하는 사형제도 관련 사이트. (H) www.nodeathpenalty.org
- Catholics Against Capital Punishment(CACP) 오늘날 세계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처벌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1992년 설립된 단체. (H) www.cacp.org
 (E) ellen.frank@verizon.net (T) 301 654 0925 (F) 301 654 0925 주소: CACP, P.O. Box 5706, Bethesda MD 20824-5706
- National Coalit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미국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시민 단체로 1976년에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정보 제공, 사형제도 폐지, 개개인 협조 업무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 사형제도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하락 시키는 길이라 믿고 있다. (H) www.ncadp.org (E) info@ncadp.org (T) 1 202 543 9577 (F) 1 202 543 7798 주소: 920 Pennsylvania Ave. SE Washington, DC 2003

4. 아동인권

(Kids Can) Free the Children International 국제조직(캐나다) 전 세계 아이들을 가난과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아이들에게 발언권과 통솔력 훈련, 그리고 지역적인 작은 것에서부터 국제적인 수준까지 아이들에 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 스스로가 사고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일을 하

제III부 참고자료 253

참고: 주요 해외 NGO 목록

- 고 있는 단체. (H) www.freethechildren.org (E) info@freethechildren.com (T) 1 905 760 9382 (F) 1 905 760 9157 주소: Suite 300, 7368 Yonge Street Thornhill, Ontario L4J 8H9 Canada
- ECPAT International 국제조직 아동 매매춘, 아동 포르노그라피, 기타 성적인 목적의 아동 학대에 반대하는 단체와 개인들의 네트워크 조직. 전세계 모든 아동이 성적 상업적 착취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다. (H) www.ecpat.net (E) info@ecpat.net
- Children's Defense Fund 미국 아동들 인생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5가지 출발-건강한 출발(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 Head start(학업의 출발), 공평한 출발(재정적으로), 안전한 출발(학대 없이), 도덕적인 출발(올바른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H) www.childrensdefense.org (E) cdfinfo@childrensdefense.org (T) 202 628 8787 주소: The Childrens Defense Fund 25 E Street NW Washington, DC 20001(미국 전역에 Local office가 존재)
- Child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노르웨이 세계 아동 관련 인권단체들의 연합체. 6대주의 다양한 나라들의 이동관련인권단체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이기도 하다. 이동인권의 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제공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동인권에 대한 시민활동을 벌이기에는 적절한 단체가 아니다. (H) www.childwatch.uio.no (E) childwatch@uio.no (T) 47 22 85 43 50 (F) 47 22 85 50 28 주소: Childwatch International, P.O. Box 1132 Blindern, N-0317 OSLO, Norway
- Save the Children Federation 미국 세계 아동들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과 건강을 위해 1932년에 설립된 단체로 아프리카,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 (H) www.savethechildren.org (E) twebster@savechildren.org (T) 1 800 728 3843 주소: Save the Children, Att: Donor Services, 54 Wilton Road, Westport, CT 06880 USA
- Children's Defense Foundation 미국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고 편안한 가정과 공동체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이 설립한 단체로, 특히 저소득 충, 소외 계충의 아동들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H) www.childrensdefense.org
 - (E) cdfinfo@childrensdefense.org (T) 1 202 628 8787 $\,$ 주소: 25 E Street, NW Washington, DC 2000 1
-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미국 부모들과, 아동, 학교, 공동체가 실종된 아동을 찾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설립된 단체로, 미아 방지, 아동의 학대 및 성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대중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H) www.missingkids.com (T) 1 703 274 3900 주소: 699 Prince Street Alexandria, VA 22314 USA
- American Indian Children Hunger Fund 미국 이 조직은 특히 북미와 중미 인디언 어린이들의 생존과 관련해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세워졌다. (H) www.americanindianchildren.org (E) lessedcloud@aol.com (T) 1 623 376 0727 (F) 1 623 376 0732 주소: P.O. Box 724 Laveen, AZ 85339-0724 USA
- Education and Vigilance Network(anti-racism) 인종차별주의를 반대하는 단체 및 기사들을 모아 놓은

참고: 주요 해외 NGO 목록

웹사이트. (H) www.evnetwork.net (E) evnet@go.com (T) 570 923 9946 주소: PO Box 44 Renovo, PA 17764

Child Rights Information Network(CRIN) 영국 세계 모든 아동들이 차별없이 가져야 할 4개의 기본 권리를 정하고, 정해진 권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마련해 두었다. (H) www.crin.org (E) info@crin.org (T) 44 207 716 2240 (F) 44 207 793 7628 주소: Child Rights Information Network (CRIN) c/o Save the Children 17 Grove Lane London SE5 8RD UK

5. 여성운동

- Equality NOW 미국 소녀들과 여성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시민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인권조직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해 일하고 있다. (H) www.equalitynow.org (E) info@equalitynow.org 주소: Equality Now, P.O. Box 20646, Columbus Circle Station, New York NY 10023, USA
-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미국 가장 큰 페미니스트 단체이다. 1966년에 창설된 이래 NOW의 가장 큰 목표는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하여 모든 여성의 평등함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H) www.now.org/organiza/info.html (E) now@now.org 주소: 733 15th Street NW, 2nd floor Washington, D.C. 20005 USA
-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국제조직(미국)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단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착취에 대항하여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면 성인여성의 매춘과 인신매매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다. (H) www.catwinternational.org
 - (E) info@catwinternational.org (F) 1 413 367 9262 주소: Dr. Janice Raymond Co-Executive Director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Professor,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O. Box 9338 N. Amherst, MA 01059 USA
- Global Fund For Women 미국 여성에게 경제적 기회와 독립, 교육을 지원하고, 여성폭력을 근절하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강화하는 등 여성이슈를 다루는 미국 밖의 여성 인권 단체를 홍보, 지지,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조성한다. (H) www.globalfundforwomen.org
 (E) gfw@globalfundforwomen.org (T) 1 415 202 7640 (F) 1 415 202-8604 주소: Global Fund for Women 1375 Sutter Street, Suite 400 San Francisco, CA 94109
- Feminist Majority Foundation 미국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연구 및 활동을 함. 여성의 법적 사회적, 정치적 평등에 중심을 둔 연구 및 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함. (H) www.feminist.org (E) femmaj@feminist.org (T) 1 703 522 2214 (F) 1 703 522 2219 주소: 1600 Wilson Boulevard, Suite 801 Arlington, VA 22209 USA
- 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 in Women 태국 인신 매매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위와 대리인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인신매매에 대항하는 일에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고 여성들을 희생자로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기 위해서 활동한다.

제III부 참고자료 255

- (H) www.inet.co.th/org/gaatw (E) GAATW@mozart.inet.co.th (T) 662 864 1427 (F) 662 864 1637 주소: The International Coordination Office P.O.Box 36, Bangkok Noi Office, Bangkok 10700, Thailand
- ISIS International 필리편 여성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시민단체.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리더십을 함양하며, 아-태 지역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H) www.isiswomen.org (E) admin@isiswomen.org (T) 632 435-3405 (F) 632 924-1065 주소: P.O. Box 1837, Quezon City Main, Philippines
- Feminists for Life 미국 실제 생활 속에서 페미니스트들을 삶을 보여 주고 있다. (H) www.feministsforlife.org (E) info@feministsforlife.org (T) 1 202 737 3352 주소: 733 15th Street, NWSuite 1100Washington, DC 20005 USA
-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ICRW) 미국 여성연구를 위한 국제센타는 1976년 설립된 민간 비영리 조직으로 인도의 사무실과 함께 워싱턴 D.C.에 기반을 두고 있다. (H) www.icrw.org (E) info@icrw.org (T) 1 202 797 0007 (F) 1 202 797 0020 주소: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ICRW) 1717 Massachusetts Avenue, NW·Suite 302, Washington, DC 20036, U.S.A.
- International Womens Rights Action Watch(IWRAW) 미국 국제여권실행감시(IWRAW)는 198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국제여성회의에서 조직된 단체로, 1979년 유엔에 의해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제거를 위해 만들어진 협약(CEDAW Convention)이 실행되는지를 감시한다.
 (H) www.igc.org/iwraw (E) iwraw@hhh.umn.edu (T) 1 612 625 5093 (F) 1 612 624 0068 주소: IWRAW, Hubert Humphrey Institute of Public Affairs, Univ. of Minnesota 301-19th Avenue South, Minneapolis, MN 55455, USA
- Woman of Action and Vision 미국 이 단체의 주요활동은 신념을 기반으로 한 활동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 활동가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는데 있음. (H) www.wova.org (E) carol@wova.org 주소: PO Box 4433 Walnut Creek, CA 94596 USA
- The Women's Foundation(TWF) 여성과 소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단이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정의라는 환경에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H) www.twfusa.org (E) info@twfusa.org (T) 1 415 837 1113 (F) 1 415 837 1144 주소: THE WOMEN'S FOUNDATION 340 Pine Street, Suite 302, San Francisco, CA 94104 USA

6. 동성애자인권

Campaign to End Homophobia 미국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인식에 대해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비영리 법인. (H) www.endhomophobia.org (E) barbarazoloth@earthlink.net 주소: P.O. Box 271, Nyack, NY 10960. USA

- The Lesbian and Gay Immigration Rights Task Force(LGIRTF) 미국 널리 퍼진 인종차별에 관한 영향에 대항하는 이민자(이주자)와 변호사 그리고 다른 활동가 등의 연결집단이다. 레즈비언, 게이, HIV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 법률적인 서비스와 정보, 지지 등을 보내줌으로서 그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돕는다. (H) www.lgirtf.org (E) info@lgirtf.org (T) 1 212 714 2904 (F) 1 212 714 2973 주소: 350 West 31st Street, Suite 505, New York, NY 10001 USA
- 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 미국 전국 게이와 레즈비언 특별 위원회. 강력한 정치적 활동을 통하여 게이, 레즈비언 양성, 성전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진보적인 전국 기구 (H) www.ngltf.org (E) ngltf@ngltf.org (T) 1 202 332 6483 (F) 1 202 332 0207 주소: 1700 Kalorama Road NW. Washington, DC 20009-2624 USA
- National Youth Advocacy Coalition 미국 젊은 레즈비언이나 케이, 혹은 양성연애자나 성전환수술을 받은 젊은이들을 위한, 이들과 함께하는 사회정의 단체임. 이 단체는 이러한 젊은이들에 대한 차별을 중식시키고 이들의 정신적 감성적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기도 함 (H) www.nyacyouth.org (E) mbwende@nyacyouth.org (T) 1 202 319 7596 (F) 1 202 319 7365 주소: 1638 R Street, NW, Suite 300 Washington, DC, 20009 USA
- THE INTERNATIONAL LESBIAN AND GAY ASSOCIATION 벨기에 레즈비언 케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로부터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H) www.ilga.org (E) ilga@ilga.org (T) 32 2 5022471 (F) 32 2 5022471 주소: ILGA Administrative Office, 81 Kolenmarkt, *B 1000, Brussels, Belgium

7. 장애우인권

- American Foundation for the Blind 미국 미국 시각장애인 협회(The American Foundation for the Blind)는 1921년 이후 줄곧 (헬렌 켈러는 40년 이상 그녀의 삶을 이 단체에 헌신) 시각장애인들이 그들의 잠재력과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걸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H) www.afb.org (E) afbinfo@afb.net (T) 1 212 502 7600 (F) 1 212 502 7777 주소: 11 Penn Plaza, Suite 300 New York, NY 10001 USA
- Computers to Help People 미국 장애를 가진 60%이상의 사람들이 실직한 상태이다. 이 단체는 이런 막대한 인간자원의 낭비를 기술점자센터(TBC)와 원조기술센터(ATC)를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일한다. (H) www.chpi.org (E) director@chpi.org (T) 1 608 257 5917 (F) 1 608 257 3480 주소: 825 East Johnson Street, Madison, WI 53703
- Disability Assistance of Central Texas 이 단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공동체로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각 개인의 목적 달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H) www.dact.org (E) asert@dact.org (T) 1 512 834 1827
- Disability Rights Education and Defense Fund 미국 DREDF는 먼저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H) www.dredf.org (E) dredf@dredf.org (T) 1 202 986 0375 (F) 1 510

Hellen Keller International 미국 헬렌 켈러 기관은 직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눈의 장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또한 눈이 먼 사람들을 위해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눈을 멀게 하는 원인이 되는 micronutrient malnutrition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H) www.hki.org (E) luucat@hotmail.com 주소: Helen Keller Worldwide352 Park Avenue South12th FloorNew York, NY 10010 USA

8. 평화/전쟁반대

- Veterans For Peace 미국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 전, 걸프전 등에 참전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반전, 평화 단체. (H) www.veteransforpeace.org (E) vfp@igc.org (T) 314 725 6005 주소: World Community Center, 438 North Skinker, St. Louis MO 63130 USA
- Peace Action 미국 핵무기의 폐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평화적인 방법의 경제활동과 전 세계적인 무기 매매를 종식시키고 국가 간의 갈등 해결에 비군사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활동함.
 (H) www.peace-action.org (T) 1 202 862 9740 (F) 1 202 862 9769 주소: 1819
 H Street NW Suite 420 Washington, DC 20006 USA
- Abolition 2000 국제조직 (본부 미국) 핵 확산 방지 및 핵무기 제거를 위하여 90개국 2000여개의 단체가 협력하여 만든 조직. 핵무기 제거를 위한 국제적인 조약을 채결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H) www.abolition2000.org (E) admin@abolition2000.org (T) 1 814 453 4955
 (F) 1 814 452 4784 주소: Abolition 2000 c/o Pax Christi USA 532 West 8th Street Erie, PA 16502 USA
-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미국 대량 살상 무기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며 활동하는 단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핵무기를 없애는데 대한 힘을 쏟고(법의 국제적 뤁을 촉진하고),
 교육과 운동을 통한 평화의 유지를 위해 활동한다. (H) www.wagingpeace.org
 (E) dkrieger@napf.org (T) 1 805 965 3443 (F) 1 805 568 0466 주소: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PMB 121, 1187 Coast Village Road, Suite 1 USA
-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국제단체(미국) 60개국 이상의 보건 관련 단체들의 연합체로 핵무기 제거, 무기 거래 금지, 군비 축소를 통한 시민들의 보건 복지 향상, 친환경적 개발 등을 위해 활동한다. (H) www.ippnw.org (E) ippnwbos@ippnw.org (T) 1 617 868 5050 (F) 1 617 868 2560 주소: 727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USA
-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미국 전 세계의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199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지뢰 제거를 위한 조약 체결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뢰로 인한 희생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H) www.icbl.org (E) icbl@icbl.org (T) 1 202 547 2667 주소: 110 Maryland Ave NE Box 6, Suite 509 Washington DC 20002 USA

Peace Brigades International 영국 인권을 보호하고 분쟁의 비폭력적 해결을 주장하는 단체. 이 단체는 분쟁

-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을 파건해 평화적 해결을 돕는다. 자원봉사자들은 정치적 폭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인권수호자들이나 단체들과 함께 일한다. (H) www.peacebrigades.org (E) info@peacebrigades.org (T) 44-20-7561-9141 (F) 44-20-7281-3181 주소: Unit 5, 89-93 Fonthill Rd London N4 3HT U.K.
- International A.N.S.W.E.R 미국 전쟁과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는 단체. 현재 미국의 이라크전에 반대하여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H) www.internationalanswer.org (E) info@internationalanswer.org (T) 1-212-633-6646 주소: 39 W. 14 St., #206, NY, NY 10011 USA
- Peace Brigades International 영국 (H) www.peacebrigades.org (E) info@peacebrigades.org (T) 44 (0)20 7561 9141 (F) 44 (0)20 7281 3181 주소: Unit 5, 89-93 Fonthill Rd London N4 3HT U.K
- National Youth and Students Peace Coalition 미국 평화를 수호하는 젊은이와 학생 전국 연합회. 최근 부시의 태러와의 전쟁과 관련하여 연합회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 반대하고 대외정책에 있어 경제 사회적 정의 실현에 앞장 설 것을 주장. (H) www.nyspc.net 주소: The National Youth & Student Peace Coalition c/o United States Student Association 1413 "K" Street NW, 9th Floor Washington, DC 20005 USA
-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미국 Nuclear Age Peace Foundation은 대량 살상 무기기 없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며 그에 힘쓰고 있는 단체이다. (H) www.wagingpeace.org (E) dkrieger@napf.org (T) 1 805 965 3443 (F) 1 805 568 0466 주소: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PMB 121, 1187 Coast Village Road, Suite 1 USA
- Peace United 미국 평화연합(Peace United)은 인권과 사회의식을 위한 단체이다. 단체의 목적은 박애주의적 실천을 통해 불행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재정적 도움을 주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H) www.peaceunited.gq.nu (E) g0fer@aol.com 주소: Western Branch High School, 1968 Bruin Drive, Chesapeake, Va 23321 USA
- Science for Peace 캐나다 평화를 위한 과학은 자선단체이고 법인조직이며, 약 40여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다. 이 단체는 자연과학자, 공학자, 사회과학자, 등의 학자들과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평화와 정의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교수, 대학원생, 대학생이 한테 모여 만든 캐나다의 조직이다. (H) scienceforpeace.sa.utoronto.ca
 (E) sfp@physics.utoronto.ca (T) 1 416 978 3606 (F) 1 416 978 3606 주소: H02 University College, 15 Kings College Circle,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Ontario, Canada M5S 1A1
- The Peace and Justice Studies Association (PJSA) 미국 평화와 정의 연합(PJSA)은 평화 연구, 교육 및 개발 협회(COPRED)와 평화 연구 연합(PSA)의 합병으로 새로이 생겨난 단체이다. (H) www.evergreen.edu/pjsa/ (E) pjsa@attbi.com (T) 1 360 867 5230 (F) 1 360 867 6553 주소: PJSA c/o The Evergreen State College Mailstop SEM: 3127 Olympia, Washington 98505 USA

- War Child 영국 War Child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독립적인 단체들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H) www.warchild.org (E) mail@warchild.globalnet.co.uk (T) 44 171 916 9276 (F) 44 171 916 9280 주소: Ground floor, Unit 3 5-8 Anglers Lane London, NW5 3DG UK
- WarWidows International Peace Alliance 미국 전쟁미망인국제평화연대(WIPA)는 전쟁에 의해 심오한 영향을 받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확대하여 들려주고 그를 통해 무장분쟁을 종결하고 조화를 이루며 세계의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 (H) www.warwidows.org (E) info@regrettoinform.org (T) 1 415 495 6380 (F) 1 415 495 6384 주소: 953 Mission Street, Suite 20 San Francisco, CA 94103 USA

9. 원조/구호/기아

- World Vision 국제조직(영국) 세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구원과 발전 기관들중 하나이다. 거의 100개의 나라에서 75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난과 기아, 부정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기독교 단체이다. (H) www.worldvision.org.uk (E) info@worldvision.org.uk (T) 44 01908 841000 (F) 44 01908 841001 주소: 599 Avebury Boulevard Milton Keynes MK9 3PG UK
- NetAid.org 미국 전 세계 빈곤을 퇴치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선진국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활동하는 단체. 2000년 9월. 세계 정상들이 2015년까지 해결하기로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H) www.netaid.org (E) info@netaid.org (T) 1 212 537 0500 (F) 1 212 537 0501 주소: 267 Fifth Avenue, 11th Floor, New York, NY 10016 USA
-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FHI) 국제조직(스위스)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구제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국제단체.
 (H) www.fhi.net (T) 41 22 755 14 44 (F) 41 22 755 16 86 주소: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243 Route des FayardsCase postale 608 1290 Versoix/Geneva, Switzerland
- Catholic Fund for Overseas Development 영국 1962년부터 제3세계의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 일해온 영국의 자선 단체이다. 이 단체는 모든 개인은 존경과 존귀함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모든 자원은 인종과 국가와 종교를 뛰어 넘어 남녀노소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라 생각한다.
 (H) www.cafod.org.uk (T) 44 20 7733 7900 (F) 44 20 7274 9630 주소: CAFOD, Romero Close, Stockwell Road, London, SW9 9 TY UK
- Food for the Poors(FFP) 미국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량(FFP)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극빈자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1982년에 세워진 단체이다. 이 지역민들의 건강, 경제, 사회, 정신적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한다. (H) www.foodforthepoor.org
 - (E) donorservice@foodforthepoor.org (T) 1 954 427 2222 주소: 550 SW 12th Ave–Dept 9662 Deerfield Beach, FL 33442 USA
- Oxfam International 영국 Oxfam International은 세계의 만연되어 있는 기이, 불평등,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80개가 넘는 나라에서 같이 협력하여 12개의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이다. (H) www.oxfam.org (E) information@oxfaminternational.org (T) 44 1865 31 39 39 (F) 44 1865 31 37 70 주소: Oxfam International Secretariat, Oxford Suite 20, 266 Banbury Road, Oxford, OX2 7DL, UK

Share Our Strength(SOS) 미국 Share Our Strength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기아 및 가난에 반대하는 단체인.
이 단체는 1984년 캐피톨 힐에 위치한 가난한 집의 지하에서 시작되었음. 현재, 이 단체는 저임금
가정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의 추진, 디너 개최, 음식 및 영양학강의 등을 다양한 활동을 함.
(H) www.strength.org(T) 1 800 969 4767(F) 1 202 347 5868 주소: 733 15th St.
NW Ste640, Washington DC20005 USA

10. 노동일반

- Labornet 노동운동 안에서 민주적인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설립된 온라인 네트워크 캐나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에도 형성이 되어있다. (H) www.labornet.org (E) labornet@labornet.org
- Labour and Society International 영국 20년 동안 영국에서 발전한 노동조합 교육의 전문가적 경험을 이용하여, 개발도상국과 과도기에 처해 있는 나라의 조합을 지원하는 단체 (H) www.lsi.org.uk (E) info@lsi.org.uk (T) 44 1204 381810 (F) 44 1204 361780 주소: Labour and Society International, Projects Office Commerce House, Bridgeman Place, Bolton BL2 1DW, UK
- The International Labor Rights Fund 미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노동 및 강제노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필요에 따라 노동계와 정부, 기업 등과 적절히 연대하여 활동을 벌인다. (H) www.laborrights.org (E) laborrights@igc.org (T) 1 202 347 4100 (F) 1 202 347 4885 주소: 733 15th St., NW #920 Washington, DC 20005
- 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 미국 노동자들의 연합체로, 사업장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한다. 산업 노동자들의 커다란 조직체 구성을 목표로 하며, 노동자들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H) www.iww.org (E) www@iww.org (T) 1 415 863 9627 주소: PO Box 13476, Philadelphia, PA 19101, USA
- United Farm Workers of America 농업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라틴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H) www.unitedfarmworkers.com (T) 1 661 822 5571 (F) 1 661 823 6177 주소: United Farm Workers of America PO Box 62 Keene, CA 93531
-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기구(스위스)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은 사회 정의와 국제적으로 인식된 인권 및 노동권의 증진을 위한 국제연합의 전문 기관이다. 1919년에 창립되었 고, 베르사유 조약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산물이며, 1946년에 UN의 첫 번째 전문 기관이 되었다.

- (H) www.ilo.int ilo@ilo.org (T) 41 22 799 6111 (F) 41 22 798 8685 $\stackrel{>}{\sim}$ \pm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4, route des Morillons CH-1211 Geneva 22
- Labour Start 영국 노동운동에 관한 전세계의 소식들을 알려주는 인터넷 독립미디어 (H) www.labourstart.org (E) ericlee@labourstart.org (T) 44 20 83491975 주소: 51 Briarfield Avenue, London N3 2LG, U.K.
- Working Today 미국 노동운동에 관한 독립미디어 (H) www.workingtoday.org
 (E) membership@workingtoday.org (T) 1 866 420 5807 주소: Working Today 55
 Washington Street, Suite 557 Brooklyn, NY 11201

11. 노동착취감시

- Sweatshop Watch 미국 노동 착취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여 만든 연합 단체이다. 노동자들이 보다 낳은 환경에서 일하며 최소한의 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착취 현장을 감시한다.
 (H) www.sweatshopwatch.org (E) sweatinfo@sweatshopwatch.org (T) 1 510 834 8990 주소: 310 Eighth Street, Suite 303 Oakland, CA 94607 USA
- Clean Clothes Campaign 네덜란드 1990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스웨트샵(노동착취공장)에서 만드는 옷을 입지 말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독일과 영국 등 10개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캠페인은 의류산업에서의 노동자들의 권리와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
 (H) www.cleanclothes.org (E) info@cleanclothes.org (T) 31 20 412 2785 (F) 31 20 412 2786 주소: Postbus 11584 1001 GN Amsterdam The Netherlands
- United Students Against Sweatshop(USAS) 미국 200개 캠퍼스의 학생과 커뮤니티 멤버로 구성된 기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기업 권력에 대항하는 운동을 펼친다. 캠퍼스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학생들의 운동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의 권력과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 섬.
 (H) www.usasnet.org (E) organize@usasnet.org (F) 1 202 347 0708 주소: 888 16th
 St. NW Suite 303, Washington DC 20006. USA
- Campaign for Labour Rights 미국 노동 권리들을 위한 캠페인, 노동 착취 공장들안에서 노동 권리들을 위한 캠페인이 노동자들의 투쟁들을 전공하는 노동 단체. (H) www.summersault.com/~agj/clr (E) clrdc@afgj.org (T) 1 202 544 9355 주소: Campaign for Labor Rights National Office, Washington, DC USA
- Child Labor Coalition The Child Labor Coalition(CLC)은 성, 인종, 국적, 종교 경제상황, 거주지 등에 관계없이 어린이 노동력 착취 근절을 위해 활동. (H) www.stopchidlabor.org (E) childlabor@ncInet.org
- 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 인도 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은 전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에 의해 느껴진 희망과 필요에 의해 태어난 운동이다. (H) www.globalmarch.org (E) childhood@globalmarch.org 주소: 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 L-6, Kalkaji, New Delhi-19

- The UK Campaign Against Sweatshop 영국 노동착취에 반대하는 영국에서의 캠페인.

 (H) www.nosweat.org.uk (E) mailto:bath@nosweat.org.uk 주소: PO Box 36707 London
 SW9 8YA 07904 431 959
- The NIKE Watch Campaign 나이키사의 개발도상국에서의 노동착취에 대해 폭로하고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사이트. (H) www.caa.org.au/campaigns/nike (E) timc@sydney.caa.org.au

12. 세계화

- World Society Forum 브라질 세계화에 반대하고 자본의 지배 혹은 제국주의적인 경제 지배 등에 반대한 시민 사회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

 (H) www.forumsocialmundial.org.br (E) fsm2003ci@uol.com.br (T) 55-11-3258-8914

 (F) 55-11-3258-8914 주소: Rua General Jardim, 660, 8º andar, sala 81 Cep 01223-010 Sao Paulo-SP Brazil
- Jubilee 2000 영국 국제 부채와 재정 등에 관련한 저명하고 급진적인 학자들의 연구를 소개하고, 100% 회수 불가능한 개발국가의 부채에 대한 탕감들을 주장하는 단체. (H) www.jubilee2000uk.org (E) info.jubilee@neweconomics.org (T) 44 207 089 2853 (F) 44 207 407 6473 주소: Jubilee Research, New Economics Foundation, Cinnamon House, 6-8 Cole St., London SE1 4YH UK
- ATTAC 국제조직 자본시장의 민주적인 조정을 주장하고, 신 자유주의에 반대하며 보다 효과적인 정보의 교류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전세계 35개국에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H) www.attac.org (E) mailto:webmaster@attac.org
- Global Exchange 미국 세계적으로 정치, 사회, 환경의 정의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저하는 비영리 국제 인권 단체이다.
 전세계에서의 협력을 형성하면서 미국 대중 사이에 세계적인 인식을 늘리기 위해 일하고 있다.
 (H) www.globalexchange.org (E) info@globalexchange.org (T) 1 415 255-7296
 (F) 1 415 255 7498 주소: Global Exchange 2017 Mission Street #303, San Francisco,
 California 94110 USA
- Just Act 미국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과 보존 및 자기-보존적인 지역사회를 구축을 위한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회 및 경제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단체. (H) www.justact.org (E) info@just.org (T) 1 415 431 5204 (F) 1 414 431 5953 주소: 333 Valancia Street Suite 101, San Francisco. CA 94130 USA
-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미국 세계화의 경제적 효과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를 제공함으로써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내고, 세계화에 반하여 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보다 긴 안목에서 생태적 안정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단체. (H) www.ifg.org (E) info@ifg.org (T) 1-415.561.7650 (F) 1-415.561.7651 주소: 1009 General Kennedy

- Avenue #2, San Francisco, CA 94129, USA
- WTO Action WTO 체제에 반대하고 그 활동을 감시하는 단체. (H) www.wtoaction.org
- Global Trade Watch 미국 세계화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1995년 시작된 퍼블릭시티즌의 캠페인. (H) www.citizen.org/trade (E) gtwinfo@citizen.org (T) 1 202 588 1000 주소: 600 20th St. NW Washington, DC. 20009 USA
- Alliance for Responsible Trade 지속가능한 개발과 무역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동, 가족농장, 여성환경, 개발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조직들의 연합체이다. (H) www.art-us.org

13. 유권자권리/의회감시

- Committee for the Study of the American Electorate 미국 기관의 주요 활동 목표는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이슈에 관한 연구. 주요 주제는 선거운동의 홍보, 선거운동의 재정, 미디어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 등 (H) www.gspm.org/csae 주소: 601 Pennsylvania Ave, NW, South Building #900 Washington, DC 20004 USA
- Common Cause 미국 열려있는 정부,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시민들의 로비 단체이다. 정부의 부패와 특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대변하는 단체. 정치 자금 흐름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도 제공한다. (H) www.commoncause.org (E) grassroots@commoncause.org (T) 1 800 926 1064 주소: 1250 Connecticut Ave., NW #600 Washington, D.C. 20036
- League of Women Voters 미국 정보화되고 적극적인 시민의 정치참여를 고무하고 주요한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교육과 지원활동을 통해 공공정책에 영향을 준다. 여성유권자들의 의회감 시운동 (H) www.lwv.org (E) lwv@lwv.org (T) 1 202 429 1965 (F) 1 202 429 0854 주소: 1730 M Street NW, Suite 1000, Washington, DC 20036-4508 USA
- Public Campaign 미국 미국선거에서 특정한 이익을 바라는 자금의 역할이 주는 것과 미국 정치에서의 거대 기부자들의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혁을 전파하는데 힘쏟고 있다.
 (H) www.publicampaign.org (E) info@publicampaign.org (T) 1 202 293 0222 (F) 1 202 293 0202 주소: 1320 19th Street, NW Suite M-1 Washington, D.C. 20036 USA
-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미국 환경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친 환경적 의회 구성을 위한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단체. 환경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의회감시를 하고 있다. (H) www.lcv.org (T) 1 202 785 8683 (F) 1 202 835 0491 주소: 1920 L Street, NW, Suite 800 Washington, DC 20036 USA
- The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미국 정치자금을 추적하고 그것이 선거와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컴퓨터를 활용해서 선거운동자금관련 문제를 연구해 언론, 연구자, 학자, 활동가들과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H) www.opensecrets.org (E) info@crp.org (T) 1 202 857 0044 (F) 1 202 857 7809 주소: 1101 14th St., NW #1030 Washington, DC 20005-5635 USA

차고: 주요 해외 NGO 모르

- Electoral Reform Society 영국 정치인, 정당, 의사 결정자에 대한 로비, 서적과 리플릿 발행, 학교, 대학, 일반대중을 위한 선거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의와 세미나 개최, 선거에 있어 분석과 조언, 선거와 선거과정에 대한 질문에 반응하는 정보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
- Charter88 영국 Charter88은 아무런 당파성을 표방하지 않는 독자적 조직이다. 이들은 영국 정치 개혁의 가능성을 믿는 8만 이상의 후원자를 갖고 있다고 한다. 차터88은 국민이 그들이 통치받고 싶은 방식이나 국민을 위한 정책에 대해 얼마든지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H) www.charter88.org.uk (E) info@charter88.org.uk (T) 44 20 8880 6088 (F) 44 20 8880 6089 주소: 18A Victoria Park Square London E2 9PB UK
- Congressional Accountability Project 미국 미 의회의 부쾌에 맞서 싸우는 단체이다. 의원의 윤리성과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세우기 위한 감시와 비판을 한다. 의원들의 급여나 수당성 특전에 대한 조사에서부터 의원 개개인이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비리나 이권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 요청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책임있는 의원상을 만들고자 한다. (H) www.congressproject.org
 (E) cap@essential.org (T) 1 202 296 2787 (F) 1 202 833 2406 주소: 1611 Connecticut Ave. NW, Suite #3A; Washington, DC 20009 USA
- Democracy Net 미국 Democracy Net(DNet)은 투표자의 정보의 질과 양을 항상시키고 보다 교육받은 선거인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쌍방향 웹사이트. (H) www.democracynet.org (E) dnet@lwv.org
- Project Vote Smart 미국 현명한 투표 프로젝트(Project Vote Smart)는 정치개혁과 시민참여를 위해 조직된 단체다. 전직 대통령들과 상원의원들이 미국적 가치로의 자유를 주창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번영이 지속되게끔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설득한다. (H) www.vote-smart.org
 (E) comments@vote-smart.org (T) 1 406 859 8683 주소: One Common Ground, Philipsburg, MT 59858 USA

14. 납세자권리/예산감시

- Taxpayers Against Fraud 미국 세금의 부적절한 사용 및 청구에 대한 감시를 하고 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시민들, 정부 관료들이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한다.
 (H) www.taf.org(T) 1 202 296 4826(F) 1 202 296 4838 주소: 1220 19th Street,
 NW Suite 501 Washington DC 20036 USA
- The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미국 예산 정책을 분석하고 예산 작성과 설립에 증진을 도모하는 비정부기구와 리서치를 도와주며 특히 진행중인 정책 논의에 유용한 리서치와 빈민 예산 정책 리서치를 원조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H) www.internationalbudget.org
 (E) info@internationalbudget.org (T) 1 202 408 1080 (F) 1 202 408 1056 주소: 820
 First Street, NE Suite 510 Washington, DC 20002 USA

- Green Scissors Campaign 미국 이 단체는 1994년부터 환경에 유해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의회와 정부의 정책 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H) www.greenscissors.org
 (E) foe@foe.org (T) 1 877 843 8687 (F) 1 202 783 0444 주소: Friends of the Earth 1025 Vermont Ave., NW, Suite 300 Washington, DC 20005 USA
- Citizens against Government Waste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적 낭비, 관리 부실, 비효율성에 대한 감시를 하는 단체. (H) www.cagw.org (E) membership@cagw.org (T) 1 202 467 5300 주소: 1301 CONNECTICUT AVENUE, NW, SUITE 400, WASHINGTON, DC 20036 USA
- National Taxpayers Union 미국 미국의회에서 국민이 낸 세금, 즉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는 단체들간의 연합체 (H) www.ntu.org (E) ntu@ntu.org (T) 1 703 683 5700 (F) 1 703 683 5722 주소: 108 North Alfred St. Alexandria, Virginia 22314 USA
- Americans for Fair Taxation 미국 미국의 세금체도 안에서 납세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정부는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는게 가장 좋은지를 연구하는 조직이다. (H) www.fairtax.org (E) info@fairtax.org 주소: PO Box 27487 Houston, Texas 77227-7487
- 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 미국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함으로써 부패를 근절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교육하고 있다. (H) www.whistleblower.org (T) 1 202 408 0034 주소: 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 1612 K Street, N.W., Suite 400, Washington, DC 20006
- Project on Government Oversight 미국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 있어서 예산의 사용과 낭비를 감시하는 조직이다.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의 일을 감시하는 일을 한다. (H) www.pogo.org (T) 1 202 347 1122 (F) 1 202 347 1116 주소: 666 11th street, NW Suite 500 Washington DC 20001-4542
- Taxpayers for Common Sense 미국 미국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이다.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좀더 책임있고, 효율적인 정부의 운영을 위해 정부의 예산낭비에 대해 감시하고 있다. (H) www.taxpayer.net (F) 1 202 546 8511 주소: 651 Pennsylvania Ave, SE Washington, DC 20003 USA

15. 소비자권리

- Ethical Consumer Research Association 영국 기업윤리성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 제공하고 기업에 대한 비판세력과 연구단체를 지원한다. 보편적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동물복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이에 위반되는 기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H) www.ethicalconsumer.org (E) mail@ethicalconsumer.org (T) 44 161 226 2929 (F) 44 161 226 6277 주소: Unit 21, 41 Old Birley Street, Manchester M15 5RF UK
- National Consumers League 미국 소비자와 노동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익을 규정하고 보호하는 비영리 단체. 세계의 경제시장과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미성년 노동, 식품안전 의료·의약

정보 등)에 대해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비자 단체이다. (H) www.natlconsumersleague.org (E) info@nclnet.org (T) 1 202 835 3323 (F) 1 202 835 0747 주소: National Consumers League 1701 K Street, N.W., Suite 1200 Washington, D.C. 20006 USA

- Consumer International 영국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 관련 단체를 연결하는 단체. 115개국의 250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빈민자,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한다. 주로 회원 단체를 지원하고 소비자관련 정책에 관한 범세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H) www.consumersinternational.org (E) consint@consint.org (T) 44 207 226 6663 (F) 44 207 354 0607 주소: Consumers International Head Office 24, Highbury Cresent London N5 1RX United Kingdom UK
- Consumer Union 미국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에 주력하고 있는 단체. 제품과 서비스, 개인 재정, 건강과 식품 영양 등 소비자가 관심있어 하는 분야에 관해 편향되지 않은 조언을 하고 있다. 1936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Consumer Reports(『소비자 보고서』)라는 이름의 정기간행물 판매수입과,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H) www.consumer.org (T) 1 914 378 2455 (F) 1 914 378 2928 주소: Consumers Union 1300 Guadalupe, Suite 100 Austin, TX 78701-1643
- The International Baby Food Action Network 아이들이 먹는 식품의 안전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는 소비자단체들간의 연합조직이다. 세계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다. (H) www.ibfan.org
-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미국 내의 소비자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간의 연합체이다. (H) www.consumerfed.org
- Consumers' Association of Canada 캐나다 지역별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의 각 영역에서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는 캐나다 소비자단체들의 연합. (H) www.consumer.ca (T) 1 613 238 2533 (F) 1 613 563 2254 주소: 404-267 O'Connor St. Ottawa, ON K2P 1V3 CANADA
- European Research into Consumer Affairs(ERICA) 영국 유럽 각 지역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연구활동을 하고 사람들에 의해 1980년에 설립된 소비자단체이다.
 - (H) www.net-consumers.org (E) info@net-consumers.org (F) 44 (0) 1932 856252 주소: European Research into Consumer Affairs Drivers Elgin Road Weybridge Surrey KT13 8SN UK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ACCI) (H) consumerinterests.org

16. 환경/생태

Australian Conservation Foundation 호주 반핵, 아시아 태평양 지역보존, 생물다양성,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무, 숲보호, 토지와 숲지의 정화, 토지관리, 해양보존, 강과 수자원보호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H) www.acfonline.org.au (T) 61 03 9416 1166 (F) 61 03 9416 0767 주소: 340 Gore St, Fitzroy, Vic 3065 Australia

- Earthday Network 국제단체(미국) 184개국의 5000개 단체가 연합하여 만든 단체로 건강하고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적 문제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한다. (H) www.earthday.net (E) earthday@earthday.net (T) 1 202 518 0044 (F) 1 202 518 8794 주소: 1616 P Street NW, Suite 200 Washington, D.C. 20036 USA
- Sierra Club 미국 환경에 관한 문제를 이슈와 지역별로 나누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네타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소개한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환경단체중의 하나. (H) www.sierraclub.org (E) information@sierraclub.org (T) 1 415 977 5500 (F) 1 415 977 5799 주소: Sierra Club 85 Second St., Second Floor San Francisco, CA 94105-3441 USA
- World Wide Fund 국제조직(스위스) 지구환경의 보호와 생물다양성 존중,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적인 단체.
 (H) www.panda.org (T) 41 22 364 91 11 주소: Avenue du Mont-Blanc 1196 Gland Switzerland
-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국제조직(네덜란드) 환경을 보호하고 손상된 환경을 복구하며, 지구의 생태학적, 문화적, 윤리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목표이다. 환경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참석와 민주적 결정을 증대시키고 사회경제적, 정치적 정의를 달성하며 모든 사람이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H) www.foei.org(E) foei@foei.org(T) 31 20 622 1369(F) 31 20 639 2181 주소: PO Box 19199, 1000 gd Amsterdam, the Netherlands
- Center for Science and Environment 인도 인도의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천연 자원의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 특히 각 지역의 하층민들과 여성을 대상으로 환경 보호의 당위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환경 운동가를 육성하는 일을 한다. (H) www.cseindia.org
 (E) webadmin@cseindia.org (T) 91 011 260 81110 (F) 91 011 260 85879
 - (E) webadmin@cseindia.org (1) 91 011 200 81110 (F) 91 011 200 85879 주소: 41, Tughlakabad Institutional Area, New Delhi-110062, INDIA (DIRECTIONS)
- GreenPeace 국제조직(네덜란드) 종합적인 환경 운동 단체. 이 단체의 목적은 생물의 다양성을 지키고, 토양 · 대기·해양· 수질 등 모든 종류의 오염을 방지하며, 지구상에서 모든 핵 위험을 종식시키고 평화 비무장 비폭력을 중진시키는 것이다. (H) www.greenpeace.org
 - (E) supporter.services@ams.greenpeace.org (T) 31 20 523 62 22 (F) 31 20 523 62 00 주소: Greenpeace International Keizersgracht 176 1016 DW Amsterdam, The Netherlands
- Rainforest Action Network 미국 전세계의 열대 우림을 보호하고 교육과 풀뿌리 조직, 비폭력 직접 행동을 통하여 그곳에 사는 토착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H) www.ran.org (E) rainforest@ran.org (T) 1 415 398 4404 (F) 1 415 398 2732 주소: Rainforest Action Network 221 Pine St., Suite 500 San Francisco, CA 94104 USA
- Conservation International 국체조직(미국) 이 단체의 임무는 지구의 살아있는 자연 유산과 생태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간 사회가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찬고: 주용 해외 NGO 목록

- (H) www.conservation.org (E) inquiry@conservation.org (T) 1 202 912 1000 주소: 1919 M Street, NW Suite 600 Washington, DC 20036 USA
- Climate Action Network 세계 287개 단체들이 인간의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하여 연합하여 설립한 국제 조직이다. (H) www.climatenetwork.org (E) info@climatenetwork.org
- Earth Pledge Foundation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UNEP의 지원하에 설립된 비영리단체.
 (H) www.earthpledge.org
- Earthwatch 국제조직(미국)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과학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과학자들의 지도 아래 자연환경탐사에서 공중보건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H) www.earthwatch.org (E) info@earthwatch.org (T) 1 978 461 0081 (F) 1 978 461 2332 주소: 3 Clock Tower Place, Suite 100 Box 75 Maynard, MA 01754 U.S.A.
- The Earth Council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명제하에 세계 정상회담 결과로 만들어진 비영리조직.
 - (H) www.ecouncil.ac.cr (E) eci@ecouncil.ac.cr
-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지구 생물자원의 보호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 편집, 제공하는 비영리, 비정부 단체이다. (H) www.wcmc.org.uk

17. 정보통신/인터넷

- Econnect(Easy Connect) 체코 체코공화국 내 다른 비영리의 조직이 전자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고 정보 산업에 쉽게 접근하는 것을 돕는 체코의 비영리 단체이다. (H) zpravodajstvi.ecn.cz
- CPSR(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미국 컴퓨터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로 컴퓨터와 기술의 발전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기술의 발전만으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에 반대하며, 컴퓨터 관련 사회 이슈들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H) www.cpsr.org (E) cpsr@cpsr.org (T) 1 650 322 3778 (F) 1 650 322 4748 주소: P.O. Box 717 Palo Alto, CA 94302 USA
- Privacy International 국제조직(영국) 증가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40개국에서 100명 이상의 프라이버시 전문가와 인권조직들이 연대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만든 세계 조직이다.
 (H) www.privacyinternational.org (E) pi@privacy.org (T) 44 7947 778247 주소: 2nd Fl. Lancaster House, 33 Islington High Street, London N1 9LH, UK
- Global Internet Liberty Campaign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우선검열제 반대,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책임과 데이터 제공자들 사이의 책임을 구분짓기 위한 법안 마련하기 등에 관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H) www.gilc.org (E) gilc@gilc.org
- The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미국 디지털 시대에 민주적 가치와 헌법상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한다. (H) www.cdt.org (E) feedback@cdt.org (T) 1 202 637 9800 (F) 1 202 637 0968 주소: 1634 Eye Street NW, Suite 1100 Washington, DC 20006 USA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미국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태어났다. 온라인에서의 사고와 표현의 자유, 정보와 생각을 공유할 자유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잘못 입안된 법률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개인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법적 대리인으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H) www.eff.org (E) info@eff.org (T) 1 415 436 933 (F) 1 415 436 9993 주소: 454 Shotwell Street San Francisco, CA 94110 USA
- The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미국 평화, 인권, 환경개발 및 보호와 관련된 개인과 그룹을 정보의 전략적 사용과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기술을 이용해 후원하기 위한 시민 사회 단체의 국제적인 네트워크이다. (H) www.apc.org (E) webeditor@apc.org (T) 1 416 516-8138 (F) 1 416 516-0131 주소: APC Secretariat, Presidio Building 1012 Torney Avenue P.O. Box 29904, San Francisco, CA 94129 USA
- Free Software Foundation 미국 이들은 지불된 비용의 유무에 상관없이 일단 소프트웨어를 입수한 뒤에는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친구나 동료와 함께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자유. 소스코드를 원용해서 이를 개작할 수 있는 자유, 개작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자유의 보장으로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한다. (H) www.gnu.org (E) gnu@gnu.org (T) 1 617 542 5942 (F) 1 617 542 2652 주소: 59 Temple Place-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 A
-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미국 미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헌법적 가치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활동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는 단체이다. (H) www.epic.org (E) info@epic.org (T) 1 202 483 1140 (F) 1 202 483 1248 주소: 1718 Connecticut Avenue, NW, Suite 200 Washington, DC 20009 USA

1. 인권일반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Fellowship for the Sufferers (120-65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우체국 사서함 52호 (T) 02-393-4662 (F) 02-364-4076 (E) gonan@jinbo.net (H) gonan.jinbo.net
- 광주 NCC인권위원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wangju(NCC) (500-702)광주 북구 유동 107-5 YMCA회관 605호 (T) 062-524-6507 (F) 062-524-6090
 - (E) dlwfdrkd@yahoo.co.kr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Korean Network for Abolishing National Security Law (140-801)서울 용산구 갈월동 14-106 성도빌딩 302호 (T) 02-773-9578 (F) 02-588-6943
 - (E) antikukbo@hanmail.net (H) freedom.jinbo.net
- 국제민주연대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KHIS) (110-280)서울 종로구 원서동 32번지 2층 (T) 02-3675-5808 (F) 02-3673-5627 (E) khis21@nownuri.net
 - (H) www.khis.or.kr
-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s Korean Section(AI KOREA) (700-600)대구광역시 수성우체국 사서함 36호 (T) 053-426-2533 (F) 053-422-1956
 - (E) amnesty@amnesty.or.kr (H) www.amnesty.or.kr 간행물: 『국제앰네스티』(격월간)
-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 (100-809)서울 중구 명동2가 1-19 천주교인권위원회 (T) 02-777-6602 (F) 02-775-6267 (E) 932jw@hanmail.net (H) armyngo.org
- 다산인권센터 Dasan Human Rights Center (442-380)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6 법전빌딩 313호 (T) 031-213-2105 (F) 031-215-4395 (E) humandasan@hanmail.net (H) www.rights.or.kr 간행물: 『다산인권』(주간)
- 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 KCDM (110-102)서울 종로구 평동 75-6 2층 (T) 02-392-7504 (F) 02-392-7904 (E) yolsa75@nownuri.net (H) www.yolsa.org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137-070)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 신정빌딩 5층 (T) 02-522-7284 (F) 02-525-7285 (E) m321@chollian.net (H) minbyun.jinbo.net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110-837)서울 종로구 창신 2동 592-7 (T) 02-765-5282 (F) 02-745-5604 (E) minga21@hanmail.net 간행물: 『민주가족』(월간)
-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를위한사회단체협의회 Network for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e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Korea (110-522)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3층 (T) 02-741-5363 (F) 02-741-5364 (E) rights@chollian.net
 (H) www.sarangbang.or.kr/kr/anti-human/index.html
- 부산인권센터 (614-865)부산시 진구 전포2동 660-16 현대빌딩 2층 (T) 051-803-2880 (F) 051-803-4626

- (E) humanlee@hanmail.net
- 불교인권위원회 The Buddist Committee for Human Right (110-240)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 (T) 02-734-6401 (F) 02-734-6402 (E) buddhah@chollian.net
-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삼인련) (110-125)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기독교회관 708호 (T) 02-765-4126 (E) jys03090@hanmail.net (H) www.samchung77.or.kr
- 성공회대인권평화연구소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Peace, SKHU IHP (152-716)서울 구로구 항동 1-1 성공회대학교 내 (T) 02-2610-4152 (F) 02-2610-4296 (E) chrp@mail.skhu.ac.kr (H) hr.skhu.ac.kr 간행물: 『인권과 평화저널』(연간)
- 영등포산업선교회 Yong Dong Po Urban Industrial Mission YDPUIM (150-808)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71-40 (T) 02-2633-7972 (F) 02-2631-8425 (E) uim@ydpuim.org
 - (H) www.ydpuim.org 간행물: 산업선교(계간)
- 원불교인권위원회 (150-070)서울동작구 흑석동1-3 원불교서울회관 228호 (T) 02-813-3316~7 (F) 02-813-3318 (H) www.wonrights.or.kr
- 울산인권운동연대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681-230)울산시 중구 북정동 80-37 3층
 (T) 052-242-1119 (F) 052-242-1120 (E) ulsanhr@ulsanhr.jinbo.net
 (H) www.ulsanhr.or.kr 간행물: 주간『인권소식』
- 인권실천시민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Human Rights CSHR(136-031)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44번지 삼우빌딩 503호 (T) 02-3672-9443 (F) 02-3672-0438 (E) hrights@chollian.net (H) hrights.or.kr 간행물: 『인권연대』(월간)
- 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110-522)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3층 (T) 02-741-5363 (F) 02-741-5364 (E) humanrights@sarangbang.or.kr (H) www.sarangbang.or.kr 간행물: 『인권하루소식』(일간, 주5일)
-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kwangJu Human Rights Movement Center (500-831)광주 북구 신안동 477-7 3층 (T) 062-529-7576 (F) 062-527-5734 (E) ingwon@ingwon.org (H) www.ingwon.org 간행물:『인권지기』(월간)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Korea Association of Bereaved Famillies for Democracy (110-843)서울 종로구 창신2동 651-30 (T) 02-764-1684 (F) 02-743-2835 (E) ugh@chollian.net (H) www.ugh.or.kr 간행물: 『한울삶』(격월간)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560-040)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77 대건신협3층 (T) 063-231-9331 (F) 063-231-9332 (E) onespark@chol.com (H) www.onespark.or.kr 간행물: 『평화와 인권』(주간), 『전북지역인권보고서』(연간)
- 지문날인반대연대 (E) finger@jinbo.net (H) www.finger.or.kr
- 천주교인권위원회 Catholic Humanrights Committee CHRC (100-809)서울 중구 명동 2가 1-19 (T) 02-777-0641 (F) 02-775-6267 (E) chrc@chollian.net (H) www.cathrights.or.kr 간행물: 『교회와 인권』(월간)
- 평화인권연대 Network For Peace (120-012)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빌딩 5충 (T) 393-9085 (F) 363-9085 (E) peace@jinbo.net (H) peace.jinbo.net

찬고: 국내 시민사회다체 목록

간행물: 『평화연대』(월간)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National Council of Church in Korea (KNCC) (110-470)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회관 706호 (T) 02-742-8981 (F) 02-744-6189 (E) webmaster@kncc.or.kr (H) www.kncc.or.kr 간행물: 『월간인권』 (월간)
- 한국인권재단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110-738)서울 종로구 연지동 1-1 여전도회관 402호 (T) 02-6261-1210 (F) 02-6261-1213 (E) khrf@humanrights.or.kr (H) www.humanrights.or.kr
- 한국전쟁 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위한범국민위원회 (140-190)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45-8 3층 (T) 02-736-5158 (E) genocide2002@hanmail.net (H) www.genocide.or.kr

2. 장애

- 노들장애인야학 Nodl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y (110-767)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237 아남주상복합아파트 301동 111호 (T) 02-766-9101 (F) 02-766-9102
- (E) master@nodl.or.kr (H) www.nodl.or.kr 간행물: 『노들바람』(월간), 『부섯돌』(연2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ople Rights in Korea (137-843)서울 서초구 방배1동 924-13 근복빌딩 6층 (T) 02-521-5364 (F) 02-584-
- 7701 (E) cowalk@chollian.net (H) www.cowalk.or.kr 간행물: 『함께 걸음』(월간) 장애인의꿈너머 (156-807)서울 동작구 대방동 23-147 의안빌딩 3층 (T) 02-824-0341 (F) 02-824-0340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The Solidarity of the Disabled to Obtain the Mobility Rights
 - (110-767)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2가 237 명륜주상복합아남아파트 301동 111호
 - (T) 02-766-9101 (F) 02-766-9102 (E) webmaster@access.jinbo.net
 - (H) access.jinbo.net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Easy Access Movement in Korea EAM (110-320)서울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T) 02-765-6835 (F) 02-765-1385 (E) accessk@nownuri.net (H) www.accesskorea.co.kr 간해물: 『자유공간』(월간)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Korean Differently Abled Women United (110-736)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808-A호 (T) 02-3675-9935 (F) 02-3675-9934
 - (E) Webmaster@kdawu.org (H) www.kdawu.org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rea Differently Abled Federation KODAF (150-010)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3층 (T) 02-783-0067 (F) 02-783-0069 (E) kodaf@korea.com (H) www.kodaf.or.kr 간행물:『한국장애인연맹』(한국 DPI)
- 한국장애인연맹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Korea DPI Korea (143-200)서울 광진구 구의동 16-3 (T) 02-457-0427 (F) 02-458-0429 (E) dpikorea@hotmail.com
 - (H) www.dpikorea.or.kr

3. 성적 소수자

- 동성애자인권연대(동인런) Lesbian and Gay Human Rights Federation (110-600)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97호/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312-17 이화빌딩 305호 (T) 02-2243-9982 (F) 02-2243-9983 (E) lgbtpride@empal.com (H) outpridekorea.com 간행물: 『Dyke』(계간)
- 부산경남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Center for Women Sexual Minority Rights (608-743)부산 남구 대연3동 551-1 21 센추리시티 1437호 (T) 051-610-0413 (F) 051-610-0415
 - (E) admin@womcenter.org (H) www.womcenter.org
- 한국동성애자연합 Korean Lesbians Gays Bisexuals Transgenders' Coalition for Human Rights (110-320)서울 종로구 낙원동 163번 신아산빌딩 302호 (T) 02-703-3542
 - (F) 02-703-3543 (E) admin@lgbtkorea.org (H) www.lgbtkorea.org
- 한국여성동성애자모임 '끼리끼리' Kirikiri, Korea Lesbian Rights Organization (110-618)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816호 끼리끼리 (T) 02-703-3542 (F) 02-703-3543 (E) kiri9411@chollian.net (H) www.kirikiri.org 간행물: 『레즈비언 무크 '또다른 세상' (부정기)
- 바디친구닷컴 Votal Site Buddy (110-607)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776호 (T) 0505-938-7979 (F) 0505-893-8080 (E) buddy 79@buddy 79.com (H) www.buddy 79.com 간행물: 『버디』(월간)

4.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상세자료는 p.166-169 이주노동자상담자료 참조♡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Joint Committee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110-480)서울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302호 (T) 02-747-6830-1 (F) 02-747-6832 (E) jcmk@jcmk.org (H) www.jcmk.org
-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100-846)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26 상지빌딩 704호 (T) 02-2263-0516-7 (F) 02-2263-0886 (E) webmaster@mumk.org (H) www.mumk.org
-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306-755)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6-2 아파트 상가 2층 (T) 042-631 -6242 (H)migrant.netian.com/frame.htm
-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Association For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In Busan(FWR) (614-042)부산시 진구 전포2동 193-9 유신빌딩4층 (T) 051-802-3438 (F) 051-803-9630 (E) noja@kornet.net (H) fwr.jinbo.net/main.html
-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Suwon Migrant Workers Center (441-090)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86-2 2층 (T) 031-228-2789 (F) 031-253-7184 (E) dangun-21@hanmail.net
 - (H) www.suwon.ne.kr/hongbo/emigrant.htm#수
-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Ansan Migrant Shelter (425-130)경기 안산시 원곡동 749-2 (T) 031-492-8785/6

찬고: 군내 시민사회다체 모로

- (F) 492-4722 (E) shimter@chollian.net (H) www.migrant.or.kr
- 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 Seoul Gyeonggi Incheon Region Equality Trade Union Migrant's Branch (100-855)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32번지 세룡빌딩 2층 (T) 02-2285-6068 (F) 02-2269-6166 (E) migrant@nodong.net (H) migrant.nodong.net
-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405-835)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70-3 (T) 032-4288-114 (F) 032-4288-100 (E) migrant114@migrant114.org (H) migrant1114.org/g.htm

5. 법률

-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KBA (137-070)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T) 02-3476-4000 (F) 02-3476-4008 (E) kba1952@chollian.net (H) www.koreanbar.or.kr 간행물: 『인권과 정의』(월간), 『인권보고서』(연간), 『환경문제연구총서』(연간)
- 법률소비자연맹 The Good Law (137-070)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빌딩 1101호 (T) 02-523-8760 (E) goodlaw@sbr.net (H) www.goodlaw.org
- 서울지방변호사회 Seoul Bar Association (137-070)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3층 상담(T) 서울시청상담소02-731-6168 남부지소02-670-3315~7 북부지소02-490-3317 서부지소02-330-1318 (H) www.seoulbar.or.kr 간행물: 『시민과 변호사』(월간)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사)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Inc. KLACFR (150-010)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3 (T) 02-780-5688~9 (F) 02-780-0485 (E) webmaster@lawhome.or.kr (H) www.lawhome.or.kr 간행물: 『가정상담』(월간) 지부: 서울, 광주, 익산, 성남, 정읍, 마산, 거제, 군산, 진주, 울산, 청주, 태백, 대전, 수원, 춘천, 안동, 진주, 인천, 강릉, 부천, 원주, 목포, 동해, 평택, 안성, 대구

6. 여성

- 경남여성회 Kyoungnam Women United(KWU) (641-111)경남 창원시 가음동 42-1 남산복지회관 2층 (T) 055-282-9603 (F) 055-282-9606 간행물: 『하나되는 여성』(반년간), 『상담8400』(계간)
- 기독여민회 Korea Association of Christian Women for Women Minjung(KACWM) (100-391)서울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2층 (T) 02-2265-9397 (F) 02-2263-8090 (E) kwm1986@chollian.net (H) maria.peacenet.or.kr 간행물: 『기독여성』(월간), 『일하는 여성의 기쁜소식』(월간), 『예수 여성 민중이 함께하는 기쁜소식』(계간) ※ 주요출판물: 『탁아 공부방 자모조직을 위한 소모임 사례집』(90), 『여성의 힘모아 평등사회 이룩하자』(93), 『성서가 보는 여성 여성이 보는 성서』(95), 『예수 여성 민중과 함께 한 기독여민회 10년의 역사』, 『도시서민 여성의 전인적 건강을 위한 삶실태조사』(98) 지부: 성남지역위 인천지역위 안산지역위 구로지역

- 위 영등포지역위
- 나눔의집 The House of Sharing (464-842)경기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65 (T) 031-768-0064 (F) 031-768-0814 (E) y365@chollian.net (H) www.nanum.org 간행물: 『나눔의 집』(월간)
- 대구여성회 Daegu Women's Association(DWA) (700-421)대구 중구 동인1가 232-3 보성빌딩 4층 (T) 053-427-4577 (F) 053-424-1245 (E) dwa@chollian.net (H) www.daeguwomen21.or.kr 간행물: 『대구여성』(계간)
- 대한YWCA연합회 (100-021)서울 중구 명동 1가 1-3 (T) 02-774-9702 (F) 02-774-9724 (E) helena@ywca.or.kr (H) www.ywca.or.kr 지부: 경기지역(고양, 광명,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의정부, 파주, 하남, 남양주준비회, 평택준비회), 동부지역(거제, 경주, 김해, 대구, 마산, 부산, 사천, 안동, 울산, 진주, 진해, 창원, 통영, 포항, 밀양준비회), 북부지역(강릉, 강화, 동해, 서울, 속초, 원주, 인천, 춘천) 서부지역(광양, 광주, 군산, 남원, 목포, 서귀포, 순천, 여수, 전주, 제주), 중부지역(대전, 서천, 제천, 조치원, 증평, 천안, 청주, 충주, 논산준비회)
- 대전주부교실 National Council of Housewives Classes, Daejon Branch (302-223)대전 서구 탐방동 89-2 (T) 042-535-4480 (F) 042-535-4478 (E) h4480@hitel.net 간행물: 『대전주부교실』(월간) 지부: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Korean Federation of Housewives Clubs (100-060)서울 중구 남창동 1-2 그리싑쇼핑 6층 (T) 02-752-4227 (F) 02-756-6337 (E) jubuclub@chollian.net (H) www.jubuclub.or.kr
- 부산성폭력상담소 Pusan Cunseling Center Against Sexual Violence (609-322)부산 금정구 부곡2동 267-43 (T) 051-514-3330 (F) 051-513-2476 (E) wopower1@korea.com (H) www.wopower.or.kr
- 부산여성사회교육원(사) Pusan Women Education Center (614-031)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덕삼빌딩 4층 (T) 051-802-6083 (F) 051-802-6084 (E) feminedu@feminedu.or.kr (H) feminedu.or.kr
- 재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Korean Catholic Women's Community for a New World (110-510)서울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2층 (T) 02-747-2442 (F) 02-747-2447 (E) kcwc@nownuri.net
- 새움터 Saewoomtuh (483-034)경기 동두천시 생연4동 541-39 11/4 (T) 031-867-4655 (F) 031-867-3031 (E) sewoom@chollian.net
- 수원여성회 Suwon Women's Association (442-023)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16-3 1층 (T) 031-241-7530~1 (F) 031-214-1567 (E) swa@kg21.net (H) www.swa.or.kr
- 안양여성회 Anyang Women's Association (431-082)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33번지 정산빌딩 502호 (T) 0343-387-3050 (F) 387-6974
- 여성문화예술기획 Korean Feminist Artist Group (137-070)서울 서초구 잠원동 8-9 동림빌딩5층 (T) 02-541-3917 (F) 02-541-3920 (E) manyoe@hitel.net (H) www.femiart.co.kr

- 여성사회교육원 (100-391)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31 천성빌딩 3층 (T) 02-2278-7705 (E) wsr@wsr.or.kr (H) www.wsr.or.kr
- 여성정책연구소 Center for Women Policy (613-830)부산 수영구 수영동 253-1 6통 4반 (T) 051-754-5210 (F) 759 -6943 (E) cwp21@nownuri.net (H) 간행물: 『여성정책연구』(계간)
- 여성해방연대 (121-020)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85-64 공덕 빌딩 4층 (T) 02-718-4535
 - (E) womlib@orgio.net (H) www.feminist.or.kr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Korea Woman Farmer Association (137-130)서울 서초구 양재동 338-6번지 302호 (T) 02-529-6349 (F) 02-529-6332 (E) junyeonong@hanmail.net (H) www.kwfa.net 지부: 강원연합, 경기연합, 충북연합, 충남연합, 전북연합, 전남연합, 경북연합, 경남연합, 제주연합, 고창군여성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임실군여성농민회, 전남여성농민회
- 제주여민회 Che.Ju Women's Association (690-031)제주 제주시 삼도1동 584-2 3층 (T) 064-756-7261 (F) 064-756-7262 간행물: 『제주여성』(계간)
- 청년여성문화원 Korean Culture Council of Youth & Woman (140-210)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87 태준제약빌딩 2층 (T) 02-796-6644~6 (F) 02-796-4666 (E) webmaster@cyw.or.kr (H) www.cyw.or.kr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Women Making Peace WMP (100-391)서울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4층 (T) 02-2275-4860 2264-8649 (F) 02-2275-4861
 - (E) wmp@peacewomen.or.kr (H) www.peacewomen.or.kr
- 포항여성회 Pohang Woman's Associations (790-839)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1동 412-17 해도축협 2층 (T) 054-275-7436 (F) 054-282-1798 (H) www.phwomen.org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Korea Church Woman United (110-740)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연합회관 1110호 (T) 02-708-4181-3 (F) 02-708-4186 (E) kcwu8@chollian.dacom.co.kr (H) maria.peacenet.or.kr
- 한국보육교사회 Korea Daycare Teacher's Association (100-391)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T) 02-2275-8505 (F) 02-2275-8506 (E) kdta@chollian.net (H) www.kdta.or.kr 지부: 서울지부, 인천지부, 부산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구지부, 경기지부
- 한국부인회 Korean Women's Association (121-020)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91 (T) 02-701-7321 (F) 02-701-723
- 한국여성개발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22-040)서울 은평구 불광동 1-363 (T) 02-356-0070 (F) 02-356-1467 (E) (H) www.kwdi.re.kr
-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121-884)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T) 02-338-2890 (F) 02-576-7127 (E) ksvrc@korea.com (H) www.sisters.or.kr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 United (121-886)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18-21 (T) 0505-533-3838, 02-325-6817 (F) 02-325-6839
 - (E) kwwnet@kwwnet.org (H) www.kwwnet.org
- 한국여성단체연합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100-391)서울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2층 (T) 02-2273-9535 (F) 02-2273-9539 (E) kwau@women21.or.kr (H) www.women21.or.kr 소속단체: 경기여성연합, 광주전남여성연합, 대구경북여성연합, 부산여성연합, 전북여성연합, 경남여성연합, 경남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울산여성회, 충북여성민우회, 제주여민회, 포항여성회, 기독여민회,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새움터, 여성사회교육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 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 여성의 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함께 하는 주부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 National Council of Woman(KNCW) (140-013)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427 (T) 02-794-4560 (F) 02-796-4995 (E) woman@kncw.or.kr (H) www.kncw.or.kr
- 한국여성민우회 Korea Women's Association for Democracy and Sisterhood (110-102)서울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T) 02-737-5763 (F) 02-736-5766
 (E) minwoo@womenlink.or.kr (H) www.womenlink.or.kr 지부: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 동북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원주여성 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서울남부지역여성모임
 - 가족과성상담소 Counselling Center for Domestic and Sexual (110-102)서울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T) 02-739-1366~7 (F) 739-8871 (E) fc@womenlink.or.kr (H) fc.womenlink.or.kr
 - 고양여성민우회 (411-370)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7 동부썬프라자 1003동 106호 (T) 0344-919-1195 (F) 919-1197
 - 군포여성민우회 (435-040)경기 군포시 광정동 중심상가구역 군포상가빌딩 705-3 (T) 0343-396 -0201 (F) 0343-396 -0201
 - 김포여성민우회 (415-810)경기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573 중앙빌딩 3층 (T) 0341-986 -6007 (F) 0341-985 -0443 (E) kp1366@chollian.net (H) www.kimpo.org/womenlink
 - •성남여성민우회 (463-060)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청우@ 606-1101 (T) 031-703-2512 (F) 031-703 -2512
 - 진주여성민우회(660-050)경남 진주시 상봉동 1040-3 (T) 055-743-0410 (F) 055-743-0410
 - 춘천여성민우회 (200-161)강원 춘천시 후평1동 686-3 2층 (T) 033-253 -6120 (F) 033-243-9746
 - 충북여성민우회 (361-140)충북 청주시 홍덕구 모충동 118-26 2층 (T) 043-263-8124 (F) 043-263 -8124 (E) cbwm@chollian.net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Korean League of Women Voters (138-733)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307호 (T) 02-423-5355 (F) 02-423-5356 (E) women@womenvoters.or.kr (H) www.womenvoters.or.kr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Korea Women's Hot Line (100-391)서울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T) 2269-2961 (F) 2269-1823 (E) hotline@jinbo.net (H) www.hotline.or.kr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Women Theologians (100-391)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4층 (T) 02-2275-7754, 2278-5260 (F) 02-2269-0670 (E) kawt@chollian.net (H) www.feminist-theo.or.kr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120-012)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 기사연빌딩 3층 (T) 02-365-4016 (F) 02-365-4017 (E) jdh@peacenet.or.kr (H) www.k-comfortwomen.com
- 한국정신대연구소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ChongShinDae (150-808)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81 신광빌딩 705호 (T) 02-672-3304 (F) 02-672-3305 (E) truth@truetruth.org (H) www.truetruth.org
- 한국여성연구소 Koreans Women's Studies Institute(KWSI) (100-391)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1층 (T) 02-2273-6206 (F) 02-2273-6207
- 함께하는주부모임 Housewives Association (700-424)대구 중구 동인4가 61 미봉빌딩 4층 (T) 053-425-7701 (F) 053-424-6885 (E) hamjumo@hanmail.net
-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모임 Citizen's Abolition of The family Headship(HoJu) System (137-140)서울 서초구 우면동 65 홍명한의원 (T) 02-577-0601 (F) 02-577-0603 (E) tcolor@netsgo.com (H) antihoju.jinbo.net 간행물: 『소식지』(월간)

7. 노동/농민/민중

- 전국민중연대 Min Jung Yeon-Dae (150-032)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9층 (T) 02-2631-5027, 5028 (F) 02-2631-5029 (E) minjung21@jinbo.net (H) www.minjung.or.kr
- 노동인권회관 The Labor Rights Center(LHRC) (140-011)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303-2 한성빌딩 401호 (T) 02-749-6052 (F) 02-749-6055 (E) A0011@chollian.net (H) www.inkwon.or.kr 간행물: 『노동인권보고서』(연간), 『열린 세상』(부정기)
- 민주노동당 Democratic Labor Party (150-790)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호 (T) 02-761-1333 / 02-761-4115 (F) 02-761-4115 (E) kdlp@kdlp.org (H) www.kdlp.org 간행물: 『진보정치』(주간), 『이론과 실천』(월간)
- 비정규센터 (120-012)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서울빌딩 6층 한국비정규노동센터 (T) 02-312-7488 (F) 02-312-1638 (E) kcwc@kcwn.org (H) www.workingvoice.net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140-801)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 02-778-4001 (F) 02-778-4006 (E) pssp@jinbo.net (H) pssp.jinbo.net
- 새사회연대 Solidarity for New Society (136-086)서울 성북구 보문6가 135번지 신성빌딩 B1 (T) 02-925-

- 0062 (F) 02-924-0062 (E) sns@newsolidarity.org (H) www.newsolidarity.org 간행물: 『사람꽃』(월간)
- 재시대공단연합회 The Young Man's Association of Industrial Complex (555-030)전남 여수시 시전동 109 여천경기장 (T) 062-682-3723 (F) 062-682-3723 (E) ybk3963@hanmail.net (H) newageyosu.com.ne.kr 간행물: 『새공연』(연간)
- 전국노점상연합 KCCYW (110-552)서울 종로구 숭인2동 313-2 형제빌딩 2층 (T) 02-2232-0685~6 (F) 02-2232-0687 (H) www.nojum.org 간행물: 『가로수/해방수레를 끌며』(월간) 지부: 32개 지역연합회
- 전국철거민연합 (130-060)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15-58 (T) 02-839-5564 (F) 02-839-5562 (E) poverty87@jinbo.net (H) www.nodong.com/junchulyun 간행물: 『철거민신문』(월간)
-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NATIONAL COUNCIL of CRUMBLY MAN(NCCMC) (152-020)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4-7 광평빌딩 805호 (T) 02-2215-0362 (F) 02-2215-0373 (E) nccmc@nccmc.org (H) www.nccmc.org 간행물: 『전철협운동』(월3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150-982)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카 139 대영빌딩 5층 (T) 02-2635-1133 (F) 02-2635-1134
 - (E) kctu@nodong.org (H) www.kctu.org 간행물: 『노동과 세계』(주간)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Korea Metal Worker's Federation(KMWF) (140-140)서울 용산구 서계동 99-15 태호BD 2층 (T) 02-712-4252 (H) metal.nodong.org/index.php
- 전태일기념사업회 (110-542)서울 종로구 창신2동 131-106 (T) 02-3672-4138 (F) 02-3672-4139 (H) www.juntaeil.org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FKTU) (140-050)서울 용산구 청암동 168-24 (T) 02-715-7990~3 (F) 02-715-7790 (E) fktu@fktu.or.kr (H) www.fktu.or.kr 간행물: 『한국노총』(격주간), 『노동과 희망』(일간)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Federation of Korean Metal Worker's Tade Union(FKMTU) (151-010)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회관 (T) 02-864-2901 (F) 02-864 -0457 (E) fkmtu@metall.or.kr (H) www.metall.or.kr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Federation of Korean Public Service Trade Union (150-805)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32-100 석청빌딩 302 (T) 02-2068-8226 (F) 02-2068-8227 (E) wooky72@fkpu.or.kr (H) www.fkpu.or.kr
- 전국공무원노조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KGEU) (121-836)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7-6 (T) 02-324-0040 (F) 02-324-0040 (H) www.gongmuwon.or.kr
- 전국농민총연맹 Korean Farmers League(KFL) (150-031)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29번지 이두빌딩 4층 (T) 529-6347 (F) 529-6348 (E) nongsa@chollian.net (H) 지부: 경기도연맹, 강원도연맹, 충남도연맹, 충북도연맹, 경북도연맹, 경북도연맹, 전북도연맹, 광주전남연맹, 제주도연맹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KLSI) (120-012)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69-18 석당빌딩 2층 (T) 02-393-1457 (F) 02-393-4449 (E) klsi@klsi.org (H) www.klsi.org 간행물: 『노동사회』(월간)

찬고: 국내 시민사회다체 모록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for Labor Studies Policy(KILSP) (150-863)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147 무지개빌딩 2층 (T) 02-679-7940 (F) 02-679-8208
 - (E) labor95@jinbo.net (H) members.iworld.net/labor95 간행물: 『현장에서 미래를』(월간)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Kore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Rural Societies (137-130)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03-8번지 엠/지/빌 201호 (T) 02-572-5195 (F) 02-574-1816
 - (E) nongyeon@agri-korea.or.kr (H) www.agri-korea.or.kr

8. 교육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Citizen Movement for Educational Reformation(CMER) (110-740)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508호 (T) 02-3675-5160 (F) 02-3675-5161 (E) edungo@korea.com (H) www.edungo.or.kr
- 새교육공동체천안시민모임 (330-070)충남 천안시 원성동 454 동능빌딩 2층 (T) 041-555-2858
 (F) 041-567-3282 (E) mail@newedu.or.kr (H) www.newedu.or.kr 간행물: 『천안새교육공동체 소식』(월간)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Parent Solidarity for the Human Education (120-120)서울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별관4층 (T) 02-771-2490 (F) 02-771-2491 (E) horuraky@chollian.net (H) www.parents4u.or.kr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KTU) (150-982)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4층 (T) 02-2675-6181-3 (F) 02-675-6184 (E) admin@ktu.or.kr (H) eduhope.net 지부: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The Solidarity of Chonbuk Citizens for Democratic Reforms & Governance of Education (560-052)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2가 181번지 (T) 063-231-7728 (F) 063-231-6242 (E) hanbg@kornet.net (H) www.jeonbukilbo.co.kr/GIHACK/ngo/n22.htm
- 정의교육시민연합(정교연) (133-713)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77-1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내 (T) 02-2294-9372 (F) 02-2294-9374 (H)www.edjust.org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The National Association of Parents for Cham Education(NAPRE) (120-050)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통5반 (T) 02-393-8900 (F) 02-393-9110 (E) hakbumo@chollian.net (H) www.hakbumo.or.kr 간행물: 『학부모』(월간) 지부: 강남, 동북부, 성강북, 고양, 인천, 성남, 의정부, 경기지부: 구리남양주, 원주, 부산, 울산, 대구, 칠곡, 마창진, 거제, 경남지부: 진주, 경북, 안동, 사천, 전북지부: 전주, 익산, 광주, 전남, 목포, 충북지부: 청주, 충남, 천안, 홍성, 상주, 공주, 대전, 포항, 김해, 서산태안, 나주(준), 밀양(준)
- 학벌없는사회 (110-140)서울 종로구 수송동 25-2 (T) 02-738-7827 (F) 738-7826 (E) antihakbul@antihakbul.org (H) www.antihakbul.org

9. 아동·청소년

-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Maek Ji Youth Social Education Institution (503-235)광주 남구 월산5동 1026-3 2층 (T) 062-368-8041 (F) 062-368-8042 (E) macji1318@hanmail.net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120-012)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57번지 사조빌딩 별관 221/224 (T) 02-365-2565 (F) 02-392-4630 (H)www.busrugy.or.kr
-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The Naeil Women's Center for the Youth(NWCY) (120-835)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114-9 (T) 02-338-7480 (F) 02-3141-9339 (E) pooh@ausung.or.kr (H) www.ausung.or.kr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140-895)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2동 737-4 (T) 02-585-0098 (F) 02-585-0038 (E) webmaster@jikim.net (H) www.jikim.net 간행물: 『좋은세상』(격월)

10. 노인

- 대한은퇴자협회 Kore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121-745)서울시 마포구 도화2동 173번지,삼창플라자 701호 (T) 02-6399-3000 (F) 02-6399-3011 (H) www.karpkr.org
- 한국노인의전화 Korean Information & Refernal Service Center on Aging (120-113)서울 서대문구 연회3동 71-4 (T) 02-3141-8802 (F) 02-3141-1417 (E) hyesuh@unitel.co.kr (H) www.kisca.or.kr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Korean Institute of Gerontology (140-120)서울 용산구 효창동 산 9번지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8825호 (T) 02-714-9000, 5345 (F) 02-711-6865 (H)www.kig.or.kr
- 한국노인복지회 (150-033)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3가 19-3 (T) 02-2631-3212 (F) 02-2631-3215 (H) www.helpage.or.kr

11. 청년·학생

- 나라사랑청년회 (120-191)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동 77-2 (T) 02-363-5128 (F) 02-363-5158 (E) young@love korea.net (H) www.lovekorea.net
- 다함께 (130-650)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우체국 사서함 223호 (T) 02-3295-4773 (F) 02-968-5907 (E) alltogether@intizen.com (H) alltogether.jinbo.net
- 한국청년연합회(KYC) Korea Youth Corps. (120-837)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6 글샘빌당 304호 (T) 02-393-1355 (F) 02-393-1303 (E) kyc@kyc.or.kr (H) www.kyc.or.kr 지부: 대구, 광주, 강서양천, 간약, 도봉, 목포, 부천, 성북, 수원, 성남, 안양, 전주, 천안, 청주, 평택, 포항, 안동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The Associa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E) tshcy@jinbo.net (H) hanchongryun.jinbo.net 지부: 서울지역, 경인지역, 강원지역, 충청지역, 전남지역, 전남지역, 부산·울산지역, 대구·경북지역, 제주지역

12. 보건의료

- 건강을위한시민모임 Citizen for Health (110-480)서울 종로구 효제동 233-2 306호 (T) 032-548-6274 (F) 032-548-6273 (E) sdcenter@orgionet (H) 간행물: 『건강을 위한 시민의 모임』(계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Korea Federation of Activists Fighting for Health Rights(KFHR) (110-522)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4 2층 (T) 02-3675-1987 (F) 02-766-6025
 - (E) healthright@korea.com (H) www.kfhr.org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Korean Pharmacists' Association for Health Society (110-522)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4 2층 (T) 02-523-9752 (F) 02-521-29437 (E) kpkyp@kpca.co.kr (H) www.pharmacist.or.kr 간행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정론』(격월간) 지부: 서울경인 (T) 031-747-4655 부산경남 (T) 051-317-2168 광주전남 (T) 062-374-7331 대구경북 (T) 053-610-3615 대전충남 (T) 042-259-1527 전북 (T) 063-88-8724 울산 (T) 052-273-5695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Association of Physicians Humanism(APH) (110-522)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4 2층 (T) 02-766-6024 (F) 02-766-6025 (E) inyeeh@kornet.net (H) www.humanmed.org 간행물: 『사람과 의료』(격월간) 지부: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Dentists Association for Healthy Society (137-881)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70-14 정안빌딩 4층 (T) 02-588-6944 (F) 02-588-6943 (E) gunchi@dreamwiz.com (H) www.kgca.org 간행물: 『건치신문』(월간) ※주요출판물: 수돗물 불소화사업기술, 공해병과 인간생태학, 세계 여러 나라의 구강 진료제도 지부: 서울경기 (T) 588-6922 광주천남 (T) 062-364-5982 대구경북 (T) 053-751-2260 대전충남 (T) 042-623-8157 부산경남 (T) 051-581-7569 울산 (T) 052-298-2878 인천 (T) 032-505-2870 전북 (T) 063-432-1771
- 노동건강연대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100-032)서울시 중구 저동 2가 46-8 신원빌딩 6층 (100-032) (T) 02-2269-3891~3 (F) 02-2269-7156 (H) www.laborhealth.or.kr 간행물: 『노동건강연대 소식지』(월간)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150-031)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100-48 남산빌딩 2층 (T) 02-777-1750 (F) 753-7370 (E) khmwu@khmwu.or.kr (H) bogun.nodong.org/index0116.htm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110-767)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8-4호 짚풀생활사박물관 2층 (T) 02-3676-0194 (F) 02-766-6025 (E) handoc99@hitel.net
 - (H) www.haninews.com/charm/intro.htm

-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People's Health Association for Community(PHAC) 140-801 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 02-774-8774 (F) 02-774-8773 (E) tsmyr@jinbo.net (H) myr.jinbo.net 간행물: 『의료와 진보』(격월간) 지부: 부산지부
- 민중복지연대 (140-801)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 02-708-4017 (F) 02-774-8773 (E) minbok@jinbo.net (H) www.minbok.or.kr
- 원진녹색병원 Wonjin Green Hospital (471-834)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27-44 (T) 031-550-1011-3 (F) 031-552-4532 (E) webmaster@greenhospital.co.kr (H) www.greenhospital.co.kr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재) Korean Organ & Tissue Donor Program (120-013)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4 충정타워 6층 (T) 02-363-2114 (F) 02-363-3163 (E) donor@donor.or.kr (H) www.donor.or.kr 간행물:『이웃과 생명』,『기다리는 사람들』(월간)
- 생명나눔실천회 The Life Share Practice Association (110-170)서울 종로구 청진동 18 삼영빌딩 401호 (T) 02-734-8050 (F) 02-734-8052 (E) lisa@lisa.or.kr (H) www.lisa.or.kr 간행물: 『삶과 생명나누기』(월간) 지부: 광주, 대구, 충남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and Health(KASH) (150-046)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99 서울시의사회관 내 103호 (T) 02-632-5190 (F) 02-632-5191 (E) kkashjin@unitel.co.kr (H) www.kash.or.kr 간행물: 『담배 없는 세상』(월간) 지부: 대구경북, 울산, 천안, 강원

13. 생태 환경

- 건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a Sustainable City 121-880 서울 마포구 창전동 2-28 2층 (T) 02-332-6044 (F) 02-332-6010 (E) gogt@chollian.net (H) www.dosi.or.kr 간행물: 『건고싶은 도시』(격월간) ※주요출판물: 주택가 생활도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조사 보고서 등
- 그린훼밀리운동연합 Greenfamily Movement Association(Green Scout) (110-190)서울 종로구 사간동 126-6 광성빌딩 2층 (T) 02-732-0890 (F) 02-732-0896 (E) gs11682@chollian.net (H) www.greenfamily.or.kr 간행물: 『녹색타임즈』(격주간), 『그린스카우트』(월간), 그린훼밀리환경교육(연간) ※주요출판물: 그린스카우트 폐공보고서, 학교와 환경교육, 귀화식물 조사보고서, 초중고 환경교육교재(환경생활, 환경교육) 지부: 경기안산 (T) 031-414-0050 (F) 414-0052 경기용인 (T) 031-282-2469 경기부천 (T) 032-342-6670 (F) 342-6671 경기평택 (T) 031-652-8411 (F) 653-8979 경기남양주 (T) 031-577-8411 경기성남 (T) 031-753-3367 경북구미 (T) 054-452-8891 (F) 456-7332 전남여수 (T) 061-654-5806 (F) 654-5807 증평 (T) 043-843-4330 울산 (T) 011-557-6441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Korea Christian Environmental Movement Solidarity for Integrity of Creation (KCEMS) (120-060)서울 서대문구 옥천동 210-1 2층 (T) 02-365-8900 (F) 02-365-8908 (E) kcei@chollian.net (H) kcems.peacenet.or.kr 간행물: 『새하늘과 새땅』(격월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좋았다』(연3회) ※주요출판물: 한국의 공해지도, 삶이냐 죽음이냐, 내

- 땅이 죽어간다, 교회와 함께하는 환경운동 지부: 인천환경선교회 (T) 019-212-9114, 대백광산지역환경연구소 (T) 033)553-7085, 광주기독교환경운동연대 (T) 062-262-4716, 함양기독교환경운동연대 (T) 055-962-2896
- 녹색교통운동 Networks for Green Transport(NGT) (110-740)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010호 (T) 02-708-4855 (F) 02-708-4859
 - (E) praxis@chollian.net (H) greencity.peacenet.or.kr 간행물 녹색교통/녹색교통정보(월간)
- 녹색대학 GREEN UNIVERSITY 합양배움터: (676-872)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469번지 녹색대학교 (T) 055-964-0987/963-4274 (F) 055-962-0051 녹색대학 후원회: (121-819)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1-3번지 2F (T) 02-337-8100 (대표) (F) 02-337-8676 (E) ngu@ngu.or.kr (H) ngu.or.kr
- 녹색미래 Green Future (130-071)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 45-2 2층 (T) 02-3672-4900 (F) 02-3672-4901 (E) greenfuture@korea.com (H) www.greenfuture.or.kr
- 녹색소비자연대 Green Consumer Network in korea(GCN) (110-740)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806호 (T) 02-763-4972 (F) 02-3672-4973 (E) kgcn@gcn.or.kr (H) www.gcn.or.kr 간행물: 『녹색소비자연대 소식지』(월간) 지부: 인천 (T) 032-421-6118 (F) 421-6119 천안 T.041)578-9897 (F) 578-9895 포항 T.054-273-2227 (F) 273-2226 대구 (T) 053-428-9798 (F) 428-9077
- 녹색연합 Green Korea United (136-821)서울 성북구 성북동 113-34 (T) 02-747-8500 (F) 02-766-4180 (E) greenkorea@greenkorea.org (H) www.greenkorea.org 간행물: 『작은 것이 아름답다』(월간), 『한국환경보고서』(연간) 지부: 공주 (T) 041)856-2637 광주전남 (T) 062-233-6501~2 (F) 062-233-6503, 대전충남 (T) 042-253-3241~2 (F) 042-253-3244 대구경북 (T) 053-964-1753 (F) 053-964-1754 부산 (T) 051-623-9220 (F) 051-623-9303 설악 인천 (T) 032-548-6274 (F) 032-548-6273
-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Society of Preservation of Mudeung Mountain (500-030)광주 북구 누문동 7-1 밀알회관 301호 (T) 062-528-1187 (F) 062-512-1187 (E) m1187@chollian.net (H) www.netion.com/~mt1187 간행물: 『무등산』(월간)
- 시민생활환경회의(사) Civic Life Environment Committee (500-230)광주 북구 용전동 1223-22 (T) 062-572-3980 (F) 062-572-3752 (E) clec@chollian.net
-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Forest for Life(FFL) (110-062)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708 (T) 02-735-3232 팩스: 02-735-3238 (E) forest1@chollian.net (H) www.forest.or.kr 간행물: 『생명의 숲』(계간) 지부: 태백, 춘천, 홍천, 충북, 경주, 포항, 강릉, 울산, 대전충남
- 생태보전시민모임 Korean Eco-Club (122-945)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175-59 (T) 02-353-9400 (F) 02-353-4992 (E) ecoclub@chollian.net (H) www.ecoclub.or.kr 간행물: 『물푸레골에서』(월간)
-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 Korea Waste Movement Network (110-350)서울 종로구 운니동 98-20 삼환빌딩 별관 501호 (T) 02-744-5305, 3676-1204~5 (F) 02-744-5306 (E) webmaster@waste21.or.kr (H) www.waste21.or.kr

- 여성환경연대 Korea Women's Environmental (110-210) 서울 종로구 화동 97번지 2층 (T) 02-722-7944 (F) 02-723-7215 (E) kwen21@chollian.net (H) www.ecofem.net
-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Korea Wheat Revival Movement(KWRM) (140-030)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1-87(전국농업기술자협회306호) (T) 02-790-5536 (F) 02-790-5546
 - (E) woorimil@woorimil.org (H) www.woorimil.org 간행물: 『우리밀소식』, 『우리밀생산자소식』(월간) 지부: 충북, 충남, 전북, 강원, 인천, 전남, 경북, 경남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www.indramang.org/home/main.htm (110-210)서울시 종로구 화동 138-6 인드라망생명공동체 (T) 02-733-1884 / 737-6181 (F) 02-737-6182
- 전국귀농운동본부(사) Return to the Farm Movement (110-280)서울 종로구 원서동 13-2 (T) 02-742-4611 (F) 02-766-8726 (E) refarm@chollian.net (H) www.refarm.org 간행물:『귀농통문』(계간)
- 제주참여환경연대 (690-825)제주 제주시 이도2동 1077 2층 (T) 064-753-0844 (F) 064-722-8789 (E) bdh94@chollian.net (H) www.jinbo.net/chejucca 간행물: 『도민의 함성』, 『돌광』(회원소식지 범도민회로 개편), 『참여광장』
- 지리산생명연대 (590-853)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508번지 (T) 063-636-1945 (H) www.savejirisan.org/m2.htm
- 풀꽃세상을위한모임 Nature Trail for the Beauty of this Earth (121-840)서울 마포구 서교동 405-6 (T) 02-325-6801 (F) 02-393-4449 (E) fulssi@chollian.net (H) user.chollian.net/~fulssi 간행물: 『풀씨』(계간)
- 한살림 Hansalim (137-892)서울 서초구 양제1동 145-5 501호 (T) 02-3486-9696 (F) 02-3486-9695 (E) zin@hansalim.or.kr (H) www.hansalim.or.kr 간행물: 『한살림』 지부: 원주 033-763-1025, 강릉 033-645-3371, 천안 041-541-1720, 청주 043-213-3150, 대전 042-484-1225, 대구 053-654-5979, 부산 051-512-4337, 경남 055-265-0525
- 한국불교환경교육원 Buddhist Academy for Ecological Awakening BAEA (137-073)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5-16번지 정토회관 2층 (T) 02-587-8997 (F) 02-587-8998 (E) baea@jts.or.kr (H) www.jungto.org/baea
- 한국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Korea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110-819)서울 종로구 부암동 322-2 1호(무계정사2길 24-1) (T) 02-394-7394 (F) 02-394-7395
 - (E) kmlee@ksdn.or.kr (H) www.ksdn.or.kr
- 환경과공해연구소 Environment & Pollution Research Group (110-470)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의과대학 內 (T) 02-361-5371 (F) 02-392-0239 (E) enthink@chollian.net (H) earth.peacenet.or.kr 간행물: 『환경과 공해』(계간)
- 환경정의시민연대(사) Citizen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136-045)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100-4호 3층 (T) 02-743-4747 (F) 02-743-4748 (E) webmaster@eco.or.kr (H) www.ecojustice.or.kr 간행물: 『환경정의』(격월)
- 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110-806)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 (T) 02-1588-337 02-735-7000 (F) 02-730-1240 (E) web@kfem.or.kr

(H) www.kfem.or.kr 간행물: 「함께 사는 길』(월간) 지부: 서울 강남서초 02-574-7047, 강동송파 02-472-0775, 강서양천 02-690-0085, 경기 인천 032-426-2767, 과천 031-507- 3003, 3007, 안산 031-419-5120, 시흥 031-432-0432, 성남 031-753-5515, 고양 031-921-7001, 수원 031-223-7938, 이천 여주 031-885-6824, 6835 오산 화성 031-377-3221, 평택 031-657-2492, 강원 춘천 033- 252-1098, 속초·고성·양양 033-636-4314, 충청 대전 042-242-6335, 당진 041- 355-7661, 서천 041-956-3901, 서산태안 041-667-3010 제천 043-646-3474, 천안 041-572-2535, 청주 충주 영남 부산 대구 053-753-3354, 진주 746-8700, 마산창원 055-252-9008, 거제 055-632-5560, 포항 054-249-2253, 경주 창녕 사원 055-832-2033, 울산 052-296-0285, 통영 055-648-6620, 호남 군산 063-446-9978, 익산 063-855-3276, 광주 062-514-2470, 목포 광양 061-793-1003, 여수 061-682-0610, 전북 063-286-7977, 순천 061-755-7305, 장흥 061-862-9909, 제주 064-759-2162

14. 언론

- 대자보 Daejabo (100-193)서울 을지로 3가 302-3 상록빌딩 502호 (T) 02-2265-9446 (F) 02-2265-9446 (E) pub@jabo.co.kr(H) www.jabo.co.kr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Democratic Media (120-012)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1층 (T) 392-0181 02-3142-0700 (F) 392-3722 02-3142-1800 (E) ccdm@ccdm.or.kr (H) www.ccdm.or.kr
- 바른언론을위한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Media Watch (120-012)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69-6 2층 (T) 02-363-6464 (F) 02-363-6465 (E) rimw@chollian.net
 - (H) www.mediawatch.or.kr
- 언론개혁시민연대 People's Coalition for Media Reform (100-745)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한국언론회관 1807호 (T) 732-7077 (F) 732-7076 (E) pcmr@pcmr.or.kr (H) www.pcmr.or.kr
- 언론인권센터 Center for Media Responsibility and Human Rights (137-070)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3층 (T) 02-583-0660 (F) 02-583-0661 (E) webmaster@presswatch.or.kr (H) presswatch.or.kr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Korean Federation of Press Unions(KFPU) (100-745)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한국언론재단 1802호 (T) 02-739-7285 (F) 02-735-9400
 - (E) num@media.nodong.org (H) www.pressunion.or.kr
-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Democratic Media in Jeonbuk (560-823)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3-10 2층 (T) 063-285-8572 (F) 063-231-9286
 - (E) malhara@malhara.or.kr (H) www.malhara.or.kr
-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Solidarity of Citizen for Anti-Chosun ilbo (120-021)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1층 (T) 02-392-0181 (F) 02-392-3722

- 한국기자협회 The Journalist Association of Korea (100-745)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한국언론재단 13층 3호 (T) 02-734-9321 (F) 02-738-1003 (E) jakmaster@jak.or.kr
 - (H) www.journalist.or.kr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The Broadcasting Producer Association of Korea (158-050)서울 양천구 목동 923-5 방송회관15층 (T) 02-3219-5610 (F) 02-2643-6416 (E) gopd@chollian.net (H) www.tvkorea.co.kr/pd

15. 학술

- 민족문제연구소 Institute for Research in Collaborationist Activities (130-866)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3층 (T) 02-969-0226 (F) 02-965-8879 (E) banmin@banmin.or.kr (H) www.banmin.or.kr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121-885)서울 마포구 합정동 385-9 세정빌라 1동 101호 (T) 02-326-1989 (F) 02-326-1989 (E) delsa@delsa.or.kr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National Professors Assocation for Democracy (151-061)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632-2호 2층 (T) 02-888-3683 (F) 02-872-7588 (E) mingyo@chollian.net (H) www.professornet.org/main.htm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Asian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120-093)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78-40 백석빌딩 3층 (T) 02-396-2590 (F) 02-396-2591 (E) asri@unitel.co.kr
- 역사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110-270)서울 종로구 계동 140-44 (T) 02-3672-4191 (F) 02-3672-4193 (E) kistory@kistory.or.kr (H) www.kistory.or.kr
- 전국교수노동조합 Korean Professors Union (151-061)서울시 관악구 봉천11동 1633-2호(2층) (T) 02-871-8706~8 (F) 02-871-8676 (E) gyosu21@chollian.net
 - (H) www.kpu.or.kr/index1.htm
-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Korea Progressive Academic Council (110-270)서울 종로구 계동 140-44 (T) 02-747-0338 (F) 02-3672-4193 (E) haksul@empal.com
- 한국정치연구회 The Community for the Korean Political Studies (120-19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24-2 한국정치연구회 (T) 02-364-9743 (F) 02-333-3190 (E) ckps@ckps.jinbo.net (H) ckps.jinbo.net

16. 문화

노동자뉴스제작단 Labor News Production (110-550)서울 종로구 숭인동 56-38 동원빌딩 5층 (T) 02-888-5123 (F) 02-888-5121 (E) lnp89@chollian.net (H) www.lnp89.org

찬고: 국내 시민사회다체 목록

- 문화개혁시민연대 Civil Network for Cultual Reform (120-012)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15 서일빌딩 2층 (T) 02-773-7707 (F) 02-737-3837 (E) acc21@chollian.net (H) www.cncr.or.kr
- 민족문학작가회의 The Association of Writers for National Literature(AWNL) (121-010)서울 마포구 아현동 612-5 (T) 02-313-1486 (F) 02-392-1838 (E) minjak21@dreamwiz.com (H) minjak.or.kr
- 민족미술인협회 (110-300)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505호 (T) 02-738-0764 (F) 02-738-0765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Moving Images (100-043)서울시 중구 남산동3가 34-5 남산빌딩 207호 (T) 02-754-8856 (F) 02-319-2039
 - $(E)\ master@screenquota.org\ (H)\ www.screenquota.org/default1.asp$
- 시민미술단체 늦바람 (T) 02-2289-9468 (E) tomatoljy@hanmail.net (H)nbaram.jinbo.net
- 서울영상집단 Seoul Visual Collective (110-270)서울 종로구 계동 140-57 5층 (T) 02-745-4641
- (F) 02-3672-4970 (E) lookdocu@hotmail.com (H) www.lookdocu.com 푸른영상 P.U.R.N.Production (156-010)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343-5 청강빌딩 3층 (T) 02-823-9124
- (F) 02-823-9125 (E) docupurn@docupurn.org (H) docupurn.org 한국독립영화협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Independent Film & Video (121-862)서울시 마포구
- 한국독립명화협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Independent Film & Video (121-862)서울시 마포구 아현3동 626-70 유니빌딩 3층 (T) 02-334-3166 (F) 02-363-3154 (H)www.coincine.co.kr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The Korean People's Artists Federation (110-320)서울 종로구 낙원동 280-4 건국1호빌딩 5층 (T) 02-739-6851 (F) 02-739-6853 (E) webmaster@kpaf.org (H) www.kpaf.org
- 한국민족음악인협회 Association of Korean Musician (110-510)서울 종로구 동숭동 201-29 지하1층 (T) 02-364-8031 (F) 02-742-8032 (E)koreamusic@koreamusic.co.kr (H)www.koreamusic.co.kr

17. 민족/평화/통일

- 나와우리 I and We (110-522)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169-1 4층 (T) 02-747-3194 (F) 02-747-3195 (E) iandwe@netsgo.com (H) www.nawauri.or.kr
- 독도수호대 A Party for Tokdo Protection (100-450)서울시 중구 신당동 236-439 2층 (T) 02-2253-5734~5 (F) 02-2253-5736 (H)www.tokdo.co.kr/kor/index.htm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Council for National Reconciliation, Self-reliance, and Reun (140-133)서울 용산구 청과동 3가 29-15 복조빌딩 502호 (T) 02-712-8443 (F) 02-712-8445 (E) jatong99@hanmail.net for (H) www.jatong.org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Korean Council for Reconcilation and Cooperation (150-010)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4 동우국제빌딩 4층 (T) 02-761-1213 (F) 02-761-6590 (E) kcrc@kcrc.or.kr (H) kcrc.or.kr

- 민족화해운동연합(민화런) Pan-Korea Alliance for Reconciliation (110-836)서울 종로구 종로5가 193-5 송화빌딩 501호 (T) 02-2279-0148 (F) 02-2279-0149 (E) hanjoguk@kornet.net (H) www.hwahap.org
-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폐쇄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National Action Committee for the Closure of the Maehyang-ri U.S. Armed Forces International Bombing Range (140-133)서울 용산구 청과동 3가 29-15 복조빌딩 502호 (T) 02-712-8443 (F) 02-712-8445 (E) commonaction@maehyangri.jinbo.net (H) maehyang.jinbo.net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National Association for Democracy and Reunification of Korea
 NADRK (150-155)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5-82 3층 (T) 02-845-0615
 - (F) 02-832-4544 (E) webmaster@nadrk.org (H) www.nadrk.org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Pan-Korea Alliance for Reunification (150-051)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 65-82 2층 (T) 02-844-8603 (F) 02-844-8604 (E) bum615@jinbo.net
- 베트남민간인학살진실위원회 Vietnam Truth Committee (110-280)서울 종로구 원서동 32번지 2층 (T) 02-3675-5808 (F) 02-3673-5627 (E) khis21@nownuri.net (H) www.khis.or.kr/left 02.htm
-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Poeple's Action for Reform of Unjust ROK US SOFA Agreement (140-133)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복주 빌딩 502호 (T) 02-719-8946 (F) 02-712-8445 (E) sofa@sofa.jinbo.net (H) sofa.jinbo.net
- (사)남북어린이어깨동무 Okedongmu Children in Korea (110-180)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58번지 (T)02-743-7941~2 (E) nschild@yahoo.com (H) www.okedongmu.or.kr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Korean Sharing Movement (110-522)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17-5 혜명빌딩 4층 (T) 02-734-7070 (F) 02-734-8770 (E) ksmseoul@ksm.or.kr (H) www.ksm.or.kr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Korean National Congress for Reunification (150-031)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31번지 5층 (T) 2631-6738 (F) 2631-6748 (E) onekncr@hanmail.net (H) www.onekorea.or.kr
-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omen Against War (WAW) (132-766)서울 도봉구 방학4동 우성A 103동 405호 (E) kwaw@freechal.com(H) www.kwaw.org
- 좋은벗들 Good Friends (137-073)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T) 02-587-8990 (F) 02-587-8998 (E) goodfriends@jungto.org (H) www.jungto.org
-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Common Action Against the War and for Peace Making (150-982)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9층 (T) 02-2631-5027~8 (F) 02-2631-5029 (E) stopwar@jinbo.net (H) www.stopthewar.or.kr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One Korea Buddhist Movement (110-170)서울 종로구 견지동 83 (T) 02-735-5558~9 (E) bubta@bubtanet.org (H) www.bubtanet.org
-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National Campaign for Eradication of Crime by U.S. Troops in Korea (100-808)서울 중구 만리동 1가 53-8 경김회관 502호 (T) 02-362-4067 (F) 02-362-

찬고: 국내 시민사회다체 모록

- 4069 (E) us@usacrime or kr (H) usacrime or kr
-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주미철본) (121-810)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325-13호 성진빌딩 4층 (T) 서울본부 02-3272-0615 부산본부051-851-0325 (F) 서울본부02-3272-0614
 - (H) www.onecorea.org
-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140-871)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390-1 영월빌딩 402호 (T) 02-795-3315~6 (F) 02-795-6400 (H) www.victims.co.kr/main.asp
- 통일맞이 Preparing Toward One Korea Movement (150-031)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31번지 5층 (T) 02-762-8201 (F) 02-679-8328 (E) 8201@digiwave.co.kr (H) www.moon.or.kr 평화네트워크 Civil Network for a Peaceful Korea (100-808)서울 중구 만리동 1가 53-8호, 경김회관 502호
 - (T) 02-393-3509 (E) civil@peacekorea.org (H) peacekorea.org
- 평화통일을위한시민연대(평화통일시민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eace & Unification(CSPU)
- (T) 02-777-5690 (F) 02-776-1991 (E) peace@peace21.net (H) www.peace21.net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140-133)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29-15 윤민빌딩 (T) 02-711-7292 (F) 02-711-7293 (E) spark946@chollian.net (H) www.spark946.org
- 한국대인지뢰대책협의회 Korea campaign to Ban Landmine KCBL (150-031)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31번지 5층 (T) 02-761-7042 (F) 02-2631-6748 (E) kcbl@netian.com (H) landmine.peacenet.or.kr
- MD저지와평화실현공동대책위원회 Korean Committee Against MD and for Peace (140-133)서울시 용산구 청과동 3가 29-15 복조빌딩 502호 (T) 02-712-8443 (F) 02-712-8445 (E) antimd@antimd.org (H) www.antimd.org

18. 종교

-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Korean Catholic Labor Apostolate Conference (100-391)서울 중구 장충동1가 37-3 (T) 02-2279-2302 (F) 02-2269-1567 (E) clac@jinbo.net (H) nosamok,jinbo.net
- 가톨릭여성회관 Catholic Womencenter (630-808)마산시 석전 2동 224-7번지 (T) 055-255-5080 (F) 055-251-0651 (H) ca-womencenter.com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Korean Christian Action Organization(KCAO) (110-470)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층 708호 (T) 02-763-9563 (F) 02-747-3385
 - (E) ecumenical02@orgio.net (H) www.urm.or.kt/kcao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Christian Ethics Movement(CEM) (151-600)서울 관악구 관악우체국 사서함 199호 (T) 02-871-7487 (F) 02-883-2177 (E) giyunsil@chollian.net (H) www.giyunsil.or.kr 지부: 강릉 (T) 033-650-2171 (F) 650-2147, 광주 (T) 062-222-5382 (F) 223-5486, 대구 (T) 053-745-7602 (F) 753-8705, 대전 (T) 042-632-7082 (F) 632-7083, 부산 (T) 051-466-2410 (F) 466-2410, 수원 (T) 031-255-9013 (F) 255-1478,

- 안동 (T) 055-854-0145 (F) 857-7861, 울산 (T) 052-276-8574 (F) 267-5859, 익산 (T) 063-858-9898 (F) 841-5777, 인천 (T) 032-867-2740 (F) 867-2741, 전주 (T) 063-225-5670 (F) 226-2945, 진주 (T) 055-742-8306 (F) 741-1647, 천안 (T) 041-577-4100 (F) 576-7703, 청주 (T) 043-274-5852 (F) 275-5852, 춘천 (T) 033-242-4688 (F) 242-4688, LA (T) 213-387-1207 (F) 487-7524, 북가주 (T) 510-659- 0297, 위싱턴 (T) 703-698-5577 (F) 698-5223, 디트로이트 (T) 313-832-0011 (F) 832-7609, 애틀랜타
- 두레방선교센터 My Sister's Place (480-060)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116 13/1(T)031-841-2609 (F) 031-841-2608(E) drb@dreamwiz.com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100-280)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38-3 조계사 내 중앙종회 2층 (T) 02-725-4277 (F) 02-725-4275 (E) silchon@chollian.net (H) www.silchun.org
-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156-070)서울 동작구 흑석동1-3 원불교회관 411호 (T) 02-814-0835 (F) 02-814-0838 (E) wonbul@chollian.net (H) www.gyomudan.net
- 원불교청년회 Won Buddhist Youth Association (570-754)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불교청년회 (T) 850-3321 (F) 850-3222 (E) wonchung@chollian.net
- 원불교청년회남북한삶운동본부 (156-070)서울 동작구 흑석동1-3 원불교서울회관 228호 (T) 02-813-3316 (F) 02-813-3318 (E) web@wonchung.or.kr
 - (H) www.wonchung.or.kr/hansam/page/intro_a.html
- 전국불교운동연합 Alliance for National Buddhist Movement (110-170)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빌딩3층 (T) 02-720-1902 (F) 02-725-8818
- 정토회 Jungto Society (137-073)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T) 02-587-8990 (F) 02-587-8998 (E) jts@jts.or.kr (H) ns.jts.or.kr
- 지학순정의평화기금 (100-272)서울 중구 필동 2가 10번지 충무빌딩 313호 (T)02-2266-7001
 - (F) 02-2269-2932 (E) webmaster@justice.or.kr (H) www.justice.or.kr/korea/main.htm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National Clergy Conference for Justice and Peace (110-470)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405호 (T) 02-762-8478 (F) 0303-4794-3000 (E) ccjp@chollian.net
- 천도교청년회 (110-775)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수운회관 2층 (T) (02)736-5660 (F) (02)720-5430 (E) youth@chondogyo.or.kr (H) www.chondogyo.or.kr/act/act33.htm
- 천주교광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501-712)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3-5 가톨릭센터 605호 (T) 062-227-6008 (F) 062-225-1306 (E) kiipc@hanmail.net (H) www.kjipc.or.kr
- 천주교수원교구전진상복지관 Jeon Jin Sang Social Welfare Center (430-014)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36 (T) 031-444-2876 (F) 031-446-2876 (E) aycc@chollian.net (H) org.catholic.or.kr/jeon-bok/main.htm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Catholic Priest's Association for Justice (110-510)서울 종로구 동숭동 1-94 광장빌딩 5층 (T) 02-3672-0251 (F) 02-3672-0255 (E) sajedan@hanmail.net (H) www.sajedan.org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110-809)서울시 종로구 동승동 50-17 천정연회관 (T) 02-747-4130 (F) 02-747-2447 (E) kcfi@ngocatholic.org (H) www.ngocatholic.org
-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360-764)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천주교회내 사도회관 2층 (T) 043-213-0324 (F) 043-214-8880 (E) chongjupeace@chongjupeace.org
 - (H) www.chongjupeace.org/main.htm
-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rity for Reform BSR (110-340)서울 종로구 익선동 30-6 신화타워 205호 (T) 02-745-7799(F) 02-744-3424(E) budha21@budgate.net
 - (H) www.buddha21.org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120-012)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 기사연빌딩 4층 (T) 02-312-3317~9 (F) 02-313-0261 (E) cisjd@chollian.net (H) www.ipic.org
- 한국기독청년협의회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 (110-470)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8-A (T) 02-742-3746 (F) 02-766-5527 (E) eyckm@hanmail.net (H) urm.or.kr/~eyck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orea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110-470)서울 중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608호 (T) 02-763-8776 (F) 02-744-2748 (E) qkinuri@hanmail.net (H) kscf.or.kr
- 한국기장여신도회전국연합회 National Church Women's Associ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110-740)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504호 (T) 02-708-4033 (F) 02-708-4034 (E) waprok@hanmail.net (H) www.waprok.or.kr
- 한국 CLC Korean Christian Life Community (121-742)서울 마포구 신수동 1번지 (T) 02-705-8163 (F) 02-704-2097 (E) kclc@kclc.or.kr (H) www.kclc.or.kr
- 한국 YMCA전국연맹 National Council YMCAs of Korea 100-070 서울 중구 소공동 117 한국YMCA 전국연맹 빌딩 8층 (T) 02-754-7891 (F) 02-774-8889 (E) ymca@ymcakorea.org (H) www.ymcakorea.org 지부: 강릉 033-642-5681 거제 055-633-1313 거창 경주 054-743-2888 고양 031-938-6100 광명 02-809-2081 광양 061-791-1333 광주 062-232-6131 구리 031-565-9898 구미 054-452-2321 군산 063-446-4122 군포 031-453-8614 김천 054-432-6356 김해 055-328-3300 남원 063-625-3155 남양주 031-6677 논산 041-735-3110 대구 053-255-0218 대전 042-472-3399 마산 055-251-4835 목포 061-243-8331 문경 054-553-5233 밀양 055-354-2808 부산 051-440-3333 부천 032-325-3100 서산 041-664-0848 서울 02-730-9391 성남 031-715-6016 속초 033-631-8909 수원 031-273-8311 순천 062-745-0601 시흥 031-315-4310 아산 041-546-9877 안동 054-854-0177 안산 031-410-3570 안양 031-384-2311 여수 061-642-0001 영주 054-634-4600 영천 054-334-4313 울산 052-272-7900 아산 041-546-9877 왜관 용인 원주 742-9997 의정부 031-877-4235 이천 031-635-0887 익산 063-832-9400 인천 032-431-8161 전주 063-272-4466

- 6103 춘천 033-255-1001 평택 031-656-2000 포항 054-246-1711 해남 홍성 041-632 -3371 재일한국 03-3233-0611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Korean Buddhist Association (110-140)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4층 (T) 02-734-6401 (F) 02-734-6402 (E) kboa@mahayana.or.kr (H) www.mahayana.or.kr

19. 시민(시민감시/소비자/지역/기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Solidarity Network (110-062)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1006호 (T) 02-734-3924 (F) 02-723-9995 (E) civic21@kornet.net (H) www.civilnet.net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s Justice (100-120)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201호 (T) 02-754-8841 (F) 02-757-7383 (E) ccej@mail.ccej.or.kr (H) www.ccej.or.kr
-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Citizen Movement Center for Anti Over-Consumption (110-054)서울 종로구 사직동 237-1 한라빌딩 3층 (T) 02-772-2995~9 (F) 02-772-2993
 - (E) webmaster@cceo.or.kr (H) cceo.or.kr/2th/main.htm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Policy & Information Center for International Solidarity(PICIS) (151-014)서울 관악구 신립4동 51-26호 (T) 02-866-8335 (F) 02-834-8334 (E) picis@jinbo.net (H) picis.iinbo.net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120-013)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84번지 3층 (T) 02-392-7504 (F) 02-392-7904 (E) krdemo@korea.com (H) www.krdemo.org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00-733)서울 중구 태평로2가 43번지 신동아화재빌딩 3층 (T) 02-3709-7500 (F) 02-3709-7516 (E) kdemocracy@kdemocracy.or.kr
 - (H) kdemocracy.or.kr/main.asp
- 민주개혁국민연합 Korean People's Alliance for Social Reformation (110-740)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508호 (T) 02-708-4601 (F) 02-708-4602
 - (E) peacebbs@chollian.net (H) soback.kornet21.net/~peacebbs
- 세상을바꾸는시민행동21 (560-023)전북 전주시 경원동 3가 7-1번지 3층 (T) 063-284-6161 (F) 063-284-6166 (H)ngo4u.or.kr
-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Citizens' Alliance for Consumer Profection ok Korea (110-062)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603호 (T) 02-739-5441 (F) 02-736-5514 (E) (H) www.cacpk.org
- 반부패국민연대 The Anti-Corruption Network in Korea ACNK (110-740)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508호 (T) 02-708-5858 (F) 02-708-5859
 - (E) mail@transparency.or.kr (H) www.transparency.or.kr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Korean Association for Justice and Anti-Corruption KAJA (135-080)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11번지 1115호 (T) 02-558-5544 (F) 02-566-6266

찬고: 국내 시민사회다체 모록

- (E) badkiller@hananet.net (H) www.badkiller.or.kr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Citizen's Assocoation Against Corruption (110-320)서울 종로구 낙원동 127-3 중앙빌딩 502호 (T) 02-3675-8413 (F) 02-3675-8415 (E) man4707@chollian.net
-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110-260)서울 종로구 가회동 16-3 (T) 02-730-1235 (H) www.beautifulfund.org
- 열린사회시민연합 Civic Solidarity for Open Society (110-740)서울 종로구 명륜동1가 31-9 2층 (T) 02-3676-6501 (F) 02-3676-6504 (E) openc@nownuri.net
 - (H) www.rebas.com/openc
-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Korean Women for Legislature (121-020)서울 마포구 공덕동 256-13 제일빌딩 1103호 (T) 02-702-1323 (F) 02-702-1324 (E) kwf21@chollian.net
- 전국지방의정연구회 Local Autonomy Institute (135-270)서울 강남구 도곡동 953-11 상진빌딩 401호 (T) 02-577-8612, 02-2203-0033 (F) 02-576-0643 (E) smrhee@localpower.com (H) www.localpower.com
- 지구촌나눔운동 Global Civic Sharing(GCS) (110-795)서울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 1002호 (T) 02-747-7044 (F) 02-747-7046 (E) gcskorea@gcs.or.kr (H) www.gcs.or.kr
- 진보네트워크 JINBONET (140-801)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T) 7744-551 (F) 7744-553 (E) jinbo@jinbo.net (H) www.jinbo.net
- 정보공유연대 Intellectual Property Left (E) ip@list.jinbo.net (H) www.ipleft.or.kr
- 참여연대 People Solidarity for Paticipatory Democracy(PSPD) (110-240)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T) 02-723-5300 (F) 02-723-5055 (E) pspd@pspd.org (H) www.peoplepower21.org
-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Korean People's Action against Agreement on Investment and the WTO KOPA (140-150)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신성빌딩 2층 (T) 02-778-4007 (F) 02-778-4006 (E) kopa@jinbo.net (H) antiwto.jinbo.net
- 포럼2001 Forum2001 (100-858)서울 중구 중림동 129-38 3층 포럼 2001 (T) 02-369-3944 (E) fr2001@jinbo.net (H) www.forum2001.jinbo.net
- 한국유권자운동연합 Watching Eyes for Clean Politics (110-051)서울 종로구 도렴동 60 도렴빌딩 607호 (T) 02-738-7966 (F) 02-738-7969 (E) voters@chollian.net
- 한국소비자연맹 Consumers Union of Korea (140-210)서울 용산구 한남동272-1 (T) 02-794-7081 (F) 02-798-6564
- 한국납세자연합회 The Korean Taxpayers Union (135-080)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 1317호 (T) 02-3452-8372~3 (F) 02-539-8823 (E) ktun@ktun.or.kr (H) www.ktun.or.kr
- 함께하는시민행동 (136-045)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100-4호 2층 (T) 02-921-4709 (F) 02-6280-7473 (E) member@mail.ww.or.kr (H) www.ww.or.kr
- 행정개혁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Better Government (110-260)서울 종로구 가회동 173번지 2층 (T) 02-743-6750 (F) 02-743-6890 (E) ccar97@att.co.kr

- (H) www.nitizen.att.co.kr/~ccar97
- 흥사단 Young Korean Academy (110-510)서울 종로구 동승동 1-28 도산회관 3층 (T) 02-743-2511 (F) 02-743-2515 (E) ykai99@dosan.co.kr (H) www.dosan.co.kr

20. 지역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Network of Local NGOs (301-130)대전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803호 (T) 042-253-8176 (F) 043-252-6976 (E) goldcham@hanmail.net
- 강진사랑시민회의 (527-802)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84-1 (T) 061-433-1140 (F) 061-433-1140 (E) 518ys@hanmail.net
- 고양청년회 (411-816)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80-4 (T) 031-902-5233 (F) 031-905-3225 (H) www.gochung.or.kr
- 관악주민연대 People's Solidarity of Kwanak (151-901)서울 관악구 신럼1동 1631-19 평회빌딩 5층 (T) 02-854-9322(F) 02-858-8960(E) pska21@chollian.net(H) www.pska21.or.kr
- 광주시민연대 (501-120)광주 동구 호남동 30-1 4층 (T) 062-226-2093 (F) 062-226-2094 (E) sangmoo@kwangju.or.kr (H) www.kwangju.or.kr
- 광주전남문화연대 Gwangju Jeonnam Citizen's Network for Cultural Reform (500-060)광주 북구 신안동 226-10 1층 (T) 062-511-4630 (F) 062-511-4610 (E) gjculture@dreamwiz.com (H) www.gjculture.com
- 나주사랑시민회 Citizens Association for Loving Naju (520-020)전남 나주시 금계동 23-5 (T) 061-336-9993 (F) 061-336-9993 (E) ddr_000@orgio.net (H) www.najusarang.or.kr
-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343-806)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267-4 향군회관 3층 (T) 041-356-1333 (F) 041-357-0466 (E) djngo1333@hanmir.com (H) www.djngo.or.kr
- 대구참여연대 Taegu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700-422)대구시 중구 동인2가 62-5 2층 (T) 053-427-9780~1 (F) 053-427-9723 (E) civilpower@hananet.net (H) www.civilpower.org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Daejo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301-730)대전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층 참여자치연대 (T) 042-253-8176 (F) 042-252-6976 (E) cham@cham.or.kr (H) www.cham.or.kr
- 마·창·진 참여자치연대 (630-041)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 1동 62-7 상헌빌딩 4층 (T) 055-223-7800 (F) 055-223-7100 (E) mcjsl@chollian.net (H) www.localpower21.org
- 목포시정지기단 Participant association for civil affairs of Mokpo (530-320)전남 목포시 북교동 46 천주교북교동성당 內 (T) 061-242-4785 (F) 061-243-9398 (E) kdb58@dreamwiz.com (H) mokpo-paca.ce.ro
- 목포포럼 Mokpo Forum (530-280)전남 목포시 대안동 14-1 삼애빌딩 2층 (T) 061-245-1431 (F) 061-245-1430 (E) webmaster@mokpoforum.org (H) www.mokpoforum.org

- 보령시민참여연대 (355-764)충남 보령시 죽정동 대우아파트 상가 209호 (T) 041-935-7969 (F) 041-935-7969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 Governance of Pusan (601-060)부산 동구 범일동 62-730 두양빌딩 5층 (T) 051-633-4067 (F) 051-633-8497 (E) cham0528@chollian.net (H) www.citizen.pusan.kr
-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Information and Culture Community for Pusan Youth (601-812)부산 동구 수정2동 1-116 8통 5반 5층 (T) 051-441-5004/446-5006 (F) 051-465-0706 (E) lolza@inc.or.kr (H) www.inc.or.kr/index.htm
- 성남시민모임 Seongnam Citizen's Association (463-827)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6-1 관보스포츠 510호 (T) 031-702-9464 (F) 031-708-9469 (E) webmaster@snpd.net (H) www.snpd.net
- 안양지역시민연대 (430-835)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711-317 2층 (T) 031-449-9700 (H) www.ngoanyang.or.kr
- 여수참여와자치를위한시민모임협의회(여수시민협) Yosu Ciminhyup (555-802)전남 여수시 신기동 13-6번지(3층) (T) 061-685-3430 (F) 061-685-3431 (E) yosulove@netsgo.com (H) www.yosusimin.or.kr
- 열린사회회망연대 Hope-Solidarity for Open Society (631-470)경남 마산시 합포구 신포동 1가 63번지 202호 (T) 055-247-2073 (F) 055-221-9865 (E) hopesos@nownuri.net
- 영광사회운동협의회 (513-800)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11-3 3층 (T) 061-351-5458 (F) 061-353-2928 울산민주시민회 (680-822)울산 남구 신정3동 188-16 (T) 258-6343 (F) 258-6345
 - (E) usdc2000@yahoo.co.kr (H) www.ulsan21.or.kr
- 울산참여연대 (680-020)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90-7 동양빌딩 4층 (T) 052-269-4168, 258-1320~1 (F) 052-258-0144 (E) webmaster@ulsansimin.org (H) www.ulsansimin.org
- 원광대부설시민법률상담소 Iksan Citizen's Legal Aid Center (570-954)전북 익산시 남중동 82-60 (T) 063-853-5444 (F) 063-843-3999
- 위례시민연대 (134-867)서울 강동구 천호4동 293-16, 덕송빌딩 404호 (T) 02-472-6112(代) (F) 472-6127 (H)www.skngo.or.kr
- 의정부참여연대 (480-819)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747-9번지 2층 (T) 031-871-9191, 878-5695 (F) 031-874-6862 (E) (H) www.upeoplepower21.org
- 익산참여자치연대 (570-100)전북 익산시 남중동 147-20 2층 (T) 063-841-3025 (F) 063-841-9331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The Institute for Eastern Chun-nam Community Studies (540-969)전남 순천시 조례동 1689-6 1층 (T) 061-723-7134 (F) 061-752-7797
 - (E) webmaster@sunchonbay.or.kr (H) www.sunchonbay.or.kr
-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Jeonbuk Christian Social Welfare Research Center (560-014)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31-3 3층 (T) 063-282-8455 (F) 063-231-0598
 - (E) info@welfare4u.or.kr (H) www.welfare4u.or.kr

- 전주시민회 Jeonju Citizen's Association (560-020)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13-10 2층 (T) 063-231-9286~7 (F) 0652-231-9286 (E) jjsimin@kornet.net (H) www.jjsimin.or.kr
- 제주 4.3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CheJu 4.3 Uprising (690-809)제주 제주시 삼도2동 142-3 3층 (T) 064-756-4325 (F) 064-721-2143 (E) webmaster@jeju43.org
 - (H) www.jeju43.org
- 참여와연대를위한광양시민의모임 Kwang Yang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545-800)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897-16 3층 (T) 061-762-6222 (F) 061-761-6222 (E) garng@hanmail.net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 Autonomy in Gunsan(PSPAG) (573-310)전북 군산시 삼학동 815-1 2층 (T) 063-471-5331 (F) 063-471-5337 (E) cham@ilovegunsan.or.kr (H) www.ilovegunsan.or.kr
- 참여자치순천시민연대 (540-190)전남 순천시 장천동 28-7 1층 (T) 061-741-4664 (F) 061-741-4663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560-800)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106 기업은행4층 (T) 063-232-7119
 - (F) 063-232-8119 (E) joung4941@hanmail.net (H) www.pspa.or.kr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361-842)충북 청주시 홍덕구 운천동 1371 2층 (T) 043-267-0151 (F) 043-264-7257 (E) citizen@citizen.or.kr (H) www.citizen.or.kr
- 참여자치21 Participatory Autonomy Forum for 21C (501-023)광주 동구 금남로 3가 1-5번지 삼호빌딩 별관 5-B층 (T) 062-225-0915 (F) 062-226-7849 (E) oneload@netsgo.com (H) www.kcm.or.kr
- 천안시민포럼 The Forum for Chon-an Citizen (330-775)충남 천안시 청수동 209 극동APT1차 상가 203호 (T) 041-558-2120 (F) 041-558-2122 (E) ngofcc@capeople.org (H) www.ngofcc.or.kr
- 청양포럼 CheongYang Forum (345-805)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15-1 (T) 041-943-1254 (F) 041-943-1199 (E) cyforum@hanmail.net (H) www.cyforum.net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450-010)경기 평택시 평택동 201-3 3층 (T) 031-657-7921 (F) 031-657-7920 (E) ptpspd@hanimail.com
-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Incheon Solidarity for Peace & Participation (405-234)인천 남동구 간석4동 896-6 4층 (T) 032-423-9708 (F) 032-422-9708 (E) ispp@saramdl.net (H) www.ispp.or.kr
- 하남민주연대 Hanam Democratic Solidarity (465-012)경기 하남시 덕풍2동 421-6 (T) 031-794-5518 (F) 031-793-8219 (E) hanam21@hanam21.org (H) www.hanam21.org

21. 기타영역

교통문화운동본부 Coalition of Transportation Culture (150-010)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5 오성빌딩 806호 (T) 02-786-3385 (F) 02-786-3387 (E) caruser@chollian.net

- (H) www.carngo.com 지부: 대전 (T) 042-524-3463 (F) 534-3307, 대구 (F) 053-621-7432, 울산 (T) 76-7600 (F) 76-7600, 광주 (T) 062-364-9900 (F) 364-9900 글로벌케어(지구희망의 손길) Global Care(GC) (158-806)서울 양천구 목1동 405-33 (T) 02-654-7260~1 (F) 02-654-7263 (E) gcare@chollian.net (H) www.globalcare.co.kr 지부 서울 (T) 02-642-5975 (F) 649-3970 경기 (T) 032-663-2214 (F) 657-6269 대전 (T) 042-483-5525 (F) 483-5567 대구 (T) 053-741-0770 부산 (T) 051-303-6894 (F) 303-6894 원주 (T) 033-734-5050 (F) 746-5051 전북 (T) 063-230-8003 (F) 230-8200
- 다일공통체 Da-il Community(DLC) (130-021)서울 동대문구 전농1통 495-15 (T) 02-929-2248 (F) 02-929-2247 (H) www.dail.org
- 납북자기족협의회 Families of Abducted and Detained in North Korea(FAD) (135-010)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4-15 다산빌딩 2층 (T) 02-723-6711 (F) 02-3445-9841
 - (E) rehome@rehome.or.kr (H) www.rehome.or.kr
- 볼런티어21 Volunteer 21 (137-069)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79-1 3층 (T) 02-599-6576 (F) 02-599-6580 (E) volun@volunteer21.org (H) www.volunteer21.org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Community Chest of Korea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67 임광빌딩 3층 (T) 02-360-5990-6 (F) 02-360-5997 (E) jjeja@chest.or.kr (H) www.chest.or.kr
-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The Korea Federation of Common Good Movement for New Society (100-855)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6-28 국제패션빌딩 3층 (T) 02-2263-3011
- (F) 02-744-0880 (E) commongood@commongood.or.kr (H) commongood.or.kr 월드비전 World Vision (150-877)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월드비젼B/D (T) 02-783-5164
- (F) 02-782-4253 (E) top@world-vision.co.kr (H) www.world-vision.co.kr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Human Recovery Movement Council(HRMC) (110-510)서울 종로구 동승동
 - 1-119 (T) 02-744-9215 (F) 02-744-9216 (E) humanity@kornet.net

 (H) www.huremo.org
-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KIN) (110-071)서울 종로구 당주동 171번지 삼록빌딩 503호 (T) 02-735-4327 (F) 02-735-4328 (E) kin@kin.or.kr (H) www.kin.or.kr
-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Korea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KFHI) (135-100)서울 강남구 청담동 111-2 (T) 02-544-9544 (F) 02-517-4767 (E) dovepark@kfhi.or.kr (H) www.kfhi.or.kr
- 한국이웃사랑회 Good Neighbors Inc.(GNI) (121-160)서울 마포구 상수동 95-3 홍익대학교 사회교육관 4층
 (T) 02-338-0708 (F) 02-338-0724 (E) goodneighbor@channeli.net
 (H) www.gni.or.kr
-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Wonju People's Center for Participation Self government (220-060)강원도 원주시 원동 180-2 시민센터빌딩 2층 (T) 033-731-1364 (F) 033-766-1367 (E) wingo@hanmail.net (H) www.gni.or.kr

찾아보기

가사노동위성계정 175 가사사건 207, 209, 210 가정폭력 173, 177, 209, 210, 212 가정폭력방지 114, 115 가정폭력처벌특별법 123 가해자 52, 97, 129, 172, 173, 175 가혹행위 51, 179, 181, 182, 183, 237 각하 40, 41, 49, 50, 51, 71, 72, 81 감금 51, 162, 179, 188 감독기관 42, 45, 53, 75 감사담당관 28,29 감정 41, 52, 53, 73, 75 강간 115, 148, 183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99 강제 출국 47, 160 강제근로 158 강제실종 148 강제이주 148 강제임신 148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형사 및 국제인권제도 91

강제퇴거 42,47

 (\mathbf{T})

같은 피의자(참고인, 고소인)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 처분증명 199 개선 14, 20, 25, 29, 30, 33, 43, 53, 68, 69, 70, 75, 83, 89, 93, 105, 112, 119, 126, 133, 176, 203, 206, 217, 232, 234 개인통보제도 133, 134 개정 24,68,82,111,114,116,117,124,127, 128, 131, 171, 174, 232 갱생보호시설 39, 55, 79 건강보험 158 건강보험법 118, 158 검문소 235 검사권 73 검열 114, 121, 192 검찰 44, 51, 52, 160, 198, 206, 229 검찰조사 140, 195 검찰총장 41, 45, 52, 53, 72, 75 결격사유 67 겸직금지 29,67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85, 86, 87, 92, 93, 94, 97, 109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5,91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91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06, 109, 110, 118 경찰 32, 44, 51, 52, 174, 179, 180, 182, 186, 206

경찰수배 236 계구 189, 190, 191 고등군사법원 137, 138, 140 고문 90, 96, 106, 116, 181, 229 고문(Torture) 98 고문방지위원회 86, 107 고문방지협약 19, 92, 133, 181, 고발 24, 32, 42, 45, 46, 51, 52, 53, 75, 173, 179, 198

고소 51,72,116,173,179,198,202,232, 233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증명 198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198 고용 71,111,114,115,118,130,170,174,

业8 71, 111, 114, 115, 118, 130, 170, 174,

고용보험 158, 164, 174 고용상의 불이익 170, 171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16, 17, 18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16, 17 공립학교 130

공무원 22, 23, 28, 39, 46, 51, 53, 54, 67, 68, 70, 71, 76, 77, 80, 116, 122, 126, 174, 212, 220, 230

공무집행 방해죄 188 공보담당관 28 공소 제기 233 공소부제기이유고지청구 198 공소시효 51,71,231 공익법무관 207,209,211 공판조서열람(등사)신청 199 과태료 32,41,52,77,82 관계기관 52,55,68,69,70,72,73,76,162 관계자 52,73 관급의류착용 189,195 관할수사기관의 장 72 관행 20,25,30,53,68,69,75,115,122 교도소 32,38,39,43,54,66,187,190,192,

교류 20, 25, 31, 34, 35, 68 교사 116, 120, 126, 130, 174

교원 43, 122

교육 14, 19, 22, 68, 71, 90, 113, 120, 124, 125, 126, 127, 130, 131, 170, 172, 176

교육부 127, 128 교육시설 71

교육에 대한 권리(Right to education) 90,

교육인적자원부장관 69 교육청 218, 220 교육협력국 28, 34 교육홍보 20

교정 45, 188, 189, 190, 192, 194, 221 구금 180

구금·보호시설 20, 25, 33, 37, 54, 66, 69, 70, 71, 79, 80, 81

구금시설 32, 38, 39, 44, 45, 188 구술 69, 71, 82

구제 14, 19, 20, 21, 24, 26, 31, 32, 33, 40, 41, 47, 50, 51, 52, 53, 68, 70, 72, 74, 77, 97, 114, 116, 135, 137, 140, 141, 144,

172, 206, 214, 233 구제권고 117 구제절차 52,73,95,97,133,134,135,140, 171 구제조치 24, 26, 41, 45, 53, 74, 135, 137, 140, 141, 145, 172 구치소 32, 39, 42, 43, 46, 54, 66, 187, 199, 국가기관 20, 28, 29, 30, 32, 37, 44, 50, 67, 68, 70, 72, 73, 74, 133, 195, 197 국가기밀사항 73 국가별 수임사항(Country mandate) 89,90, 91 국가보안법 17,87,115,116,119,121,138, 139, 142, 143, 144 국가보안법 제7조 115, 134, 137, 139, 140, 144 국가인권기구 13, 15, 16, 17, 19, 21, 28, 57, 111, 125 국가인권위법안 17 국가인권위원회 13, 14, 15, 18, 19, 20, 21, 22, 23, 39, 41, 45, 56, 123, 157 국가인권위원회법 16, 17, 18, 19, 24, 39, 41, 50, 54, 66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79 국내거소신고 202 국내실향민 91,99 국내입양 124, 128 국내협력과 28, 34, 56 국무총리 24,67,7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3, 2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8, 120

국민연금 120, 158, 212

국방부 218

국방부장관 45,75 국세체납처분 78 국제관습법 66, 148 국제노동기구(ILO) 15,83,123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16 국제인권봉사회 150 국제협력담당관 34 국제협약 21, 105, 106, 133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15, 83, 147, 148, 149, 150 국회 23, 30, 66, 67, 70, 88, 139, 219 군 참모총장 45,75 군교도소 54,66 군무원 75 군사독재 88,140 군인 75, 174, 209, 211, 212 권고 14, 20, 24, 25, 30, 32, 33, 41, 42, 45, 46, 47, 50, 52, 53, 55, 68, 69, 74, 75, 76, 85, 89, 94, 105, 110, 112, 115, 117, 121, 122, 123, 124, 126, 127, 138, 172, 206, 213, 214 권리구제 29, 46, 53, 75, 160, 189 권리구제절차 50,72 권리장전 15 권리회복 52 규약 114, 115, 116, 118, 119, 121, 122, 133,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규칙 24, 31, 67, 68, 69, 70, 71, 74, 75, 76, 78, 80, 82, 128, 131, 189, 192, 195 그룹홈 128 근로계약 162 근로기준법 111, 158, 160, 174 근친혼금지제도 176 금고 67,77,186

금융 거래 자료를 추적 232 노인주거복지시설 55,79 금치 190,191 급식 53, 75, 235 기각 40, 41, 72, 74, 137, 141, 187 기관의 장 45, 47, 52, 69, 72, 73, 79, 171, 172, 다수인보호시설 33, 54, 66, 79 206 기본권제한 원리 192 기소독점주의 188 기소중지사건공소시효완성증명 199 기소중지사건재기사실증명 199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 199 기피 52, 73, 77, 81 긴급구제조치 24, 32, 33, 40, 41, 45, 47, 53, 75, 77 긴급조정 213, 214 긴급조치 89,94,96 긴급체포 181, 230

(**L**)

낙태 115, 122 낙태율 119 난민신청서 118 난민지원기관 182 남녀차별 27, 170, 172, 176 남녀차별신고센터 176 남아선호사상 119 노동 120, 157, 202 노동법 158, 160 노동부 160, 161, 163, 174, 218 노동조합 116, 121, 122, 214, 216, 260 노인복지법 55,79 노인복지시설 55,79 노인의료복지시설 55,79

(=)

단결권 116 단독 조사 금지 231 단체 20, 21, 26, 31, 37, 45, 56, 68, 70, 138, 160, 178, 213, 219, 221 담당재판부 70 당사자 26, 41, 47, 52, 53, 73, 74, 75, 81, 129, 143, 144, 161, 162, 172, 194, 205, 206, 207, 209, 213, 214 대법원장 23,66 대안보고서 109 대통령령 23, 24, 66, 68, 69, 71, 77, 78, 79 대한법률구조공단 46, 53, 75, 173, 206, 207, 233 대한변호사협회 27, 46, 173, 274 도서관 35,70 도서관및독서진흥법 70 도서반입 192 도서열람 제한 190 도주 41, 72, 182, 189, 192, 194 도청 116 독거수용 189 독립전문가 86, 89, 90, 91, 92 동성동본 금혼 폐지 176 동성애자 인권연대 178

(≥)

로마규정(Rome Statute) 147, 148, 149, 150 로마협약 15

로비활동 87,110

 (\Box)

마그나 카르타 15 마약류사범등에관한 보상금 지급 199 매춘 165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 88,93 면담 16, 69, 71, 80, 230 면전진정 29, 38, 39, 44 명예 47, 53, 70, 76, 143, 194, 229, 230, 231 모성보호법률 174 모유수유 129, 130 무료진료소 168, 169 문화적권리 92,93,105,110,118,119,121, 125, 202, 250 미결수용실 39, 54, 66 미등록외국인노동자 160 미란다 원칙 180 민간단체 15, 16, 28, 74, 87, 95, 97, 109, 110, 114, 119, 125, 126, 132, 149, 178 민법 124, 162, 176 민사 74, 162, 194, 202, 207, 209, 211, 232, 233 민사상시효 51,71 민사소송 46, 51, 202 민원처리 160, 203, 207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 1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87,88,150, 270

(H)

박태훈 134, 136, 137, 144

반국가단체 115, 134 반박보고서 109,110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147, 148 방문조사 24, 25, 33, 52, 69, 77, 79 방임 129 방해 39, 42, 51, 52, 54, 77, 80, 81, 120, 217 배움터 56, 284 배제 45, 53, 71, 76, 120, 141, 142, 144, 170, 229, 251 벌과금납부증명 198 벌금 39, 54, 77, 161, 187, 188 벌칙 77, 160 범죄수사규칙 235 범죄행위 41, 51, 52, 53, 72, 75 법과 생활 202 법률구조 25, 26, 32, 33, 42, 45, 46, 52, 75, 112, 180, 206, 207, 209, 210, 211 법률구조법 207 법무담당관 28,31 법무부 16, 17, 47, 88, 176, 195, 197, 202, 218 법원 42, 45, 47, 50, 70, 72, 112, 116, 127, 129, 133, 149, 161, 180, 193, 195, 202, 209, 210, 219 법인 21, 26, 37, 70, 219, 221 법제개선담당관 30 변호인 접견 193, 229 변호인접견신청 199 병력(病歷) 21, 33, 37, 44, 70 보건정책 130 보상금 32,39 보석보증금환부청구 198

보호감호소 39, 54, 66, 199, 200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55, 79
보호조치 80, 186
부당한 대우 39, 50, 76
부랑인복지시설 54, 79
분류 29, 39, 40, 43, 43, 44, 205
불관용 90, 98
불기소 처분 232, 233
불기소증명 198
불법외국인노동자 111
불법체포 179, 186
불법취업 160
불복구제절차 222
불심검문 179, 180, 184
불이익 39, 45, 50, 76, 80, 130, 160, 214, 221, 232

비공개 대상정보 221 비례성원칙 189 비밀누설 76,77 비밀침해 42,77 비보호 186,188

비사법적, 즉결 또는 자의적 처형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90, 96, 98 비상임위원 18, 23, 24, 25, 27, 203 비송사건절차법 77 비시민(non-citizen) 93 비엔나유엔세계인권대회 15, 16 비엔나선언 93, 122, 124 비정규노동자 121

(**人**)

사건 조사 41 사건 처리 41,49

사건기록열람(등사)청구 199 사립학교 130,174 사무처 19, 23, 27, 68, 82 사무총장 18, 23, 28, 68, 85, 89, 91 사법경찰관리 32, 39, 44, 54, 66, 229, 232 사복착용 195 사상전향 116 사생활 42, 46, 55, 70, 72, 76, 88, 164, 180, 229, 230, 231, 249 사실조사 52, 209 사실조회 52,69,77 사이버 경찰청 범죄신고센타 175 사이버민원실 197 사인 21, 26, 37, 70 사적보험 165 사회경제발전계획 124 사회교육단체 70 사회교육법 70

사회교육법 70 사회교육시설 70 사회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87

사회적 약자 38, 182 산업안전보건 158 산업안전보건법 158 산업연수생 112, 157, 158 산업재해 120, 157, 209 산업재해보상법 118 산업재해보상보험 158 산재보험 160, 202

상담 29, 37, 38, 43, 51, 129, 161, 162, 172, 173, 176, 178, 203, 204, 206, 207, 208,

234 상담신청 37

상담지원단체 161, 163

상시적 초청(Standing Invitation) 89

상임위원 18, 23, 24, 25, 27, 66 상임위원회 24 생리휴가 164 서신검열 43 선주민 90,92,93 선주민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of indigenous people) 90, 98 선택의정서 91,92,115,132,133,136,137, 140, 141, 143, 144 성별 21, 33, 37, 44, 70, 129, 170 성병 130 성적 굴욕감 170, 171 성적 노예화 148 성적(性的) 지향 21, 33, 37, 44, 70 성적소수자 177, 178, 179 성적착취 120 성착취 131, 253, 254 성평등 121, 176 성폭력상담소 28,173 성희롱 119, 170, 171, 172, 176 세계인권대회 122 세계인권선언 15 세르지오 비에이라 데 멜로(Sergio Vieira de Mello) 94 소년교도소 39, 54, 66 소년분류심사원 54,66 소년사법 131 소년원 39, 54, 66, 200 소속 공무원 71,76 소송 31, 51, 117, 161, 193, 209, 210, 221 소송요건 193 소수자 92,93,182 소위원회 17, 24, 25, 26, 40, 41, 67, 81, 85,

86, 92, 125, 205 소추 72 손해배상 26, 46, 53, 74, 162, 172, 209, 214 수사 32, 50, 51, 52, 72, 180, 232 수사 개시 41 수사기관 50, 51, 52, 72, 179, 183, 186, 212 수색증명 199 수용자 38, 39, 42, 43, 45, 46, 54 수용장소 53,75 수형자 193 시국선언 18 시민권 127 시민사회 126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5 시설 79 시설수용자 39, 53, 69, 71, 75, 79, 80, 81 시정조치 172 식량에 대한 권리(Right to food) 90,98 신법 119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Right to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98 실명 50 실무그룹 89, 91, 93, 98 실업 119 실지조사 52,73 실질조사 53 실태조사 20, 21, 31, 33, 68, 157 심의 18, 24, 25, 26, 40, 41, 55, 68, 73, 76, 94, 97, 109, 111, 114, 118, 119, 132, 137, 138, 141, 143, 205, 206, 233 심의회 109 심판 214

(o)

아동 106

아동 구금 시설 126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90, 98, 132

아동관련 국가행동계획 124

아동권리위원회 108, 123

아동복지시설 54,79

아동부양 129

아동학대 120, 123, 129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21,22

안전보장이사회 85

알몸 신체검사 194

암실 190

압수 수색 231

압수물 가환부신청 199

압수물 열람(등사) 신청 199

압수증명 199

약물남용 130

양성평등 170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00

업무방해 77

에이즈 130

여성 67, 106, 115, 170

여성긴급전화『1366』 173, 177

여성상담실 173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그 원인과 결과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98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08

여행신고 200

여호와의 증인 45

연구 20, 22, 25, 30, 33, 35, 68, 69, 74, 89,

92, 122, 130, 174, 207, 219, 221

연금 120

연금 당연 적용 국가 158

연금 적용 제외 국가 158

연금적립금 반환국가 158

연수기간 158

연수수당 158

연수취업자 158

연장근로 164

.

열람금지 80 영아 130

...

영장 140

영치금접수(반환)원 200

영치품접수(반환)원 200

예납금(가납금)환부신청 198

예방 20, 22, 31, 68, 85, 86, 93, 111, 112, 129,

131, 171, 174, 190, 191, 192, 202, 221

예산행정운영과 31

외국인 50,66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165

외국인보호소 54,66

외국인혐오증 90

외래사진료허가 199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55,79

요새 심리 119

용병 90

원상회복 26, 53, 74, 122, 172

원조교제 131

위원국 86

위원장 18, 23, 24, 25, 26, 28, 66, 68, 73, 77,

81, 205, 213

유독성 폐기물과 위험물질의 불법적 이동 및 유기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Adverse effects of the illicit movement and dumping of toxic waste and dangerous products and waste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90,98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76

rights) 90,98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76
유엔고문방지협약 21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83,118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182
유엔사무총장 88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설치 15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49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1
유엔헌장 15,85
유치장 54,180
유치장설계표준 236
유흥업소 165

73, 76, 81, 205, 206, 214 의료 53 의료공제회 165 의료행위 46 의료혜택 119 의무관 46

윤락행위등방지법 55,79

의결 24, 25, 26, 31, 40, 41, 42, 53, 67, 69,

육아휴직 164

의사와 표현의 자유(Rights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98

이동 법률상담 208 이송 72 이적단체 138 이적단체규정 134 이주노동자 47, 106, 13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위원회

108

이주자의 인권(Human rights of migrants) 90, 98

이행감시기구 105, 133 이행보고서 111

이행상황 92 익명 50

인권 13, 15, 19, 20, 21, 25, 26, 28, 30, 31, 32, 34, 35, 37, 38, 40, 41, 42, 45, 68, 70, 73, 74, 76, 78, 83, 85, 87, 89, 90, 91, 92, 95, 96, 105, 106, 109, 142, 148, 157, 160, 179, 180, 182, 184, 188, 189, 194,

인권 정책국 30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85, 93

인권교육 69 인권교육담당관 34 인권법 15 인권보호관 234 인권보호수사준칙 229

202, 207, 234

인권상담 28, 29, 37, 38, 40 인권상담센터 28, 29, 37, 38, 40

인권연구담당관 30

인권옹호자 99

인권위원 23, 24, 26, 29, 42, 66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85 인권이사회 114, 115, 134 인권자료실 19, 22, 23, 27, 35, 70 인권침해 53, 70 인권침해조사1과 32 인권침해조사2과 32 인권침해조사국 32 인권침해조정위원회 26 인권침해행위 68 인신매매 22 인종주의 90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및 불관용(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인종차별 90, 105, 111, 133, 148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07, 111, 134 인종차별철폐협약 15,21 인지 51 인터넷 대화방 127 일반권고 112 일반논평 120, 121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 199 일시보호자 235 임의동행 184, 186 입회 80

(x)

자격사칭 76,77
자기결정권 90
자기결정권 행사를 저해하는 수단으로서의 용병의 이용(Use of mercenaries as a means of impe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99
자료 제출요구 52
자문기구 68
자문위원 24,76

자백 138 자유권규약 115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97,99 작업상여금 190 장애 21, 33, 37, 42, 44, 67, 70, 93, 114, 127, 194, 231 장애아동 127, 130 장애인 182 장애인복지시설 54,79 재발 방지 53 재정신청서접수증명 199 재판 50 재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 198 재항고기각증명 198 재항고장접수증명 198 적성단체 115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 90,99 전과 43 전원위원회 24, 25, 26, 40, 42, 53 전쟁범죄 148 접견신청 200 접수번호 55 접수증명원 50,71 접수확인 50 정무직 공무원 66 정보공개 218 정보공개청구 194, 219 정보화담당관실 32 정부보고서 21, 106, 116 정부출연연구기관 70 정부투자기관 220 정신보건시설 54,79 정책총괄과 30 정치적 권리 105

제1소위원회 25 중앙노동위원회 212 제22조 134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82 제2소위원회 25 중앙행정기관 218 제30조 26, 72, 73, 160 중재 213 제3소위원회 26 즉결 90 제3자 49 즉결심판 188 제네바 92 증거의 인멸 72 제네바협약 148 증언 73 제도 14, 20, 25, 30, 32, 44, 51, 53, 68, 75, 지명수배자 230 지명수배해재신청 199 83, 174 제척 73,81 지문규칙 235 조사 14, 19, 20, 25, 26, 30, 31, 32, 33, 35, 지방경찰청 182 지방변호사회 173 38, 39, 40, 41, 45, 46, 47, 49, 50, 51, 52, 지방의회 67 53, 54, 55, 68, 69, 70, 72, 74, 75, 76, 77, 지방자치단체 20, 28, 29, 32, 37, 67, 68, 70, 79, 81, 87, 89, 92, 94, 97, 115, 129, 130, 131, 134, 142, 149, 157, 160, 174, 180, 177, 218, 219 187, 205, 207, 213, 229, 230, 231 직권남용 51, 179 조사결과 55 직권조사 25, 26, 32, 33, 43, 47 조사권한 51 직업훈련기관 71 조사기획담당관(실) 33 직원 23, 38, 39, 46, 54, 55, 68, 69, 71, 73, 조약비준 92 76, 77, 78, 79, 80, 117, 231 조정 52 진술 52 조정 절차 42 진술 거부권 230 조정위원 24, 42, 73, 74, 81 진술서 52 진술청취 73 조정위원회 25, 26, 40, 42, 53, 74 진정 51, 72, 80 종결 51,72 진정(재사)사건처분결과증명 199 종교 21, 34, 37, 44, 45, 70, 90, 92, 148 종교와신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 or 진정권 71 belief) 99 진정방법의 고지 80 종교집회 45 진정사건 39 주제별 수임사항(Thematic mandate) 89 진정사건결정문 42 준법서약서 116 진정서 49,81 중간 처분 233 진정서작성 77

진정인 71

중등교육 130

진정접수 37, 38, 40, 41, 43, 50, 51 진정함 80 집단살해죄 148 집필권 193 집회 116 징계권고 24, 32, 45, 75 징계위원회 68 정벌 189

(★)

차별 15, 19, 20, 21, 24, 26, 28, 29, 31, 33, 37, 38, 39, 41, 42, 45, 51, 53, 68, 70, 73, 86, 92 차별조사1과 33 차별조사2과 33 차별조사국 28, 33, 40 차별철폐 106, 133 차별행위 19, 20, 21, 24, 26, 29, 31, 33, 37, 38, 39, 41, 42, 43, 44, 45, 49, 51, 52, 53, 68, 70, 73, 112, 127 차별행위조정위원회 26 참관신청 200 처리기한 51 처리결과 72 청문회 69 청소년보호법 123 청원 94, 97, 135 청원작업 정지 190 청원제출양식 모델 97 체류기간연장허가 201 체류자격 112, 158 체류자격부여 201 체벌 128

체불 161 체불임금 청산 160 체포 51,230 초 중등교육법 69 초과체류자 160 초국적 기업 93 총무과 29 총회 85 최저임금 158 최저임금법 158 최저혼인연령 126 최종견해 105, 114, 118, 123 최초 보고서 121 출국 금지 232 출국가능사실증명 199 출국금지의뢰신청 199 출국금지일시해제신청 199 출국금지해제신청 199 출석요구 52 출소(재소)신청 200 출입국사무소 160 출입국사실조회 202 취하 55,72 친양자 제도 176 침략범죄 148 침해 14, 19, 20, 21, 24, 25, 26, 28, 29, 31, 32, 33, 37, 38, 39, 40, 41, 43, 44, 45, 46, 47, 49, 50, 51, 52, 53, 55, 88, 89, 92, 93, 94, 95, 96, 97, 112, 128, 133, 134, 139, 140, 143, 157, 163, 164, 165, 176, 178, 179, 182, 184, 188, 194, 221, 222,

228, 229, 230, 232

(=)

카운슬링 128 코피 아난 88

(■)

태아성감별 115 테러방지법 87 통보양식 135 통보제도 134 통신제한조치 232 특별보호조치 131 특별대표 89,91 특별법 119 특별보고관 89,93,98 특별위원회 22,24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89

(1

파리원칙 14, 19, 121, 125
파업 120
판결문(약식명령)등본교부청구 198
판사와 법률가의 독립(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99
평등권 21, 26, 37, 44, 45, 70
평등권침해 21, 26, 37, 44, 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7
폭행 51, 158, 162
피구금자 치우에 관한최저기준규칙 191
피복 53
피의사실 유포 183

피의자 알몸수색 184 피의자보상금지급청구 199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235 피진정인 49,53 피해 당사자 49 피해자 구제 53

(=)

학교교칙 127 한 부모가정 127 한국여성단체연합 87 한청련 138, 142 한총련 134 합의권고 25, 26, 40, 41 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 198 항고기각증명 198 항고장접수증명 198 해고 160 행동프로그램 124 행정소송 46,207 행정심판 224 행정지원국 28,31 행형법 190 헌법 14, 19, 20, 25, 26, 27, 37, 42, 45, 46, 47, 50, 51, 66, 70, 72, 111, 115, 119, 120, 127, 133, 137, 139, 140, 141, 142, 143, 180, 192, 193, 195, 211, 219, 229 헌법제10조 21,37 헌법 제11조 25, 26 헌법 제22조 21, 37, 133, 139, 143, 191, 217 헌법소원 46,207 헌법재판소 70,140 헌병대영창 54,66

협력 14, 20, 21, 25, 31, 34, 35, 68, 87, 122, 홍보 68, 69 126, 149 화상상담 38 협약 106 화해 52

 협의 70
 환경운동연합 87

 협의지위 109
 회피 81

 형법 51
 후속작업 110

형사보상금지급청구 199 형사재판확정증명 199 (1)

형사절차법 116 형사처번 75

형사처벌 75 1503절차 92, 93, 94, 95, 97, 133

호세 아얄라 라쏘(Jose Ayala-Lasso) 93

호적제도 176 (A)

호주제 119, 175

혼외출생아동 127 APF 법률자문회의(ACJ) 22

혼혈아동 112